

발간등록번호

11-1140100-000066-10



2012 고충민원 조정사례집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 · 부패방지 · 행정심판

“C·O·N·T·E·N·T·S”

제1장 행정·문화·교육민원 조정사례

- ※ 갈등 빚던 시흥 ○○초교 통학버스 운행 재개 7

제2장 국방·보훈민원 조정사례

- ※ 신형전투복 제조납품 관련 사회적 손실방지 19
- ※ 군 저유조 설치로 사라진 도로, 49년 만에 개설 27
- ※ 포 사격장 소음불편, 25년 만에 해결 42
- ※ 군 차량 이용 굴곡 도로, 50년 만에 직선화 53
- ※ 옥천 양수리 군 사격장 소음피해 대책 마련 64

제3장 산업·농림·환경민원 조정사례

- ※ 저수지 조성으로 사라진 마을 진입도로 개설 75
- ※ 갈치잡이 어선 계류장을 안전지대로 이전 설치 85
- ※ 밀양 후사포 마을 공장소음 방지대책 마련 90
- ※ 염분 고층 양산 증산마을, 새 농업용수 공급 100
- ※ 공장 이전에 따른 지방투자보조금 지급 110

제4장 주택·건축민원 조정사례

- ※ 4년 끈 우동 주택재개발 민원 해결 117
- ※ 제2경인고속도로변 아파트 방음벽 설치 125
- ※ 올림픽공원 내 경륜·경정장 휴관일 문화교실로 활용 135

제5장 도시·수자원민원 조정사례

❖ 원주 건등리 국도변 농경지 침수 방지 대책 마련	145
❖ 장수교차로 2차선 병목구간 6차선으로 확장	154
❖ 안성 월곡물류단지 주변 중중묘역 보존	162
❖ 우정혁신도시 병풍 옹벽 대신 녹지 조성	170
❖ 30년 개발이 묶인 부산 낙민동 학교시설부지 해제	181
❖ 당하지구 미개발용지 용도변경을 통한 개발 물꼬	191
❖ 고령 연리들 수박농가 피해 대책 마련	202
❖ 미사보금자리지구 내 한옥건축물 존치 및 보전	215
❖ 전주 만성도시개발지구 도로변 보행로 개설	224
❖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보도 및 가로등 설치	233
❖ 주암댐 이설도로 노폭 확장 및 선형 직선화	240
❖ 청북지구 단독주택 피로티 설치로 주차난 해소	243
❖ 도로 선형 변경을 통해 폐쇄위기 공장 존속	251

제6장 교통·도로민원 조정사례

❖ 북향대교~동명오거리 지하매설물 이설 분쟁 매듭	257
❖ 경부고속도로 인근 구소석마을 소음피해 해결	266
❖ 철도 무단횡단 위험 해소를 위한 우회도로 설치	273
❖ 남해고속도로변 진주 회원마을 진출입로 개선	280
❖ 호남고속철도 정읍역사 및 지하차도 공사 재개	292
❖ 광주광역시 북구 용호마을 앞 교차로 개선	314
❖ 김제시 황산동 호남고속철도 통로암거 신설	323
❖ 진주 죽봉마을 교통사고 위험 구간 선형개선	330

제 1 장

행정 · 문화 · 교육민원 조정사례



◇갈등 빛던 시흥 ○○초교 통학버스 운행 재개



같은 빛던 시흥 ○○초교 통학버스 운행 재개

민원번호 : 2AA-1209-162942 (행정문화교육민원과, 이범준)

<민원개요>

경기 시흥교육지원청이 2007년부터 시흥시와 함께 지원해 오던 시흥시 소재 ○○초등학교의 통학버스를 2013년부터 중단하기로 결정해 발생한 학부모들과 교육지원청 간의 갈등을 지속적이고 당사자 간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해결

① 당사자

- 신 청 인 : ○○초등학교 학부모대책위원회
- 피신청인 :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피신청인 1), 경기도 시흥시장(피신청인 2)

② 민원내용

- ○○초등학교 학생들의 열악한 통학환경 개선을 위해 2007년부터 교육청과 시가 통학버스를 지원해 오던 중 교육청이 2013년부터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으나
- 학교에서 버스차고지까지의 거리가 멀고, 대로에서 학교 앞까지는 보·차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통학환경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으므로, 통학버스를 계속 지원해주는 등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

③ 피신청인 등 의견

가.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 민원 학교 인근 공영차고지 신설 및 노선 증설로 시내버스로도 충분히 통학 가능한 상황에서 통학버스 계속 지원은 어려운 상황이며, 학교 앞 인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흥시에 임시 보·차도 분리시설 설치를 요청 하였음

나. 경기도 시흥시장

- 이 민원 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통학여건 개선 시까지 현행 유지는 가능 하나, 시흥교육지원청과의 대응사업이 아닌 시흥시 단독으로 지원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④ 주요 쟁점사항

-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학생들의 대부분이 거주하는 시흥시 포동 인근에 학교 신설을 요구하였으나, 전체 학생수가 초등학교 신설기준에 미치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 시흥교육지원청도 ○○초등학교 학생들의 어려움은 알고 있으나, 통학거리가 먼 다른 학교 학생 및 학부모들의 통학버스지원 요구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는 부담 상존

⑤ 갈등 분석

가. 민원발생배경및 주요사실관계

- 대부분의 재학생(470여명)이 거주하는 경기 시흥시 포동에서 학교까지 2~3km 구간은 각종 제조공장·폐기물처리시설·물류창고 등 소규모 업체와 폐염전·농지·야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일반 주택은 거의 없는 공동화 지역
- 10여년 전부터 마을과 학교를 운행하던 마을버스가 수년 동안의 적자로 2007년 폐업하여 대중교통이 단절되자 학원승합차가 통학을 지원하였고, 학원승합차를 이용하기 위해 모든 학생들이 사설학원에 등록해야 하는 상황 발생
- 당시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통학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향의집회, 2007. 2. 9. ~ 2007. 2. 12. 등교 거부하였고, 교육청과 시는 대응사업으로 통학버스 지원 결정
- 2012. 9. 교육청은 마을에서 학교 인근까지 2km 구간에 보·차도 설치공사가 완료되고 학교에서 250m 인근에 버스차고지가 신설되자, 교통여건 개선을 이유로 2012. 3.부터 대응사업 중단 결정

나. 조정 목표

- 학부모들과 시흥시교육지원청 및 시흥시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
- 통학환경이 일정 수준으로 개선될 때까지 시흥교육지원청과 시흥시가 대응사업으로 통학버스 운영을 지원하되, 예산 부담 완화를 위해 운영방식 변경

⑥ 갈등해결과정

- '12. 9. 19. 고충민원 접수
- '12. 9. 20. ~ 9. 27. 고충민원 내용검토 및 자료제출 요구(국민권익위원회)
- '12. 10. 9. 고충민원 자료제출(피신청인)
- '12. 10. 24. 제1차 당사자 협의(실지조사 실시)
- '12. 11. 16. 학부모측 대안(3개안) 마련 및 각 기관별 검토
- '12. 11. 21. 제1차 당사자 협의(학부모측 대안 조율)
- '12. 12. 27. 현지조정회의 개최(조정성립)

⑦ 조정 (합의) 결과

가. 조정 · 합의문 최종결과

- 학부모들에게 현행 제도, 예산,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 검토가 필요한 사항 등을 제시 후 학부모가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대안을 마련토록 역할을 부여하고, 행정기관들로부터는 학부모들이 스스로 마련한 대안을 최대한 수용한다는 동의 도출
- 반경 2~3km 내 가정집이 전무하고 영세공장, 야산, 폐염전으로 이루어진 공동화 지역에 위치하여 교통사고, 성폭행사고 등 각종 사고 위험성이 상존하여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교생이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초 470명의 재학생 및 예비 입학생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민원을 해결하자는 공동의 목표설정 후 끝장토론을 통해 선택된 대안을 모두가 최선의 결과로 인정

나. 위원회 조정 · 합의문

- (1) 피신청인 1(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과 피신청인 2(시흥시장)는 이 민원 학교 앞에서 공로로 연결된 도시계획도로(이하 '민원 도로'라 한다)가 완공될 때까지 통학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대응사업으로 추진하되, 민원 도로 완공 후 통학버스 운행 여부에 관하여는 신청인과 재협의하기로 한다.
- (2) 통학버스 운행은 등교시간에는 3대를 운행하고, 하교시간에는 2대를 운행한다.
- (3) 피신청인 2(시흥시장)가 민원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설계 시부터 피신청인 1(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과 이 민원 학교에 통보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관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
- (4) 피신청인 2(시흥시장)가 이 민원 학교 인근에 CCTV를 설치할 때에는 이 민원 학교와 학부모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설치 위치를 정한다.

⑧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가. 신청인-피신청인 수용 및 이행여부

- 학부모들과 시흥교육지원청 및 시흥시 모두 우리 위원회의 조정결과에 만족해하고 있으며, 특히 시흥교육지원청은 스스로도 학부모들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싶은 희망은 있었으나 당사자간 감정 대립으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던 중 우리 위원회의 적극적인 중재로 민원이 해결되고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의견
- 통학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등 실질적 역할을 담당할 시흥시는 향후 사업 추진 시 학부모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조정내용을 적극 이행할 예정

나. 시사점

- 대화에 임하는 당사자들이 기존의 주장만 반복할 경우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한 후, 학부모들이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기관은 학부모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자세로 임하는 한편,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한다는 원칙 하에 대화를 진행한 결과 협상의 중단이나 결렬 없이 모두 만족해 할 수 있는 결과 도출

- 주민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요구하는 방식과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방식에 따라 그 결과는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우리 위원회가 법적 위법·부당성에 대한 검토만이 아닌 갈등의 적극적인 중재자로서의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

포리초교 통학버스 내년에도 달린다

시흥교육청- 학부모 갈등 권익위 중재로 봉합 도시계획도로 완공 시기까지 일부 축소 운행

시흥교육지원청이 지난 2007년부터 시흥시와 함께 지원해 오던 신현동 포리초등학교의 통학버스를 2013년부터 중단하기로 결정해 발생한 학부모들과 교육지원청 간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소됐다.

30일 신현동 주민들에 따르면 학교와 마을을 오가며 학생들의 통학 수단으로 활용되던 마을버스 회사가 적자로 2007년 2월 폐업해 유일한 통학수단이 없어지자 학부모들이 등교 거부 등 강경 대응해 시흥교육지원청과 시흥시가 통학버스를 지원해 왔다.

더욱이 포리초교는 반경 2~3km 내에 주택이 거의 없고 전교생 470여 명 대부분이 학교와 2.5km 가량 떨어진 포동에 거주하고 있어 버스 지원이 없으면 통학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시흥교육지원청이 2011년 12월 학교 주변에 버스 공영차고지가 신설돼 통학 여건이 개선됐다는 이유로 새해부터 통학버스 운행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자 학부모들이 크게 반발, 갈등을 겪어 왔다.

이와 관련,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250m 떨어진 공영차고지는 버스 정류장이 아니고 차고지이기 때문에 승하차가 불가능하고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공영차고지에서 학교까지 어린 학생들이 걸어야 할 수 있는 통학로가 없으므로 통학환경이 개선될 때까지 통학버스 지원 유지를 요구하며 지난 9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민원 해결을 위해 수차례의 현지 조사와 사업의 주체인 시흥교육지원청과 시흥시, 학부모 대표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끝에

중재안을 마련하고, 지난 27일 포리초교에서 신영기 상임위원 주재로 조정회의를 진행해 통학버스를 운행하기로 했다.

중재안은 ▶학교 앞 도시계획도로(통학로) 완공 시기까지 통학버스 지원을 지속하되 교육지원청의 예산 상황을 고려해 일부 축소 운행(등교 3대, 하교 2대)하고 ▶도시계획도로 완공 후에는 지속 운행 여부를 재협의하며 ▶도시계획도로 설계 및 방법용 CCTV 설치과정에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했다.

조정회의를 주재한 국민권익위원 신영기 상임위원은 “민원 해결을 위해 학부모와 시흥시, 시흥교육지원청이 함께 조금씩 양보한 것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이번 민원을 해결해 학생들의 통학 불편을 해소, 편안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한 데 큰 의미를 두고 앞으로도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흥=이옥철 기자 oclee@killobo.co.kr

권익위,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을 둘러싼 민-관 갈등 해소

[2012/12/28 [09:43] 심은영 기자]

경기 시흥교육지원청이 2007년부터 시흥시와 함께 지원해 오던 시흥시 소재 포리초등학교의 통학버스를 2013년부터 중단하기로 결정해 발생한 학부모들과 교육지원청 간의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소되었다.

학교와 마을간 오가며 학생들의 통학 수단으로 활용되던 마을버스 회사가 적자로 2007년 2월 폐업해 통학수단이 없어지자 학부모들이 등교거부 등 강경대응을 해 시흥교육지원청과 시흥시가 통학버스를 지원해 왔다.

경기도 시흥시 포리초등학교는 반경 2~3km 내에 주택이 거의 없고 전교 470여명 규모인 학교의 학생들은 학교와 2.5km가량 떨어진 포동에 거주하고 있어 버스지원이 없으면 통학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시흥교육지원청이 지난 2011년 12월 학교 주변에 버스 공영차고지가 신설되어 통학여건이 개선되었다는 이유로 새해부터 통학버스 운행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자, 학부모들이 크게 반발해 갈등을 겪어왔다.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250m 떨어진 공영차고지는 버스정류장이 아니고 차고지이기 때문에 승·하차가 불가능하고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공영차고지에서 학교까지 어린 학생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통학로가 없으므로 통학환경이 개선될 때까지 통학버스 지원 유지를 요구하며 지난 9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을 접수한 권익위는 민원 해결을 위해 수차례의 현지 조사와 사업의 주체인 시흥교육지원청과 시흥시, 학부모대표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끝에 중재안을 마련하고, 27일 오후 포리초등학교에서 신영기 상임위원 주재로 조정회의를 진행해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세부 중재안은 학교 앞 도시계획도로(통학로) 완공 시까지 통학버스 지원을 지속하되 교육지원청의 예산상황을 고려해 일부 축소하여 운행(등교 3대, 하교 2대)하고 도시계획도로 완공 후에는 지속 운영여부를 재협의하며 도시계획도로 설계 및 방법용 CCTV 설치 과정에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했다.

조정회의를 주재한 국민권익위 신영기 상임위원은 “민원해결을 위해 학부모와 시흥시, 시흥교육지원청이 함께 조금씩 양보한 것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번 민원을 해결해 학생들의 통학불편을 해소해 편안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에 기여한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앞으로도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흥 포리초교 통학버스 운행 합의

시흥교육지원청이 지난 2007년부터 시흥시와 함께 지원해 오던 시흥시 포리초등학교의 통학버스를 올해부터 중단하기로 결정해 발생한 학부모들과 교육지원청 간의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소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교와 마을간을 오가며 학생들의 통학 수단으로 활용되던 마을버스회사가 적자로 지난 2007년 2월 폐업해 통학수단이 없어지자 학부모들이 등교거부등 강경대응해 시흥교육지원청과 시흥시가 통학버스를 지원해 왔다.

시흥 포리초교는 반경2-3키로 내에 주택이 거의 없고 전교생 470여명 규모인 학교의 학생들은 학교와 2.5km로 떨어진 포동에 거주하고 있어 버스지원이 없으면 통학이 어려운 상환이다.

시흥교육지원청이 지난 2011년 12월 학교 주변에 버스 공영차고지가 신설돼 통학여건이 개선됐다는 이유로 새해부터 통학버스 운행 지원도 중단하기로 결정하자 학부모들이 크게 반발해 갈등을 겪어왔다.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250m 떨어진 공영차고지는 버스정류장이 아니고 차고지이기 때문에 승하차가 불가능하고 안전사고 위험뿐만 아니라, 공영차고지에서 학교까지 어린학생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통학로가 없으므로 통학 환경이 개선될 때까지 통학버스 지원을 요구하며 지난 9월에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을 접수한 권익위는 민원해결을 위해 수차례의 현지 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사업의 주체인 시흥교육지원청과 시흥시, 학부모대표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끝에 중재안을 마련하고 지난 27일 시흥포리초교에서 신영기 상임위원 주재로 조정회의를 진행하여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한편 조정회의를 주재한 국민권익위 신영기 상임위원은 “민원 해결을 위해 학부모와 시흥시, 시흥교육지원청이 함께 조금씩 양보한 것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번 민원을 해결해 학생들의 통학 불편을 해소해 편안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에 기여한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앞으로도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해 줄것을 기대한다” 고 말했다.

시흥 = 이등원 기자

갈등 빚던 시흥 포리초 통학버스 운행 재개

지원중단 통보에 학부모 반발... 권익침해, 중재나서 극적 타결

통학버스 지원 중단으로 학부모들과 갈등을 빚어 왔던 시흥 포리초등학교 통학버스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극적으로 타결, 운행이 재개될 전망이다.

1일 포리초교 등에 따르면 지난 달 27일 국민권익위, 시흥시, 경기도교육청, 주민들과의 조정을 통해 포리초교 앞 도시계획도로가 완공될 때까지 통학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대응사업으로 추진하고, 도로 완공 후 통학버스 운행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재협의하기로 했다.

포리초교 통학버스는 지난 2007년 2월 마을버스가 적자문제로 운행을 중단하자 시흥시와 시교육지원청이 각각 1억원씩 대응사업으로 통학버스를 지원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도교육청이 학교 주변에 버스 공영차고지가 신설돼 통학여건이 개선됐다는 이유로 올해부터 통학버스 지원 중단을 통보해 학부모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250m 떨어진 공영차고지는 버스 정류장이 아니라 차고지이며 차고지에서 마을까지 3km는 인도가 없어 위험에 노출돼 있는 등 통학 환경이 개선될 때까지 통학버스 지원을 요구, 지난해 9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번 권익위 중재안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완공될 때까지 통학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대응사업을 추진해 등교시간에는 3대를 운행, 하교시간에는 2대를 운행키로 조정했다. 시흥=이성남기자 sunlee@kyeonggi.com

권익위,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을 둘러싼 민-관 갈등 해소

[2012년12월31일 14시44분 김종식 기자]

경기 시흥교육지원청이 지난 2007년부터 시흥시와 함께 지원해 오던 시흥시 소재 포리초등학교의 통학버스를 2013년부터 중단하기로 결정해 발생한 학부모들과 교육지원청 간의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소됐다.

학교와 마을간 오가며 학생들의 통학 수단으로 활용되던 마을버스 회사가 적자로 지난 2007년 2월 폐업해 통학수단이 없어지자 학부모들이 등교거부 등 강경대응을 해 시흥교육지원청과 시흥시가 통학버스를 지원해 왔다.

경기도 시흥시 포리초등학교는 반경 2~3km 내에 주택이 거의 없고 전교 470여명 규모인 학교의 학생들은 학교와 2.5km가량 떨어진 포동에 거주하고 있어 버스지원이 없으면 통학이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시흥교육지원청이 지난해 12월 학교 주변에 버스 공영차고지가 신설되어 통학 여건이 개선됐다는 이유로 새해부터 통학버스 운행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자 학부모들이 크게 반발해 갈등을 겪어왔다.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250m 떨어진 공영차고지는 버스정류장이 아니고 차고지이기 때문에 승·하차가 불가능하고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공영차고지에서 학교까지 어린 학생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통학로가 없으므로 통학환경이 개선될 때까지 통학버스 지원 유지를 요구하며 지난 9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을 접수한 권익위는 민원 해결을 위해 수차례의 현지 조사와 사업의 주체인 시흥교육지원청과 시흥시, 학부모대표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끝에 중재안을 마련하고 지난 27일 오후 포리초등학교에서 신영기 상임위원 주재로 조정회의를 진행해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세부 중재안은 학교 앞 도시계획도로(통학로) 완공 시까지 통학버스 지원을 지속하되 교육지원청의 예산상황을 고려해 일부 축소 운행(등교 3대, 하교 2대)하고 도시계획도로 완공 후에는 지속 운영여부를 재협의하며 도시계획도로 설계 및 방법용 CCTV 설치 과정에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했다.

조정회의를 주재한 신영기 국민권익위 상임위원은 “민원해결을 위해 학부모와 시흥시, 시흥교육지원청이 함께 조금씩 양보한 것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번 민원을 해결해 학생들의 통학불편을 해소해 편안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에 기여한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앞으로도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 2 장

국방 · 보훈민원 조정사례



- ◇신형전투복 제조납품 관련 사회적 손실방지
- ◇군 저유조 설치로 사라진 도로, 49년 만에 개설
- ◇포 사격장 소음불편, 25년 만에 해결
- ◇군 차량 이용 골목 도로, 50년 만에 직선화
- ◇옥천 양수리 군 사격장 소음피해 대책 마련



신형전투복 제조납품 관련 사회적 손실방지

민원번호 : 2AA-1201-17759 (국방보훈민원과, 김영수)

<민원개요>

방위사업청과 신형전투복 제조계약을 체결한 업체로서 무리한 제조 납품기간(16일) 지정으로 부득이하게 사전 품질보증활동의 절차를 엄수하지 않고, 제조하였다는 이유로 검수 및 수령을 거부하여 신청인 등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생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자원의 낭비 등 사회적 손실비용이 과다하니, 계약목적이 충실히 이행되면서 신청인의 상황적 여건을 고려하여 사회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이미 제조된 신형전투복 천벌에 대해 관계기관을 통한 기술분석 실시 후 수령여부 판단하도록 조정하여 국가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적기에 군에 신형전투복을 지급할 수 있었으며,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선의의 피해예방에 기여

① 당사자

- 신청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피신청인 : 방위사업청장
- 관계기관 : 국방기술품질원장

② 민원내용

- 방위사업청과 신형전투복 제조계약을 체결한 업체로서 방위사업청의 무리한 제조 납품기간(16일) 지정으로 부득이하게 제조 이전의 품질보증활동 절차를 엄수하지 않고, 신형전투복을 제조하였다는 이유로 검수 및 수령을 거부함으로써 신청인 등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생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자원의 낭비 등 사회적 손실비용이 과다하니, 계약목적이 충실히 이행되면서 신청인의 상황적 여건을 고려하여 사회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

③ 피신청인 등 의견

가. 방위사업청장(피신청인)

- 이 건 민원 계약이행 조건의 불합리적인 요소로 인해 비록 제조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형전투복의 규격 및 품질에 문제가 없다면 수령할 수 있으나, 신청인의 계약관련 위반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제재가 불가피하다.

나. 국방기술품질원장(이해관계인)

- 신청인이 이 건 민원 전투복 제조와 관련하여 계약서에 명시된 제조 이전의 품질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중단한 품질보증활동 재개는 불가하지만, 피신청인이 제조된 신형전투복에 대한 기술분석을 요청하면 이를 이행할 수 있다.

④ 주요 쟁점사항

- 제조 관련 절차 미 준수 완성품 품질 인증 가능 여부
- 국가자원의 낭비 등 사회적 손실비용 보전

⑤ 갈등 분석

가. 민원발생 배경및 주요 사실관계

- 방위사업청은 2011년 신형전투복 제조 배정예산의 불용을 방지코자 납품기한을 단축(통상 8개월 16일)하여 신형전투복 70,200벌에 대해 2011. 12. 15. 신청인과 제조 계약을 체결(납기 : 2011. 12. 30.)
※2012. 1. 27. 민원 접수(○○주식회사 대표이사○○○)
- 신청인은 납품기한을 준수하고자 국방기술품질원의 생산승인단계(통상 10일 이상 소요) 이전에 지정된 공장 이외 생산시설에서 신형전투복 55천벌을 제조하였음
- 방위사업청·국방기술품질원은 계약조건·절차 위반을 이유로 제조 중단 및 계약해제 검토를 신청인에게 통보
- 이미 제조된 신형전투복의 수령 불가시 폐기처분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 발생(관급원단비, 부자재 및 하청업체 제조노무비 등 약 35억원)

나. 조정 목표

- 신형전투복 제조 계약이행을 둘러싼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해 국가자원을 보호하고,

선량한 하청업체들의 재산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적법하고 합리적인 최적의 해법 마련
-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갈등 해결 방안 창출

⑥ 갈등해결과정

- 2012. 1. 27. : 고충민원 접수
- 2012. 2. 3. : 사전협의회의 개최
※참석 : 신청인(이사), 피신청인(물자계약팀장), 관계기관(전투물자사업담당관)
- 2012. 2. 7. : 국방기술품질원 방문 및 협의
- 피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술분석 지원가능 확인
- 2012. 2. 8. : 방위사업청 방문 및 협의
- 계약절차 위반과 완제품에 대한 처리방안을 분리, 해결토록 협의
- 2012. 2. 9. ~ 2012. 2. 16. : 조정서(안)에 대한 세부 협의
- 2012. 2. 17. ~ 2012. 2. 22. : 조정서(안) 확정 및 조정회의 준비

⑦ 조정 (합의) 결과

가. 조정 · 합의 최종결과

- 피신청인은 이미 제조된 신형전투복 55천벌에 대해 관계기관을 통한 기술분석을 실시 후 수령여부 판단(수령, 감액수령, 하자처리 등)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기술분석 결과에 따른 수령판단을 수용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하청업체에 제조비용을 직접 지급
- 신청인은 계약이행 절차 위반에 대한 책임을 이의 없이 수용

나. 위원회 조정 · 합의문

가.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한다.

- 1) 피신청인 주관(관계기관의 지원)으로 실시하는 이 건 민원 신형전투복의 기술분석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이 기술분석 결과를 이의 없이 수용한다.
- 2) 피신청인의 기술분석 결과에 따른 판단(수령, 감액수령 및 하자처리)을 수용한다.
단, 피신청인의 판단기준서 작성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3) 이 건 민원 신형전투복 제조와 관련한 제조업체·자재공급업체 등에게 지급할 노무비 등의 비용을 피신청인이 직접 지급하는데 동의한다.
 - 4) 이 건 민원 신형전투복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법령 및 계약특수조건 위반사항에 대한 책임을 지며, 또한 이에 관한 법률적 책임에 대하여 향후 피신청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나. 피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한다.
- 1) 관계기관의 지원을 받아 이 건 민원 신형전투복에 대한 기술분석을 주관한다.
 - 2) 관계기관이 제출하는 기술분석 결과 자료를 근거로 하고, 신청인의 의견을 제출 받아 합리적 요건을 갖춘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수렴판단 시 이를 적용 한다.
 - 3) 이 건 민원 신형전투복 제조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제조업체·자재공급업체 등에게 지급할 재료비, 노무비 등의 비용을 정산하여 직접 지급한다. 만약, 직접 지급 할 비용이 신청인에게 지급할 계약이행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공평하게 비율을 적용하여 직접 지급한다.
- 다. 관계기관은 피신청인의 요청에 근거하여 이 건 민원계약의 사양서를 기준으로 신형전투복에 대한 기술분석을 지원하고, 그 결과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한다.

㉘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가. 신청인-피신청인 수용 및 이행여부

- 신형전투복에 대한 기술분석 실시 후 감액수령(감액비율 15.1%, 약 2.2억 원)
- 전투복 제조와 관련한 제조업체·자재공급업체 등에게 제조노무비 직접 지급
- 27개 하청업체, 약 12억 원

나. 시사점

- 이번 조정으로 국가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선의의 피해를 예방 하며, 군에 적기에 신형전투복을 지급할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음
- 특히, 이번 일을 계기로 군납품 제조 계약과 관련하여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통한 합리적인 업무수행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음



폐기처분 위기 신형전투복 5만5천벌 납품길 열려

[2012-02-23 14:22 장하나 기자]

국민권익위 현장조정회의..전투복 분석 후 수령 검토키로

한 군납 민간회사가 짧은 납품 기한 때문에 부득이하게 계약 절차를 어기고 제작한 신형 전투복 5만5천벌이 국민권익위원회의의 중재 덕분에 폐기 처분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권익위는 23일 오후 방사청 회의실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방사청이 국방기술품질원을 통해 해당 전투복 5만5천벌에 대한 기술분석을 실시, 수령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합의안을 성사시켰다.

권익위에 따르면 모 전투복 제작업체는 작년 12월15일 총 7만200벌의 신형 전투복을 연말까지 제작해 납품하겠다는 계약을 방위사업청과 맺었다.

통상 납품에는 수개월이 걸리지만 방사청이 전투복 제작에 배정된 작년 예산의 불용을 막으려고 납품 마감을 무리하게 앞당겨 16일의 납품기한을 제시한 것이다.

결국 업체는 촉박한 납품기한 때문에 계약 체결 후 10일 정도 걸리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승인 단계를 밟기 전에 작업을 시작했고, 지정된 공장 이외의 생산시설에서 전투복을 제작했다.

이를 안 방사청과 국방기술품질원은 전투복 생산을 중단시키고 계약 해제를 추진, 이미 제작 중이던 5만5천벌의 납품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납품길이 막히면 업체는 전투복 원단비와 부자재 등 27억원의 손실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는 하청업체가 받아야 하는 미지급 인건비도 포함돼 있다.

또 전투복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소각을 통한 폐기처분도 감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원청·하청업체들은 “납품기한이 짧아 부득이하게 일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감수할테니 이미 제작이 완료된 제품은 검수를 통해 수령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주장해왔다.

이 같은 민원을 접수한 권익위는 그동안 수차례 관계기관 방문과 실무조정회의를 통해 양측의 의견을 조정했으며, 전투복 자재와 노무를 제공한 하청업체에는 원청 제작업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대금을 지불하게 하는 내용의 합의도 이끌어냈다.

권익위 도움으로 신형전투복 5만벌 '구사일생' / 권익위 소식

국민권익 2012.02.23 16:34 수정 | 식재 | 공개* | 위인글 보내기*

<http://blog.daum.net/loveacrc/5478> **블로그**

폐기처분 위기 신형전투복 5만5천벌 납품길 열렸다



5만5천벌의 신형전투복을 제작한 군납 민간회사가 방위사업청과의 계약절차 미준수로 납품을 하지 못해 대금을 받지 못하다가 뒤늦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중재로 납품길이 열렸다.

전투복 제작업체인 이 회사는 지난해 12월 15일 총 7만200벌의 신형전투복을 16일내에 제작해 납품하겠다는 계약을 방위사업청과 맺었지만, 촉박한 납품기한 때문에 계약 체결후 10일 정도가 걸리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승인단계를 밟기 전에 작업을 시작했고, 지정된 공장 이외 생산시설에서 전투복을 제작했다.

이에 방위사업청과 전투복의 품질을 검수하는 국방기술품질원은 이를 이유로 제작을 중단시키고, 계약해제를 추진하므로써 이미 제작중이던 5만 5천벌에 달하는 전투복의 납품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방위사업청은 전투복 제작에 배정된 2011년 예산의 불용을 방지코자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는 납품기한을 16일로 정해 납품 마감을 2011년 12월 30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미 제작된 전투복의 납품길이 막히면 폐기처분으로 인한 원단비와 부자재 등 약 27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며, 여기에는 하청업체가 받아야 하는 미지급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전투복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각을 통한 폐기처분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원청 및 하청업체들은 납품기한이 짧아 부득이하게 일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감수할테니, 이미 제작이 완료된 제품은 검수를 통해 수령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입장이었다.

지난 1월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23일 오후 2시 방위사업청 회의실에서 박성일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해 ▲ 방위사업청은 이미 제조가 완료된 신형전투복 5만 5천벌에 대해서는 국방기술품질원을 통해 기술분석을 실시하여 수령여부(수령, 감액수령, 하자처리 등)를 판단하고, 전투복 제조과정에 자재와 노무를 제공한 하청업체들에게는 원청 제작업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대금을 지불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합의안을 성사시켰다.

그동안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관계기관 방문과 실무조정협의를 통해 양측의 의견을 조정했으며, 이미 제조된 완제품을 폐기처리하면 자원 낭비와 직접 생산에 참여했던 중소기업체들의 피해가 막대하다는 논리로 설득해 이번 민원을 해결할 수 있었다.

권익위의 이번 합의안에 대한 후속조치는 방위사업청이 주관하기로 했으며, 군 장병들에게 가장 적합한 전투복을 보급하는 본질적인 목적에 충실한 검수활동이 시행될 예정이다.

박성일 국민권익위 상임위원은 “권익위의 이번 조정으로 국가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열악한 근무여건에서 적은 임금으로 고생한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법이 마련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폐기처분 위기 신형전투복 5만5천벌 납품길 열렸다

[2012.02.24]

국민권익위 “절차 미준수 전투복 기술분석키로 합의”

○ 5만5천벌의 신형전투복을 제작한 군납 민간회사가 방위사업청과의 계약절차 미준수로 납품을 하지 못해 대금을 받지 못하다가 뒤늦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중재로 납품길이 열렸다.

○ 전투복 제작업체인 이 회사는 지난해 12월 15일 총 7만200벌의 신형전투복을 16일 내에 제작해 납품하겠다는 계약을 방위사업청과 맺었지만, 촉박한 납품기한 때문에 계약 체결후 10일 정도가 걸리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승인단계를 밟기 전에 작업을 시작했고, 지정된 공장 이외 생산시설에서 전투복을 제작했다.

○ 이에 방위사업청과 전투복의 품질을 검수하는 국방기술품질원은 이를 이유로 제작을 중단시키고, 계약해제를 추진하므로써 이미 제작중이던 5만 5천벌에 달하는 전투복의 납품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 방위사업청은 전투복 제작에 배정된 2011년 예산의 불용을 방지코자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는 납품기한을 16일로 정해 납품 마감을 2011년 12월 30일로 지정한 바 있다.

○ 이미 제작된 전투복의 납품길이 막히면 폐기처분으로 인한 원단비와 부자재 등 약 27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며, 여기에는 하청업체가 받아야 하는 미지급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전투복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각을 통한 폐기처분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 원청 및 하청업체들은 납품기한이 짧아 부득이하게 일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감수할테니, 이미 제작이 완료된 제품은 검수를 통해 수령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입장이었다.

○ 지난 1월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23일 오후 2시 방위사업청 회의실에서 박성일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해 방위사업청은 이미 제조가 완료된 신형전

투복 5만 5천벌에 대해서는 국방기술품질원을 통해 기술분석을 실시하여 수령여부(수령, 감염수령, 하자처리 등)를 판단하고, 전투복 제조과정에 자재와 노무를 제공한 하청 업체들에게는 원청 제작업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대금을 지불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합의를 성사시켰다.

○ 그동안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관계기관 방문과 실무조정협의를 통해 양측의 의견을 조정했으며, 이미 제조된 완제품을 폐기처리하면 자원 낭비와 직접 생산에 참여했던 중소기업체들의 피해가 막대하다는 논리로 설득해 이번 민원을 해결할 수 있었다.

○ 권익위의 이번 합의안에 대한 후속조치는 방위사업청이 주관하기로 했으며, 군 장병들에게 가장 적합한 전투복을 보급하는 본질적인 목적에 충실한 검수활동이 시행될 예정이다.

○ 박성일 국민권익위 상임위원은 “권익위의 이번 조정으로 국가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열악한 근무여건에서 적은 임금으로 고생한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법이 마련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군 저유조 설치로 사라진 도로, 49년 만에 개설

민원번호 : 2BA-1205-084140 (국방보훈민원과, 오형조)

<민원개요>

군부대의 기름 저장시설(저유소) 때문에 거주지에서 외부로 나가려면 먼 거리를 우회해야 했던 ○○시 ○○동 주민들이 2006년 폐쇄된 미군 저유소 부지 내 도로 사용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하여 해병 제○사단, 육군본부와 국방시설본부, ○○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회의를 개최한 결과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저유소 내에 군부대가 임시로 개설한 도로를 지역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중재안을 마련하여 민원 해소

① 당사자

- 신청인 : ○○○ 외 19명
- 피신청인 : 해병 제○사단장(피신청인 1), 육군본부 ○○○ 사업단장(피신청인 2), 국방시설본부 ○○ 시설단장(피신청인 3), ○○ 시장(관계기관)

② 민원내용

- 민원지역은 미군 저유소가 설치되기 전 1963년 이전에는 주민통행을 위한 도로가 있었으나 저유소가 설치되면서 마을 진입도로를 통제
 - ※ 주민들은 인근 산주에게 사용료를 주고 임시도로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산사태 위험 등 상존
 - 2008. 6. 부터 시설을 철거하고 토양정화 사업 중인 미군 저유소 부지 내 도로 사용을 요구

③ 피신청인 등 의견

가. 피신청인1(해병 제○사단장)

- 훼손 철거 후 도로사용을 허가할 경우 쓰레기 무단투기 및 우범지대로 될 가능성이 있어 환경정화 완료 시까지 도로개방은 제한되며, 현재 토양오염에 대한 각종 조치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신청인의 요구사항은 수용 불가하다.

나. 피신청인2(육군본부 ○○○사업단장)

- 폐쇄된 지목상 도로부지의 폭이 좁아 지적정리 및 도로공사를 하지 않고서는 차량 등이 통행하기 어렵고,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폐쇄된 도로를 다시 개방하기는 곤란하다.

다. 피신청인3(국방시설본부 ○○시설단장)

- 폐쇄된 도로는 저유소 증앙을 관통하고 있어 개방에 문제가 있는바 차량통행 등 도로 사용은 환경정화사업 완료 후 ○○시와 협의 후 조치할 예정이다.

라. 관계기관(○○시장)

- 국방시설 및 부지에 대해 직접 관여하기 곤란하나 ○○시에서 조치가능한 협의 요청 시 적극 협력하겠다.

4 주요 쟁점사항

- 미군 반환 기지의 임시 활용 가능 여부
- 지역주민들의 통행권 보장 방안 검토

5 갈등 분석

가. 민원발생배경및 주요사실관계

- ○○시 ○○동에 미군 저유소가 설치되기 전인 1963년 이전에는 주민통행을 위한 도로가 있었으나 저유소가 설치되면서 마을로 진입하는 도로를 통제하여, 인근 산주에게 사용료를 지불하고 임시로 도로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산사태 위험 등 상존

- 2008. 6. 부터 시설을 철거하고 토양정화 사업 중인 미군 저유소 부지 내 도로 사용요구

※ 2000년부터 현재까지 약 40회에 걸쳐 민원제기 및 협의진행

- 피신청인 등은 저유소 폐쇄, 이전 후 부지활용 계획 시 검토할 사안이라며 저유소 부지 내 도로사용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

※ ○○저유소 재산현황

단위 : m²(평)

계	군 용 지	국유 지	사 유 지	비 고
369,824(111,872)	365,904(110,686)	3,920(1,186)	-	국)시설본부

⇒ 기존 도로로 판단되는 부지는 국토해양부 소관, 現 지목은 도로

- 2012. 5. 10. ○○○등 마을주민 20명이 위원회에 저유소 부지 내 도로사용을 요구 하는 고충민원을 제기

- 위원회에서는 현장조사, 당사자 의견청취 및 이견조율 등을 통해 해결방안 모색

나. 조정 목표

- 군 작전 및 국유재산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주민숙원 해소방안 마련
 - 미군 저유소 부지 내 국방부 관리도로를 개방하는 것으로 조정해결

⑥ 갈등해결과정

- '12. 5. 10. : ○○○등 마을주민 20명 위원회에 민원 신청
- '12. 6. 4. : 고충민원관련 자료 통보 및 이 민원 해결방안 협의
 - 저유소 부지 내 국토해양부를 관리청으로 하는 지목상 도로가 있으나 1965년 이후 사용하지 않아 차량통행 불가
 - 기존 도로부지는 폭이 0.9m에 불과한 곳도 있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국방부 관리 부지가 도로에 편입되어야 하는 등 국유재산 관리 상 곤란
- '12. 6. 7. : 위원회 중재(안) 협의 (1차)
 - 저유소 정화사업을 위해 국방부에서 개설한 진입로가 신청인 거주지까지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는 방안 협의

- '12. 6. 8. : 위원회 중재(안) 협의 (2차) 및 실지방문조사
 - 기존 도로부지에 대해서는 저유소 활용계획 수립 시 ○○시에서 도로개설 여부 적극검토
- '12. 6. 12. : 위원회 중재(안) 협의 (3차)
 - 2012. 7. 5. 까지 저유소 열탈착 정화사업을 마치고 신청인에게 개방하기로 합의

7 조정 (합의) 결과

가. 조정 · 합의 최종결과

저유소 부지 정화공사 완료 시부터 국방부에서 설치한 임시 진입로에 대해 신청인들의 통행을 허용하고, 차후 국방부에서 국유재산 매각 시 ○○시에서 정식으로 개설 검토

나. 위원회 조정 · 합의문

- 피신청인2(육군본부 ○○○사업단장)는 기존 계획대로 2012. 7. 5. 까지 저유소 부지 내 열탈착 정화공사를 완료한다.
- 피신청인1(해병 제○사단장), 3(국방시설본부 ○○시설단장)은 저유소 부지 열탈착 정화공사 완료 시부터 저유소 부지 내 국방부 관리 국유재산의 재활용 또는 매각 전까지 국방부에서 설치한 임시 진입로에 대해 신청인들의 통행을 허용한다.
- 관계기관(○○시장)은 향후 저유소 부지 활용계획 수립 시 지목 상 도로부지 활용과 관련하여 도로개설 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한다.

8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가. 신청인-피신청인 수용 및 이행여부

- 피신청인2(육군본부 ○○○사업단장)는 기존 계획대로 2012. 7. 5. 까지 저유소 부지 내 열탈착 정화공사를 완료하고 신청인들에게 국방부에서 설치한 임시 진입로의 통행을 허용
- 향후 국방부 관리 국유재산의 매각 시 관계기관(○○시장)에서 정식 도로개설 예정

나. 시사점

- 그동안 매각 전까지 활용이 어려웠던 미군 반환 기지의 새로운 활용방안 제시를 통해 당사자간 갈등해결에 기여



포항 軍저유소 인근 주민, 49년 만에 ‘길 찾았다’

[20120620 14:22 (포항=연합뉴스)]

권익위, “주민들 저유소 내 軍도로 활용” 중재

포항시 북구 장성동 주민들이 군부대의 기름 저장시설(저유소)로 잃어버린 도로를 국민 권익위원회의 중재로 49년만에 되찾았다.

지난 1963년 이 일대에 부지 36만9천800여㎡의 군용 저유소가 생기면서 기존에 드나 들던 통행로가 군부대로 편입돼 인근 5가구 주민들은 지금까지 먼거리를 우회해 통행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군은 지금까지 주민들의 솔한 민원에도 불구하고 저유소 이전 후 부지활용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데다 통행을 허용할 경우 쓰레기 투기, 토양오염 우려가 높다며 통행불가 방침을 고수해 왔다.

주민들은 매년 폭우나 폭설때 도로 유실 등으로 고립되는 불편이 잦다며 그동안 포항시와 군부대 등에 통행허가를 요구하는 민원을 40여차례 냈으나 이마저도 해결이 안되자 최근 국민권익위에 또다시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는 20일 현장에서 주민들과 군부대, 포항시 관계자 등과 함께 조정회의를 열고 군이 실시중인 저유소내 환경 정화사업이 끝나는 내달 5일부터 주민들이 저유소 내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와함께 포항시도 향후 저유소 부지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들을 위한 정식도로를 개설하고 주민들은 도로내에 쓰레기 무단투기와 무단경작, 허용인원 외 출입 등 통행조건을 준수하기로 했다.

주민들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푸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다”며 “늦은 감이 있지만 불편을 덜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방부, 포항시의 적극적인 협조로 49년간 통행에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의 숙원을 풀어줘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news Nocut 포항노컷 CBS

포항 군부대 인근 주민, “49년만에 길 되찾아”

[2012-06-20 오후 3:18:49 최종편집 : 2012-06-20 오후 4:49:35]

[포항CBS 박정노 기자 (jnpark@cbs.co.kr)]



포항시 북구 장성동 주민들이 군부대의 기름 저장시설로 잃어버린 도로를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49년만에 되찾았다.

지난 1963년 이 일대에 부지 36만9천800여㎡의 군용 저유소가 생기면서 기존에 드나들던 통행로가 군부대로 편입돼 인근 5가구 주민들은 지금까지 먼거리를 우회해 통행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에 권익위는 20일 현장에서 주민들과 군부대, 포항시 관계자 등과 함께 조정회의를 열고, 군이 실시중인 저유소내 환경 정화사업이 끝나는 내달 5일부터 주민들이 저유소내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포항시도 향후 저유소 부지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들을 위한 정식도로를 개설하고 주민들은 도로내에 쓰레기 무단투기와 무단경작, 허용인원 외 출입 등 통행조건을 준수하기로 했다.

한편, 군은 지금까지 주민들의 숭한 민원에도 불구하고 저유소 이전 후 부지활용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데다 통행을 허용할 경우 쓰레기 투기, 토양오염 우려가 높다며 통행 불가 방침을 고수해 왔다.

49년 만에 민원해결(RE)

[2012.06.20, 장효수 기자]

<앵커멘트>

군부대 기름 저장시설 때문에 통행로를 잃었던 마을주민들이 49년 만에 다시 옛 길을 되찾았습니다.

국민권익위가 직접 나선건데, 무슨 내용인지 장효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본문>

[리포트]

환경정화사업이 마무리 단계인 포항시 북구 장성동 옛 미군저유소 부지입니다.

부지를 가로지르는 이 길은 원래 마을과 마을을 잇던 주민 통행로였는데, 지난 1963년 저유소가 들어서면서부터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늘 다니던 길이 하루 아침에 사라지자, 마을은 사실상 고립됐습니다.

[스탠드업]”통행로가 군 시설에 막히면서 마을 주민들은 사유지에 개설된 우회도로를, 사용료까지 쥐가며 이용하는 불편을 겪어야했습니다.”

[인터뷰// 이동작 //장성동 주민]”우회도로를 개인이 개설해서 (그 사용료가) 1억이 들었습니다. 또 겨울에 눈이나 비와와서 결빙되면 다닐 수가 없고 정말 엄청난 불편을 겪었고..”

5가구 10여 명의 주민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10여년 전부터는 관계기관을 찾아 40여 차례 민원을 제기했고, 이마저도 안되자, 급기야 국민권익위원회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전국을 돌며 ‘이동신문고’를 운영 중인 권익위는 20일 현장에서 조정회의를 열어, ‘49년 만의 통행 재개’를 이끌어냈습니다.

권익위는 군에 현재 진행중인 환경정화사업을 다음달 5일까지 완료해 해당 주민들에게 저유소 내 임시도로를 개방하게 하고, 포항시에는 향후 저유소 부지 활용 계획을 수립할 때 정식 도로 개설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박재영 부위원장//국민권익위]”(권익위 중재는)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이행을 안하면 반대의 상대방에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말입

니다.”

한편, 해당 주민들은 옛 통행로가 개방된 만큼, 저유소 부지내 쓰레기 무단투기와 무단 경작, 허용인원 외 출입 등의 각종 문제를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HCN뉴스 장효섭니다.

관련보도자료

연합뉴스 한국일보 메디컬투데이

포항 軍저유소 인근 주민, 49년만에 ‘길 찾았다

[2012-6-20 14:19 | shlim@yna.co.kr]

권익위, “주민들 저유소 내 軍도로 활용” 중재

(포항=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 포항시 북구 장성동 주민들이 군부대의 기름 저장시설(저유소)로 잃어버린 도로를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49년만에 되찾았다.

지난 1963년 이 일대에 부지 36만9천800여㎡의 군용 저유소가 생기면서 기존에 드나들던 통행로가 군부대로 편입돼 인근 5가구 주민들은 지금까지 먼거리를 우회해 통행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군은 지금까지 주민들의 솔한 민원에도 불구하고 저유소 이전 후 부지활용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데다 통행을 허용할 경우 쓰레기 투기, 토양오염 우려가 높다며 통행불가 방침을 고수해 왔다.

주민들은 매년 폭우나 폭설때 도로 유실 등으로 고립되는 불편이 잦다며 그동안 포항시와 군부대 등에 통행허가를 요구하는 민원을 40여차례 냈으나 이마저도 해결이 안되자 최근 국민권익위에 또다시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는 20일 현장에서 주민들과 군부대, 포항시 관계자 등과 함께 조정회의를 열고 군이 실시중인 저유소내 환경 정화사업이 끝나는 내달 5일부터 주민들이 저유소내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와함께 포항시도 향후 저유소 부지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들을 위한 정식도로를 개설하고 주민들은 도로내에 쓰레기 무단투기와 무단경작, 허용인원 외 출입 등 통행조

건을 준수하기로 했다.

주민들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푸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다”며 “늦은 감이 있지만 불편을 덜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방부, 포항시의 적극적인 협조로 49년간 통행에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의 숙원을 풀어줘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관련보도자료

파이낸셜뉴스

권익위 ‘이동신문고’ 제도 지역민원 해결사로 부상

[기사입력2012-06-20 14:20기사수정 2012-06-20 14:20 김태경 기자(ktiik@fnnews.com)]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03년부터 지역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국민신문고’ 제도가 지역민원 해결사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20일 권익위는 군부대의 기름 저장시설(저유소) 때문에 거주지에서 외부로 나가려면 먼 거리를 우회해야 했던 포항시 북구 장성동 주민 5세대가 49년만에 권익위의 중재로 통행불편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권익위 조사 결과 장성동 다섯 가구 주민들은 지난 1963년에 거주지 인근에 36만 9824㎡(11만 1872평)넓이의 군 저유소가 생기면서 기존에 드나들던 통행로가 군부대로 편입돼 저유소를 관통하면서 더 이상 사용을 못하게 되자 인근 산에 있는 개인 땅에 임시도로를 만들어 토지주에게 사용료를 지불하면서 드나들었다.

하지만 이 도로가 폭우나 폭설이 오면 유실되거나 고립되는 불편이 잦아지자 지난 2000년부터 지금까지 약 40회나 군부대와 포항시 등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다 지난달 권익위에 민원을 접수시켰다.

권익위는 이날 오후 2시 저유소 내 환경관리공단 회의실에서 민원을 제기한 지역민들과 관계기관인 해병 제1사단, 육군본부와 국방시설본부, 포항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박재영 부위원장 주재로 조정을 실시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저유소 내에 군이 임시로 개설한 도로를 지역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성공했다.

이번 중재 내용에 따라 군은 저유소 폐쇄 후 진행하고 있는 환경 정화사업을 다음달 5일까지 완료하고, 환경 정화사업이 끝난 후부터는 지역주민도 저유소 내 임시 도로를 사용토록 하며 포항시는 향후 저유소 부지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들을 위한 정식 도로를 개설키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권익위는 또 경북 경주시 천북면에서 건설되고 있는 경주 CC(골프장)에 고립되며 갈등을 빚었던 경주이씨 문중땅을 매수하도록 합의하는 중재를 이끌어냈다.

관련보도자료

연합뉴스 한국일보 메디컬투데이

포항 軍저유소 인근 주민, 49년만에 ‘길 찾았다’

[2012-6-20 14:19 | shlim@yna.co.kr]

권익위, “주민들 저유소 내 軍도로 활용” 중재

(포항=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 포항시 북구 장성동 주민들이 군부대의 기름 저장시설(저유소)로 잃어버린 도로를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49년만에 되찾았다.

지난 1963년 이 일대에 부지 36만9천800여㎡의 군용 저유소가 생기면서 기존에 드나들던 통행로가 군부대로 편입돼 인근 5가구 주민들은 지금까지 먼거리를 우회해 통행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군은 지금까지 주민들의 솔한 민원에도 불구하고 저유소 이전 후 부지활용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데다 통행을 허용할 경우 쓰레기 투기, 토양오염 우려가 높다며 통행불가 방침을 고수해 왔다.

주민들은 매년 폭우나 폭설때 도로 유실 등으로 고립되는 불편이 잦다며 그동안 포항시와 군부대 등에 통행허가를 요구하는 민원을 40여차례 냈으나 이마저도 해결이 안되자 최근 국민권익위에 또다시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는 20일 현장에서 주민들과 군부대, 포항시 관계자 등과 함께 조정회의를 열고 군이 실지중인 저유소내 환경 정화사업이 끝나는 내달 5일부터 주민들이 저유소내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와함께 포항시도 향후 저유소 부지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들을 위한 정식도로를 개설하고 주민들은 도로내에 쓰레기 무단투기와 무단경작, 허용인원 외 출입 등 통행조건을 준수하기로 했다.

주민들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푸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다”며 “늦은 감이 있지만 불편을 덜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방부, 포항시의 적극적인 협조로 49년간 통행에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의 숙원을 풀어줘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관련보도자료

파이낸셜뉴스

권익위 ‘이동신문고’ 제도 지역민원 해결사로 부상

[기사입력2012-06-20 14:20기사수정 2012-06-20 14:20 김태경 기자(ktiik@fnnews.com)]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03년부터 지역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국민신문고’ 제도가 지역민원 해결사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20일 권익위는 군부대의 기름 저장시설(저유소) 때문에 거주지에서 외부로 나가려면 먼 거리를 우회해야 했던 포항시 북구 장성동 주민 5세대가 49년만에 권익위의 중재로 통행불편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권익위 조사 결과 장성동 다섯 가구 주민들은 지난 1963년에 거주지 인근에 36만 9824㎡(11만 1872평)넓이의 군 저유소가 생기면서 기존에 드나들던 통행로가 군부대로 편입돼 저유소를 관통하면서 더 이상 사용을 못하게 되자 인근 산에 있는 개인 땅에 임시도로를 만들어 토지주에게 사용료를 지불하면서 드나들었다.

하지만 이 도로가 폭우나 폭설이 오면 유실되거나 고립되는 불편이 잦아지자 지난 2000년부터 지금까지 약 40회나 군부대와 포항시 등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다 지난달 권익위에 민원을 접수시켰다.

권익위는 이날 오후 2시 저유소 내 환경관리공단 회의실에서 민원을 제기한 지역민들과 관계기관인 해병 제1사단, 육군본부와 국방시설본부, 포항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박재영 부위원장 주재로 조정을 실시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저유소 내에 군이 임시로 개설한 도로를 지역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성공했다.

이번 중재 내용에 따라 군은 저유소 폐쇄 후 진행하고 있는 환경 정화사업을 다음달 5일까지 완료하고, 환경 정화사업이 끝난 후부터는 지역주민도 저유소 내 임시 도로를 사용토록 하며 포항시는 향후 저유소 부지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들을 위한 정식 도로를 개설기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또 경북 경주시 천북면에서 건설되고 있는 경주 CC(골프장)에 고립되며 갈등을 빚었던 경주이씨 문중땅을 매수하도록 합의하는 중재를 이끌어냈다.

관련보도자료

대경일보

2012년 06월 21일
4면 (지역)

포항 軍저유소 주민 통행불편 49년만에 해결



국민권익위원회 박재영 부위원장(오른쪽)이 20일 오후 포항시 북구 장성동 소재 군부대 저유소에서 주민들의 통행불편 민원이 발생한 현장을 둘러보고 관계자로부터 현황을 듣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박재영 부위원장(가운데)이 20일 오후 포항시 북구 장성동 소재 한국환경공단에서 군부대 저유소 때문에 49년동안 통행불편을 겪던 주민들이 저유소 내 임시 개설도로를 군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중재해 민원을 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권익위 “인근 5가구 40차레 민원…저유소 내 軍 도로 활용” 중재

군부대의 기물 저장시설(저유소)로 인해 외부로 나가려면 먼 거리를 우회해야 했던 포항시 북구 장성동 주민 5세대가 49년만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만의 중재로 통행 불편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장성동 다섯 가구 주민들은 지난 1963년에 거주지 인근에 36만 9,824㎡(11만 1,872평)넓이의 군 저유소가 생기면서 기존에 지나왔던 통행로가 군부대로 편입돼 사용을 못하게 되었다.

이에 주민들은 인근 산에 있는 개인 땅에 임시도로를 만들어 토지주에게 사용료를 지불하면서 지나왔다.

하지만, 이 도로가 폭우나 폭설이 오면 유실되거나 고립되는 불편이 잦아지자 지난 2000년부터 최근까지 약 40회에 걸쳐 군부대와 포항시 등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협의를 통해서도 해결이

되지 않아 주민들은 지난 달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신청했다.

주민들은 군 저유소가 2006년에 폐쇄된 만큼 향후 새 도로를 개설하기 전까지는 일단 저유소 내에 있는 도로를 임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었다.

반면, 군은 저유소 이전 후 부지활용 계획을 새로 세울 때 이를 검토하겠다고 하며 현재 상태로는 쓰레기 무단투기 우려와 토양오염에 대한 조치 때문에 도로사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20일 오후 2시 저유소 내 환경관리공단 회의실에서 민원을 제기한 지역민들과 관계기관인 해병 제1사단, 육군본부와 국방시설본부, 포항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박재영 부위원장 주재로 조정을 실시했다.

조정결과,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저유소 내에 군이 임시로 개설한 도

로를 지역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

권익위가 중재한 내용은 △ 군은 저유소 폐쇄 후 진행하고 있는 환경 정화사업을 다음달 5일까지 완료하고 △ 환경 정화사업이 끝난 후부터는 지역주민도 저유소 내 임시 도로를 사용토록 하며 △ 포항시는 향후 저유소 부지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들을 위한 정식 도로를 개설기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주민들도 도로내에 쓰레기 무단투기나 무단경차, 통행 간 인선사고, 허용인원 외 출입 등의 문제를 확인하지기로 했다.

민원을 중재한 박재영 사무처장은 “49년간 통행에 불편을 겪어온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국방부, 포항시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히 결실을 보게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김달년기자
(26. 1*16. 2)cm

49년간 막혔던 길 뚫렸다

포항 장성동 옛 미군 저유소 부지 도로 주민들에 개방

국민권익위, 도로사용 조정 성공

49년간 막혔던 길이 뚫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포항시 북구 장성동 구 미군 저유소 내 도로를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중재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저유소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 5가구는 지난 1963년 거주지 인근에 36만9824㎡ 규모의 군 저유소가 건립된 이후로 기존에 사용하던 도로가 저유소에 편입되면서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주민들은 1990년 공사비 5000여만원을 들여 인근 야산에 임시도로를 만들어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임시도로는 개인소유의 토지를 관통하는 터라 토지 소유주에게 주민들이 직접 매년 50만원의 사

용료를 지불해야 했으며, 폭우나 폭설때는 유실되거나 고립되는 경우가 많아 유지·보수비 등으로 만만치 않은 비용이 소요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2006년 미군 저유소가 폐쇄되자 주민들은 새도로가 개설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저유소 부지 내 도로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군과 포항시에 40여차례에 민원을 신청했으나 양측의 의견차로 인해 해결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5월 10일 국민권익위에 저유소 부지 내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고충민원 신청을 냈다.

국민권익위는 한달간 실사를 거쳐 20일 주민대표, 군부대, 포항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을 실시, 참석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주민

들이 저유소 내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중재안에 따르면 군은 저유소 폐쇄 후 진행하고 있는 환경정화사업을 7월 5일까지 완료하고, 주민들이 저유소 내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1.2km의 편도 1차선 우회도로를 사용하던 주민들은 저유소 내 약 900m의 왕복 1차선 도로를 사용하게 되면서 마을에서 저유소 입구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약 20분 단축하는 효과를 얻게 됐다.

포항시는 저유소 향후 부지 활용 계획 수립시 정식도로 개설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주민대표 이동백씨는 “49년의 주민 숙원이 해결돼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박동혁기자 phil@hidomin.com
(15.2*14.0)cm

[사진] 국민권익위 49년 된 주민 고충 해결했다

[2012.06.20 17:01:41 최종수정 2012.06.20 17:01:41 최창호 기자 (choi119@news1.kr)]



(포항=뉴스1) 국민권익위원회가 49년 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던 이 모(포항 북구 장성동)씨 등의 고충을 해결했다.

20일 박재영 권익위부위원장이 미군 자유소 내 군사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정(안)을 국방부, 군부대, 포항시와 주민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하고 있다.

이날 권익위는 마을 주 진입로가 군사시설로 편입되면서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주민들의 고충을 성공적으로 조정했다.

포 사격장 소음불편, 25년 만에 해결

민원번호 : 2BA-1203-196011 (국방보훈민원과, 김문영)

〈민원개요〉

강원 홍천군 남면 화전리 일대에 전차포사격장이 들어선 후, 주민 생활에 불편이 유발되고 있어 사격장 내 하천 사방댐 설치와 494번 지방도 확·포장 등을 요구하는 주민 민원에 대해 하천 수질개선을 위한 사방댐을 사격장 내 하천 상·하류 각각 설치, 사격장 내 전차 이동로와 대기장소 노면포장, 방음벽, 세류장을 추가 설치, 하천의 수질을 검사하고 포탄 잔해물 수거, 피탄지 등의 오염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으며, 또한 향후 군(軍)은 사격장의 안보견학지 조성을 강원도, 홍천군과 협의해 추진하고, 강원도는 안보견학지 조성 시 494호선의 도로 확·포장계획을 검토키로 하여 주민 생활 불편 해소에 기여

① 당사자

- 신 청 인 : ○○○외 482명
- 피신청인 : 육군 제○○기계화보병사단장(피신청인 1), 육군 제○○야전군사령관(피신청인 2)
- 관계기관 : 강원도, 강원도 홍천군

② 민원내용

- 민원지역에 전차포사격장이 들어선 후, 하천에 흙탕물이 유입되고, 탱크 등의 이동으로 소음 및 분진,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어 주민 생활이 불편
※ 전차포사격장 및 군(軍) 대형차량의 이동으로 인해주민생활이 불편하고, 교통사고위험 등 상존
- 사격장 내 하천 사방댐 설치와 494번 지방도 확·포장 등 요구

③ 피신청인 등 의견

가. 육군 제○○기계화보병사단장(피신청인 1)

- 전차포사격장 내 사방댐 설치와 494번 지방도 확·포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조치해야 할 사안임. 하지만 훈련 중 발생하는 분진 및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치하겠다.

나. 육군 제○○야전군사령관(피신청인 2)

- 전차포사격장 내 기동로 및 집결지 포장, 방음벽, 세륜장 추가설치 등에 대한 예산을 상급부대에 건의하겠다.

다. 강원도지사(관계기관 1)

- 494번 지방도의 확·포장은 불가하다. 하지만, 사방댐은 설치 후 군(軍)에서 관리(준설 등)한다면 설치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라. 홍천군수(관계기관 2)

- 강원도지사가 사방댐 설치를 지원하고, 사방댐 설치 후 군(軍)에서 사방댐을 관리(준설 등)한다면 설치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④ 주요 쟁점사항

- 군(軍) 작전 및 군사훈련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주민불편 해소방안 마련
- 훈련장 내 하천 사방댐 설치 및 494지방도로 확·포장

⑤ 갈등 분석

가. 민원발생배경및 주요사실관계

- 강원 홍천군 남면 화전리 일대에 전차포사격장이 들어선 후, 하천에 흙탕물이 유입되고, 탱크 등의 이동으로 소음 및 분진,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어 주민 생활이 불편 - 사격장 내 하천 사방댐 설치와 494번 지방도 확·포장 등 요구
- 피신청인 등은 사방댐 설치와 지방도의 확·포장은 지자체에서 조치 되어야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견지

※사격장현황

- 위치 : 강원 홍천군 남면 화전리 산 1234 일원
- 설치연도 / 면적 : 1971년 / 5,631,000㎡(1,706,303평)
- 사용부대 / 연간사용일수 : 40개 부대 / 200일
- 사격화기 : 전자포, 박격포, 기관총, 대전차화기 등

- 2012. 2. 22. 이○○등 마을주민 대표가 위원회의 홍천지역 이동신문고 상담장을 방문하여 사방댐 설치와 도로 확·포장을 요구
- 2012. 3. 27. 이○○등 마을주민 482명이 위원회에 사방댐 설치와 도로확·포장을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제기
 - 위원회에서는 현장조사, 당사자 의견청취 및 이견조율 등을 통해 해결방안 모색

나. 조정 목표

- 군(軍) 작전 및 군사훈련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주민불편 해소방안 마련
- 훈련장 내 하천 사방댐 설치 및 494지방도로 확·포장 관련 조정해결

6 갈등해결과정

- '12. 2. 22. : 이○○○등 마을주민 대표 이동신문고 방문 상담
- '12. 3. 27. : 이○○○등 마을주민 482명 집단 민원신청
- '12. 4. 4. ~ : 고충민원관련 자료 요청/접수 및 해결방안 협의(계속)
 - ※육군 제○○기계화보병사단
- '12. 5. 8. : 실지 방문조사(1차) 및 관계기관 협의(1차)
 - ※육군 제○○기계화보병사단, 강원도, 홍천군 등
- '12. 2. 28. ~ : 고충민원관련 자료 요청/접수 및 해결방안 협의(계속)
- '12. 6. 28. : 실지방문 조사(2차) 및 위원회 중재(안) 관계기관 협의(2차)
- '12. 7. 2. : 실지방문 조사(3차) 및 위원회 중재(안) 관계기관 협의(3차)
 - ※강원도청, 홍천군청, 육군 제○○기계화보병사단
- '12. 7. 9. : 실지방문 조사(2차) 및 위원회 중재(안) 관계기관 협의(4차)
 - ※육군 제○○야전군사령부, 육군 제○○기계화보병사단, 신청인 대표

7 조정 (합의) 결과

가. 조정 · 합의 최종결과

- 강원도와 홍천군은 하천 수질개선을 위해 2013년까지 토사가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방댐을 사격장 내 하천 상·하류 각각 설치하고, 군(軍)은 소음과 분진을 줄일 수 있도록 사격장 내 전차 이동로와 대기장소 노면포장, 방음벽, 세륜장을 추가 설치하며, 하천의 수질을 검사하고 포탄 잔해물 수거, 피탄지 등의 오염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으며,
- 향후 군(軍)은 사격장의 안보견학지조성을 강원도, 홍천군과 협의해 추진하고, 강원도는 안보견학지 조성 시 494호선의 도로 확·포장 계획을 검토하도록 조정

나. 위원회 조정 · 합의문

가. 육군 제○○기계화보병사단장 및 육군 제○○야전군사령관

- 1) 전차포사격장 내 기동로 및 집결지 포장, 방음벽, 세륜장 추가 설치계획을 15년 ~ '19년 국방중기계획에 반영
- 2) 전차포사격장 내 설치된 사방댐 관리(준설 등)
- 3) 연 1회 하천 수질검사, 반기1회 포탄 잔해물 수거 및 자율점검표에 의해 피탄지 표적오염 여부 점검
- 4) 전차포사격장의 안보견학지 조성과 관련하여 강원도, 홍천군과 협의

나. 강원도지사 및 홍천군수

- 1) 2013년 전차포사격장 내 사방댐 설치를 위한 타당성 평가 등 행정절차 추진
- 2) 강원도지사는 군(軍)의 안보견학지 조성관련하여 시행자가 494호선 전차포사격장 ~ 양덕원 구간의 도로 확·포장을 위한 협의요청 시 검토
- 3) 전차포사격장의 안보견학지 조성관련하여 육군 제○○기계화보병사단장 및 육군제○○야전군사령관과 협의

다. 신청인

전차포사격장 내 하천 오염, 494번지방도 확·포장 및 도로의 사용 등과 관련하여 더이상의 이익을 제기하지 않는다.

⑧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가. 신청인-피신청인 수용 및 이행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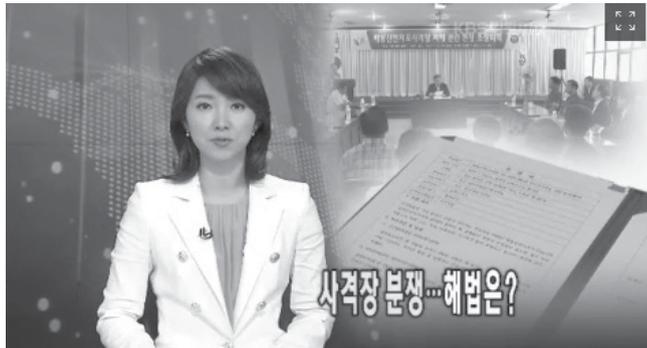
- 전차포 사격장 시설공사를 위한 '15~' 19 국방중기계획 보완
- 2013년 사방댐 설치예정지 타당성 평가 추진

나. 시사점

- 위원회의 조정으로 지역주민들이 불편이 감소되고, 군사훈련 여건이 보장되며, 지역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 된 것에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판단됨

[뉴스9] 잇단 군부대 사격장 분쟁..해법은?

[2012-07-25 (21:20) 김영준 기자]



〈앵커멘트〉

접경지역이 많은 강원도의 특성상 군부대 사격장을 둘러싼 민원은 안보를 명분으로 외면받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홍천의 한 마을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25년 끌어온 민원을 해결하게 됐습니다.

김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농번기, 난데없이 포탄 파편이 농촌마을 곳곳에 떨어지면서 주민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인터뷰〉 주민

“이렇게 불안해서 농사를 질 수 없는 것이죠. 주민 바람은 최소한 이전을 해줘야..”

철원 갈말읍의 한 마을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40년 동안 군 사격장 소음을 견뎌야 했다며 생활의 큰 불편을 들어 사격장 이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군 사격장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군부대와와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과 군부대 간 갈등을 해결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홍천 매봉산 전차포 사격장을 둘러싼 25년간의 분쟁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중재로 4개월 만에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사격장 안에 사방댐 2개를 설치하고, 방음·세륜시설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포 사격장을 안보견학지로 조성하고 지방도 494호선도 4차선으로 확포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녹취〉 주민 대표

〈앞으로 좋은 결실을 맺으리라 믿습니다. 이 자리가 좋은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 사격장으로 인해 주민 피해를 호소하는 곳은 홍천과 철원, 양구 등 확인된 곳만 6곳. 이번 합의가 군부대 시설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GBN 강원방송

20년 사격장 민원 해결

[2012-07-25 17:29:04]

[앵커]

도내 최대 규모 포사격장인 홍천 매봉사격장으로 인한 민원이 20여년째 이어졌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의 실마리가 풀렸습니다.
(장진철 기자)

[기자]

지난 1971년 홍천군 남면 화전리 일원에 군의 공용화기사격장으로 사용되다가 지난 1987년 전차포사격장으로 변경된 홍천 매봉산전차포사격장.

도내 군 사격장 중 최대 규모인 561만여제곱미터의 부지에 연간 40주의 전차 사격 훈련이 진행되는 곳입니다.

일 년 내내 훈련이 이뤄지다보니 사격장이 생긴 이후 분진과 진동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인터뷰 이호열 회장 / 홍천군 남면 번영회]

축산농가들이 대부분인 훈련장 인근 마을의 경우 소음과 진동에 놀라 소가 유산하는 피해가 빈번히 발생 했습니다.

[이음말 장진철 기자]

그동안 매봉 훈련장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와 불편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의 실마리를 풀었습니다.

매봉 훈련장 인근 주민들은 육군 등 관계기관에 대책마련을 요구했지만 해결되지 않자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실무조정과 협의, 현장조사를 통해 주민요구를 수용하는 조정안을 도출했습니다.

조정안에는 오는 2013년까지 사방댐을 설치하고, 사격장 전차 이동로를 포장해 분진을 최대한 줄이고 방음벽을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도로폭이 좁아 전차 이동시 주민들을 위협했던 지방도 494호선의 확포장 계획을 강원

도가 적극 검토하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인터뷰 박재영 부위원장 / 국민권익위원회]

[영상취재 정의정]

권익위는 사격장에 안보건학지를 조성하고 하천 수질검사와 포탄 잔해물 수거와 피탄지 오염 여부를 점검할 것도 군에 주문했습니다.

20여년간 고통 받았던 주민들의 불편이 관계기관들의 양보와 협조로 해결 실마리가 풀린 가운데 앞으로 약속 이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관련보도자료

江原日報

2012년 07월 26일 19면 (지역)

매봉산 포사격장 민원 25년 만에 해결

국민권익위 홍천서 소음·환경오염 해결방안 조정
사방댐 비롯 전자이동로 포장 방음벽 설치 등 약속

[홍천]홍천군 남면 화전리에 설치된 육군 매봉산 전자포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피해, 하천오염 등의 생활불편이 25년 만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김영란)의 중재로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 이동신문고 현장에서 사례를 접수한 이후 수차례의 실무조정 협의와 현장조사 및 강원도, 홍천군, 1군사령부, 11사단 등 관계기관 간 입장을 조율해 25일 남면사무소에서 조정안을 밝혔다.

조정안에 따르면 강원도와 홍천군은 하천 수질개선을 위해 2013년까지 토사가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방댐을 사격장 내 하천

상·하류에 각각 설치하게 된다. 군(團)은 소음과 분진을 줄일 수 있도록 사격장 내 전자 이동로와 대기장소 포장, 방음벽, 세륜장을 추가 설치하고 하천 수질검사 및 포탄 잔해물 수거, 피탄지 등의 오염 여부를 점검한다. 또 강원도, 홍천군과 협의해 사격장의 안보건학지 조성을 추진하고 강원도는 안보건학지 조성 시 494호선의 도로 확포장 계획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같은 조정안에 이호열 남면면영회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이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조정안대로 잘 이뤄지도록 협조하며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조정회의가 25일 오후 홍천군 남면사무소에서 지역 주민과 홍천군 1군사령부 11사단 등 관계기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박재영 부위원장이 주재로 열렸다. 홍천=이무현기자

했다. 박재영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지역 주민을 비롯한 육군, 강원도, 홍천군이 만들어 낸 소통의 결과”라며 “25년간 전자포사격장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지역 주민들의 숙원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남면 주민 482명은 군(團)이 1971년에 공용화기 사격장을 설치해 사용하다가 1987년 전자포사격장으로 변경한 후 훈련 중 발생하는 기준치 초과 소음과 분진 및 인근 하천의 오염 등으로 인해 10여년 전부터 끊임없이 문제 해결을 호소해 왔다.

이무현기자 trustme@kwnews.co.kr (20.7-13.3)cm

권익위, 25년 '홍천 포사격장' 민원 해소 중재

[2012-07-25 16:03 최종수정 2012-07-25 16:12 이상학 기자 (hak@yna.co.kr)]



(홍천=연합뉴스) 강원도 홍천군 남면 화전리에 있는 육군 매봉산 전차포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하천오염 등 생활불편이 25년만에 해소될 전망이다.

25일 국민권익위와 홍천군에 따르면 권익위는 이날 오후 2시 남면사무소에서 주민을 비롯해 군부대, 강원도, 홍천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박재영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포사격장으로 인한 피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중재했다.

조정안에 따라 강원도와 홍천군은 하천 수질개선을 위해 2013년까지 토사가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방댐을 사격장 내 하천 상·하류 각각 설치하고 군(軍)은 소음과 분진을 줄일 수 있도록 전차 이동로와 방음벽 설치 등을 협의토록 했다.

또 하천의 수질을 검사하고 포탄 잔해물 수거, 피탄지 등의 오염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으며 군(軍)은 강원도, 홍천군과 협의해 사격장의 안보건학지 조성을 추진하고 강원도는 안보건학지 조성시 494호선의 도로 확·포장계획을 검토하도록 했다.

사격장 인근 남면 주민 482명은 군(軍)이 지난 1971년에 공용화기사격장을 설치해 사용하다가 1987년 전차포사격장으로 변경한 후 전차·장갑차 등이 사격훈련을 하면서 발생한 기준치 초과 소음과 분진으로 인해 생활 불편 피해를 호소해 왔다고 권익위측은 설명했다.

또 사격장 내에 위치한 폭 5m가량의 남한강 지류의 하천은 서울과 경기도민들이 상수도로 사용하고, 다슬기가 서식하는 1급수였으나, 포사격장에 포함된 후 흙탕물이 하천에 유입되는 등 주민들이 피해를 주장해 왔다고 권익위측은 덧붙였다.

이에 주민들은 육군 등 관계기관에 십여년전부터 수차례 대책마련을 요구했으나, 해결되지 않자 지난 2월 홍천군청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를 찾아 민원을 제기했다.



회의를 주재한 국민권익위원회 박재영 부위원장은 “25년간 전차포사격장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지역주민들의 숙원이 해소되고, 이를 위해 관계기관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가 되었다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군 차량 이용 골목 도로, 50년 만에 직선화

민원번호 : 2BA-1206-254487 (국방보훈민원과, 김문영)

<민원개요>

강원 양양군 강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장갑차 등 대형장비가 위 도로를 운행하고 있고, 도로 노선의 굴곡이 심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불편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집단 고충민원을 제기한 사항에 대해 강원도 양양군은 강현102호 농어촌도로의 직선화를 위해 郡유지 사용을 허가하고, 2013년 연간사업계획에 강현102호 농어촌도로 직선화 사업을 반영하며, 군도1호선 직선화 노선은 군(軍)이 탄약고를 이전한 후 협의하고, 직선화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교통안전시설물 보강 및 위험도로로 관리하며, 군(軍)은 도로 직선화 사업에 동의하고, 경찰은 도로 직선화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안전을 점검하도록 조정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

① 당사자

- 신청인 : ○○○외 315명
- 피신청인 : 양양군수(피신청인1), 육군 제○○기갑여단장(피신청인2), 국방시설본부○○시설단장(피신청인3), 육군 제○○항공단장(피신청인4)
- 관계기관 : 속초경찰서

② 민원내용

- 신청인들은 강원 양양군 강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장갑차 등 대형 군(軍) 장비가 굴곡이 심한 도로를 사용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되어 주민들이 도로를 사용하기 불편하니 조치해 달라.

③ 피신청인 등 의견

가. 양양군수(피신청인 1)

- 강현102호 농어촌도로 직선화사업은 2013년 사업계획에 편성하고, 군도1호선 직선화 사업 노선은 향후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

나. 육군 제○○기갑여단장(피신청인 2)

- 이 민원 도로는 속초비행장 비행안전 제1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도로 직선화를 위해 부대 울타리를 축소할 경우, 비행안전에 문제가 발생되며, 이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위반된다.

다. 국방시설본부 ○○시설단장(피신청인 3)

- 관할부대의 작전성 검토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

라. 육군 제○○항공단장(피신청인 4)

- 대대 이글루탄약고 이전사업이 국방중기계획에 편성되면 양양군도1호선 직선화 사업 노선을 협의하겠다.

마. 속초경찰서장(관계기관)

- 강현102호 농어촌도로 및 군도1호선이 직선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도로교통 안전 점검을 하겠다.

④ 주요 쟁점사항

- 강현102호 농어촌도로 및 군도1호선의 직선화가 타당하다는 마을주민의 입장과 이 민원 도로는 속초비행장 비행안전 제1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도로 직선화를 위해 부대 울타리를 축소할 경우, 비행안전에 문제가 발생되며, 이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위반된다는 군(軍) 부대의 이견

⑤ 갈등 분석

가. 민원발생배경및 주요사실관계

- 양양군 강현면 주민 315명은 굴곡(90)이 심한 강현102호 농어촌도로와 군도1호선을 장갑차 등 대형 군(軍) 장비가 운행하고 있고, 높은 부대 담장 때문에 운전자 시야가 제한되며, 보도가 없어 교통사고 발생위험 때문에 도로를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 교통사고 현황('03. 9. 18. '12. 6. 30.) : 총 15건

나. 조정 목표

- 군(軍) 작전 및 부대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주민불편 해소방안 마련
- 강현102호 농어촌도로 및 군도1호선 직선화로 집단민원 조정해결

⑥ 갈등해결과정

- '12. 6. 28. : 김○○ 등 강현면주민 315명 집단 민원신청
- '12. 6. 30. ~ : 고충민원관련 자료 요청/접수 및 해결방안 협의(계속)
 - ※국방부, 국방시설본부○○시설단, 육군 제○○야전군사령부, 육군 제○○기갑여단, 육군 제○○항공단, 양양군, 속초경찰서, 강원도 등
- '12. 7. 17. : 실지 방문조사(1차) 및 관계기관 협의(1차)
 -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도로직선화하겠다.(양양군)
- '12. 8. 2. : 실지방문 조사(2차) 및 관계기관 협의(2차)
 - ○○항공대대 이글루형 탄약고는 이전되어야 한다.(국방부)
- '12. 8. 7. ~ 8. : 실지방문 조사(3차) 및 관계기관 협의(3차)
 - ○○항공대대 이글루형 탄약고 이전 후 군도1호선 직선화 노선협의(○○항공단)
 - 속초비행장 부대확장계획이 있어 도로직선화 곤란(○○기갑여단)
- 육군본부 등 상급부대가 승인하면, 긍정적 검토 가능
 - ○○기갑여단이 동의하면, 국유지 사용 도로직선화 가능(국방시설본부○○시설단)
 - 강현102호 농어촌도로와 군도1호선은 속초비행장 부대확장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군사령부 항공과)
- '12. 8. 23. ~ 24. : 실지방문 조사(4차) 및 관계기관 협의(4차)
 - 위원회 중재(안) 수용 및 조정회의 개최 동의(모든 관계기관)

7 조정 (합의) 결과

가. 조정 · 합의 최종결과

- 양양군은 강현102호 농어촌도로의 직선화를 위해 군(郡)유지 사용을 허가 하고, 2013년 연간사업계획에 강현102호 농어촌도로 직선화 사업을 반영하며, 군도1호선 직선화 노선은 군(軍)이 탄약고를 이전한 후 협의하고, 직선화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교통 안전시설물 보강 및 위험도로로 관리하며, 군(軍)은 도로 직선화 사업에 동의하고, 경찰은 도로 직선화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안전을 점검하도록 조정

나. 위원회 조정 · 합의문

가. 양양군수

강현102호 농어촌도로 직선화사업은 2013년 사업계획에 편성하고, 군도1호선 직선화 노선은 향후 관계기관과 협의

나. 육군 제○○기갑여단장, 국방시설본부○○시설단장

양양군 강현102호 농어촌도로 및 군도1호선 직선화 사업 동의

다. 육군 제○○항공단장

○○항공대대 이글루형 탄약고 이전사업예산 국방중기계획 편성 건의하고 사업 예산 편성 후, 관계기관과 군도1호선 직선화 노선 협의

라. 속초경찰서장

강현 102농어촌도로 및 군도1호선의 직선화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도로 교통 안전점검 실시하여 양양군수에게 통보

마. 신청인

군(軍) 차량 및 장비의 도로사용과 도로직선화와 관련하여 더 이상의 이익을 제기 하지 않는다.

8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가. 신청인-피신청인 수용 및 이행여부

- 농어촌도로 직선화 사업 2013년 사업계획에 편성
- 탄약고 이전사업예산 국방중기계획 편성 건의

나. 시사점

- 위원회의 조정으로 지역주민들이 불편이 감소되고, 군(軍) 및 일반차량 운행 여건이 보장되며, 지역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 된 것에 그 의미가 매우 큼

관련보도자료

news Nocut 영동노컷 CBS

권익위, 양양 도로직선화 민원 해결

[2012-09-13 오후 5:43:19 / 2012-09-13 오후 6:30:24 영동CBS 이장춘 기자
(jcleee@cbs.co.kr)]

양양군 정암리 지역 주민들의 50년 숙원인 도로 직선화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는 13일 강현면사무소에서 박재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정암리 일대를 통과하는 군도 1호선과 강현 102호선의 굴곡 부분 직선화를 중재했다.

이 자리에서 양양군은 내년도 도로정비사업계획에 강현 102호선 직선화 사업을 반영하고 군도 1호선 직선화 사업은 탄약고 등 군사시설이 이전되는 대로 착수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로직선화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기로 했다.

관련보도자료



권익위, 양양 도로선형 집단민원 중재

[2012-09-13 오후 5:30:00 홍성욱 기자 (hsw0504@igtb.co.kr)]

영동지역을 돌며 주민들의 고충 민원을 상담중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 양양지역을 방문해 주민들의 집단 민원을 중재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굴곡이 심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 양양군 강현면의 군도 1호선과 강현 102호선 도로에 대해 군부대 등 관계 기관의 입장을 조율해 내년부터 직선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도로는 굴곡이 90도로 심하고, 대형 군 장비가 수시로 운행하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민원이 제기돼 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오전 강현면을 방문, 민원이 제기된 강현 102호선과 군도 1호선 도로에 대해 현향 파악과 함께 집단민원 현장조정 회의를 개최했다. 양양/최 훈

양양 굽은 도로 50년만에 펴진다

국민권익위, 도로선형 변경 민원 조정회의 강현 102호·군도 1호선 직선화 사업 조율

양양군 강현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굽곡이 심한 도로가 직선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오전 강현면사무소에서 양양군, 육군 제102기갑여단,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육군 제13항공단, 속초경찰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박재영 부위원장 주재로 군(軍) 차량피해 관련 도로선형 변경요구 집단민원 현장조정 회의를 갖고 강현 102호선과 군도 1호선 직선화 방안을 논의했다.

군부대를 따라 구불구불하게 개설돼 있는 이 구간 도로의 경우 굽곡이 심하고 높은 부대담장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데다 대형

군장비가 통행이 빈번하게 이뤄지면서 최근 10년간 1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 구간의 경우 선형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면 서도 군 작전수행 시 비행안전 확보와 예산부담 주체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난항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강현면 지역주민 315명은 지난 6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접수했으며 권익위는 수차례의 실무조정 협의와 현장조사를 통해 관계기관의 입장을 조율하고 이날 현장조정을 통해 50여년만에 해묵은 민원을 해소했다.

이날 세부 중재안에 따라 양양군은 군유지 사용을 허가하고 내

년 도로정비사업계획에 현 102호선 직선화 사업을 반영해 추진하는 한편 군도 1호선 직선화 사업은 탄약고 등 군사시설이 이전되면 사업을 착공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군(軍)은 도로 직선화 사업 추진을 위한 군사협약에 동의하고 탄약고 시설 이전비용을 국방예산에 편성해 사업에 착공한 후 양양군과 세부 노선을 협의토록 했으며 속초경찰서는 직선화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했다.

회의를 주재한 국민권익위원회 박재영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지역주민을 비롯한 양양군, 육군, 속초경찰서가 만들어낸 소통의 결과"라며 "관계기관의 협력으로 50년간 도로사용의 불안과 어려움을 겪어온 지역주민들의 숙원이 해소됐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양양/최 훈 choihoon@kado.net

양양 정암리 도로 직선화 민원 권익위 중재로 해결

[2012-09-13 14:42, 최종수정 2012-09-13 15:05 이종건 기자 (momo@yna.co.kr)]



(양양=연합뉴스) 강원 양양군 정암리 지역주민들의 50년 숙원인 군도 1호선, 강현 102호선 도로 직선화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양양군 강현면사무소에서 박재영 부위원장 주재로 군(軍) 관계자와 정상철 양양군수, 조지호 속초경찰서장,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정암리 일대를 통과하는 군도 1호선과 강현 102호선의 굴곡 부분 직선화를 중재했다.

이 자리에서 양양군은 내년도 도로정비사업계획에 강현 102호선 직선화 사업을 반영하고 군도 1호선 직선화 사업은 탄약고 등 군사시설이 이전되는 대로 착수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로직선화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군(軍)은 도로직선화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탄약고 이전에 필요한 비용은 국방예산에 편성하도록 했다.

이밖에 속초경찰서는 직선화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앞서 강현면 정암리 등 주변지역 주민 315명은 그동안 요구해온 군도 1호선과 강현 102호선 도로 직선화 문제가 군(軍) 작전수행 시 안전문제와 군사시설 이전에 따른 예산문제 등으로 해결되지 않자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마을을 통과하는 군도 1호선과 강현 102호선은 굴곡이 90도로 심한데다 군 장비가 수시로 운행하고 군부대의 높은 담이 운전자 시야를 방해해 지난 10년간 1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한 곳이라며 그동안 직선화를 요구해 왔다.

관련보도자료



국민권익위원회 민원현장 확인

[2012-09-13 13:48 이종건 기자 (momo@yna.co.kr)]



(양양=연합뉴스) 13일 오전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민원현장을 방문한 박재영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군(軍)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강현면 정암리를 비롯한 주변지역 주민 315여명은 굴곡이 심한 군도 1호선을 군 장비가 운행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며 도로 직선화를 요구하는 민원을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강현면사무소에서 군부대 관계자와 정상철 양양군수, 조지호 속초경찰서장,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도로 선형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2012.9.13



권익위 강원도 양양군 현장조정

[2012-09-13 14:05 (polpori@yna.co.kr)]



(서울=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 박재영 부위원장(왼쪽 세 번째)이 13일 오전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사무소에서 민원인과 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회의를 열고 도로 굴곡 개선 합의안을 중재한 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2.9.13

옥천 양수리 군 사격장 소음피해 대책 마련

민원번호 : 2CA-1207-220924 (국방보훈민원과, 오형조)

〈민원개요〉

군부대와 경찰서에서 수시로 주간 및 야간사격은 물론, 박격포 사격까지 하고 있어 소음 등 생활에 불편이 있으니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지역주민 1,865명으로부터 집단 민원이 제기 되어 피신청인 및 관계기관 대표자로 구성하는 민관군경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 소음 및 안전대책 마련, 이전 대체지 검토 등을 하도록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조정 중재안을 마련하여 민원 해소

① 당사자

- 신청인 : ○○○ 외 1,864명
- 피신청인 : ○○군수(피신청인 1), 육군 제○○보병사단장(피신청인 2),
○○경찰서장(피신청인 3)

② 민원내용

- ○○군 ○○읍 ○○리에 위치한 ○○리 사격장은 ○○, ○○, ○○지역 군부대와 경찰서에서 수시로 주간 및 야간사격을 하고 있으며, 박격포(축사탄) 사격 실시
- ○○리 사격장 소음으로 생활에 불편이 있으니 대책 마련 요구
※사격장 인근 축산업자는 사격소음으로 인한 송아지 유산을 이유로 2010년 육군 제○○보병사단 지구배상심의회에서 9,263,920원을 지급받음

③ 피신청인 등 의견

가. 피신청인1(○○군수)

- 소음경감 대책 추진 등 군부대 자구책을 통한 대주민 갈등해소 노력이 필요하고, 향후 갈등 지속 시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민·관·군·경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피신청인2(육군 제○○보병사단장)

- 사격장의 이전 및 폐쇄는 제한되나 민원해결을 위해 사격 전 사격실시 여부 통보, 야간사격 및 축사탄 사격 통제, 분기별 행정관서와 주민대표 반상회를 통해 민원발생 예방활동 추진, 소음기 장착 추진, 방음벽 설치 중기계획에 반영 등을 추진하겠다.

다. 피신청인3(○○경찰서장)

- 민·관·군·경 갈등조정협의회가 구성된다면 적극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데 동참할 예정이며, 문제해결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인 협조를 하겠다.

④ 주요 쟁점사항

- ○○리 사격장을 둘러싼 사격훈련 시간 조정, 소음감소 방안, 등산로 개방, 주민 안전대책, 사격장 이전을 위한 대체부지 선정 등 이 민원의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참여하는 '○○리사격장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가능 여부

⑤ 갈등 분석

가. 민원발생배경 및 주요사실관계

- 신청인들은 ○○군 ○○리 사격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로서 소음피해 및 안전을 위해 2012. 7. 23. 이동신문고를 통해 사격장 이전 요구 민원을 제기(○○○ 외 3) - 2012. 10. 18. ○○군 주민 1,865명이 사격장 소음피해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고충민원 추가 제출

※○○리 사격장 현황

구분	내용
행정구역	○○군 ○○읍 ○○리
설치연도/면적	1997년/12,595㎡
사격장 명칭	○○ 자동화 사격장
관리부대	○○사단 ○○연대 기동중대
훈련부대	○○사단 ○○대대, ○○연대 예하 대대/직할대, ○○경찰서
훈련화기	개인화기(M16, K-2, M60), 곡사화기(60M, 81M 박격포)
설치시설	사격통제탑, 사격술 예비훈련장, 야외화장실, 교보재 창고

⇒ 사격장 주변 공장 4개소, 민가 10 15가구 거주, 축사 1개소, 예비군훈련장 1개소 위치
 • 위원회에서는 현장조사, 당사자 의견청취 및 이견조율 등을 통해 해결방안 모색

나. 조정 목표

- 주민과 행정기관 및 군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평화적이고 자율적인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조정·중재
 -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합의를 통한 자율적인 갈등해결의 모델 제시

6 갈등해결과정

- '12. 7. 23. : ○○○ 등 마을주민 4인 이동신문고에 고충민원 신청
- '12. 8. 14. 육군 제○○보병사단 자료제출
 - 방음벽 설치, 소음기 장착, 사격시간 조정, 야간/박격포 사격 통제, 사격전 주민들에게 사격계획 통보 등 추진 계획
- '12. 8. 24. ○○경찰서 자료제출
 - 직원 및 전의경 사격훈련을 위해 권총 및 소총사격을 실시
 - ○○리 사격장 갈등관련 민·관·군·경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희망
- '12. 9. 4. ○○군 자료제출
 - 군부대에서 조치할 사항으로 소음대책 선행 후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등 논의

- '12. 9. 6. : 실지방문조사 및 소음·안전대책, 민·관·군·경 갈등조정협의회 구성방안 관련 위원회 중재(안) 협의(1차)
※육군 제○○보병사단, ○○리 사격장
- '12. 9. 6. : 위원회 중재(안) 협의 (2차)
※○○경찰서
- '12. 9. 7. : 위원회 중재(안) 협의 (3차)
※○○군청
- '12. 10. 18. : ○○○ 등 ○○군 주민 1,865명 고충민원 신청
- '12. 10. 30. : 위원회 중재(안) 협의 (4차)
※ ○○군청, ○○경찰서

7 조정 (합의) 결과

가. 조정·합의 최종결과

○○리 사격장과 관련한 사격훈련 시간 조정, 소음감소 방안 마련, 등산로 개방 여부, 주민 안전대책 마련, 사격장 이전을 위한 대체부지 선정 등 이 민원의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참여하는 '○○리사격장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나. 위원회 조정·합의문

- 신청인, 피신청인1, 2, 3은 ○○리 사격장을 둘러싼 사격훈련 시간 조정, 소음감소 방안, 등산로 개방, 주민 안전대책, 사격장 이전을 위한 대체부지 선정 등 이 민원의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참여하는 '○○리사격장 갈등조정협의회'(이하 '갈등조정협의회' 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붙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원은 ○○리 사격장과 관련한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합의서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이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당사자들은 위 합의내용을 상호 존중하여 이행하며, 갈등조정협의회는 합의사항이 최종적으로 이행될 때까지 이행상황을 매분기 말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한다.

⑧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가. 신청인-피신청인 수용 및 이행여부

- 2012. 12. 갈등조정협의회가 구성되어 ○○리 사격장과 관련한 갈등 전반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

나. 시사점

-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리 사격장 문제를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합의를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마련

옥천 軍사격장 소음대책...민관군 머리 맞댄다

[2012-11-08 15:01 박병기 기자 (bgipark@yna.co.kr)]

권익위 중재로 13일 '갈등조정協' 구성, 해결책 모색

(옥천=연합뉴스) 충북 옥천군 옥천읍 양수리 군부대의 사격장 소음을 해결하기 위한 민·관·군 협의체가 구성된다. 옥천군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는 13일 군부대·경찰 관계자와 주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사격장 소음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한다고 9일 밝혔다.

육군 37사단이 운영하는 이 사격장은 1987년 예비군의 영점사격 훈련을 위해 설치됐다. 1997년 자동화 사격장(250m)으로 확장됐다. 지난해 인접한 보은·영동대대 장병과 예비군 등으로 이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인근 주민과 소음을 둘러싼 갈등이 커졌다.

옥천군이 지난해 1월과 3월 이 사격장 인근 주택에서 측정한 소음은 평균 58dB·최고 87dB로 나타났다. 이는 소음진동법에 정해진 주거지역의 생활소음 허용치(45~55dB)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사격장 인근 주민 강구봉(54)씨는 "훈련이 있는 날은 밤 11시까지 야간사격이 이뤄지고 있다"며 "귀청을 때리는 소음 때문에 잠을 잘 수 없고, 전화나 TV시청도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옥천군청의 한 관계자는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협의회가 구성된다"며 "주민 대표와 사단장·옥천군수·옥천경찰서장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에서는 사격장 이전을 포함해 훈련시간 조정, 방음벽 설치 등을 종합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옥천읍 주민들은 지난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소음 대책을 호소하는 민원을 낸 데 이어 지난달 1천865명이 서명한 건의서를 제출했다.

양수리 사격장 사격소음 대책 마련 현장 조정회의

[2012-11-13 17:57 박동욱 기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헌율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이 13일 오후 충북 옥천군청에서 조정 회의를 개최, 양수리사격장 소음피해 대책마련을 위한 민, 관, 군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토록 중재한 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大田日報

2012년 11월 14일
08면 (사회)

옥천 사격장 소음갈등 해결 ‘물꼬’

민·관·군 대책협의체 구성 훈련시간 조정 등 논의키로

[옥천]충북 옥천군 옥천읍 양수리 군부대 사격장 소음에 따른 주민반발과 관련 이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군 협의체가 구성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옥천군청 회의실에서 양수리 사격장 사격소음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옥천군, 옥천경찰서, 육군 37사단, 주민대표 등이 참여한 사격장소음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사격훈련 시간 조정, 등산로 개방, 주민 안전대책, 사격장 이전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육군 37사단이 운영하는 양수리 사격장(1만2595㎡)은 1987년 예비군 영점사격훈련을 위해 설치했다 1997년 자동화 사격장(250m)으로 확장됐

다. 지난해부터는 인접 보은·영동대대 장병과 예비군 등으로 이용대상이 확대되면서 지역주민과 소음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됐다.

옥천군이 지난해 1월과 3월 사격장 인근주택에서 측정한 소음은 평균 58dB·최고 87dB로 이는 소음진동법에 정해진 주거지역의 생활소음 허용치(45-55dB)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지역주민들은 “훈련이 있는 날은 귀청을 때리는 소음 때문에 잠을 잘 수 없고, 전화나 TV시청도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옥천군 관계자는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협의회가 구성됐다”며 “주민대표·사단장·옥천군수·옥천경찰서장 등이 참여해 구성된 협의회는 사격장 이전을 포함해 훈련시간 조정, 방음벽 설치 등을 종합적으로 협의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옥종천 기자 skybell1910@daejeonilbo.com

충청투데이

2012년 11월 14일
16A면 (지역)

옥천 양수리사격장 소음대책 조정회의

옥천군 옥천읍 양수리에 위치한 양수리 사격장의 소음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겪는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가 13일 군청회의실에서 '옥천 양수리 사격장 소음대책마련 갈등 조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조정회의는 양수리 강구봉((54) 씨 외 1864명이 민원을 제기해 이를 해결하고자 옥천군을 비롯해 육군제37보병사단, 옥천경찰서 등 사격장 소음을 해결하기 위한 민·관·군 협의체가 구성된 것이다.

이번 협의체 구성은 지난 2010년 사격장 인근 축산업자가 사격소음으로 인한 송아지 유산을 이유로 37사단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920여 만원을 지급받은것을 계기로 향후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야기될 것을 감안, 이를 해결하고자 민·관·군 협의체로 갈등조정협의회가 구성된 것이다. 이들 갈등조정협의회는 향후 1년 6개월 동안 매월 한번씩 회의를 개최하며, 사격장 이전을 포함, 훈련시간 조정과 방음벽 설치 등 소음해결을 위한 문제를 협의한다.

옥천=황의택 기자 missman@cctoday.co.kr

제 3 장

산업 · 농림 · 환경민원 조정사례



- ◇저수지 조성으로 사라진 마을 진입도로 개설
- ◇갈치잡이 어선 계류장을 안전지대로 이전 설치
- ◇밀양 후사포 마을 공장소음 방지대책 마련
- ◇염분 고충 양산 증산마을, 새 농업용수 공급
- ◇공장 이전에 따른 지방투자보조금 지급

저수지 조성으로 사라진 마을 진입도로 개설

민원번호 : 2BA-1112-125799 (산업농림환경민원과, 정현준)

〈민원개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저수지를 조성하면서 충남 천안시 동남구 동면 화덕3리 마을도로가 수몰·단절됨에 따라 대체도로(길이: 1.15km)를 개설하고, 청원행 시내버스 운행을 재개하여 달라는 지역주민(마을이장 외 18인)들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로 하여금 주민들 통행편의를 위해 버스 운행이 가능하도록 인근에 1.26km 길이의 대체도로를 개설하고, 청원군수는 도로가 완성된 후 천안행 시내버스가 마을에서 청원행 시내버스와 연계될 수 있도록 환승체계를 구축하도록 조정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

① 당사자

- 신 청 인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동면 화덕3리 대표자 마을이장 ○○○외 18인
- 피신청인 : 한국농어촌공사(피신청인 1), 천안시장(피신청인 2), 청원군수(피신청인 3)

② 민원내용

-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저수지를 조성하면서 충남 천안시 동남구 동면 화덕3리 마을 도로가 수몰·단절됨에 따라 대체도로(길이: 1.15km)를 개설하고, 청원행 시내버스 운행을 재개하여 달라.

③ 피신청인 등 의견

가. 한국농어촌공사(피신청인 1)

- 이 마을은 이 민원 사업구역 바깥에 위치하고 있어 대체도로 개설이 곤란하므로, 관할 행정기관에서 가용예산으로 대체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천안시장(피신청인 2)

- 청원행 시내버스를 이 마을로 운행하기 위한 기존 농로(이 마을 내 후기리 방향, 너비: 3m) 확 · 포장(너비: 5m) 계획 시 예산확보 및 토지 보상 문제 등으로 어려운 바, 대체도로 개설 원인 제공자인 피신청인 1이 해결해야 한다.

다. 청원군수(피신청인 3)

- 주민 불편을 하루속히 해소하기 위해 대체도로 편입부지 소유자와 보상협의(토지사용동의)를 진행 중이나, 대체도로 개설은 원인제공자인 피신청인 1이 시행해야 한다.
- 관내 오창과학 · 생명단지 준공과 유관 기업체 및 대단위 아파트 입주 등 외부 인구 유입 · 증가에 따라 학생들의 등 · 하교 및 직장인 출퇴근 등 도시교통불편 해소가 시급하므로, 원거리에 위치한 이 마을까지의 버스 운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4 주요 쟁점사항

- 농업개발사업(저수지 조성 등) 구역 밖에 위치한 마을 진입도로 개설
- 대체도로 개설 이후 시내버스와 연계 · 환승 체계 구축

5 갈등 분석

가. 민원발생배경 및 주요사실관계

-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미호천2지구 대단위 농업개발사업 시행으로 화덕3리 마을도로가 수몰 · 단절됨에 따라 대체도로 개설 및 버스운행 재개 필요
 - 화덕3리 주민(7세대 18인)들은 70대 이후로서, 주 생활권인 청원군(오창읍) 통행을 위해 청원행 버스 운행이 가능하도록 대체도로 개설 필요
 - ※대체도로 개설(전체: 1,150m): 천안시 구간 350m, 청원군 구간 800m
- 대체도로 개설 이후, 화덕3리 주민들이 청원군 오창읍 통행을 위해청원군 후기리에 서 천안행 시내버스와 연계 · 환승 체계 구축 필요
- 2011. 12. 화덕3리 마을도로가 대단위 농업개발사업(저수지 조성 등)으로 수몰 · 단절됨을 이유로 한국농어촌공사에 대체도로 개설을 요구(제1안)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화덕3리가 사업구역 바깥에 위치하여 대체도로 개설 곤란, 관할 행정기관에서 가용예산으로 대체도로 개설 추진이 타당함을 주장

- 한국농어촌공사는 대체도로 개설공사를, 천안시와 청원군은 관할 구역 내 대체도로 개설구간에 대한 토지보상 문제를 해결할 것을 중재(제2안)
 - 한국농어촌공사는 위 사업이 올해 준공 예정으로, 농림수산식품부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한바, 총사업비 추가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수용 불가 통보
 - 천안시와 청원군은 화덕3리 마을도로의 수몰·단절 원인제공자인 한국농어촌공사가 대체도로를 개설해야 한다는 이유로 수용 불가 의견 제시
- ※천안시와 청원군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대체도로를 개설할 경우 화덕3리 주민들의 청원군 오창읍 통행을 위한 시내버스 운영을 협의 검토하겠다는 입장임

나. 조정 목표

- 대체도로 개설을 위한 비용 부담과 청원행 버스 운행에 관한 분쟁조정 방안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대체도로 개설 등 교통 불편 해소

⑥ 갈등해결과정

- '11. 12. 19. : 한국농어촌공사 의견 청취
- '12. 1. 16. : 한국농어촌공사, 천안시, 청원군의 의견 조정 및 중재(안) 협의(1차)
 - ※대체도로 설치 및 비용부담 방안, 화덕3리 청원행 버스 이용 재개 가능 방안 등
- '12. 1. 20. : 위원회 중재(안) 협의(2차)
 - ※신청인 및 한국농어촌공사, 천안시, 청원군
- '12. 2. 8. : 위원회 중재(안) 협의(3차)
 - ※신청인 및 한국농어촌공사, 천안시, 청원군
- '12. 2. 28. : 관계 행정기관 협의회의 개최 및 중재(안) 협의(4차)
 - ※참석 : 산업농림환경민원과장, 조사관, 한국농어촌공사(사업소장, 차장), 천안시(교통과장, 동남구 건설교통과장), 청원군(교통과장, 건설과장)
- '12. 4. 20. : 중재(안) 최종 협의(5차)
 - ※신청인 및 한국농어촌공사, 천안시, 청원군이 위원회의 중재 안에 동의

⑦ 조정 (합의) 결과

가. 조정·합의 최종결과

- 한국농어촌공사(충북지역본부)가 대체도로(1.15km)를 시공하고, 천안시와 청원군이 관할구역 내 토지보상을 실시
 - 대체도로 개설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버스 운행을 재개하여 마을 주민들이 교통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 협조
- ※대체도로 개설(전체: 1.15km): 천안시 구간 0.35km, 청원군 구간 0.8km

나. 위원회 조정·합의문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농어촌공사는 천안시 동면 화덕리 구간(길이: 350m) 및 청원군 오창읍 후기리 구간(길이: 800m) 내 대체도로(전체 길이: 1.150m) 개설을 위하여 2012. 5. 15.까지 대체도로 개설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2. 5. 30.까지 대체도로 개설사업에 착수하여 2012. 12. 30.까지 사업을 완료한다.

(천안시장, 청원군수)

- 피신청인 2·3은 관할구역 내 대체도로 개설에 따른 토지사용동의 등 보상 문제를 2012. 5. 15.까지 해결하고, 대체도로 개설이 완료되면 천안행 시내버스가 이 마을에서 청원행 시내버스와 연계될 수 있도록 환승체계를 구축하여 이 마을 주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⑧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가. 신청인-피신청인 수용 및 이행여부

- 대체도로 개설 실시설계를 완료, 대체도로 개설사업 완료
- 대체도로 개설에 따른 토지사용동의 등 보상
- 시내버스와 연계될 수 있도록 환승체계를 구축

나. 시사점

- 조정으로 끊어진 도로가 이어지고 버스가 다시 운행할 수 있게 되어 마을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조속히 해소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마련된 데 대해 그 의미가 크다.

연합뉴스 MBC 메디컬투데이 공감코리아 중부매일

천안 화덕리 산간마을, 공사로 수몰된 도로 다시 연다

[2012-04-27 16:00] 송고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도로 수몰로 버스 운행 중단...권익위, 2km 도보 불편 해결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 마을도로가 수몰되고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됐던 충남 천안시 동면 화덕3리 마을에 다시 버스가 다닐 수 있는 대체도로가 생기게 됐다.

화덕3리 마을은 '미호천2지구 대단위 농업개발사업'으로 오창저수지가 생기고 올해 3월 담수가 시작되면서 도로가 수몰돼 주민들은 주 생활권인 청원으로 나가려면 2km나 떨어진 버스정류장까지 걸어나가야 하는 상태였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박성일 상임위원은 27일 오후 3시 천안시청에서 화덕3리 주민대표와 한국농어촌공사, 천안시, 청원군 관계자를 참석시킨 가운데 조정회의를 열어 주민들의 통행편의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로 하여금 마을주민들을 위한 버스 운행이 가능하도록 인근에 1.26km 길이의 대체도로를 만드는 중재안을 만듦에 합의시켰다.

주민들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청원군, 천안시 등 관계기관에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예산문제 등으로 해결이 되지 않자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수차례 현장조사와 실무자간 회의 끝에 ▲ 한국농어촌공사가 대체도로 공사를 맡아 연내에 마무리하고, ▲ 천안시와 청원군은 대체부지에 사용되는 토지의 보상을 맡고, 대체도로 완성후 천안행 시내버스가 마을에서 청원행 시내버스와 연계될 수 있도록 환승체계를 구축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토록 중재했다.

※대체도로 개설(전체: 1.26km): 천안시 구간 0.61km, 청원군 구간 0.65km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한 박성일 상임위원은 "대체도로를 만들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합의 내용이 끝까지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忠清日報

2012년 04월 30일
14면 (대전/충남)



국민권익위 박성일 상임위원 등은 지난 27일 천안시청에서 주민대표, 한국농어촌공사, 천안시, 청원군 관계자들이 조정회의를 가졌다.

도로 수몰 주민불편 해소

천안 화덕3리 대체도로 1.26km 조성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개발 사업으로 마을도로가 수몰되고 시내 버스 운행이 중단됐던 충남 천안시 동남구 동면 화덕 3리 마을에 버스가 다닐 수 있는 대체도로가 조성된다.

2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화덕 3리 마을은 미호천 2지구 대단위 농업개발사업으로 오창저수지가 생기고 지난 3월부터 담수가 시작되면서 도로가 수몰돼 주민들은 주 생활권인 충북 청원으로 나가려면 2km나 떨어진 버스정류장까지 걸어나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화덕 3리 마을이장 등 19명이 농어촌공사와 청원군, 천안시 등 관계기관에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예산문제 등으로 해결이 되지 않자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 현장조사와 실무자간 회의 끝에 ▲한국농어촌공사가 대체도로 공사를 맡아 연내에 마무리하고 ▲천안시의 청원군은 대체부지에 사용되는 토지의 보상을 맡고 대체도로 완성후 천안행 시내 버스가 마을에서 청원행 시내버스와 연계될 수 있도록 환승체계를 구축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토록 중재했다. 대체도로는 총 1.26km로 천안시 구간 0.61km, 청원군 구간 0.65km이다.

국민권익위 박성일 상임위원 등은 지난 27일 천안시청에서 주민대표, 한국농어촌공사, 천안시, 청원군 관계자들이 조정회의를 열고 1.26km 대체도로를 만드는 중재안에 모두 합의함에 따라 주민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

/천안=김병한기자
(10.0*19.5)cm

충청투데이

2012년 04월 30일
16면 (지역)

도로수몰 천안 화덕리 주민불편 해소된다

농어촌공, 천안~청원 구간 1.26km 대체도로 조성키로

한국농어촌공사의 개발사업으로 마을도로가 수몰된 천안시 동남구 동면 화덕3리에 대체도로가 조성된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미호천2지구 대단위 농업개발사업'으로 오창저수지가 조성되면서 올해 3월 담수가 시작됐고, 그 결과 화덕3리 마을도로가 수몰됐다.

수몰된 도로에는 버스가 다닐 수 없게 됐고, 주민들은 2km나 떨어진 정류장까지 걸어 나가야 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27일 천안시

청에서 화덕3리 주민대표와 한국농어촌공사, 천안시, 청원군 관계자를 참석시킨 가운데 조정회의를 열었다.

조정회의에서 권익위는 주민들의 통행편의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로 하여금 마을 인근에 1.26km(천안시 구간 0.61km, 청원군 구간 0.65km) 길이의 대체도로를 만드는 중재안을 제시, 합의시켰다.

주민들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청원군, 천안시 등 관계기관에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예산문제 등으로 해결이 되지 않자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수차례 현장 조사와 실무자간 회의 끝에 ▲한국농어촌공사가 대체도로 공사를 맡아 연내에 마무리하고 ▲천안시와 청원군은 대체부지에 사용되는 토지의 보상을 맡으며 ▲대체도로 완성후 천안행 시내버스가 청원행 시내버스와 연계될 수 있도록 환승체계를 구축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토록 중재했다.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한 박성일 상임위원은 "대체도로를 만들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합의 내용이 끝까지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200@cctoday.co.kr

(15.4*10.3)cm

大田日報

2012년 04월 30일
09면 (지역)

마을도로 수몰 천안 화덕리

버스운행 가능 대체도로 조성

[천안] 개발사업으로 마을도로가 수몰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지역에 대체도로가 생겨 버스가 다시 다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화덕 3리 주민대표와 한국농어촌공사, 천안시, 청원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회의를 열고 대체도로를 조성하도록 했다고 29일 밝혔다.

권익위는 조정회의에서 주민들의 통행편의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에 마을주민들을 위한 버스 운행이 가능하도록 인근 1.26km 길이의 대체도로를 만들도록 중재했다.

화덕 3리 마을 주민들은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가 시행하고 있는 '미호천 2지구 대단위 농업개발사업'으로 인해 저수지가 생기고 올해 3월 담수가 시작되면서 도로가 수몰돼 주 생활권인 청원으로 나가려면 2km나 떨어져 있는 버스정류장까지 걸어 나가야 했다.

시는 해당 도로에 대한 편입토지가 나오면 보상 문제를 해결하고 올 연말까지 대체도로를 완공할 예정이다.

인상준 기자 isj@daejeonilbo.com

(5.4*13.1)cm

농민신문

2012년 04월 30일
05면 (사회)

권익위, 공사로 길 끊긴 마을 위해 도로 건설 중재

마을 도로가 수몰돼 큰 불편을 겪던 충남 천안시 동면 화덕3리 주민들을 위해 대체 도로가 생긴다. 화덕3리 주민들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미호천 2지구 대단위 농업개발사업'으로 생긴 오창저수지 때문에 주생활권인 청원으로 가기 위해 2km나 떨어진 버스정류장까지 걸어다니고 있다. 올 3월 저수지에 담수가 시작되면서 버스가 운행되던 마을 도로가 끊겼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천안시청에서 화덕3리 주민대표와 한국농어촌공사·천안시·청원군 관계자를 참석시킨 가운데 조정회의를 열어 주민들의 통행 편의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로 하여금 버스 운행이 가능하도록 1.26km 길이의 대체 도로를 만드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해 합의시켰다.

이에 앞서 주민들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서훈 기자 seolyoon@nongmin.com
(10.1*7.8)cm

천안 화덕리 산간마을, 공사로 수몰된 도로 다시 연다 / 권익위 소식

국민권익 2012.04.27 17:42

http://blog.daum.net/loveacrc/5683

천안 화덕리 산간마을, 공사로 수몰된 도로 다시 연다

도로 수몰로 버스 운행 중단...권익위, 2km 도로 불편 해결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 마을도로가 수몰되고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됐던 충남 천안시 동면 화덕3리 마을에 다시 버스가 다닐 수 있는 대체도로가 생기게 됐다.

화덕3리 마을은 '미호천2지구 대단위 농업개발사업'으로 오창저수지가 생기고 올해 3월 담수가 시작되면서 도로가 수몰돼 주민들은 주 생활권인 청원으로 나가려면 2km나 떨어진 버스정류장까지 걸어나가야 하는 상태였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박성일 상임위원은 27일 오후 3시 천안시청에서 화덕3리 주민대표와 한국농어촌공사, 천안시, 청원군 관계자를 참석시킨 가운데 조정회의를 열어 주민들의 통행편의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로 하여금 마을주민들을 위한 버스 운행이 가능하도록 인근에 1.26km 길이의 대체도로를 만드는 중재안을 만들에 합의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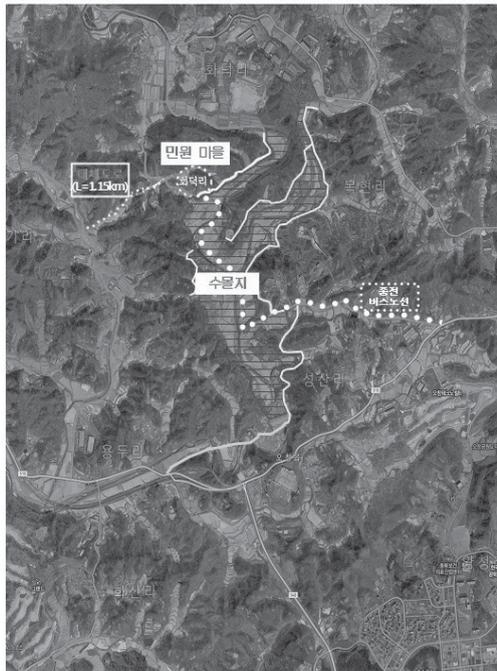
주민들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청원군, 천안시 등 관계기관에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예산문제 등으로 해결이 되지 않자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수차례 현장조사와 실무자간 회의 끝에 ▲한국농어촌공사가 대체도로 공사를 맡아 연내에 마무리하고, ▲천안시와 청원군은 대체부지에 사용되는 토지의 보상을 맡고, 대체도로 완성후 천안행 시내버스가 마을에서 청원행 시내버스와 연계될 수 있도록 환승체계를 구축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토록 중재했다.

※ 대체도로 개설(전체: 1.26km): 천안시 구간 0.61km, 청원군 구간 0.65km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한 박성일 상임위원은 "대체도로를 만들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합의 내용이 끝까지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위치도



갈치잡이 어선 계류장을 안전지대로 이전 설치

민원번호 : 2BA-1206-116456 (산업농림환경민원과, 안효수)

<민원개요>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삼포리 소재 삼호어촌계에서 ○○○○중공업(주)의 남문 인근에 갈치잡이 어선의 계류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었으나, ○○○○중공업(주)에서 2012년 9월부터 갈치낚시 출조차량의 출입을 통제한다고 하고, 이 민원 계류시설을 영암방조제의 도류제 구간으로 이설하고자 하나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업기반시설이라는 등의 사유로 이를 허가해 주지 않으니 해결방안을 찾아 달라는 집단민원에 대해, 영암방조제에 건설 중인 국가지원 지방도 49호선(대체확장도로)이 완공되고 기존의 지방도 49호선이 폐쇄되어 피신청인에게 관리권이 이관되면, 반드시 2개월 이내에 이해관계인의 사업장 부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이 민원 계류시설을 영암방조제 일원으로 이전·설치하도록 조정하여 주민 불편 해소

① 당사자

- 신 청 인 : 삼호어촌계 계장 ○○○○
- 피신청인 : 한국농어촌공사(영산강사업단장)

② 민원내용

-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삼포리 소재 삼호어촌계에서 ○○○○중공업(주)의 남문 인근에 갈치잡이 어선의 계류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었으나, 이해관계인이 2012년 9월부터 갈치낚시 출조차량의 출입을 통제한다고 하고, 이 민원 계류시설을 영암방조제의 도류제 구간으로 이설하고자 하나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업기반시설이라는 등의 사유로 이를 허가해 주지 않으니 해결방안을 찾아 달라.

③ 피신청인 등 의견

가. 한국농어촌공사(피신청인)

- 신청인이 요청한 계류시설 위치는 바다 측 조위 계측을 위한 수위계측기 등이 설치되어 있고, 배수갑문 개방 시 와류로 인한 방조제 파괴(쇠굴 등)방지를 위한 도류제 시설이며, 어촌계에서 필요로 하는 주·정차시설이 없어, 승낙 시 시설물 주변에 주·정차함으로써 도로 통행에 지장초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선량한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영암방조제 배수갑문 개방 시 입·출항 어선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며, 어족자원 보호 및 소하성 어류의 이동을 돕고자 통선문에 설치한 어도 가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어, 요청한 위치에서 150m 정도 이격된 지점에 설치함이 바람직하다.

나. ○○○○중공업(주)(이행관계인)

- 현재 남문도로는 일평균 600여대의 자재 납품차량이 출입하고 계근대 진입로로 사용 중에 있으나, 공장부지 내에 이 민원 계류시설이 있는 관계로 매년 갈치낚시철인 9~12월 동안의 기간은 어촌계에서 4개 차선 중 2개 차선을 갈치낚시 출조 차량의 주차장으로 사용함에 따라 당사의 생산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공장부지 내에 외부인의 출입에 따른 중요 기술자료의 유출 위험이 있으므로 더 이상 공장부지 일부를 어촌계의 주차장 부지로 제공하기 곤란하며, 2012. 9. 1.부터 출입을 통제하고자 한다.

④ 주요 쟁점사항

- 삼호어촌계나 한국농어촌공사, ○○○○중공업(주) 모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설치위치와 설치시기, 그리고 주차장 확보 문제의 해결, 어선계류시설의 이전 설치 시까지 남문도로의 이용문제 등에 대해서는 신청인들과 한국농어촌공사, ○○○○중공업(주) 간에 의견이 대립

⑤ 갈등 분석

가. 민원발생배경 및 주요사실관계

- ○○○○중공업(주)에서 공장부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삼호어촌계의 이 민원 계류 시설에 대해 이설을 요구하고, 2012. 9. 1.부터 남문 출입을 통제하겠다고 통보함에 따라 이 민원 계류시설의 이설문제 대두
- 삼호어촌계에서는 인근의 영암방조제 도류제 부분으로 이 민원 계류시설의 이설을 요구
-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에서는 영암방조제 도류제 부분으로 이 민원 계류시설을 이전할 경우, 각종 안전문제 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도류제로부터 150m 이격된 거리에 설치할 것을 제안
- 삼호어촌계에서는 설치운영 상의 문제 및 주차장 확보 등이 곤란하여 이설이 어렵고, 현재는 이설할 여건이 되지 않으므로 일정기간 현재의 위치에서 이 민원 계류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며, 위원회의 조정 및 해결방안 모색을 요청

나. 조정 목표

- 이 민원 계류시설의 문제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 집단 민원화하여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고, ○○○○중공업(주)의 생산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한국농어촌공사의 원활한 영암방조제 관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 이 민원 계류시설의 이설을 위한 효율적인 제반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지역어민과 산업체, 공공기관의 상생방안을 모색하고, 공공갈등 해소를 통해 신청인과 피신청인, 이해관계인 모두가 Win-Win하는 대안적 조정방안 마련
- 적극적 노력을 통해 사회적 갈등 해소해 나가는 위원회의 위상 정립

⑥ 갈등해결과정

- '12. 7. 3. : 고충민원에 대한 위원회 조정방안 협의 (1차)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을 위한 대승적 협조 요청
- '12. 8. 7. : 현장조사 및 위원회 조정방안 협의 (2차)
※이 민원 계류시설의 이전 설치를 위한 기본적 방안에 대한 합의 도출
- '12. 8. 10. : 위원회 조정(안) 협의 (3차)
※상세한 조정(안)에 대한 신청인 및 각 기관의 의견 조화

• '12. 8. 16. : 위원회 조정(안) 협의 (4차)

※ 신청인 및 각 기관의 의견수렴을 통한 최종적 조정(안) 도출

7 조정 (합의) 결과

가. 조정 · 합의 최종결과

영암방조제에 건설 중인 국가지원 지방도 49호선(대체확장도로)이 완공되고 기존의 지방도 49호선이 폐쇄되어 피신청인에게 관리권이 이관되면, 2개월 이내에 ○○○○중공업(주) 사업장 부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이 민원 계류시설을 영암방조제 일원으로 이전 · 설치

나. 위원회 조정 · 합의문

가. 신청인은 영암방조제에 건설 중인 국가지원 지방도 49호선(대체확장도로)이 완공되고 기존의 지방도 49호선이 폐쇄되어 피신청인에게 관리권이 이관되면, 반드시 2개월 이내에 이해관계인의 사업장 부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이 민원 계류시설을 영암방조제 일원으로 이전 · 설치한다.

나. 이 민원 계류시설의 이설위치에 대해서는 영암방조제의 관리 및 안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상호 협의하여 선정한다.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농업생산기반시설임을 감안하여 계류시설 이전 · 설치 전, 관련법 등 규정에 의거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반드시 별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단, 피신청인은 기존의 지방도 49호선에 대한 관리권이 이관되면, 갈치낚시철(8~12월) 기간 동안 삼호어촌계원 등에 한하여 차량이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이때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임시사용허가를 받아 출입하고 교통사고 및 각종 안전문제의 예방을 위한 피신청인의 통제에 응하여야 한다.

라. 신청인은 이 민원 계류시설 이전 시,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이설된 계류시설에 대한 공유수면 점 · 사용허가를 받는 등 적법한 절차를 이행한다.

마. 신청인은 이해관계인의 사업장 부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이 민원 계류시설 및 향

후 피신청인이 관리하는 영암방조제 일원에 이설될 계류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각종 재해예방,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 예방, 시설물 보전 등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쓰레기 처리 등 환경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바. 이해관계인은 신청인이 이 민원 계류시설을 이전 설치할 때까지 현재의 남문도로 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신청인은 본 조정서와는 별도로 이해관계인에게 가항의 조건에 따른 이 민원 계류시설 이전 설치에 대한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한다.

사. 이해관계인은 바항에 따른 확약서가 제출되면, 통상적인 범위(이 민원 계류시설의 현재 시설수준)에서 이설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장비 등을 지원하여 이 민원 계류시설의 이전 설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하며, 지원 범위 및 내용 등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인과 이해관계인 및 전남 영암군수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아. 신청인은 이해관계인의 사업부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이 민원 계류시설 및 남문도로를 사용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업무차량 및 자재차량 등의 진출입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민원 계류시설 이용차량의 주차 안내 등 교통대책에 적극 협조한다.

자. 신청인은 이 민원 계류시설을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점·사용료 등 제반 비용에 대해 성실히 납부하고,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피신청인의 행정업무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㉘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가. 신청인-피신청인 수용 및 이행여부

- 계류시설의 이설 위치에 대해 신청인과 피신청인 상호 협의 중

나. 시사점

- 현재 설치된 어선계류시설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 지역의 사회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사안을 관계기간의 양보와 타협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임

밀양 후사포 마을 공장소음 방지대책 마련

민원번호 : 2BA-1206-062606 (산업농림환경민원과, 정병학)

〈민원개요〉

후사포마을의 인근에 위치한 사포일반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신청인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으니, 그간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더 이상의 소음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음 피해저감 대책을 세워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소음환경기준 이내로 유지하기 위한 방음대책을 수립·시행하기로 협의하고, 그간 소음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과에 따르기로 하여 1년 여간 계속된 산업단지 소음 분쟁을 해결

① 당사자

- 신청인 : 경남 밀양시 후사포마을 선정대표자 ○○○외 70명
- 피신청인 : 경상남도 밀양시장

② 민원내용

- 후사포마을과 인접한 사포일반산업단지 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마을주민들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으니, 그간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더 이상의 소음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음 피해저감 대책을 세워 달라.

③ 피신청인 등 의견

- 사포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소음 측정결과 「소음·진동관리법」상 공장배출허용 기준 이내이나 신청인이 일상생활에서 소음피해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소음 방지 대책 수립을 검토하겠음

④ 주요 쟁점사항

- 소음피해 보상
 -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준과 피신청인 및 공단 입주업체들이 수용 가능한 보상 수준과의 괴리
- 소음기준 초과 여부
 - 마을 내 소음 수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여부

5 갈등 분석

가. 민원발생배경 및 주요사실관계

- 밀양시는 사포일반산업단지 조성 시 마을 주변에는 소음영향이 거의 없는 전기기계 업종을 입주시키겠다고 마을 주민들과 협의하고 별도의 소음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으나
 - 산업단지 입주가 시작되자 당초 전기기계 업종이 아닌 도장 및 열처리 공장 등의 소음발생 공장이 입주하면서 마을 주민들이 소음피해에 시달려 소음저감 대책을 요구하는 고충민원 제기(12. 6. 8.)

〈후사포마을 현황(2012. 8. 15. 현재)〉

구분	마을 세대수	산업단지와 주거지와의 이격거리	소음정도		
			구분	발생(dB)	기준(dB)
내용	총 163세대 332명 (주영향 지역 : 58세대 112명 거주)	50~160m	주간	46.9~62.2	65
			야간	53	55

※소음측정은 주로 산업단지경계에서 이루어졌으며, 현재는 소음도가 기준이하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 소음도는 훨씬 높을 것이라고 마을주민들은 주장

나. 조정 목표

- 공장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후사포마을 58세대의 소음 고충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쾌적하고 조용한 주거환경 확보

- 신청인과 밀양시가 양보와 타협을 통해 소음방지방안 도출

⑥ 갈등해결과정

- 2012. 6. 8. 일반산업단지 소음피해 대책 요구 고충민원 접수
- 2012. 6. 11. 고충민원 관련 자료제출 요구(6. 19. 제출)
- 2012. 7. 20. 제1차 현장조사 및 신청인·관계기관 협의
 - 신청인 : 산업단지(공장) 방음시설의 조속한 설치 요구
 - 피신청인 : 권익위의 조정 결과에 따라 향후 예산 확보와 산업단지(공장) 방음대책을 수립·시행 추진
- ※참석자 : 신청인(대표자 포함 주민 4명), 밀양시(도시과 담당자 2명)
- 2012. 8. 6. 조정(안) 제시(위원회→신청인, 피신청인)
- 2012. 8. 7. 피신청인 조정(안) 수용 통보(피신청인 위원회)
- 2012. 8. 8. 신청인 조정(안) 수용 통보(신청인→위원회)
 - ※신청인이 위원회 조정(안) 확인 및 수용을 우선으로 통보
- 2012. 8. 23. 제2차 현장조사 및 조정안에 대한 신청인 입장 재확인

⑦ 조정 (합의) 결과

가. 조정·합의 최종결과

- 피신청인은 현재 산업단지의 소음이 환경기준 이하이므로 특별한 대책 강구는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으나, 우리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산업단지 조성 시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업종을 유치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소음 업종을 마을 주변에 배치하였고, 소음대책 또한 마련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지속적으로 협의
- 수십 차례 문제해결 방안을 협의하고, 두 차례의 현장조사 등을 거쳐 피신청인의 의견을 계속적으로 조율한 결과, 우리 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서의 내용대로 소음방지대책을 마련하기로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우리 위원회가 현지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조정서를 작성하고 조정 합의함

나. 위원회 조정 · 합의문

-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거주하는 후사포마을의 소음이 「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환경기준[낮 65 dB(A), 밤 55dB(A)] 이내로 현저히 낮추기 위한 소음 피해저감 대책을 수립 · 시행하기로 한다.
- (2) 피신청인은 소음 피해저감 대책 수립에 필요한 용역비를 추경예산 편성(2012. 9. 예정) 시 확보하여 2012. 11. 30.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용역결과에 따라 피해저감 시설 설치에 필요한 2013년 예산을 2012. 12. 30.까지 확보한다.
- (3) 피신청인은 2013년 상반기까지 소음 피해저감 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신청인이 선정한 공인시험기관으로 하여금 위 가.의 소음저감 효과를 확인한다. 만약, 소음저감 효과가 미흡할 경우 신청인과 협의하여 추가적인 피해저감 대책을 수립 · 시행하기로 한다.
- (4)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그간 사포일반산업단지로 인한 신청인의 소음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에 따르기로 하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소음 피해저감 대책의 수립 · 시행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⑧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가. 신청인-피신청인 수용 및 이행여부

- 위원회의 조정결과에 따라 밀양시는 2012. 11.까지 산업단지 소음저감대책을 위한 용역을 완료하고 관련 예산 8억 6,000만원을 확보하였고, 2013. 6.까지 500m 방음벽을 설치할 예정임
- 소음피해와 관련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13. 1. 10. 신청인의 조정신청에 대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음

나. 시사점

- 산업단지 소음을 환경기준 이하로 유지하여 주거 환경권 보호
 - 산업단지 소음을 공장소음기준이 아닌 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환경기준을 유지하

는 것으로 협의하여 주민들의 주거 환경권을 실질적으로 보호

- 산업단지 환경 피해에 대한 보상 협의

-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에 따르기로 상호 협의함으로써 향후 소송 등 분쟁으로 인한 상호 피로감을 미연에 차단

울산제일일보

2012년 08월 31일
06면 (사회)

밀양 후사포마을 공장소음 민원 해결

권익위, 내년 상반기까지 시에 방음시설 설치토록 중재

경남 밀양시 북북면 예림서원 주변 후사포 마을 58세대 주민들이 사포일반산업단지가 입주한 직후인 지난해 6월부터 졸골 제기한 마을주변 공장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만)는 30일 오후 밀양시청 소회의실에서 마을 주민들과 전영경 밀양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박성일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마을주변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기로 중재하는데 성공했다.

밀양시는 2007년 사포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 수립 당시에는 마을 주변에 소음 영향이 거의 없는 전기기계 업종을 입주 시키겠다고 마을 주민들과 협의한 후, 별도의 소음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해 왔다.

산업단지 입주가 시작되자 입주업체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등 여건변화로 인해 지난해부터 도장·알차리 공장 등 소음이 발생하는 업체들을 입주시키면서 마을 주민들이 소음에 시달려왔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 6월 민원을 접수한 이후 수차례 현장조사와 실무조정 협의를 통해 ▲ 밀양시가 후사포 마을의 소음을 환경기준 이내로 현재저 낮추기 위한 방

음대책을 수립·시행하기로 하고 ▲ 세부 대책으로 올해 11월까지 방음대책 연구용역을 완료한 후 결과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한 박성일 권익위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은 권익위와 마을 주민, 밀양시가 여러차례의 현장조사와 협의를 통해 함께 협력한 결과"라며 "오랜 시간 소음피해를 견뎌온 마을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밀양=문형오 기자
(23.9-6.8)cm

경남연합일보

2012년 08월 31일
04면 (사회)

밀양사포일반산단 소음민원 원만한 조정

국민권익위 회의 진행...피해대책 수행·환경관리 노력

30일 밀양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조정회의에서 밀양시의 사포일반산업단지 인근 후사포리 주민이 제기한 사포일반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공장 소음 민원이 원만하게 조정됐다.

사포일반산업단지 인근 후사포리 최성영외 주민 70여명이 지난 6월 초에 입주기업의 공장 가동 소음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와 신청인, 밀양시가 수차례 의견수렴과 협의를 통해 합의안이 도출되어 오늘 원만한 조정에 이르렀다.

이번 민원 건에 대하여 밀양시에서 소음 저감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2012년 12월까지 용역을 실시하고 용역결과에 따라 피해저감대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밀양시는 피해저감대책을 성실하게 수

행함은 물론 산단 주변 환경관리에도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사포일반산업단지에는 총 사업비 1440억원으로 지난 2007년 12월 착공해 2011년 6월 준공했다.

현재 28개 업체가 기입주해 가동하고 있으며 4개 업체가 공사 중으로 올 내 입주할 것으로 판단돼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도시 활력 증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제투자과 기업SOS담당(359-5414)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덕수기자
(15.1*8.2)cm



밀양 후사포 마을 58세대 공장소음 민원 해결

[2012-08-30 14:00 CBS 김영태 기자 (great@cbs.co.kr)]

권익위, 내년 상반기까지 밀양시가 방음시설 설치토록 중재

밀양시 부북면 후사포 마을 58세대 주민들이 공장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오후 마을 주민들과 밀양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마을주변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기로 중재하는데 성공했다. 이로써 사포일반산업단지가 입주한 직후인 지난해 6월부터 줄곧 제기한 민원이 해결됐다.

밀양시는 2007년 사포일반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마을 주변에 소음영향이 거의 없는 전기기계 업종을 입주시키겠다고 마을 주민들과 협의한 후, 별도의 소음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막상 산업단지 입주가 시작되자 입주업체 유치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지난해부터 도장·열처리 공장 등 소음이 발생하는 업체들을 입주시키면서 마을 주민들이 소음에 시달려왔다.

권익위는 조정 협의를 통해 △ 밀양시가 후사포 마을의 소음을 환경기준 이내로 현저히 낮추기 위한 방음대책을 수립·시행하기로 하고 △ 세부대책으로 올해 11월까지 방음대책 연구용역을 완료한 후 결과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메디컬투데이 중부매일 공감코리아

밀양시 후사포 주민들, 마을주변 공장소음 민원 해결

[2012-08-30 14:31:28 안상준 기자 (lgnumber1@mdtoday.co.kr)]

올해 11월까지 방음대책 연구용역 완료 후 결과에 따라 방음시설 설치 예정

[메디컬투데이]밀양시 후사포 마을 58세대 주민들의 마을주변 공장소음 민원이 해결돼 생활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30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밀양시청 소회의실에서 마을 주민들과 전영경 밀양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박성일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열어 마을주변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기로 중재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밀양시는 2007년 사포일반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마을 주변에 소음영향이 거의 없는 전기기계 업종을 입주시키겠다고 마을 주민들과 협의한 후, 별도의 소음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막상 산업단지 입주가 시작되자 입주업체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등 여건변화로 인해 지난해부터 도장·열처리 공장 등 소음이 발생하는 업체들을 입주시키면서 마을 주민들이 소음에 시달려왔다.

이에 고충민원에 대한 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권익위는 지난 6월 민원을 접수한 이후 수차례 현장조사와 실무 조정 협의를 통해 ▲밀양시가 후사포 마을의 소음을 환경기준 이내로 현저히 낮추기 위한 방음대책을 수립·시행하기로 하고 ▲세부대책으로 올해 11월까지 방음대책 연구용역을 완료한 후 결과에 따라 2013년 상반기까지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박성일 권익위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은 권익위와 마을 주민, 밀양시가 여러 차례의 현장조사와 협의를 통해 함께 협력한 결과로서, 오랜 시간 소음피해를 견뎌온 마을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권익위, 밀양 후사포 공장소음 민원 해결

[2012년08월30일 15시59분 (아시아뉴스통신 = 손임규 기자)]



다음해 상반기 밀양시가 방음시설 설치토록 중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경남 밀양시 부북면 후사포리 사포일반산업지 입주 업체들의 공장 소음공해를 중재했다고 30일 밝혔다. 밀양시 부북면 후사포 마을 58세대 주민들이 지난 6월 사포일반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공장소음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30일 오후 2시 밀양시청 소회의실에서 마을 주민들과 전영경 밀양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박성일 권익위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기로 중재했다. 시는 지난 2007년 사포일반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마을 주변에 소음영향이 거의 없는 전기기계 업종을 입주기로 했으나 입주업체 유치와 여건변화로 인해 지난해부터 도장, 열처리 공장 등 소음이 발생 업체를 입주해 주민들이 소음에 시달려 있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 6월 민원을 접수한 이후 수차례 현장조사와 실무 조정 협의를 통해 밀양시가 후사포 마을의 소음을 환경기준 이내로 낮추기로 하고 오는 11월까지 방음 대책 연구용역을 완료, 다음해 상반기까지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박성일 권익위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은 권익위와 마을 주민, 밀양시가 여러 차례의 현장조사와 협의를 통해 함께 협력한 결과"라며 "오랜 시간 소음피해를 견뎌온 마을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돼 기쁘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밀양시 사포일반산업단지 인근 후사포리 주민이 제기한 사포일반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공장 소음 민원이 원만하게 조정토록 결정했다.

밀양 사포산단 입주 기업 소음 공해 민원 제기 권익위 '12월까지 용역 실시' 조정

국민권익위원회는 밀양시 사포일반 산업단지 인근 후사포리 주민이 제기한 사포일반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공장 소음 민원이 원만하게 조정토록 결정했다.

국민권익위는 사포일반산업단지 인근 후사포리 최성영외 주민 70여 명이 지난 6월 초에 입주기업의 공장 가동 소음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해 권익위와 신청인, 밀양시가 수차례 의견수렴과 협의를 거쳐 지난달 30일 밀양시청에서 가진 권익위 조정회의를 통

해 이같이 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밀양시는 이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용역을 실시하고 용역결과에 따라 피해저감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밀양시 관계자는 “밀양시는 피해저감대책을 성실하게 수행함은 물론 산단 주변 환경관리에도 노력할 것을 주민들에게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수천기자 lsc@

(10.2*16.0)cm

염분 고충 양산 증산마을, 새 농업용수 공급

민원번호 : 2AA-1205-235609 (산업농림환경민원과, 박양규)

〈민원개요〉

신청인이 거주하는 증산마을 주민은 벼 작물과 시설채소 작물을 주로 재배하고 있는데, 인근 물금신도시 개발사업부지의 침출수가 새도랑천으로 유입되어 염도수치가 높아졌고, 이로 인해 원예작물 재배에 지장을 받고 있으니 안정적인 맑은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대체 용수로를 설치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우리 위원회의 대안 제시 방안을 수 차례에 걸쳐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예산분담 비율을 정하고, 신청인이 이를 수용하여 우리 위원회가 현지조정회의를 통해 조정서를 작성하고 조정 합의

① 당사자

- 신청인 : 양산 증산마을 선정대표자 이장 ○○○
- 피신청인 1 : 경상남도 양산시장
- 피신청인 2 : 한국토지주택공사
- 피신청인 3 : 한국농어촌공사

② 민원내용

- 신청인이 거주하는 증산마을 주민은 벼 작물과 시설채소 작물을 주로 재배하고 있는데, 인근 물금신도시 개발사업부지의 침출수가 새도랑천으로 유입되어 염도수치가 높아졌고, 이로 인해 원예작물 재배에 지장을 받고 있으니 안정적인 맑은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대체 용수로를 설치하여 달라.

③ 피신청인 등 의견

가. 피신청인 1(경상남도 양산시장)

이 민원은 피신청인 2가 시행중인 물금신도시조성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된 피해이고, 피해지역은 피신청인 3이 관리하는 구역인바, 피신청인 2와 3이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피신청인 2(한국토지주택공사)

피신청인 2는 사업지구내에 편입된 기존 농업관계시설에 대하여 피신청인 3에게 보상하였고, 대체시설에 대한 사업비도 부담하였으므로 맑은 물 공급은 피신청인 1과 3이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피신청인 3(한국농어촌공사)

맑은 물 공급 사업은 피해 원인을 제공한 피신청인 2와 피신청인 1이 협의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④ 주요 쟁점사항

- 염분으로 인한 새도랑천 오염 및 이로 인한 농경지 피해 발생 여부
 - 피신청인 2가 시행한 물금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인해 새도랑천으로 염분이 유입되었는지의 여부 및 새도랑천으로부터 농업용수를 공급받고 있는 농경지가 염분이 함유된 농업용수 공급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되었는지의 여부
- 관련 기관간 책임소재
 - 염분 함유 농업용수 유입 피해의 책임이 신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 있는지, 농업용수로 관리 기관에 있는지 및 이를 맑은 물을 공급하는 지자체에 있는지의 여부
- 예산 확보 · 분담 문제
 - 기관간 책임 소재에 따른 예산 분담 비율 및 사업시행주체 결정

⑤ 갈등 분석

가. 민원발생배경 및 주요사실관계

- 신청인이 거주하는 증산마을 주민은 새도량천의 용수를 이용하여 벼 작물과 시설채소 작물을 재배
- '12. 3. 염분이 함유된 지하수가 새도량천에 유입되어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증산 마을 주민은 대체 용수로 확보 등 대책마련을 피신청인들에게 요구
- 피신청인들은 피해발생 원인과 책임소재 및 시설 관리권 등에 대한 이견으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마을 주민들이 맑은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대체 용수로 설치를 요구하는 고충민원 제기('12. 5. 29.)

나. 대안 제시

- 위 사실관계 및 각 기관의 입장을 분석한 결과, 증산마을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새도량천이 염분으로 인해 더 이상 정상적인 농업 용수로서의 기능은 상당부분 상실한 것으로 판단
- 기관간 책임소재에 대한 다툼을 하기 보다는 각 기관이 다소의 책임을 갖고 있는바, 조속히 대체 농업용수로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 기관간 예산 분담 비율은 기관간 자율적 협의하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6 갈등해결과정

가. 진행과정 개요

- 2012. 5. 29. 대체 용수로 설치 요구 고충민원 접수
- 2012. 6. 13. ~ 6. 22. 관련 자료 제출
- 2012. 10. 19. 제1차 현장조사 및 신청인·관계기관 협의
 - 신청인 : 대체 용수로 시설 설치 요구
 - 피신청인 : 권익위 조정 결과에 따라 관계 기관이 대체 용수로 시설 설치
- 2012. 10. 31. 조정(안) 제시(위원회→신청인, 피신청인)
- 2012. 11. 1. 권익위 조정(안)에 대한 피신청인의 수용의사 접수(피신청인→위원회)
- 2012. 11. 1. 권익위 조정(안)에 대한 신청인의 수용의사 접수(신청인→위원회)
- 2012. 11. 8. 제2차 현장조사 및 조정안에 대한 신청인 입장 재확인
- 2012. 11. 20. 현장조정회의 개최를 통한 조정 성립

나. 제1차 현지조사

- 신청인 거주 마을 농경지 피해사실 확인 및 신청인 요구 및 피신청인 주장 확인
 - 새도랑천의 구조와 인근 개발현장 및 증산마을 농경지 위치 관계상으로 볼 때 염분으로 오염된 농업용수의 유입으로 농경지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보임
 - 각 기관간 책임소재와 관련한 의견이 대립되어 있으므로, 기관간 추가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 제시 요구

다. 제2차 현지조사

- 제2차 현지조사를 통해 각 기관간에 협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해소 방안에 대하여 신청인과 협의하여 최종 조율
 - 각 기관이 연대하여 증산마을 농경지에 맑은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대체 농업용수로 설치

7 조정 (합의) 결과

가. 조정 · 합의 최종결과

- 우리 위원회에서는 2차례의 현지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피신청인 1은 인근 ○○천으로부터 맑은 농업용수를 공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점, 피신청인 2는 인근 지역에서 대규모 신도시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염분을 발생시킨 직접적 책임이 있는 점, 피신청인 3은 새도랑천을 유지 · 관리하는 기관으로 정상적인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해 새도랑천을 정상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각 기관간에 연대하여 대체 농업용수로를 설치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였고
- 피신청기관은 우리 위원회의 대안 제시 방안을 수 차례에 걸쳐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예산분담 비율을 정하고, 신청인이 이를 수용하여 우리 위원회가 현지조정회의를 통해 조정서를 작성하고 조정 합의함

나. 위원회 조정 · 합의문

- (1)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이 거주하는 증산마을 농경지에 맑은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양산천의 용수를 수문을 통해 유입시켜 양수장까지 자연 유하가 가능하도록 대체 용수로로 설치하기로 한다.
- (2) 피신청인들은 대체 용수로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를 2013년도 예산에 각각 편성하고, 피신청인 3은 2012. 12. 31.까지 관련 설계용역 완료 후 2013. 3. 31.까지 대체 용수로 설치 공사를 완료한다.
- (3) 대체 용수로 설치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추정 공사비 470,000,000원 이내)은 피신청인 1이 17%, 피신청인 2가 50%, 피신청인 3이 33%씩 각각 부담한다.
- (4) 대체 용수로 설치와 관련한 설계, 시공 및 준공 후 시설물 유지 관리는 피신청인 3이 담당한다.
- (5)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시행하는 대체 용수로 설치 사업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㉘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가. 신청인-피신청인 수용 및 이행여부

- 현장조정회의 개최 후 피신청인 3이 2012. 12월말 설계를 완료하였고, 2013. 1월말 공사 발주를 하여 2013. 3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

나. 시사점

- win-win 해결의 모범 제시
신청인을 비롯하여 267명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각 기관간 이견 대립을 적극 조정·중재하여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끌어냄으로써 장기간 소요될 수 있었던 집단 민원을 원만히 해결해 이해당사자 모두 win-win 하는 결과 도출
- 직·간접 책임에 대한 연대 책임을 부여한 사례
농업용수 오염 유발의 원인과 관련하여 직접적 책임이 없더라도 간접적 책임이 있다면 관련 기관은 모두 다소의 책임을 부담하여 민원을 해소할 필요가 있고, 기관간 적극 협의를 통해 민원해소 방안을 마련한 사례

- 집단 민원에 대한 조정자로서의 우리 위원회 위상 제고
신청인(농민), 지자체, 공공기관 간의 갈등 사안에 대하여 적극 개입하여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기관 간 갈등의 조정자로서의 우리위원회 역할 및 위상 제고

양산 증산마을 '염분 고통' 마침표

권익위, 기존 수로 폐쇄... 새 농업용수 공급 중재

농업용수에 염분이 섞여 피해를 주장해온 양산시 물금읍 증산마을 농민들의 고통이 마침내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물금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염분 섞인 물이 유입돼 농작물 피해를 보는 이 마을에 새로운 농업용수를 공급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권익위원회는 20일 오후 양산시청 회의실에서 양산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증산마을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증산마을의 기존 수로를 폐쇄하고 인근 양산천

에서 깨끗한 농업용수를 공급하도록 중재했다.

양산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는 다음 달까지 대체 용수로 설계를 마치고 내년 3월까지 새로운 농업용수를 만들기로 했다.

그동안 벼와 원예작물을 주로 재배하는 증산마을 50여 농가는 기존 새도랑천 수로에서 82ha 농경지에 필요한 농업용수를 공급받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3월부터 인근 물금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염분이 섞인 침출수가 유입돼 농사에 차질을

빚었다.

주민들은 대체 용수로 설치 등을 요구했지만 책임소재와 시설 관리권 등에 대한 기관들 간 입장 차로 해법을 찾지 못하자 지난 5월 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한 정현용 상임위원은 "수 개월동안 농업용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은 증산마을 주민들이 여러 기관의 협조로 다시 맑은 농업용수를 사용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채용 기자〉

물금 증산마을 '염분 섞인 물' 농사 피해

권익위, 새 수로 설치 용수 공급 중재

국민권익위원회가 개발사업으로 염분 섞인 물이 유입돼 농작물 피해를 보는 경남 양산시 물금읍 증산마을에 새로운 농업용수를 공급하도록 했다.

권익위원회는 20일 양산시청 회

의실에서 양산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증산마을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증산마을의 기존 수로를 폐쇄하고 인근 양산천에서 깨끗한 농업용수를 공급하도록 중재했다.

양산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는 다음 달까지 대체 용수로 설계를 마치고 내년 3월까지 새로운 농업용수를 만들기로 했다.

벼와 원예작물을 주로 재배하는

증산마을 50여 농가는 기존 새도랑천 수로에서 82ha 농경지에 필요한 농업용수를 공급받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3월부터 인근 물금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염분이 섞인 침출수가 유입돼 농사에 차질을 빚었다.

주민들은 대체 용수로 설치 등을 요구했지만 책임소재와 시설 관리 등에 대한 기관들 간 입장 차로 해법을 찾지 못하자 지난 5월 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수천기자 isc@



권익위, '염분 고통' 농촌마을에 새 농업용수 공급

[2012-11-20 14:10 최병길 기자 (choi21@yna.co.kr)]

(양산=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개발사업으로 염분 섞인 물이 유입돼 농작물 피해를 보는 경남 양산시 물금읍 증산마을에 새로운 농업용수를 공급하도록 했다.

권익위원회는 20일 오후 양산시청 회의실에서 양산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증산마을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증산마을의 기존 수로를 폐쇄하고 인근 양산천에서 깨끗한 농업용수를 공급하도록 중재했다.

양산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는 다음 달까지 대체 용수로 설계를 마치고 내년 3월까지 새로운 농업용수로를 만들기로 했다.

벼와 원예작물을 주로 재배하는 증산마을 50여 농가는 기존 새도량천 수로에서 82ha 농경지에 필요한 농업용수를 공급받아 왔다.

그러나 지난 3월부터 인근 물금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염분이 섞인 침출수가 유입돼 농사에 차질을 빚었다.

주민들은 대체 용수로 설치 등을 요구했지만 책임소재와 시설 관리권 등에 대한 기관들 간 입장 차로 해법을 찾지 못하자 지난 5월 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메디컬투데이 news wave 뉴스웨이브 news 1 공감코리아 중부매일

권익위, 양산 증산마을 농업용수로 설치 요구 집단민원 해결

[2012-11-20 15:10:57 안상준 기자 (lgnumber1@mdtoday.co.kr)]

개발사업으로 염분오염된 수로 폐쇄하고, 신규 개설토록 중재

[메디컬투데이]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증산마을에 있는 새도랑천에 인근 물금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염분 유입으로 농작물 재배에 어려움을 겪어온 농민들의 고충이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20일 양산 증산마을 농업용수로 설치 요구 집단민원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여러 차례의 현장조사와 실무 조정 협의를 통해 20일 양산시청 소회의실에서 마을 주민들과 나동연 양산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정헌율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인근 지역에 있는 양산천에서 깨끗한 농업용수를 끌어와 증산마을 농경지로 연결하는 대체 용수로를 설치토록 중재했다.

이를 위해 양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는 내달까지 대체 용수로를 만들기 위한 설계용역을 마친후, 내년 3월까지 대체 용수로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증산 마을은 벼와 원예작물을 주로 재배하는 농촌지역으로 새도랑천의 용수를 사용해 작물을 재배하는데, 올해 3월부터 인근에 있는 물금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인해 염분성분의 침출수가 유입되면서 농작물 재배에 지장이 있었다.

마을 주민들은 대체 용수로 설치 등 양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련 기관에 수차례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요구를 했지만, 책임소재와 시설 관리권 등에 대한 기관 간 입장차로 해결을 하지 못하자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한 정헌율 상임위원은 "수 개월동안 농업용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은 증산마을 주민들이 여러 기관의 협조로 다시 맑은 농업용수를 사용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부산일보

2012년 11월 22일
10면 (지역)

양산신도시 공사장 유출 염분 농사피해 대체용수로 건설 합의

시·LH·농어촌공사 사업비 분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경남 양산신도시 3단계 공사장에서 흘러나온 염분으로 인한 농민 피해(본보 10월 10일자 10면 보도)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 용수료가 설치된다.

경남 양산시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LH와 한국농어촌공사, 양산시,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산신도시 3단계 공사장에서 흘러 나온 염분 피해 예방을 위한 대체 용수료를 건설하기로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3단계 공사장 인근인 물금읍 증산마을 앞을 흐르는 '새도랑천'이 염분에 오염돼 인근 농작물의 생육에 큰 지장을 주고있다는 주민들의 불만에 따른 것이다. 새도랑천은 증산마을 50여 농가, 82ha 농경지에 농업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새로 건설될 대체 용수로 양산천에서 증산취수장까지 약 1km로 5억 원 가량이 투입된다. 사업비는 LH 50%, 농어촌공사 33%, 양산시 17%를 각각 분담하며, 공사는 늦어도 내년 3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대체 용수료가 증산마을 주민들과 LH간 오랜 염분 분쟁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동안 염분으로 인한 영농피해 보상 문제는 아직 진행 중이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수질 및 토양분석 작업 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 보상 문제가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고경열 증산마을 이장은 "대체 용수로 개설은 고무적이지만, 아직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분쟁 조정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남경 기자 nkback@

공장 이전에 따른 지방투자보조금 지급

민원번호 : 2CA-1210-086804 (산업농림환경민원과, 정병학)

〈민원개요〉

신청인이 충남 천안시 일원에 통합생산공장을 건립하기로 하여 충청남도 및 충남 천안시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약정에 따라 지방투자보조금 30억 원을 지원받기로 하였으나 충남 천안시가 총 15억 원만 지원하고 추가적인 지원은 곤란하다고 한 것에 대하여 충청남도과 천안시의 보조금 비율을 조정하고 천안시가 2013년까지 3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해결

① 당사자

- 신청인 : 충남 천안시 ○○구 ○○면 ○○리 297-1 ○○ 대표이사 ○○○
- 피신청인 1 : 충청남도지사
- 피신청인 2 : 충청남도 천안시장

② 민원내용

- 신청인이 충남 천안시 ○○구 ○○면 ○○리 일원에 통합생산공장을 건립하기로 하여 피신청인 1 및 피신청인 2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약정에 따라 관련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최대한도의 지방투자보조금을 지원받기로 하였으나 피신청인 2가 총 15억 원만 지원하고 추가적인 지원은 곤란하다고 하니 이는 약정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당한 처분이며, 이로 인해 기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 이를 해결해 달라.

③ 피신청인 등 의견

가. 충청남도지사

신청인과 협의·약정한 지방투자보조금은 기업유치활동에 대한 행정의 신뢰적 차원

에서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해 천안시와의 지원 비율도 50:50으로 조정하였고 이미 2012년도 예산에 15억 원을 반영하였다.

나. 충청남도 천안시장

신청인은 수도권 이전기업은 아니지만 수도권 이전기업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15억 원 이내로 지원협의를 하였고, 2010. 7. 29.과 10. 7.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대상 업체 수요 제출 시, 신청인과 합의 후에 신청인이 2011년 15억 원의 보조금을 신청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750백만 원이 지급된 상태로서 충청남도가 지방투자보조금을 30억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오기는 하였으나 신청인의 보조금 신청서가 문서로 발송[천안시 ⇨ 충청남도, 15억 원, ○○시 기업지원과-17703(2011. 12. 20.)]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시가 지원 금액을 변경하여 다시 신청하기는 현 상황에서 불가능하다.

④ 주요 쟁점사항

- 투자보조금 30억원 지원
 - 투자 양해각서 체결 시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이 없었고, 다만 법에서 정한 최대한도의 지원을 해주기로 구두로 약속
- 예산부족
 - 천안시는 신청인이 보조금 신청 당시 관련 지원 예산이 부족하여 신청인과 협의 후 15억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

⑤ 갈등 분석

가. 민원발생배경 및 주요사실관계

- 유리병 및 식기를 생산하는 신청인이 충남 연기군 소재 본사 및 군포공장(경기 군포시), 보령공장(충남 보령시) 등을 충남 천안시 ○○구 ○○면 ○○리 297-1 외 8필지의 토지로 통합공장을 신설하기로 하고 이전하면서 피신청인 등과 투자협약 체결

- 신청인과 피신청인 등은 통합공장을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중 30억 원을 지방 투자보조금으로 지원(충청남도:천안시=30:70)하기로 협의하였으나, 이후 보조금 지원에 대한 행정처리 과정에서 총 지원금을 충청남도는 30억 원, 충남 천안시는 15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상호 이견 발생
- 2011. 12. 신청인이 충남 천안시의 요구에 따라 지방투자보조금을 15억 원으로 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7억 5천만 원이 지급 처리됨
- 신청인의 이의제기에 따라 신청인과 피신청인 등이 협의하여 보조금은 30억 원, 지원비율은 50:50으로하기로 결정하고 충청남도는 관련 예산 15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충남 천안시는 2011년도에 15억 원으로 보조금 신청이 있었고 일부가 지급되었으므로 보조금 지원 규모의 변경이 불가하다는 입장
- 이에 신청인은 당초 약속대로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아 통합공장의 이전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고 있고 기업경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약속을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하며, 위원회의 조정 및 해결방안 모색을 요청

나. 조정 목표

- 이 민원 공장의 통합 이전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산업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상생방안을 모색하고, 공공갈등 해소를 통해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가 Win-Win하는 대안적 조정방안 마련
- 특히, 기업고충민원에 대한 적극적 해결 노력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 위원회의 위상 정립 및 제고 효과 구현

6 갈등해결과정

가. 진행과정 개요

- '12. 11. 15. : 현장조사 및 위원회 조정방안 협의 (1차)
 - ※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을 위한 대승적 협조 요청
- '12. 11. 30. : 피신청인 의견조회 및 위원회 조정방안 협의 (2차)
 - ※ 이 공장의 이전 설치를 위한 보조금 지원방안에 대한 기본적 합의 도출

- '12. 12. 4. : 위원회 조정(안) 협의 (3차)
※ 상세한 조정(안)에 대한 신청인 및 각 기관의 의견 조희
- '12. 12. 12. : 출석조사 및 위원회 조정(안) 협의 (4차)
※ 신청인 및 각 기관의 의견수렴을 통한 최종적 조정(안) 도출
- '12. 12. 21. : 출석조사 및 위원회 조정(안) 협의 (5차)

7 조정 (합의) 결과

가. 조정 · 합의 최종결과

- 위원회가 천안시의 재정부담이 과중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충청남도과 조율한 결과 충청남도가 보조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조정하고, 천안시가 2013년 추경 을 통해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3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함

나. 위원회 조정 · 합의문

1. 신청인과 피신청인 등은 행정의 신뢰회복과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투자보 조금과 관련된 제반 문제에 대해 원만히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본 조정의 내용을 이행하기로 한다.
2. 피신청인1 및 피신청인2는 2012. 5. 23.의 협의결과 및 2012. 6. 14. 피신청인1이 통보한 '비수도권기업 이전보조사업 확정예산 통지 및 보조금 신청 안내(기업지원 과-3833)'의 내용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원할 보조금 예산 30억 원에 대하여 피신 청인1과 피신청인2가 분담할 지방투자보조금의 비율을 당초의 30:70에서 50:50 으로 변경하여 각각 15억 원씩을 지원하기로 한다.
3. 피신청인1 및 피신청인2는 신청인에 대한 지방투자보조금이 2013까지 지원 완료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4. 신청인은 지방투자보조금을 당초의 목적대로 성실히 집행하며, 피신청인2가 기 지급한 7억5천만 원 이외 나머지 보조금 신청 전에 기업의 이전 공사 등과 관련 하여 지방투자보조금 채권 가압류를 해제한다. 신청인은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지방투자보조금에 대한 이행보증증권을 피신청인2에게 제출한다.

5. 신청인 및 피신청인 등은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이후, 민원을 제기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다.

⑧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가. 신청인-피신청인 수용 및 이행여부

- 신청인 추가적인 보조금 신청 전에 재산 상 압류 등을 모두 해제하기 위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 천안시는 충청남도에 보조금 지원 요청과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나. 시사점

- 중소기업의 이전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원으로서 이 문제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고, 중소기업의 생산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활동과 지원정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었으나
- 빠른 시간 내에 이 민원 공장의 통합 이전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산업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상생방안을 모색하고, 공공갈등 해소를 통해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가 Win-Win하는 대안적 조정방안 마련

제 4 장

주택 · 건축민원 조정사례



- ◇4년 끈 우동 주택재개발 민원 해결
- ◇제2경인고속도로변 아파트 방음벽 설치
- ◇올림픽공원 내 경륜·경정장 휴관일 문화교실로 활용



4년 끈 우동 주택재개발 민원 해결

민원번호 : 2CA-1201-067959 (주택건축민원과, 정무도)

<민원개요>

부산광역시 및 부산 해운대구청장이 우동 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한 사업시행인가 시 위 정비구역에 접한 우동천 하천구역에 포함된 사유지 29필지를 조합에서 일괄 매수 및 지장물을 철거한 후 하천공사를 시행하도록 사업시행인가 조건을 부여하여 부담이 대폭 늘어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운 조합원들이 사업시행인가 조건의 취소를 요구하는 집단민원 제기한 바, 하천공사는 해운대구청이 비용을 부담해 시행하고 건축물 소유자와 조합 간 매입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조합이 해운대구청장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을 의뢰하기로 조정하여 오랫동안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온 249명의 조합원들의 고충 해결

① 당사자

- 신 청 인 : 우동 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
- 피신청인 : 부산광역시장(피신청인 1), 부산 해운대구청장(피신청인 2)

② 민원내용

- 피신청인이 2007. 10. 22. 우동 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한 사업시행인가 시 위 정비구역에 접한 우동천 하천구역에 포함된 사유지 29필지(면적 : 1,111㎡)를 조합에서 일괄 매수 및 지장물을 철거 후 하천공사를 시행하도록 조건을 부여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이 곤란하므로, 위 사업시행인가 조건의 취소를 요구

③ 피신청인 등 의견

가. 부산광역시장(피신청인 1)

- 이 민원 정비사업에 따른 부지 조성 및 도로의 설치에 우동천 하천기본계획에 의한

홍수위, 여유고 등을 감안하여 이 민원 정비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포괄적 내용으로, 조합에서 토지 및 지장물을 매입하여 하천공사를 시행하도록 한 의견이 아님에 따라 11. 조건의 취소 여부는 피신청인 2가 판단할 사항이다.

나. 부산 해운대구청장(피신청인 2)

- 하천구역에 포함된 지장물을 철거하지 않고 이 민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옹벽의 설치 불가능하므로,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을 조합에서 우선 매수 및 철거하여 사업을 시행하되, 피신청인 2가 향후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를 조합으로부터 감정평가액으로 재매입 후 하천공사를 시행하는 조건으로의 변경은 가능하나, 11. 조건의 전체 취소는 불가능하다.

4 주요 쟁점사항

- 우동천 하천구역 정비사업 시행 주체 및 비용 부담
- 사업시행인가 조건의 변경 가능여부

5 갈등 분석

가. 민원발생배경 및 주요사실관계

- 우동 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한 사업시행인가 시 위 재개발 정비구역에 접한 우동천 하천구역에 포함된 사유지를 조합에서 매수 및 지장물을 철거하여 하천공사를 시행하도록 한 조건을 취소 요구
 - ※ 우동천 하천구역 편입 사유지 : 29필지(면적 : 1,111㎡, 336평)
- 우동천 하천구역에 편입된 사유지를 조합에서 매입하여 하천공사를 시행할 경우 조합원들의 부담이 가중되어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곤란
 - 우동천 하천구역의 편입 토지 및 하천공사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약 20억원)의 부담이 가중되어 재개발정비사업이 4년 이상 답보 상태
 - ※ 조건을 취소(또는 변경)하지 않을 경우 249명의 조합원이 약 1,000만원의 비용 부담

- 하천구역의 편입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의 협의 매수에 불응 시 토지 수용 또는 사용권한이 조합에서 그 절차 이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 사업시행인가 조건을 취소하여 내 집 마련을 위한 조합원들의 부담 경감 및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이 가능하도록 조치

나. 조정 목표

- 조합 및 피신청인의 역할을 분담(조정)하여 우동 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정상적 추진 방안을 모색
- 우동 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조건을 적정하게 변경하여 조건 변경에 따른 피신청인의 부담 최소화
- 조합원들의 추가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

6 갈등해결과정

- '12. 1. 12. : 피신청인 1, 2 의견청취
 - ※ 우동 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 조건 취소 방안
- '12. 2. 1 : 위원회 중재 안 협의(1차)
 - ※ 참석 : 조합(총무이사), 피신청인 2(건축과, 건설과)
- '12. 2. 6. : 위원회 중재 안 협의(2차)
 - ※ 참석 : 조합(총무이사), 피신청인 2(건축과, 건설과)
- '12. 2. 7. : 제1차 현장조사 및 관계자 의견청취
 - ※ 참석 : 주택건축민원과장, 권익위 조사관, 우동 1구역 조합장 및 총무이사 피신청인 1(하천관리담당관실 2명), 피신청인 2(건축과 2, 건설과 2)
- '12. 2. 8. : 조정서(안) 협의(위원회 → 조합, 피신청인 1, 2)
 - ※ 조합 및 피신청인 1, 2 위원회 중재안에 동의

7 조정 (합의) 결과

가. 조정·합의 최종결과

- 정비구역과 하천구역의 경계선에 설치된 콘크리트 옹벽은 조합이 설치
- 하천구역에 편입되는 건축물은 조합이 매입하되, 건축물 소유자가 토지도 같이 매입 해주기를 원하면 조합이 우선 매입
- 해운대구청은 사업 시행 전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조합에서 토지를 매입할 당시의 지목으로 평가한 가격을 조합에 지급하고 해당 토지를 재 매입
- 하천공사는 해운대구청이 비용을 부담해 시행하고, 건축물 소유자와 조합간 매입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조합이 해운대구청장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을 의뢰

나. 위원회 조정·합의문

○ (조 합)

- 조합은 우동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과 하천구역의 경계선에 설치되는 콘크리트의 옹벽을 우동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부합되게 조합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하기로 한다.
- 조합은 하천구역에 편입되는 건축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매입하여 철거하고, 철거되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토지 매입을 원할 경우 조합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 매입하기로 한다. 다만, 옹벽의 설치에 저촉되지 않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부산 해운대구청장이 하천사업 시행 시 보상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 조합은 하천구역에 편입되는 건축물 등의 매입을 위한 건축물소유자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피신청인 2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절차의 이행을 의뢰하기로 한다.

○ (부산광역시장)

- 부산광역시장은 2007. 10. 22. 우동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한 사업시행인가 시 부여한 11.의 조건을 변경하기로 한다.

○ (부산 해운대구청장)

- 부산 해운대구청장은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를 매입하여 우동천의 하천 공사를 직접 시행하고, 조합에서 우선 매입한 토지는 하천 사업을 시행하기 전 조합의 토지 매입 당시 지목으로 평가한 감정액을 조합에 지급하고 재매입하여야 하며, 조합이 건축물의 수용 절차를 의뢰할 경우 이를 성실히 이행한다.

⑧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가. 신청인-피신청인 수용 및 이행여부

- 하천공사는 해운대구청이 비용을 부담해 시행하기로 사업시행인가 조건 변경
- 중단되었던 재건축사업이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 중

나. 시사점

- 우리 위원회의 조정으로 4년 이상 해결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은 249명의 우동1구역 조합원들이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내 집 마련을 위한 서민들의 큰 걸림돌이 해결되어 그 의미가 매우 크다.



권익위, 부산 재개발정비사업 장기민원 해결

[2012-02-16 14:40 조정호 기자]

부산 해운대구 우동 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는 16일 오후 김영란 위원장 주재로 해운대구 우2동주민센터에서 우동 1구역 주택재개발조합장, 배덕광 해운대구청장, 부산시 건설방재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합의안을 마련했다.

우동 1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은 정비구역에 인접한 하천에 포함된 사유지 1천111㎡를 한꺼번에 사들여 지장물을 철거하고 하천공사를 하는 조건으로 부산시와 해운대구청으로부터 2007년 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비용문제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지자 이 같은 인가조건이 부당하다며 지난 1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가 중재에 나서 조합은 정비구역과 하천구역의 경계선에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하고 하천구역에 편입되는 건축물을 사들이기로 했다.

대신 해운대구는 사업 시행 전 감정평가를 의뢰해 조합에서 토지를 매입할 당시의 지목으로 평가한 가격을 조합에 지급하고 해당 토지를 재매입해주기로 했다.

합의서에 따라 하천공사는 해운대구가 비용을 부담해 시행하고 건축물 소유자와 조합 간 매입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조합이 해운대구청장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을 의뢰하기로 했다.

직접 민원현장을 방문하고 조정회의를 주재한 권익위 김영란 위원장은 "이번 중재로 오랜 기간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온 249명의 조합원들의 고충이 해결돼 기쁘다"고 말했다.

관련보도자료

연합뉴스

김영란위원장, 부산 민원현장 방문



(부산=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이 16일 사유지 매수문제로 난항을 겪은 부산 해운대구 우동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현장을 방문, 민원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 제공 >> 2012.2.16.

관련보도자료

국민권익위, 부산 재개발 민원 해결



(부산=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왼쪽 세 번째)이 16일 부산 해운대구 우2동 주민센터에서 우동1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원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합이 하천 편입 토지를 매입한 후 해운대구청이 이를 재매입하기로 하는 합의를 성사시킨후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관련보도자료

국제신문

2012년 02월 17일
07면 (사회)

4년 끈 우동 재개발 권익위서 갈등 중재

위원장, 어제 조정회의 주제
지자체-조합 합의안 도출
“고충 해결·사업 탄력 기대”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

부산 해운대구 우동 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묵은 과제를 해결하고 속력을 붙일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오후 해운대구 우2동 주민센터에서 김영란 위원장 주재로 조정위원회를 열고 우동 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 인가 조건 변경에 대한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합의를 마쳤다.

이 자리에는 조정 당사자인 우동 1구역 주택재개발조합장, 부산시 건설방재관, 배덕광 해운대구청장이 참석했다.

국민권익위와 해운대구에 따르면 2007년 10월 우동 1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은 사업 인가 조건으로 정비구역과 접해 있는 우동천 하천정비기본계획 부지에 포함된 사유지 29필지(면적 1111㎡)를 조합이 일괄 매입해 지장물을 철거하고 하천 정비공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조합 측은 지난 1월 국민권

익위에 “하천 정비구역에 포함된 사유지와 지장물을 매입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 재개발 사업 진행이 어렵고, 소유주들이 땅과 건물을 팔지 않으려 하지만 정비구역이 아니라 강제 매입이 불가능하다”며 정비사업 시행 인가 조건을 취소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이날 열린 조정회의에서 국민권익위는 “하천 정비구역에 포함된 사유지는 구청이 매입해 정비하고, 건축물은 조합이 매입해 철거하라”며 “만약 건축물 소유주가 토지도 함께 매입해 주기 원하면 조합이 우선 매입한 뒤 구청이 재매입하고, 건축물 소유주와 조합 간 매입 협의가 원활하지 않으면 구청이 이후 수용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당초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건이 완화돼 조합에 유리한 조정이 나온 것이다.

조정회의를 주재한 김 위원장은 “이번 중재로 오랫동안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조합원 249명의 고충이 해결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동 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연면적 2만9196㎡에 21~28층짜리 아파트 7동이 들어서 581세대가 입주하게 된다. 현재 부지 안 75% 건물이 철거됐다.

〈국민권익 블로그〉

제2경인고속도로변 아파트 방음벽 설치

민원번호 : 2AA-1203-087717 (주택건축민원과, 정무도)

〈민원개요〉

광명역세권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LH공사가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광명역세권 아파트 2단지(754세대) 및 4단지(730세대) 입주 전까지 제2경인고속도로변에 방음벽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방음벽의 설치 위치 및 공사비의 부담에 관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도로공사 상호 의견 차이로 아파트 입주일로부터 15개월이 경과하도록 방음벽이 설치하지 않아, 아파트 주민들이 차량 소음에 노출되는 불편을 겪고 있어 조속히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방음벽 위치 및 설치비용 부담에 관해 상호 조정안을 제기 양보안을 이끌어 냄으로써 아파트 주민들을 소음 피해로부터 보호

① 당사자

- 신청인 : 경기 광명시 광명역세권 휴먼시아 4단지 아파트 주민 대표 ○○○
- 피신청인 : 한국토지주택공사(피신청인 1), 한국도로공사(피신청인 2)

② 민원내용

- 신청인은 광명역세권 휴먼시아 4단지 입주민으로서, 제2경인고속도로와 아파트 단지 사이 공간에 방음벽이 설치되지 않아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바,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차량 소음으로부터 아파트 주민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방음벽을 설치 요구

③ 피신청인 등 의견

가. LH공사

- 2010. 7. 7. 고속국도 길 어깨의 경계선에 방음벽을 설치하기 위하여 「고속국도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 비관리청 공사시행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한국

도로공사는 고속국도의 확장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길 어깨의 경계선에서 3.6m(1차로)를 후퇴한 위치에 방음벽을 설치하고, 20년 이후 예측 교통량을 적용한 소음 대책 및 방음벽의 설치계획을 제출토록 하는 등의 과도한 조건을 요구하여 방음벽을 설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므로 방음벽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음

나. 한국도로공사

- 제2경인고속국도의 장래 확장 계획을 감안하여 LH공사는 길 어깨의 경계선에서 3.6m를 후퇴하여 방음벽을 설치하여야 하고, 길 어깨의 경계선에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에는 제2경인고속국도의 확장 공사를 시행하거나 기타 고속국도의 유지관리 등에 따른 방음벽의 이설이 필요 시 그 철거 및 이설 비용을 부담하고, 20년 이후 예측 교통량을 적용한 소음 대책 및 방음벽의 설치 계획을 제출하는 등의 조건에 동의하여야 공사 시행을 허가할 수 있다.

4 주요 쟁점사항

- 방음벽 설치 위치 선정
- 소음기준 초과 여부
 - 방음벽 설치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 부담

5 갈등 분석

가. 민원발생배경 및 주요사실관계

- 방음벽의 설치 위치 등에 관한 분쟁으로 광명역세권 아파트 2, 4단지 주민들의 소음 피해가 심각
 - 경기 광명시의 교통소음 측정 결과, 주·야간 최대소음도가 소음환경기준을 약 714dB(A) 초과한 것으로 조사(203동 1105호, 404동 1004호)
- 교통소음 저감을 위해 제2경인고속국도 약 1km 구간【쓰레기집하장 측 임야(東)↔이원익 기념관(西)】의 방음벽 설치 또는 보완(기준)이 시급

- ※ 제2경인고속국도에서 4단지(730세대)까지의 최단거리는 약 60m, 2단지(754세대)까지는 약 262m 떨어진 상태
- 한국도로공사는 제2경인고속국도의 장래 확장계획 등을 반영하여 길 어깨의 경계선에서 3.6m를 후퇴하여 방음벽의 설치를 요구 (제1안)
 - 제2경인고속국도의 확장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과도한 조건을 요구하여 추가 공사비 소요(약 45억원) 등으로 수용하기 곤란(LH공사)
- 길 어깨의 경계선에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 고속국도의 확장 공사 등 시행 시 방음벽의 철거·이설비 등을 LH공사에게 부담 요구(제2안)
 - 20년 이후 예측 교통량을 적용한 소음 대책 및 방음벽의 설치계획은 수용 가능, 확장 공사에 따른 이설비 등 부담은 수용 불가(한국도로공사)
- ※ 피신청인 1, 2의 분쟁으로 아파트 2,4단지 아파트 입주민들의 입주일(2010. 12.)로부터 약 15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 방음벽 미설치(국토해양부에서 분쟁 조정을 시도 후 포기)

나. 조정 목표

- 방음벽의 설치 위치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피신청인 1, 2의 분쟁조정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방음벽의 설치를 유도
-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2, 4단지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

6 갈등해결과정

- '12. 3. 14. : 피신청인 의견 청취
- '12. 3. 26. : 의견 조정 및 중재(안) 협의(1차)
 - ※ 방음벽의 설치 위치, 방음벽의 설계·시공 및 비용부담 방안, 고속국도 확장 등 공사시행 시 방음벽 철거·이설에 따른 비용 부담 주체 등
- 2012. 7. 20. 제1차 현장조사 및 신청인·관계기관 협의
 - 신청인 : 산업단지(공장) 방음시설의 조속한 설치 요구
 - 피신청인 : 권익위의 조정 결과에 따라 향후 예산 확보와 산업단지(공장) 방음대책을 수립·시행 추진

- ※참석자 : 신청인(대표자 포함 주민 4명), ○○시(도시과 담당자 2명)
- '12. 3. 27. : 위원회 중재(안) 협의(2차)
 - ※ 신청인, 피신청인 1, 2
- '12. 3. 29. : 위원회 중재(안) 협의(3차)
 - ※ 신청인, 피신청인 1, 2
- '12. 4. 6. : 현장조사 및 중재(안) 협의(4차)
- '12. 4. 9. : 중재(안) 최종 협의(5차)
 - ※ 2,4단지 주민대표, 신청인, 피신청인 1, 2가 위원회의 중재 안에 동의

7 조정 (합의) 결과

가. 조정 · 합의 최종결과

권익위는 수차의 실무조정 협의와 현장조사와 통해 관계기관의 입장을 조율하고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해 1. 제2경인고속국도의 확장 계획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으므로 현재의 길 어깨 경계선(도로경계선)에 방음벽을 설치키로 하고, 2. 방음벽 설계와 시공은 한국도로공사가 주관해 즉시 설계용역을 발주하되 비용은 LH공사가 부담하며, 3. 설계 등의 과정에서 주민 측과 협의를 통해 미흡할 경우 이를 보완해 공사를 진행하도록 중재

나. 위원회 조정 · 합의문

이 민원 아파트의 주민대표 및 피신청인 1, 2는 다음과 같이 방음벽의 설치 공사에 합의하기로 한다.

- 이 민원 아파트의 주민대표 및 피신청인 1, 2는 제2경인고속국도 길 어깨 경계선에 방음벽의 설치 공사에 동의하기로 한다.
- 방음벽 설치를 위한 설계용역은 피신청인 1, 2의 협의 결과에 따라 피신청인 2가 주관하여 시행하되, 설계용역에 따른 비용은 피신청인 1이 부담하기로 한다. 다만, 피신청인 1, 2는 협약서를 체결하기 전 설계용역에 관한 협의를 완료하여야 하며, 협이가 완료되는 즉시 피신청인 2는 설계용역을 발주하기로 한다.

- 피신청인 2는 기본 및 실시설계 50% 및 80%의 진행 과정에서 이 민원 아파트의 주민대표 각 3명과 협의한 후 방음벽의 설치 기준에 미흡할 경우에는 피신청인 2는 피신청인 1과 협의하여 이를 보완하기로 한다.
- 피신청인 2는 설계도서를 납품받은 즉시 방음벽의 설치를 위한 공사 발주 및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피신청인 1은 공사비를 부담하기로 한다. 다만, 피신청인 2는 공사기간을 300일 이내로 정하여 공사를 발주하되, 이 민원 아파트 주민들의 소음피해 저감을 위한 공기단축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이 방음벽의 설치를 완료한 후 피신청인 2가 제2경인고속국도의 확장 공사를 시행하거나 기타 고속국도의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방음벽의 이설이 필요할 경우 방음벽의 철거 및 이설 비용에 관한 부담주체는 피신청인 2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한다.

㉘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가. 신청인-피신청인 수용 및 이행여부

- 방음벽 설치에 따른 공사설계 용역 발주(2012. 6월 ~ 10월)
- 방음벽 설치 공사 (2013년 상반기 예정)

나. 시사점

- 공공기관의 책임전가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위원회가 중재하여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아파트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권익위, 광명역세권 아파트 소음민원 해결

[2012-04-17 15:30 최종수정 2012-04-17 18:03 이복한 기자 (bhlee@yna.co.kr)]



(광명=연합뉴스)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광명역세권 휴먼시아 2,4단지 아파트 1천484가구 입주자들이 제기했던 소음 문제가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LH광명시흥직할사업단에서 휴먼시아 주민대표, LH,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영란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아파트 인근 제2경인고속도로에 방음벽을 설치토록 중재했다.

권익위는 또 비용은 LH가 부담하고 설계와 시공은 도로공사가 맡아 300일 이내에 방음벽 설치를 끝내도록 조정했다.

휴먼시아 아파트 1천484가구 입주자 6천여명은 인근 제2경인고속도로를 지나는 차량 소음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광명 아파트 1,484세대 15개월 소음민원 해결

[2012-04-17 15:30 한익재 기자 (ijhan@newspim.com)]

"도로공사가 방음벽 시공, LH공사는 비용 부담" ..권익위

[뉴스핌]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휴먼시아 2, 4단지 아파트 1,484세대 약 6천여명의 입주자들이 '10년 12월 입주 직후부터 15개월동안 제기했던 인근 제2경인고속국도의 교통 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17일 오후 LH공사 광명시흥직할사업단 2층 회의실에서 휴먼시아 2, 4단지 아파트 주민대표와 LH공사, 한국도로공사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김영란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아파트 인근 제2경인고속국도변에 방음벽을 설치토록 중재했다.

LH공사는 주민 입주 전까지 국도변에 방음벽을 설치해야 했지만,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와 공사비 부담과 방음벽 위치 등에 대한 이견으로 입주 1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방음벽을 설치해주지 않아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한 곳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제2경인고속국도가 향후 넓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계선에서 3.6m 떨어진 곳에 방음벽을 설치하고, 20년 후 교통량을 예측한 소음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LH공사는 구체적인 확장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도로에서 한 차선이나 떨어진 곳에 방음벽을 설치하고, 20년 이후 예측 교통량을 적용한 소음대책을 마련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해 갈등이 발생했다.

지난 달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실무조정 협의와 현장조사를 통해 ▲ 제2경인고속국도의 확장 계획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으므로 현재의 도로경계선 위치에 방음벽을 설치하되, ▲ 공사기간을 300일 이내로 정해 설계와 시공은 한국도로공사가, 비용은 LH공사가 맡고, ▲ 설계는 주민측과 협의해 보완해나가도록 중재했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국민권익위 김영란 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오랫동안 소음피해를 겪어온 약 6,000명 입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계기가 마련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기신문

2012년 04월 18일
06면 (사회)

제2경인고속도 인근 광명 아파트 소음민원 권익위 방음벽 권고

광명시 소하동 광명역세권 휴먼시아 2·4단지 아파트 1천484가구 입주자들이 제기했던 소음 문제가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LH광명시흥직할사업단에서 휴먼시아 주민대표, LH,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영란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아파트 인근 제2경인고속도로에 방음벽을 설치토록 중재했다.

권익위는 또 비용은 LH가 부담하고 설계와 시공은 도로공사가 맡아 300일 이내에 방음벽 설치를 끝내도록 조정했다.

휴먼시아 아파트 1천484가구 입주자 6천여명은 인근 제2경인고속도로를 지나는 차량 소음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광명=이재순기자 ljs@

경인일보

2012년 04월 18일
19면 (지역)

고속도로 소음피해 광명지역 권익위 중재 방음벽 설치키로

제2경인고속도로변에 위치해 있는 광명시 소하동 휴먼시아 2·4단지 아파트(1천484세대) 주민 6천여명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소음피해에서 벗어나게 됐다.

17일 아파트 주민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따르면 LH가 KTX 광명역 주변 역세권개발지구내에 휴먼시아 2·4단지 아파트를 신축, 지난 2010년 12월 입주를 마쳤다.

그러나 LH는 입주전 인근 제2경인고속도로변에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아 주민들이 입주후 15개월가량 차량소음에 시달려 오고 있다.

주민들은 입주후 광명시·LH·한국도로공사(이하 공사) 등에 방음벽 설치를 위한 민원을 제기했으나 LH와 공사간 공사비 부담과 설치위치 등의 이견으로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민원을 위원회에 접수하고, 그동안 협의를 촉구해 왔다. 결국 위원회가 중재에 나서 17일 방음벽 설치와 설계는 공사가, 설치비용은 LH에서 부담해 300일 이내에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조정했다.

설치장소는 도로경계선으로 협의하는 등 15개월째 끌여온 소음민원이 해결되게 됐다.

광명/이귀덕기자 lk d@kyeongin.com



광명시 소하동 휴먼시아 아파트 주민들 차량소음 고통에서 벗어나

[2012.04.17 14:54:26 기사수정 2012.04.17 18:42:31 안영찬 기자]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벽 없어 2년여간 고통(?)속에 살아

[앵커] 제2경인고속도로와 맞붙어 있어 2년 여 동안 소음피해로 고통을 겪었던 광명시 소하동 휴먼시아 아파트 입주민들의 고통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하고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안영찬기잡니다.

[리포트] 광명시 소하동 광명역세권에 소재한 휴먼시아 아파트, 이 아파트는 5개단지에 4천여세대가 거주하는 비교적 규모가 큰 아파트단지입니다. 그러나 지난 2010년말 입주 직후부터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와 맞붙어 있는 2단지와 4단지 1천500여세대 주민들이 방음벽이 없어 차량 소음으로 고통을 겪어온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만대에 이르는 차량때문에 더운 여름철에도 베란다 창문을 열어 놓지 못한채 생활했을 정도로 열악했습니다. 이에따라 주민들은 그동안 광명시와 한국도로공사, 그리고 LH공사측에 수십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메아리에 그쳤고 결국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고 해답이 나온 것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실무조정 협의와 현장조사등을 통해 방음벽을 설치할수 있도록 중재했고 공사기간을 300일이내로 정해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주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이연홍 고충처리국장입니다.

(인터뷰)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고충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직접 이해당사자들을 모아 놓고 합의로써 도출하고 있습니다". 경기방송 안영찬입니다.

국민권익위 광명 소음민원 해결

[2012-04-17 18:00 이복한 기자 (bhlee@yna.co.kr)]



(광명=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오른쪽 세번째)이 17일 경기도 광명시 LH사업단 회의실에서 광명역세권 2, 4단지 아파트 주민들의 소음피해 민원을 중재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12.4.17 << 국민권익위원회 >>

올림픽공원 내 경륜·경정장 휴관일 문화교실로 활용

민원번호 : 2CA-1206-266162 (주택건축민원과, 정무도)

<민원개요>

서울 송파구 방이동 스크린 경륜·경정장의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서울 송파구청장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경륜장 장외 매장시설 이전 방안 미제출'을 이유로 2차에 걸쳐 이를 반려하여 경륜·경정장이 휴업하는 매주 월요일 및 화요일에 경륜고객홀을 무료 문화교실로 이용하기로 한 회원 등 2288명이 국민권익위에 경륜고객홀의 사용승인서 교부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여 주민과 송파구청의 갈등이 증폭된 사안에 대해, 서울 송파구청장으로 하여금 스크린 경륜·경정장의 이전이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고 경륜고객홀의 임시사용승인 기간을 1년으로 정한 임시사용승인서를 공단에 교부하며 경륜·경정장이 휴업하는 매주 월요일 및 화요일에 경륜고객홀을 무료 문화교실로 이용하도록 조정하여 지역주민 집단민원과 기관간의 갈등 해결

① 당사자

- 신청인 : ○○○외 2,288명(신청인1),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신청인2)
- 피신청인 :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② 민원내용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은 2011. 1. 7. 피신청인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내용과 같이 서울 송파구 방이동 88-2 외 3필지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후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피신청인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경륜장 장외 매장시설 이전 방안 미제출'을 이유로 2차에 걸쳐 이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니 위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를 요구

③ 피신청인 등 의견

가.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 이 민원 건축물의 사용승인은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은 설계도서대로의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만으로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는 없으며, 현재 신청인 2가 추진하고 있는 경륜·경정사업에 관한 문제점 해소 대책이 송파구의회 및 구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될 경우 피신청인이 이 민원 건축물에 대한 사용 승인서를 교부할 계획으로 2011. 12. 30.자 및 2012. 5. 9.자 반려 처분을 철회한 후 신청인 2에게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없다.
- 신청인 1은 신청인 2가 2006.부터 무료로 운영하는 문화교실의 이용자로 피신청인이 이 민원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서의 반려 처분으로 이 민원 건축물을 이용할 수 없는 불편을 겪게 되자 민원을 신청한 것으로 그 불편사항의 해소 방안은 문화 교실의 운영주체인 신청인 2가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④ 주요 쟁점사항

- 장외 매장시설의 운영에 따른 주민불편 등 문제점 보완 대책 마련
- 스크린 경륜·경정장 휴업 일 경륜고객홀을 무료 문화교실로 활용

⑤ 갈등 분석

가. 민원발생배경 및 주요사실관계

- 피신청인으로부터 2011. 1. 7. 건축허가를 받은 내용과 같이 공사를 완료한 서울 송파구 방이동 88-2 외 3필지의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서의 반려 처분은 부당하니 사용승인서의 교부를 요구
 - 피신청인이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하지 아니한 '경륜장 장외 매장시설 이전 방안 미제출'을 이유로 2차에 걸쳐 사용승인신청서를 반려 처분
 - ※ 송파구의회 및 구민들이 스크린 경륜·경정장 입지를 반대(사행심 조장 및 교통 혼잡 등)한다는 이유로 신청인 2가 제출한 사용승인신청서를 반려 처분
- 신청인 2가 경륜장 장외 매장시설(스크린 경륜·경정장)의 이전 계획이 없는 상태

에서 이를 이전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 장외 매장시설을 이전하고자 할 경우에도 이전 대상 지역 주민들과 동일한 갈등이 예상되어 이전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 장외 매장시설의 운영에 따른 주민불편 등 문제점의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 현 장소에서 장외 매장시설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치

나. 조정 목표

- 장외 매장시설의 운영에 따른 주민불편 등 해소를 위한 보완 대책의 마련에 상당 기일이 소요되므로, 우선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을 처리
 - 장외 매장시설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신청인 2의 피해를 최소화
- 무료 문화교실(노래, 스포츠댄스, 한국무용, 서예)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보장하여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해소
 - ※ 장외매장시설이 휴업하는 월·화요일에 신청인 2가 무료 문화교실을 운영

⑥ 갈등해결과정

- '12. 7. 5. : 피신청인 의견 청취 (건축물 사용승인 방안 관련)
- '12. 7. 20. : 신청인 2 의견 청취 (위원회 → 신청인 2)
 - ※ 참석 : 국민체육진흥공단 사업실장 외 2 (내용 : 그간의 경위 등)
- '12. 7. 23. : 위원회 중재 안 협의 (위원회 → 피신청인, 신청인 2)
- '12. 8. 3. : 위원회 중재 안 협의(2차)
- '12. 8. 8. : 건축물 사용승인 관련 회의 개최(14:00)
 - ※ 송파구 도시관리국장,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본부장 외 2, 구의원(남창진)
- '12. 8. 28. : 현장조사 및 관계자 의견 청취
 - ※ 참석 : 주택건축민원과장 외 1, 피신청인(건축담당 외 1), 신청인 2(국민체육진흥공단 건설사업실장 외 1), 현장 확인 후 송파구 도시관리국장 면담
- '12. 8. 29. : 조정서 안 협의(위원회 → 피신청인, 신청인 1·2)
 - ※ 피신청인 및 신청인 1·2가 위원회의 중재안에 동의

7 조정 (합의) 결과

가. 조정 · 합의 최종결과

- 서울 송파구청은 스크린 경륜 · 경정장의 이전이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여 경륜고객 홀의 임시사용승인 기간을 1년으로 정한 임시사용승인서를 공단에 교부
- 대신,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역을 위한 지원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시행하고, 광역 지자체 중심으로 지원되는 레저세를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기초지자체의 지원 용도로 사용되는 적립금 비율 등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적극 노력

나. 위원회 조정 · 합의문

○ (신청인 1)

- 피신청인 및 신청인 2와 합의 내용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 (신청인 2)

가. 신청인 2는 경륜 · 경정사업에 따른 주민불편 등 제반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임시사용승인기간(1년)의 만료 전 그 절차를 이행하기로 함

- (1) 광역지자체 중심으로 지원하는 레저세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기로 함
- (2) 기초지자체의 지원 용도로 사용되는 적립금 비율 등이 확대될 수 있도록 「경륜 · 경정법 시행령」 제22조의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기로 함

다. 신청인 2는 2012. 7. 25.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위 '가'의 (1) 내지 (2)와 P2 주차장의 설치를 제외한 사항을 임시사용승인 기간 만료 전 이행하기로 함

라. 신청인 2는 2012. 5. 16. 피신청인과 '나눔과 봉사' 협약을 체결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기타 '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을 계속 시행하기로 함

○ (피신청인)

가. 피신청인은 건축물의 사용승인과 관련한 각과별 검토의견에 대하여 신청인 2가 2012. 7. 25. 제출한 조치계획을 위 '(1) 내지 (2)' 및 P2 주차장 설치를 제외한 사항을 수용하기로 함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 2가 위 '(1) 내지 (2)'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였을 경우 신청인 2에게 임시사용승인기간 만료 전 이 민원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기로 함

㉘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가. 신청인-피신청인 수용 및 이행여부

- 2013. 2. 임시사용승인서 교부로 건축물 사용

나. 시사점

- 집단민원과 기관간의 갈등에 대해 상호 타협과 양보를 통한 대안적 해결방안 제시를 통해 민원해소와 경륜·경정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 일부가 지역주민을 위한 지자체 사업으로 사용될 수 있어 상호 win-win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올림픽공원 스크린 경륜장, 휴관일엔 문화교실로

[2012-09-06 14:32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의 스크린 경륜장이 휴관일에는 문화교실 시설로 이용되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오후 송파구 방이동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공단의 경륜경정사업본부장과 송파구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중재했다.

서울올림픽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올림픽공원 내에 경륜고객홀을 증축한 뒤 구청에 사용 승인을 신청했으나, 구청은 사행심 조장과 교통 불편 등을 이유로 불허했다.

이에 따라 경륜장이 휴관하는 매주 월 화요일에 운영할 예정인 노래교실, 스포츠댄스, 한국무용, 서예 등 문화교실 이용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구청이 1년 동안 임시로 사용을 승인하고, 공단이 관내에서 사회복지 지원 사업을 전개하라고 중재했다. 이에 따라 경륜장 내에서 운영할 예정인 무료 문화교실은 예정대로 열릴 수 있게 됐다.

한편 권익위는 이날 오전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옴부즈만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 송파구청이 경륜장 1년 임시사용승인토록 해 민원 증재" / 권익위 소식

국민권익 2012.09.06 14:10

http://blog.daum.net/loveacrc/6030

올림픽공원 내 스크린 경륜장 휴관일(매주 월, 화)에 문화교실 변신
 "국민권익위, 송파구청이 경륜장 1년 임시사용승인토록 해 민원 증재"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에 증축한 경륜고객홀(스크린 경륜장) 건축물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의 중재로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약 2천여명의 주민들이 경륜장의 휴관일에 무료 문화교실로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올림픽공원 내에 스크린 경륜장을 운영하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경륜고객홀 증축을 위해 2011년 송파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완료한 후 사용승인을 신청했으나, 송파구청은 스크린 경륜·경정장의 운영에 따른 주민들의 사행심 조장과 교통 불편 등을 이유로 이전을 요구하며 사용승인신청서를 2차에 걸쳐 반려했고, 주민 불편 등 문제점 해소대책을 마련할 경우 사용승인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경륜장이 휴관하는 매주 월~화요일에 경륜고객홀에서 운영할 예정인 노래교실, 스포츠댄스, 한국무용, 서예 등 각종 무료 문화교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주민 2천 3백여명은 경륜고객홀에 대한 사용승인을 요구하며 지난 6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6일 오후 2시 정기청 상임위원 주재로 송파구 방이동 소재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신청인 대표를 비롯한 공단의 경륜경정사업본부장과 송파구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해 중재를 이끌어내 민원을 해결했다.

국민권익위의 중재에 따라 ▲ 이미 완공한 스크린 경륜·경정장의 이전이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해 서울 송파구청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 1년 동안 임시사용승인을 해주면 공단 측은 송파구 관내 사회복지시설 등을 지원하는 '나눔과 봉사'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계속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공단은 경륜·경정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 일부가 지역 주민을 위한 지자체 사업으로 사용될 있도록 ▲ 현재 광역지자체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는 레저세를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기초지자체의 지원을 위해 사용되는 적립금 비율 등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지방재정법」과 「경륜·경정법 시행령」의 개정 건의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이후 ▲ 송파구청은 1년간의 임시사용승인기간이 만료되기 전 공단의 제도개선 노력 여부에 따라 스크린 경륜·경정장의 정식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정기청 상임위원은 "경륜고객홀 사용승인과 관련한 주민들과 기관간의 갈등이 해결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에스비오 2012.09.06 16:12
 글 잘읽고 갑니다.

답글 | 신고

올림픽공원 내 스크린 경륜장 휴관일에 문화교실 변신



국민권익위원회 정기창 상임위원이 6일 오후 서울시 송파구 소재 국민체육진흥공단 14층 회의실에서 올림픽공원 내 스크린 경륜장의 휴관일에 무료 문화교실 이용에 대한 민원을 중재한 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올림픽공원 내 스크린 경륜장 휴관일에 문화교실 변신

제 5 장

도시 · 수자원민원 조정사례



- ◇원주 건등리 국도변 농경지 침수 방지 대책 마련
- ◇장수교차로 2차선 병목구간 6차선으로 확장
- ◇안성 원곡물류단지 주변 종중묘역 보존
- ◇우정혁신도시 병풍 옹벽 대신 녹지 조성
- ◇30년 개발이 묶인 부산 낙민동 학교시설부지 해제
- ◇당하지구 미개발용지 용도변경을 통한 개발 물꼬
- ◇고령 연리들 수박농가 피해 대책 마련
- ◇미사보금자리지구 내 한옥건축물 존치 및 보전
- ◇전주 만성도시개발지구 도로변 보행로 개설
-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보도 및 가로등 설치
- ◇주암댐 이설도로 노폭 확장 및 선형 직선화
- ◇청북지구 단독주택 피로티 설치로 주차난 해소
- ◇도로 선형 변경을 통해 폐쇄위기 공장 존속

원주 건등리 국도변 농경지 침수 방지 대책 마련

민원번호 : 2BA-1111-109582 (도시수자원민원과, 김영옥)

〈민원개요〉

강원 원주시 건등리 국도 주변 토지에 인근지역의 우수가 42번 국도변 우수관으로 집중적으로 유입되어 월류되면서 이 민원 토지가 침수되는 피해를 겪게 되자 신청인들은 우수관 확장 등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원주시와 흥천국도관리사무소, 농어촌공사 원주시 사간에 소관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여 주민들이 또 다시 침수피해를 우려 집단민원 제기하였고 권익위에서 현장조사 및 출석조사 등 수 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원주시는 42번 국도변 동경틀 지역 우수 및 아파트의 우수처리는 아파트 건축허가시 협의된 우수처리 사업 시행과 연계하여 자동차전용도로 옆을 활용하여 상류 방향으로 처리되도록 하였고, 흥천국도관리사무소는 42번 국도변 수로의 단면을 확장하고 법면을 정리하는 공사를 시행, 한국농어촌공사는 42번 국도변 수로와 합수되는 지점을 보강하고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확장 공사를 시행하도록 조정하여 주민 불편 해소

1 당사자

- 신청인 : ○○○의 7명
- 피신청인 : 원주시장(피신청인 1), 흥천국도관리사무소(피신청인 2), 한국농어촌공사(피신청인 3)

2 민원내용

- 농경지 주변 국도 개설 및 택지개발로 농수로에 유입되는 우수유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농경지 침수 피해가 발생하므로 근본적 대책 요구
- ※ '99. 12. 국도42호선(4차로) 개설이후 국도에서 유입되는 우수 및 '06. 8. 신구 휴엔하임 아파트, '08. 11. 문막 극동스타클래스 아파트 등이 건축되면서 아파트 우수관을 통한 우수가 민원 토지 옆 농수로로 과다 유입하여 농경지 침수

③ 피신청인 등 의견

가. 원주시장(피신청인 1)

-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유량의 증가에 따른 국도 42호선 남측 수로의 용량부족에 의한 것으로 이 수로를 교체하도록 농어촌공사에 요청하고, 문막사거리 동측에서 발생하는 우수는 인근 건등소하천으로 분산하여 방출하도록 대책을 수립할 예정

나. 홍천국도관리사무소장(피신청인 2)

- 국도개설 당시 농경지 침수피해는 없었으며, 국도 42호선 남측 수로의 용량부족에 의한 것으로 수로 확장공사를 위해서는 국도 42호선 남측 부체도로 부지를 활용하여야 하는 바, 이 부체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원주시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

다. 한국농어촌공사(피신청인 3)

- 최근 집중호우로 유량이 증가되고 인근 택지개발부지의 저류기능이 약화되어 농업용으로 설치된 국도 42호선 남측 수로에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유량이 집중되어 월류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해당 지역의 종합적인 치수계획을 관장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종합적인 치수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할 사안임

④ 주요 쟁점사항

- 국도개설 당시 농경지 침수피해는 없었으며, 국도 42호선 남측 수로의 용량부족에 의한 것으로 수로 확장공사를 위해서는 국도 42호선 남측 부체도로 부지를 활용하여야 하는 바, 이 부체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원주시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최근 집중호우로 유량이 증가되고 인근 택지개발부지의 저류기능이 약화되어 농업용으로 설치된 국도 42호선 남측 수로에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유량이 집중되어 월류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해당 지역의 종합적인 치수계획을 관장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종합적인 치수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할 사안이라는 의견으로 치수시설 설치 부담 주체에 대한 의견 대립

5 갈등 분석

가. 민원발생배경 및 주요사실관계

- 원주시 문막읍 건동리 이 민원 토지에 유입되는 우수 유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침수 피해 발생
 - 이 민원 토지 앞 수로관(800×500mm, 개거)에 42번 국도변에서 4개 흡관을 통해 우수 유입, 문막극동클래스(1200mm 흡관) 등 인근 아파트에서 우수 유입
- 1999년 국도개설 이래 이 민원 토지 인근에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건축되면서 저류지 기능을 했던 전답이 축소되어 집중호우로 인한 강수량 증가로 인해 우수관 용량을 초과하는 우수 유입
- 신청인들은 택지개발(아파트 건축)로 침수피해가 발생하였으니 아파트 우수관로 변경 또는 우수관로 확대 요구

나. 조정 목표

- 피신청기관간 역할분담(조정)을 통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건동리 일원 주민의 농경지 침수 피해 방지
- 지역의 특성, 환경의 보전과 관리, 방재 및 안전 등을 고려한 도시계획 및 개발 계획 유도
- 도로, 하천, 택지 등 각종 개발 행위 시 부문별 연계를 통한 토지의 효율적 이용 도모

6 갈등해결과정

- '11. 11. 10. : 1차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의견청취 및 논의
- * 참석 : 권익위 조사관, 신청인, 원주시, 홍천국도관리사무소,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

- '11. 12. 1. : 제2차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의견청취 및 논의
* 참석 : 권익위 조사관, 신청인, 원주시, 홍천국도관리사무소,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시사
- '12. 1. 3. : 제3차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의견청취 및 논의
* 참석 : 도시수자원민원과장, 조사관, 신청인, 원주시, 홍천국도관리사무소,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시사

7 조정 (합의) 결과

가. 조정 · 합의 최종결과

원주시는 42번 국도변 동경뜰 지역 우수 및 신구휴엔하임아파트의 우수처리는 아파트 건축허가시 협의된 우수처리 사업 시행과 연계하여 자동차전용도로 옆을 활용하여 상류 방향으로 처리되도록 하여 42번 국도변 수로에 우수의 유입을 차단, 홍천국도관리사무소는 42번 국도변 수로의 단면을 확장하고 법면을 정리하는 공사를 시행, 한국농어촌공사는 42번 국도변 수로와 합수되는 지점인 421-10구거를 보강하고 42번 국도변 수로로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문막읍 건등리 1337구거의 확장 공사 시행

나. 위원회 조정 · 합의문

○ (신 청 인)

신청인들 소유의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 1411등 일원의 국도42호선 남측 농경지(이하 '이 민원 농경지'라 한다)에 침수피해가 잦으니 대책을 수립하여 달라.

○ (원주시장)

문막사거리 동측 동경뜰 지역 및 신구휴엔하임아파트의 우수는 아파트 건축허가시 협의된 우수처리사업시행과 연계하여 기존수로 및 국도 42호선 남측 법면을 활용하여 상류 건등소하천 방향으로 방출되도록 한다.

○ (홍천국도관리사무소장)

국도 42호선 남측수로(문막극동스타클래스 ~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 421-10 구간)의 단면을 확장하고 법면을 정리하는 공사를 시행한다.

○ (한국농어촌공사)

국도 42호선 남측수로와 합수되는 지점인 강원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 421-10 구거를 보강하고 국도 42호선 북측 수로의 우수가 국도 42호선 남측 수로에 유입되지 않도록 국도 42호선 북측 수로인 문막읍 건등리 1337-9 구거의 확장공사를 시행한다.

⑧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가. 신청인-피신청인 수용 및 이행여부

- 구거정비 추진, 농경지 및 아파트 침수피해 방지 우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완료
- 수로 공사 완료, 법면(수로측) 정리 완료

나. 시사점

-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계획 하에 택지개발 및 치수방재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는데 그 의미가 있음
- 특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수차례 협의를 하면서 침수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관계기관 공동의 고민과 노력이 있었음

침수피해 민원현장 둘러보는 김영란 위원장

| 기사입력 2012-01-11 17:15



(서울=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가운데)이 11일 오후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건동리 42번 국도 인근 지역의 침수피해 현장을 방문해 시민들로부터 현황을 듣고 있다. 2012.1.11 << 국민권익위원회 >>

침수피해 민원 해결한 김영란 위원장

[2012-01-11 17:15]



(서울=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가운데)이 11일 오후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사무소에서 해마다 침수피해를 겪어온 건등리 국도 인근 지역에 관계기관이 빗물 차단과 수로확장 공사를 시행하는 중재안을 성사시킨 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2.1.11 << 국민권익위원회 >>

원주 건등리 ‘빗물침수’ 국민권익위가 해결

현장 조정회의 열어 보수공사 중재

근처에 지어진 아파트와 국도에서 빗물이 흘러들어 침수피해를 겪어온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 주민들의 오랜 민원이 해결책을 찾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11일 원주시 문막읍사무소에서 현장 조정회의를 열어 아파트에서 나온 빗물이 자동차전용도로 옆을 지나 건등천 방향으로 흘러들도록 원주시가 관련 공사를 하도록 중재했다.

또 권익위는 국도변 수로를 넓히고 인근 지역을 정리하는 공사는 흥천국도관리사무소가, 수로의 합수지점 보강과 건등리수로관 일부를 확장하는 공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맡도록 하는 중재안을 제시해 관계기관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건등리 주민들은 1999년 42번 국도가 개설되고, 마을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선 뒤 빗물이 마을로 흘러들어 해마다 침수 피해를 겪는데도 관계 기관들이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자 지난해 11월 권익위에 민원을 냈다.

박수혁 기자

11.8 X 7.7 cm



권익위, 원주 건등리 국도변 침수 방지 대책 중재

[2012-01-11]

국민권익위원회가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 국도 주변의 침수 방지 대책을 세우도록 중재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원주시 문막읍사무소에서 침수 피해 관련 집단 민원 조정 회의를 열고, 자동차 전용도로 옆 땅을 활용해 문막읍 건등리 국도 주변 사유지 8필지의 빗물을 건등천 방향으로 빼는 침수 피해 방지 대책을 원주시에 중재했습니다.

또, 흥천국도관리사무소는 국도변 수로를 넓히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수로의 합수 지점 보강과 건등리수로관 일부 확장공사를 맡도록 했습니다.(끝)

권익위, 원주 건등리 국도변 침수방지대책 중재

[20120111]

이웃한 아파트와 국도의 빗물이 집중유입되면서 해마다 침수피해를 겪어온 원주시 문막읍 건등2리 42번 국도 주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의 현장조정으로 빗물 유입의 일부 차단과 수로 단면 확장 등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올 전망이다.

민원이 발생한 건등리 소재 사유지는 총 8필지로, 지난 1999년 42번 국도가 개설된 이래 인근 지역에 아파트(택지개발)가 계속 건축되면서 국도와 아파트 일대로부터 유입되는 빗물이 넘쳐 침수피해를 겪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은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원주시와 흥천국도관리사무소, 농어촌공사 원주지사 등 관계기관들의 협의 부족으로 몇 년째 비슷한 피해가 반복되면서 해결이 되지 않자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권익위는 11일 오후 김영란 위원장 주재로 원주시 소재 문막읍사무소에서 지역주민들과 원주시와 흥천지방국도관리사무소, 한국농어촌공사원주지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해 동경뜰 지역과 신구 휴엔하임아파트에서 나온 빗물은 자동차전용도로 옆을 활용해 건등천 방향으로 유입되도록 원주시가 관련 공사를 하도록 중재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국도변 수로를 넓히고 인근 지역을 정리하는 공사는 흥천국도관리사무소가 맡고, 수로의 합수지점 보강과 건등리 수로관 일부의 확장공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맡는 중재안도 마련했습니다.

장수교차로 2차선 병목구간 6차선으로 확장

민원번호 : 2BA-1110-129043 (도시수자원민원과, 신중순)

〈민원개요〉

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하는 호남고속철도차량기지 지하차도(6차선)공사와 광주광역시에서 시행하는 하남산단 외곽도로(4차선) 장수교차로 공사 구간 사이(약85m)가 공사 구간에서 제외된 바, 기존 2차선 도시계획도로를 공사구간에 포함시켜 6차선으로 확장 개설 요구

① 당사자

- 신청인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수동 〇〇〇-〇 강〇〇외 5인
- 피신청인 : 철도시설공단(피신청인 1), 광주광역시장(피신청인 2)

② 민원내용

- 신청인들은 광주 광산구 장수동 〇〇〇번지 등 광주시 도시계획시설 대로1-19호선(이하 '대로1-19호선'이라 한다)변의 토지 소유자들로서, 대로1-19호선은 종래에 2차선으로 개설된 도로인데, 피신청인1이 시행하는 호남고속철도 차량기지건설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1'이라 한다)과 연계하여 대로1-19호선을 따라 지하차도 구간을 6차선으로 확장하기로 하였으나, 피신청인2가 추진 중인 하남산단외곽도로 개설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2'이라 한다)구간 내 장수교차로(4차선)와 연결구간 중 같은 동 〇〇〇-〇〇부터 〇〇〇-〇사이 약 85m구간(이하 '이 민원 구간'이라 한다)이 공사구역에서 제외되어 기존 2차선으로 남게됨
- 개통 후 병목현상 및 교통사고 위험 등 문제점이 발생되니 이 민원 구간을 사업구역에 포함하여 6차선으로 확장 요구

③ 피신청인 등 의견

가. 철도시설공단

- 이 민원 구간은 철도차량기지 사업구역 외의 구간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권자로서 도로개설 의무가 있는 광주광역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광주광역시장

- 이 민원 구간은 하남 장성·삼계간 광역도로(대로1-19호선)중 일부 구간이나 2009년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당분간 추진할 수 없고, 이 민원 사업 2는 이 민원 사업 1를 위한 입지 및 실시계획고시 이전부터 시행중인 선행사업으로 설계완료된 후 피신청인1이 후행사업으로 이 민원 사업 1을 진행하였고, 차량기지사업 실시계획 사전협의 시 문제점을 예견 국토해양부와 피신청인1에 건의한 바 있으며, 호남고속철도차량기지 입지에 따른 주변도로망에 대한 개선대책이 불충분하므로 피신청인1에서 공사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주요 쟁점사항

- 병목구간 발생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및 체증 문제
 - 철도시설공단이 대로1-19호선을 따라 지하차도 구간을 6차선으로 확장하기로 하였으나, 광주광역시에서 주관하는 하남산단외곽도로 장수교차로(4차선)사이에 있는 약 85m의 2차선 도로만 공사구역에서 제외되어 개통 후 병목현상과 교통사고 위험 예상
- 잔여지 발생 문제
 - 이 민원 토지는 '92. 6. 최초 건설부 고시에 의해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1-19호선)로 결정된 후 '09. 4. 철도시설공단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 고시에 의해 사업지구 지정되어 일부 토지가 사업구역에 포함되고 잔여지 발생

5 갈등 분석

가. 민원발생배경 및 주요사실관계

- 이 민원 토지는 '92. 6. 최초 건설부 고시에 의해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1-19호선)로 결정된 후 '09. 4. 철도시설공단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고시에 의해 사업지구 지정되어 일부 토지가 사업구역에 포함되고 잔여지 발생
- ○○시설공단이 대로1-19호선을 따라 지하철도 구간을 6차선으로 확장하기로 하였으나, 광주시가 추진 중인 하남산단외곽도로 장수교차로(4차선)사이 약 85m구간(2차선)이 공사구역에서 제외되어 개통 후 병목현상 및 교통사고의 위험 등 문제점 발생
- 신청인들은 공사구역에서 제외된 약 85m 구간을 이번 공사구역에 포함시켜 2차선 도로를 6차선으로 확장 개설 요구

나. 조정 목표

- 사실관계 및 관계기관의 입장을 분석한 결과, 현실적·법적 한계 등을 고려하여 호남고속철도건설에 따라 ○○역 컨테이너 야적장이 이전되므로 인접 산업단지로의 대형 화물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사업구간을 분담하여 도로를 확장하는 종합대책 제시

6 갈등해결과정

- 2011. 10. 20. 고충민원 접수
- 2011. 12. 27. 관계기관 의견청취 (출석조사)
- 2012. 1. 26. 과장급 현장방문 및 도로개설 협의 (현지조사)
- 2012. 2. 17. 현장조정회의 개최(조정성립)

7 조정 (합의) 결과

가. 조정·합의 최종결과

- 수차례 문제해결 방안을 협의하고, 2차례의 업무회의 등을 거쳐 피신청인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조율한 결과, 우리 위원회가 제시한 방안대로 병목구간에

대한 도로 확장개설을 하기로 의견의 일치가 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가 현지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조정서를 작성하고 조정 합의함

- 철도시설공단 : 철도차량기지 지하차도 구간을 장수교차로 사업구간 종점까지 연장하여 차선 확장공사(6차선) 시행
- 광주광역시 : 대형화물차량의 소통이 원활하도록 도로확장 및 진입차선 추가 등의 조치를 하남산단외곽도로(장수교차로)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호남고속철도 차량기지 건설사업의 완료시기(2014년)까지 장수교차로 설치공사 완료

나. 위원회 조정·합의문

호남고속철도건설에 따라 컨테이너 야적장이 이전되므로 인접 산업단지로의 대형화물차량 등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사업구간을 아래와 같이 분담하여 이행한다.

가. 피신청인 1은 대로1-19호선상의 이 민원 사업1의 시점부를 이 민원사업2 구간내 장수교차로 램프 시점부까지 연장하여 피신청인2의 도시계획도로 시설계획에 맞춰 도로를 확장한다.

(단,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수동 답 〇〇〇까지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시행한다.)

나. 피신청인 2는 피신청인 1이 시행하는 이 민원 사업1의 완료시기(2014년)까지 피신청인1이 시행하는 도로확장 경계지점부터 장수교차로까지 도로확장을 시행하고 진입램프 일부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단,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수동 답 〇〇〇-〇부터의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시행한다.)

㉘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가. 신청인-피신청인 수용 및 이행여부

- 그간에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던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 공감하고 모두 수용하였음
- '12. 3. 현재 철도시설공단은 철도차량기지 건설사업 실시 변경계획 준비 중
- '12. 3. 현재 광주광역시는 추가사업 추진 준비 중(설계변경 및 총사업비 조정)

나. 시사점

- 병목구간 미시행시 예견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공동의 종합대책 마련
 - 이번 조정은 도로의 병목구간 발생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및 교통체증이 예견되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한 계획적인 도로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여, 주민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었음
-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관계기관 소관이 불분명한 사업의 갈등사례 해결
 - 지금까지는 각각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승인받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병목구간이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나 해당 기관에서는 추가 사업에 대한 명분이 없어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기에 급급한 상황에서 비합리적인 사업결정을 변경하여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도로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였음
- 공익사업의 성격과 주민들의 염원이 반영된 현장사례
 - KTX 호남선 개통은 지역 주민들이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조속히 개통이 이루어지도록 양 기관이 더욱 긴밀히 협력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광주 광산 장수교차로 2차선 병목구간 6차선 확장

[2012-02-17 14:49 배상현 기자]

광주 광산구 철도차량기지 지하차도와 하남산단 외곽도로 장수교차로 사이에 있는 2차선 도로 80여m가 6차선 도로로 확장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오후 2시 광주차량기지건설사무소에서 현장 조정회의를 열어 철도시설공단이 6차선으로 진행하는 지하차도 공사를 장수교차로 램프 시점부까지 연장해 도로를 확장하기로 하는 중재안을 성사시켰다고 밝혔다.

이날 광주시는 철도시설공단이 확장하는 도로의 경계지점부터 하남산단 외곽도로 장수교차로까지 도로를 2014년까지 완료하고 도로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맡기로 합의했다.

이번 조정으로 2차선 병목구간이 6차선으로 넓어지면서 산업단지에서 주변 고속도로로 신속한 물류이동이 원활해지고 교통사고 위험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회의를 주재한 권익위 박재영 부위원장은 "병목현상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예견되는 주민들의 고충이 해결되어 다행이며 KTX 호남선 개통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양기관이 더욱 긴밀히 협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광주, 하남산단 외곽 장수교차로 2014년까지 '확장' 합의



▲ 박재영 부위원장 "2차선 도로를 6차선으로 확장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수동 소재의 철도차량기지 지하차도와 하남산단외곽도로의 장수교차로 사이에 있는 2차선 도로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의 현장조정으로 6차선 도로로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장수동 주민 등 총 6명은 철도시설공단이 대로1-19호선을 따라 지하차도 구간을 6차선으로 확장하기로 하였으나, 하남산단 외곽도로 장수교차로(4차선)사이에 있는 약85m의 2차선 도로만 공사구역에서 제외되어 개통 후 병목현상과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며 국민권익위에 지난해 10월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 민원 현장을 살펴보는 중입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17일 오후 2시 박재영 부위원장 주재로 광주차량기지건설사무소에서 지역주민들과 이병록 광주광역시 부시장, 임영록 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장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어, ▲철도시설공단이 6차선으로 진행하는 지하차도 공사를 장수교차로 램프 시점부까지 연장해 도로를 확장하기로 하는 중재안을 성사시켰다.

또한, ▲광주광역시시는 철도시설공단이 확장하는 도로의 경계지점부터 하남산단 외곽도로 장수교차로까지의 도로를 2014년까지 완료하고, 도로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말기로 합의했다.

이번 조정으로 도시계획도로 병목구간이 넓어지게 되면서 산업단지에서 주변 고속도로로 신속한 물류이동이 원활해지고, 교통사고 위험도 크게 줄어줄 것으로 보인다.



▲ 박 부위원장이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박재영 부위원장은 “병목현상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예견되는 주민들의 고충이 해결되어 다행이고, KTX 호남선 개통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양 기관이 더욱 긴밀히 협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안성 원곡물류단지 주변 종종묘역 보존

민원번호 : 2AA-1201-097982 (도시수자원민원과, 이진석)

〈민원개요〉

안성시가 정책적으로 추진 중인 원곡물류단지 부지조성 계획 시 이 민원 종종묘역을 보존해 주겠다고 약속하여 공익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 하였는데, 사업이 시행되면서 종종묘역을 감싸는 고성산 후면에 대한 절토공사 및 벌목공사가 과도하게 진행되어 민원이 발생됨

① 당사자

- 신 청 인 : ○○씨 ○○공파 대중회
- 피신청인 : 안성시장, 경기도시공사

② 민원내용

- 안성시가 정책적으로 추진 중인 원곡물류단지 부지조성 계획 시 경주이씨 평리 성암 공파 종종묘역을 보존해 주겠다고 종종 측과 약속하여 공익사업 추진에 협조하였는데 사업이 시행되면서 종종묘역을 감싸는 고성산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니, 더 이상 훼손 및 벌목을 못하도록 하여 달라. 특히, 묘역 후면에 옹벽을 설치하여 달라.

③ 피신청인 등 의견

가. 경기도시공사

- 국민정서상 묘역 뒤편 산지를 절취함으로 인해 조상묘역에 피해를 준다는 신청인의 심리적 피해는 이해가 되나, 추가적인 사업비 집행을 통한 옹벽설치 등 공사시행은 수용하기 어렵다.
- 원곡물류단지는 분양이 완료되어 입주자가 건축공사를 진행 중으로 2012년 3월초

까지 절토공사를 시행하지 못할 시 수분양자에 대한 계약위반 및 민원이 예상됨에 따라 조속한 공사 착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나. 안성시장

- 사업계획승인(경기도고시 제2010-○○호(2010. ○. ○.))을 거쳐 토지보상 등의 행정절차가 완료된 부지는 경기도시공사의 소유이며, 정당한 인허가 절차를 거쳤으므로 공사를 수행함에 규정상 문제는 없다.

4 주요 쟁점사항

- 예산 확보 문제
 - 별목으로 인한 이 민원 종중묘역 미관훼손을 고려, 이 민원 종중묘역 뒤편 녹지용지에 둔덕(mounding)을 조성하고 조경공사 시 수목을 식재하기 예산 확보 등
- 토지보상이 완료된 부지의 미 사용 문제
 - 종중묘역 후면에 옹벽을 설치하지 않고, 묘지 배면의 사면안정을 위한 공사를 시행하되, 법면상단부와 ○○공 묘지와의 이격거리를 확장을 위한 추가 공간 확보

5 갈등 분석

가. 민원발생배경 및 주요사실관계

- 당초 2020 안성시 도시기본계획(07. 6.)에는 ○○씨 ○○파 종중묘역 일부가 원곡물류단지 사업예정지에 포함되었으나, 종중 차원의 민원이 제기되어 개발계획 승인 시(09. 1.) 해당묘역이 사업지구에서 제외됨
- 이때, 구역경계를 설정하면서 종중묘역에 대한 국민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여 법면상단부와 ○○공 묘지와의 이격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였어야 했으나, 18.83m의 이격거리만을 확보하여 공사 시행 단계에서 신청인들과 갈등 발생(신청인들은 37.63m의 이격거리 요구)

나. 조정 목표

-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상호 양보하여 원만한 해결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안성시 지역발전은 물론 이 민원 중증묘역에 대한 개발피해 최소화
- 법면상단부와 ○○공 묘지와 이격거리를 37.63m로 넓혀 줄 것과 옹벽설치를 요구하였으나, 31.33m로 이격거리를 줄이고 녹지용지에 대한 둔덕(mounding) 조성 및 수목 식재로 중재(옹벽 미설치)

⑥ 갈등해결과정

- 2012. 1. 13 : 고충민원 접수
- 2012. 1. 16 : 고충민원 자료제출 요구(국민권익위원회)
- 2012. 1. 26 : 고충민원 자료제출(피신청인)
- 2012. 2. 7 : 제1차 관계기관 업무회의(실지조사 실시)
- 2012. 2. 29 : 제2차 관계기관 업무회의(실지조사 실시)
- 2012. 3. 13 : 현지조정회의 개최(조정성립)

⑦ 조정 (합의) 결과

가. 조정·합의 최종결과

- 신청인과 피신청인간 이견발생으로 현장방문조사 2회 및 수차례의 유선통화 협의를 통해 조정방안 마련
 - 1차 현장조사(12. 2. 7.)
 - 신청인 대표 등 30여명, 경기도·안성시·경기도시공사 각 기관 팀장 등 참석
 - 2차 현장조사(12. 2. 29.) 시 신청인·피신청인과 조정안 협의
 - 안성시 투자유치팀장, 경기도시공사 현장감독 등 참석
-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상호 양보하여 원만한 해결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안성시 지역발전은 물론 이 민원 중증묘역에 대한 개발피해를 최소화하였다.
 - 당초, 법면상단부와 ○○공 묘지와 이격거리를 37.63m로 넓혀 줄 것과 옹벽설치를 요구하였으나, 협의과정과 권익위의 중재를 거쳐 31.33m로 이격거리를 줄이고 녹지용지에 대한 둔덕 조성 및 수목 식재로 상호 양보(옹벽 미설치)

나. 위원회 조정 · 합의문

- 안성시장은 향후 이 민원 중중묘역에 위치한 충신각의 문화재적 가치 등을 고려해 보존에 협조하며, 개발사업 진행 시 신청인과 협의 없이 묘역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다.
- 경기도시공사는 다음 사항을 이행한다.
 - 이 민원 중중묘역 후면에 옹벽을 설치하지 않고 ○○공 묘지 배면의 사면안정을 위한 공사를 시행하되, 법면상단부와 ○○씨 ○○공 묘지와 이격거리를 18.83m에서 31.33m로 조정하기로 한다.
 - 사업지구 내 별목으로 인한 이 민원 중중묘역의 미관훼손을 고려하여 이 민원 중중묘역 뒤편 녹지용지에 둔덕(mounding)을 조성하고 조경공사 시 수목 식재하기로 한다.

⑧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가. 신청인-피신청인 수용 및 이행여부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상호 합심하여 조정안대로 법면상단부와 ○○씨 ○○공 묘지와 이격거리를 18.83m에서 31.33m로 조정하였고, 중중묘역 뒤편 녹지용지에 둔덕(mounding)을 조성하고 조경공사 시 수목 식재를 완료하였다.

나. 시사점

- 조상묘역에 대한 국민정서를 고려하여 개발계획 수립 시 구역경계 설정에 유의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아쉬움이 있으나,
- 원곡물류단지 분양이 완료되어 2012년 3월초까지 절토공사를 시행하지 못할 시 수분양자에 대한 민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 중중 측에서 공공사업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곡물류단지 개발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공사를 속행하게 되었다. 향후, 개발사업 구역 경계를 정할 때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집단민원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 방지가 필요하다.



국민권익위, 안성 원곡물류단지 민원 해결

[2012-03-13 17:13 김종식 기자]

경기도 안성시 원곡물류단지 개발사업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정상추진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는 13일 오후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물류단지 현장사업소에서 경기도시공사 사장, 안성시 부시장, 경주이씨 평리성암공파 대종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합의안을 마련했다.

2008년 착공, 2013년 12월31일 완공 예정인 원곡물류단지는 착공 당시 안성시가 평리성암공파 중종묘역을 보존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경기도시공사가 설계한 절토면은 중종 묘지와 거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 민원이 발생했다.

경기도시공사측은 토지보상 등 행정절차와 인허가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옹벽설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물류단지는 분양이 이미 끝나 이달 초에 공사를 못하면 입주자에 대한 계약위반으로 민원 발생이 예상된다.

중재에 나선 권익위 박재영 사무처장은 묘지 뒤쪽의 절토면 안정을 위한 공사를 옹벽이 아닌 둔덕으로 조성해 나무를 심기로 했다.

또 절토면 상단부와 묘역과의 거리를 당초 18.83m에서 31.33m로 넓히도록 조정해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jongsk@yna.co.kr

안성원곡물류단지 조성 사업 고비 넘겼다

경주이씨종중-안산도시공사 갈등 권익위 중재로 해결

종중과의 갈등으로 자칫 중단할 뻔 했던 안성원곡물류단지 사업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하게 됐다. (위치도 참조)

국민권익위(위원장 김영란)는 13일 중단위기에 처했던 원곡물류단지 사업이 경주이씨 종중과 원만한 합의로 고성산 절토공사를 속행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는 2008년부터 안성시 원곡면 철곡리 일원에서 안성 원곡물류단지 개발사업을 추진중이었다.

하지만 경주이씨 평리성안공과 종중 대표는 물류단지 부지조성 계획이 수립될 당시 안성시가 종중묘역을 보존해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경기도시공사가 설계한 절토면과 종중 묘지와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 간격을 넓히고 묘역 후면에 옹벽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을 지난 1월 권익위에 제기했다.

종중묘역은 원곡면 철곡리 산 28번



안성시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 전담팀이 지난 12일 농식품가공 기술지원단과 1차 회의를 갖고 있다.

지 일대에 위치해 물류단지와 인접해 있다.

이에 경기도시공사는 토지보상 등의 행정절차와 인허가 과정을 정당하게 거쳤기 때문에 공사 수행에 규정상 문제가 없고 추가비용을 들여 옹

벽설치는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또한 원곡물류단지는 이미 분양이 완료돼 입주자가 건축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달 초까지 절토공사를 하지 못하면 앞으로 계약위반으로 인한 입주자 민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중재에 나선 권익위 박재영 사무처장은 13일 오후 3시 안성 원곡물류단지 개발사업소에서 지역주민들과 이한경 안성시 부시장, 이재영 경기도시공사 사장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 평리성안공 묘지 뒤쪽의 절토면 안정을 위한 공사를 시행하되 묘역의 미관을 고려해 옹벽이 아닌 둔덕(mounding)을 조성하고 수목을 심기로 하고 ▲ 절토면 상단부와 묘역과의 거리를 당초 18.88m에서 31.33m로 넓히도록 합의함으로써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다.

박재영 부위원장은 "개발계획 수립 때 조상묘역에 대한 국민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으나 종중 측에서도 공공사업의 취지를 감안해 계속적으로 지역 사업에 협력해 개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고 밝혔다.

임영규기자 ykim@gangkg.co.kr

안성 원곡물류단지 고성산 절토공사 현장조정회의

[2012-03-13 18:01 박동욱 기자]



박재영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왼쪽 세번째)이 13일 오후 경기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일원에 조성중인 원곡물류단지 개발사업 민원을 중재한 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photo@newsis.com

민원현황 청취하는 박재영 사무처장

[2012-03-13 18:01 박동욱 기자]



박재영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왼쪽 세번째)이 13일 오후 경기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일원에 조성중인 원곡물류단지 개발사업 민원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들로부터 민원현황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photo@newsis.com

우정혁신도시 병풍 옹벽 대신 녹지 조성

민원번호 : 2BA-1111-197174 (도시수자원민원과, 서현우)

〈민원개요〉

신청인은 울산 중구 우정동 및 교동에 거주하는 주민인데, LH공사가 우정혁신도시 개발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민원 마을의 북쪽 경계인 북부순환도로 교동교 하부에 높이 15m, 길이 약 120m 보강토 옹벽을 설치토록 계획함에 따라, 이 민원 마을은 바람이 통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이 민원 마을과 이 민원 사업 지구의 연결도로가 없어 격리·소외되는 문제가 있으니 옹벽 설치 계획을 변경하고 연결도로를 개설해 주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 유지·관리하는 교동교 하부에 위치한 우교천의 개거 구간에서 악취가 발생하니 이를 복개하는 대책을 함께 수립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옹벽을 둔덕으로 변경하고 연결도로 개설을 통해 주민 불편 해소

1 당사자

- 신청인 :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교동 주민대표 ○○○외 739명
- 피신청인 : LH공사(피신청인 1), 울산광역시 중구청장(피신청인 2)

2 민원내용

- 피신청인 1은 우정혁신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신청인이 거주하는 울산 중구 우정동 및 교동 마을의 북쪽 경계인 북부순환도로 교동교 하부에 높이 15m, 길이 약 120m 보강토 옹벽을 설치토록 계획함에 따라 신청인이 거주하는 마을은 바람이 통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마을과 혁신도시의 연결도로가 없어 격리·소외되는 문제가 있으니 옹벽 설치 계획을 변경하고 연결도로를 개설해 달라.
- 또한, 피신청인 2가 유지·관리하는 교동교 하부에 위치한 우교천의 개거부분에서 악취가 발생하니 이를 복개해 달라.

3 피신청인 등 의견

가. LH공사(피신청인 1)

- 이 민원 사업의 부지계획고는 기존 주변도로의 지반고와 연계되므로 부지계획고를 낮추게 되는 옹벽 높이 변경은 불가하나, 옹벽 위치를 이 민원 사업 지구 쪽으로 당초보다 6m 이격할 수 있고, 교동교 하부에서 이 민원 사업 지구 방향으로 진·출입할 수 있는 보행로 정도는 개설 가능

나. 울산광역시 중구청장(피신청인 2)

- 이 민원 마을과 이 민원 사업 지구를 잇는 연결도로는 이 민원 사업 지구 내 연결도로가 계획되어 있지 않아 개설이 어려우나, 피신청인 1이 이 민원 사업 지구 내 연결도로를 계획할 경우 이 민원 사업 지구 외 연결도로 계획을 검토할 수 있고, 교동교 하부에 위치한 우교천 약 110m 개거구간은 일부 복개하여 악취 발생을 최소화할 예정

4 주요 쟁점사항

- LH공사는 우정혁신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 부지의 계획고를 기존 주변도로의 지반고와 연계하기 위하여, 울산 중구 우정동 및 교동 마을 북쪽 경계인 교동교 하부에 높이 15m, 길이 약 120m의 보강토 옹벽을 설치토록 계획함에 따라, 교동교 하부를 통해 마을로 불던 바람이 사라지게 되는 문제가 야기되고 마을과 혁신도시를 연결하는 도로가 계획되어 있지 않아 격리·소외될 우려가 있으므로, 마을 주민들은 이에 대해 대책을 요구
- LH공사는 옹벽을 낮추는 것은 불가하나, 당초보다 6m 후퇴·이격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울산광역시 중구청은 마을과 혁신도시의 연결도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를 계획에 반영·결정할 경우 사업 지구 외 도로개설 계획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

5 갈등 분석

가. 민원발생배경 및 주요사실관계

- LH공사는 울산 중구 우정동의 11개동 일원에 우정혁신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기존 주변도로(성안로, 북부순환도로 등)의 지반고와 연계하여 부지계획고를 결정함에 따라 울산 중구 우정동 및 교동 마을 북쪽 경계인 북부순환도로 교동교 하부에 높이 15m, 길이 약 120m의 보강토 옹벽을 설계에 반영하였음
 - 설계대로 보강토 옹벽을 설치할 경우, 교동교 남쪽에 위치한울산 중구 우정동 및 교동 마을 주민들은 기존과 달리 바람이 통하지 않게 되고 조망권을 침해 당하는 등 생활환경이 열악해 지고
 - 교동교 하부를 통하여 혁신도시 방향으로 이용하였던 농로, 산책로가 폐쇄될 뿐만 아니라, 혁신도시로의 연결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마을 주민들은 혁신도시로 부터 격리·소외될 우려가 있음
- 한편, 울산 중구청장이 유지·관리하는 교동교 하부에 위치한 우교천의 개거 부분에서 악취가 발생함에 따라 마을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함

나. 조정 목표

- 우정혁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해결 방안 마련
 - 보강토 옹벽 위치 및 규모 변경, 혁신도시와 마을의 연결도로 개설, 하천 악취 방지 등 대책 마련

⑥ 갈등해결과정

- '11. 11. 24, '11. 12. 1. : 고충민원 접수
- '11. 12. 14. : 1차 현장조사 실시
 - 보강토 옹벽 높이 변경 불가, 우정혁신도시와 연결도로 가능여부를 교통설계업체에 용역 검토 의뢰할 예정(피신청인 1)
- '12. 2. 25. : 2차 현장조사 실시
 - 보강토 옹벽을 완전한 토사법면으로 변경 가능하고, 혁신도시 내 마을 연결도로 개설 가능(피신청인 1)

- 혁신도시 외 마을 연결도로 개설 가능하고, 도로개설 시 우교천 개거구간의 일부를 복개할 예정(피신청인 2)
- '12. 3. 6. : 3차 현장조사 실시
 - 신청인, 피신청인 1 및 피신청인 2 간 최종 의견 조율 및 조정·중재안 도출

7 조정 (합의) 결과

가. 조정·합의 최종결과

- LH공사 (피신청인 1)
 - LH공사는 교동교 하부에 설치할 예정이었던 보강토 옹벽을 완경사의 토사법면으로 설계변경하여 녹지로 조성하고, 혁신도시 내 마을 연결도로를 개설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피신청인 2)
 - LH공사의 연결도로와 연계하여 혁신도시 외 마을 연결도로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예산 확보 후 개설하고, 교동교 하부에 위치한 우교천 개거구간 중 오수배출구가 있는 구간은 도로개설 시 오수본관에 연결한 후 상부를 복개 시공

나. 위원회 조정·합의문

- LH공사는 북부순환도로 교동교 하부에 설치할 예정이었던 보강토 옹벽을 토사법면으로 설계변경하여 녹지로 조성한다.
- LH공사는 교동교 하부(지구 경계 내)에서 이 민원 사업 지구까지 진·출입할 수 있는 왕복 2차선 도로(보행로 포함)를 개설한다.
- 울산 중구청장은 위 '나'목의 도로와 연결하여 교동교 하부를 통해 이 민원 마을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교동교 하부(지구 경계 외)에서 울산 중구 교동 165-11까지 폭 8m 도로를 2012. 7.까지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결정(변경)하고, 도로개설은 예산확보 후 시행한다.
- 울산중구청장은 교동교 하부에 위치한 우교천 개거구간(약 110m) 중 오수배출구가 있는 울산 중구 교동 479-22에서 하류방향까지의 구간에 대해서, 오수배출구는 위 '다'목의 도로개설 시 오수본관에 연결하고 상부를 복개 시공하며, 잔여 개거구간은 안전시설(난간 등)을 설치한다.

⑧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가. 신청인-피신청인 수용 및 이행여부

- LH공사 (피신청인 1)
 - 교동교 보강토옹벽 변경 및 하부진입도로 실시설계 완료(12. 10.)
 - 2013년 상반기 준공 예정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피신청인 2)
 -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고시(12. 7. 12.)
 - 2015년도 공사시행 예정

나. 시사점

- 혁신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마을을 가로막는 옹벽으로 인해 바람이 통하지 않는 환경 피해를 예방하고, 혁신도시와 기존 마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개발사업 지구 인근에 소외되기 쉬운 주민의 고충을 해결
 - 한편, 이번 조정으로 울산 중구 우정동 및 교동 1,700여명 마을 주민들은 바람이 통하는 생활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혁신도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등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



울산혁신도시 '병풍 옹벽' 대신 녹지 조성

[2012-03-13 15:01 김근주 기자]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14일 울산 방문

울산 혁신도시 공사현장과 인근 마을을 사이에 '병풍 옹벽' 대신 녹지가 조성된다.

울산 중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울산 혁신도시와 인근 마을 사이에 설치될 예정인 옹벽 대신 녹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조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조정 내용은 중구 교동교 일원에 높이 10m, 길이 150m 규모로 상업지역과 소공원구간 사이에 옹벽을 설치하는 계획을 바꿔 교동교에서 50m 떨어뜨려 녹지형태로 만들고 혁신도시와 기존 주거지역을 연결하는 폭 8m의 진입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이다.

LH공사가 옹벽 설치를 추진하자 우정동과 교동지역 주민 740여명은 "옹벽이 바람 길을 막고 조망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11월 민원을 제기했다.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은 14일 울산 혁신도시사업단을 방문해 박성민 울산 중구청장, 신홍기 LH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장 등과 만나 현장 조정회의를 열 예정이다.

경상일보

2012년 03월 14일
05면 (사회)

교동교 인근 녹지 조성 관련 권익위 오늘 현장 조정회의

LH(한국토지주택공사) 울산혁신도시사업단이 북부순환도로 교동교 인근에 옹벽 대신 녹지 경사면을 조성하기로 결정(본보 2월21일자 7면 보도)한 가운데,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14일 울산에서 현장 조정회의를 열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오후 김영란 위원장 주재로 울산혁신도시사업단에서 지역 주민들과 박성민 중구청장, LH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울산혁신도시사업단과 우정·교동 주민들은 교동교 북쪽에 옹벽을 설치하는 문제를 두고 마찰을 빚어오다가, 사업단이 옹벽 설치계획을 철회하면서 갈등이 마무리 됐다.

지난해 말 주민들은 '옹벽이 설치되면 마을에 바람이 통하지 않게 되고, 지형적으로도 고립될 수 밖에 없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울산혁신도시사업단은 옹벽 대신 경사면을 조성하고, 울산혁신도시와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를 만들기로 했다.

차상은기자 chazz@ksilbo.co.kr

혁신도시 '15m 병풍옹벽' 없던 일로

(우정동 교통 마을 뒤편 설치 예정)

오늘 권익위 조정회의

▷속보=울산 우정혁신도시 건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우정동 교통 마을 뒤편으로 설치할 예정이던 '병풍 옹벽' 대신 녹지가 조성될 전망이다. 주민들의 항의 집회가 이어지고, 증구청이 중재에 나섰고, 결국 국민 권익위원회까지 나서서 현장 조정을 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14일 오후 2시 울산혁신도시사업단 회의실에서 김영란 위원장 주재로 주민대표와 LH공사 관계자, 박성민 증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13일 밝혔다.

권익위 조정 결과 합의 사항은 북부순원도로 교통로 하부 옹벽 높이를 설계보다 낮추고 위치를 조정

일대 주민 "통풍·조망권 침해 우려" 항의·민원 완만한 녹지 경사면 대체...높이 낮추고 위치 조정

(100m 이상한다는 것이다. 사업 지역 및 소공원 구간의 옹벽설치 계획은 변경 후 자연사면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또 혁신도시에서 교통로 하부진·출입도로(길이 148.6m 폭 8m)를 개설하고 주거지역 내 도로 선형(직선화) 조정 및 미개설구간 도로개설과 하천 복개도 이뤄진다.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권익위에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요청했고 권익위는 지난 2월 주민설명회를 거쳐, 지난 6일 주민 합의를 이끌어 냈다. 우정동과 교통일대 주민 등 740

명은 LH 공사가 지난 2007년 4월부터 울산혁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을 경계에 높이 15m, 길이 약 120m의 옹벽을 설치하기로 하자 바람이 불리지 않고 조망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이날 조정회의를 통해 LH 공사는 옹벽 대신 완만한 녹지로 경사면을 조성해 마을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마을과 혁신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되, 사업 지구 내는 LH 공사가, 사업 지구 외는 증구청이 각각

담당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증구청은 도로개설 구간에 있는 오수배출구를 복개 시공해 악취 문제를 해소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지난 6일 주민합의가 도출된 혁신도시 교통로 민원은 지난 2011년 10월에 처음 제기됐으며 최종 합의점을 찾기까지 5개월이 걸렸다.

증구청은 그동안 구청장 면담 3회 및 현장방문,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 6회 등 주민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벌여왔다.

김영란 위원장은 "여러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병풍 및 조망권 침해로 발생하는 주거환경의 불편과 교통 불편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지혁 기자 kjh@usm.co.kr

집단 민원 중재 잇따라

[2012-03-14 (16:20) 안종홍 기자]

울산 혁신도시와 인근 마을 사이에 옹벽을 설치하려던 계획이 주민들의 반대와 국민 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철회됐습니다.

국민 권익위원회가 최근 복잡한 집단 민원을 해결하는 역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안종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울산 혁신도시에 인접해 있는 한 주택가입니다.

LH 공사는 당초 이 일대에 상업지역과 소공원을 구분하기 위해 높이 10미터, 길이 150미터의 옹벽을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옹벽이 바람을 막고 조망권을 해치는데다 통행로까지 가로막는다며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뷰:김윤강/주민 완전히 가로막혀서 마을이 죽게 됐었죠.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가 LH 공사, 중구청 등과 중재에 나선 결과 주민들이 반대하는 옹벽 대신 완만한 녹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조정됐습니다.

또 폭 8미터의 진입도로도 개설해 기존 주택가와과 혁신도시의 통행로로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김영란/국민권익위원장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했다.

지난해 7월 홍명고등학교의 이전을 요구하며 학부모 등이 제기한 민원을 해결한 것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적극 중재한 덕분이었습니다.

(CG)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울산지역 민원은 모두 330건, 이 가운데 38건이 조정됐고 13건은 조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CG)

국민권익위원회는 여러 기관에 얽혀 있는 집단 민원의 경우 중재 역할을 확대하겠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안종홍입니다.



14일 울산을 방문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왼쪽 두번째)이 박성민 중구청장과 함께 웅벽 대신 녹지로 조성하기로 조정한 울산혁신도시 교동교 아래 현장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김경우기자 woo@ksilbo.co.kr

울산혁신도시 사업단-구도심 주민 대립에 권익위 중재 '콘크리트 웅벽' 대신 '자연녹지' 합의

교동교·혁신도시 상업지
너비 8m 도로 개설 추진
마을내부 도로 직선화도

울산 혁신도시 공사현장과 인근 마을 사이에 '병풍 웅벽' 대신 녹지가 조성된다.

울산 북부순환도로 교동교 인근에 웅벽을 설치하는 문제로 대립했던 LH 울산혁신도시사업단과 우정·교동 주민들의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입으로 봉합됐다. 교동교 북쪽에는 당초 계획됐던 길이 100m, 높이 15m 규모의 보강토 웅벽 대신, 자연 녹지 경사면이 조성(본보 2월20일자 7면 보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14일 울산혁신도시사업단 회의실에서 '혁신도시개발사업 주민피해 방지대책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구도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 것"이라며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기에 앞서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신흥기 LH 부산울산지역본부장과 오예숙·이옥순 주민대표, 관할 지자체장인 박성민 중구청장은 웅벽 대신 자연 녹지 경사면을 조성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정서에 서명을 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울산혁신도시사업단과 중구청은 녹지경사면을 비롯해 교동교 남쪽 주택가와 울산혁신도시 상업지역을 연결하는 폭 8m 도로를 개설한다는 계획에 합의했으며, 도로 개설 시기는 도시계획도로 확정 이후 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또, 마을 내부에 얽힌 도로는 직선화해, 주민들의 통행을 돕는 방안도 확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지난해 말 진정을 낸 오예숙·이옥순 주민대표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해 줘 감사드립니다"며 권익위의 조정을 환영했다.

신흥기 LH 부산울산지역본부장은 "위원회의 결정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앞으로 민원 발생 시 신속한 해결을 약속드립니다"고 말했다.

차상은기자 chazz@ksilbo.co.kr



혁신도시개발 주민피해 방지대책 현장 조정회의가 14일 울산혁신도시 사업단 회의실에서 열려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박성민 중구청장, LH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신홍기 본부장, 주민대표 등이 조정서 서명을 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혁신도시 ‘교통교 병풍옹벽’ 갈등 일단락

국민권익위 주민요구 중재 LH사업단과 조정서 서명

▷속보=울산 혁신도시 건설 사업 중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교통교 인근 병풍 옹벽'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일단락됐다. 옹벽을 설치하지 않고 주민들의 요구대로 완만한 자연사면을 조성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은 14일 오후 울산 중구 교통교와 LH사업단에서 우정·교통 집단민원 해

결을 위한 현장조정회의를 가졌다.

이날 현장조정회의에는 민원을 제기했던 우정동 주민대표 오모씨를 비롯한 주민 30여명과 박성민 중구청장, 신홍기 LH사업단 부산울산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말 지역주민 750여명이 제기한 옹벽설치에 따른 바람길 차단, 혁신도시와의 단절문제에 대해 3차례 조사단을 파견, 현장을 살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LH사업단으로 자리를 옮긴 뒤 조정회의 추진경과를 보고받고, 조정서에 서명했다.

합의 사항은 북부순환도로 교통교 하부 옹벽 높이를 설계보다 낮추고 위치를 조정(100m 아설)한다는 것이다. 사업지역 및 소공원 구간의 옹벽설치 계획은 변경 후 자연사면으로 조성하고, 혁신도시에서 교통교 하부 진·출입도로를 개설하고 주거지역 내 도로선형(직선화) 조정 및 미개설구간 도로개설과 하천복개도 이뤄진다. 김지혁 기자

30년 개발이 묶인 부산 낙민동 학교시설부지 해제

민원번호 : 2BA-1110-129105 (도시수자원민원과, 이명호)

〈민원개요〉

신청인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지구내 학교용지는 학생수용계획 변경으로 관할교육청에서 해제를 요청하였으나 부산광역시와 동래구청은 관련법령 폐지 등의 사유로 방관만 하고 있어 30년간 신청인들의 사유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학교용지를 해제 및 학교 주변 공동주택 입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아파트지구내 철공소를 비롯한 가설 건축물 입지로 소음, 진동, 분진 등의 환경피해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학교용지를 해제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달라는 집단민원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 주민 불편 해소

① 당사자

- 신청인 : (신청인 1)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동 ○○○의 14인
(신청인 2) 부산광역시 동래구 ○○○아파트 ○○○의 402인
- 피신청인 : (피신청인 1) 부산광역시광역시장, (피신청인 2) 부산광역시 동래구청
(관계기관) 부산광역시교육감

② 민원내용

- 아파트지구내 공동주택 건설이 완료되었으므로 학교수용계획이 없는 학교용지 해제 요청
- 아파트지구내 미개발용지에 철공소를 비롯한 가설건축물 입지로 주거환경 피해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아파트지구 해제 요청

③ 피신청인 등 의견

가. 부산광역시장(피신청인 1)

- 2002.12.30. 제정(2003.7.1.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5조제3항 규정에서 "중전의 아파트지구는 주택재건축구역으로보며, 「주택건설촉진법」(이하 '주촉법'이라 한다) 제20조 규정에 따라 수립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은 정비계획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2003.5.29. 전부개정(2003.11.30.시행)된 「주택법」부칙 제9조에서 "주촉법에 따라 수립된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중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등 부칙 적용에 대하여 현재 해석의 논란이 있으므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도정법」, 「주택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등에 대해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법 적용 대상 등을 검토한 조정안을 제시하면 절차를 이행하겠다.

나.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피신청인 2)

- 현행 「도정법」절차대로 이 민원 학교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주민동의를 거쳐 기본 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나, 현재 안락아파트지구는 아파트사업이 완료된 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으로 이 민원 학교를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④ 주요 쟁점사항

- 1982년에 결정된 민락아파트지구내 학교용지는 최근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용계획 취소로 2005년 부산교육청은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에게 학교용지 해제를 요청하였으나 아파트지구는 미개발부지가 존치되어 준공되어 있지 않다는 피신청인의 의견임
- 아파트지구는 (구)「도시계획법」에서 제정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삭제되었으나 정비사업이 진행중인 지구에 한하여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된 아파트지구 존치로 인해 토지이용을 규제

⑤ 갈등 분석

가. 민원발생배경 및 주요사실관계

-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구인 아파트지구는 종래의 단독주택 위주의 토지구획정리 사업 방식을 개선하고 토지이용 제고를 위하여 아파트의 집단적인 건설 목적으로 제정

※ (구)「도시계획법」에서 1976년 제정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2003년에 폐지된 용도지구

- 민락아파트지구는 1978년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이후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을 통하여 공동주택(6개단지, 3,371세대) 입주 완료(1997년)

※ 아파트지구 공동주택 건립 현황

지구명	위 치	지구면적	아파트 명	세대수	층수	준공년도
○○ 아파트 지구	○○시 ○○구 ○○동 85일원	141,130.7m ²	○○하이츠1차	841	14	1994
			○○하이츠2차	511	10	1996
			○○	420	20	1997
			○○	531	10	
			○○○○타운	632	22	
			○○주택	436	24	

- 2005년 관계기관은 민락아파트지구내 미개설된 ○○중학교는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용계획 취소로 피신청인 2에게 지속적으로 도시계획시설(학교) 해제 요청

※ 관계기관은 신청인에게 학교용지 해제를 피신청인 2에게 요청하였음을 공문으로 통보

- 우리 위원회에 민락아파트지구내 미개발부지(주택)의 토지이용 제약으로 사유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고충민원(2BA-0709-004154) 제기

※ 우리 위원회는 건축허가신청 반력을 취소처분을 취소하고 가설건축물 허가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피신청인2는 가설건축물 허가기준 마련 시행중

※ 안락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미개발부지 현황

구분	세대수	면적(m ²)	잔여지	
			면적(m ²)	비율(%)
주택용지	소계	83,826.7	9,868	11.7
	아파트	83,826.7	9,868	11.7
공공용지	소계	57,304.0	15,808	27.5
	주구중심	6,957.0	3,852	55.4
	학교	22,213.0	9,256	41.7
	근린공원	8,801.0	2,700	30.6
	도로	19,333.0	-	
총계		141,130.0	25,676	18.1

- 아파트지구내 공동주택 입주자들(신청인2)은 미개발부지에 가설건축물 입지로 주거 환경(소음·진동·분진) 및 도시미관 저해 등의 이유로 지속적인 민원 제기
 ※ 가설건축물의 용도는 철공소, 제조공장, 셀프세차장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일부는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어 주택밀집지역내 청소년 범죄 등에 노출될 우려가 있음
- 입주가 완료된 아파트지구 지정으로 사유재산권 보장과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요구하는 집단민원 제기 (2AA-1110-129105, 2CA-1203-046788)

나. 조정 목표

- 공동주택 공급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된 아파트지구의 해제와 이후 관리방안을 위한 피신청인 1, 2의 관련법령 적용 이견을 합리적으로 조율하고, 신청인 1, 2가 요구하는 사유재산권 보장과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한 조정방안 제시

6 갈등해결과정

- '12. 1. 6 : 위원회 중재(안) 협의 (1차)
- '12. 2. 9 : 현장조사(1차) 및 위원회 중재(안) 협의 (2차)

- '12. 2. 21 : 위원회(고충민원 심의관 주재) 중재(안) 협의 (3차)
- '12. 3. 2 : 국토해양부 관련부서(주택정비과 · 도시정책과) 업무협의
- '12. 3. 15 : 위원회 중재(안) 협의 (4차)
- '12. 3. 28 : 현장조사(2차) 및 위원회 중재(안) 협의 (5차)
- '12. 4. 12 : 위원회 중재(안) 협의 (6차)

7 조정 (합의) 결과

가. 조정 · 합의 최종결과

- 위원회의 중재안에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우리 위원회는 3. 28. 건축제한이 되어 있는 미개발부지 현황조사를 통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동시에 국토해양부 의견사항을 반영하여 중재안에 도출
 - 협의결과에 따라 마련한 중재안에 대하여 이해당사자 모두 서로의 주장을 양보하고 동의함에 따라 4. 12. 조정서를 최종적으로 확정

나. 위원회 조정 · 합의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1조의 아파트지구가 삭제되어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같은법 제33조 규정을 준용하여 효력 상실을 알리는 절차(고시 등)를 이행한다.
- 피신청인 2는 이 민원 학교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절차 이행과 동시에 안락아파트지구 미개발부지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필요한 지역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
- 상기 도시관리계획 절차는 2012. 12. 31. 까지 이행한다.
- 피신청인 1은 피신청인 2가 입안한 도시관리계획 중 피신청인 1이 결정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는 피신청인 1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 고시한다.
- 신청인 1, 2와 피신청인 1, 2 및 관계기관은 도시관리계획 절차 이행 등에 적극 협조한다.

⑧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가. 신청인-피신청인 수용 및 이행여부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상호 합심하여 조정안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
 - ※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사업비의 예산 확보 지연으로 다소 지연

나. 시사점

- 소기의 아파트사업이 준공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미비로 장기간의 사유 재산권 제한과 열악한 주거환경 피해를 받아온 아파트지구내 토지소유자와 공동주택 입주민의 요구사항을 해소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

국민권익위·부산시 머리 맞대 '30년 묵은 민원' 해법 찾았다

법의 맹점때문에 30년 동안 학교부지로 묶여 개발이 불가능했던 도심 부지가 국민권익위와 부산시의 적극적인 민원해결 의지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게 됐다.

문제의 땅은 부산 동래구 낙민동 안락아파트 지구 내 2만5천㎡(7천500평·지도)의 부지. 이곳은 1982년 도시계획에 따라 학교부지로 지정돼 낙민중학교가 개설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저출산으로 인해 학생 수가 부족해지면서 학교 설립이 이뤄지지 않았고, 도시계획도 해제되지 않아 토지소유자인 김 모 씨 등은 무려 30년 동안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부지는 미개발상태로 방치

동래구 낙민동 학교부지 묶인 땅 '법 맹점 피해' 용도변경 가능해져

되면서 우범지역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었고, 부지 일부에 철공소나 공장 등 가설건물이 들어서면서 소음·진동 피해에 대한 이웃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장기간 도시계획이 해제되지 않은 것은 관련법의 맹점때문이었다. 당시 도시계획법이 도시정비법으로 개정되면서 아파트지구는 도시정비구역으로 본다는 부칙조항이 삽입됐다. 그런데 문제는 주변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도시정비가 마무리돼 인근 주민들에게 일일이 동의를 받지 않는 한 용도지구 해제가 사실상 어렵게 된 것. 지주의 민원이 제기됐지만 관련 기관 및 부서간 법령해



석에 이견이 발생하면서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다.

이에 민원을 접수받은 국민권익위와 부산시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 마련에 본격 나섰다. 부산시에서 과거의 아파트 지구 해제를 공시하고, 동래구청이 학교 부지를 폐지하는 절차를 밟되 국민권익위에서 이를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키로 했다. 관련 법을 엄격하게 해석하기 보다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이례적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26일 오후 동래구 수민동 주민센터에서는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주재로 토지소유주와 아파트 주민대표, 부산시, 동래구청, 부산시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다.

김 위원장은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장기간 묶여있던 사유재산권 제한을 풀고, 낙민동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종철 부산시 도시계획과장은 “민원해결에 최우선을 두고 해결책을 찾았다”며 “앞으로 학교부지가 해제되고 나면 주변에 맞는 개발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도시계획이 수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신 기자

국민권익위, '이동신문고'로 현장민원해결

[2012-04-26 18:03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26일 오후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민동 주민센터에서 김영란 국민권익 위원장(오른쪽에서 네번째)이 현장조정회의로 30년간 미개발부지로 묶여있던 안락아파트 지구의 용도 해제를 중재한 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2.4.26

서울신문

2012년 04월 27일
12면 (경제)

권익위 '30년 개발금지' 족쇄 풀었다

부산 안락아파트 지구 내 학교부지로 묶인 땅
김영란 위원장 현장 조정 통해 용도변경 합의

30년 동안 현실성 없는 도시계획에 묶여 개발이 금지됐던 도심 금싸라기 땅이 국민권익위원회 현장 조정으로 개발의 물꼬가 트였다.

권익위는 장기간 미개발지로 남아 있던 부산 동래구 낙민동 안락아파트 지구 내 땅 7500여평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문제의 땅은 7500여평으로 1982년 부산시 도시계획에 따라 중학교가 들어서기로 용도지정됐으나 학교설립이 어려워져 30년째 방치돼 왔다.



권익위는 "저출산으로 학생수가 부족해 당초 용도대로 학교를 설립할 수 없었는데도 도시계획이 풀리지 않아 땅주인은 30년째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었다."면서 "권익위 조정으로 30년 만에 사유재산권을 되찾았고 해당 부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트였다."고 말했다. 또 주변 주거환경도 개선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토지가 미개발 상태로 방치되면서 우범지역이 될 위험성이 커진 데다 부지 일부에는 철공소 등 가설건축물이 들어서 생활불편이 커져 아파트 주민 400여명과 땅주인이 지난해 10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

했다. 앞서 부산시교육청도 2005년부터 관계 기관에 지속적으로 학교 시설 계획 폐지를 요청하기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권익위 도시수자원민원과 정혜영 과장은 "부산시가 개발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택법, 국토계획법 등 여러 관련 법령을 검토해야 하는데 동래구와 법령해석에 이견이 있어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날 부산 수민동 주민센터에서 김영란(사진) 위원장의 주재로 주민대표, 부산시, 동래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김영란 위원장은 "다른 지역의 비슷한 민원도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보완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황수경기자 sjh@seoul.co.kr
(14.6*11.7)cm

東亞日報

2012년 04월 30일
188면 (지역)

“소음-먼지 고통” “재산권 침해” 메아리 없는 호소

‘30년 民願’ 권익위 나서니 해결

부산 도심속 학교시설 용지
미개발 상태 장기간 방치
8차례 회의 끝 조정 성공

토지 소유자와 인근 주민들이 30년 동안 불편을 감수해야 했던 부산 도심 속 학교시설 용지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노력으로 해법을 찾았다.

학교 용지는 동래구 안락아파트지구 안에 위치하고 있다. 낙민동 동래우성아파트와 안민초등학교, 낙민파출소, 반송로, 운천천으로 둘러싸인 2만5000㎡(약 7500평)다. 안락아파트지구는 1978년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이후 현재 6개 단지 3371가구가 입주해 있다.

문제의 땅은 1982년 도시계획에

따라 낙민중학교가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계획이 취소됐다. 이후 도시계획이 해제되지 않아 땅 주인 19명은 30년 넘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었다. 또 장기간 방치돼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일부 땅에는 무허가 철공소나 고물상 등이 들어섰다. 여름철이면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불편이 컸다.

피해 당사자인 동래우성아파트 주민과 땅 주인들은 그동안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부산시교육청도 2005년부터 관계기관에 학교시설 폐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부산시와 동래구는 “법령 해석에 이견이 많다”는 이유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결국 주민과 땅 주인 등 420명은 지난해 10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8차례에 걸쳐 관계기관과의 협의, 국토해양부의 의견 청취, 현장방문을 통해 조정안 마련에 들어갔다. 권익위는 26일 오후 동래구 수민동 주민센터에서 김영란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부산시, 동래구, 부산시교육청, 토지 소유자, 아파트 주민대표 등 이해당사자들로부터 합의를 이끌어냈다.

시와 동래구는 올해 말까지 학교 용지를 포함한 안락아파트지구의 효력이 없어진다는 내용을 고지하고, 도시관리 계획을 변경해 학교 용지 해제와 동시에 미개발 용지에 대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주민대표 이육남 씨(47·여)는 “이 땅에 주민을 위한 도서관이 들어섰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15.5*13.1)cm

당하지구 미개발용지 용도변경을 통한 개발 물꼬

민원번호 : 2BA-1111-133301 (도시수자원민원과, 김영옥)

<민원개요>

인천시 당하토지구획정리사업 22블럭이 3개의 획지로 구분되어 공동건축 하도록 권장되어 있으나 2개의 획지만 아파트 건설사업이 추진되어 나머지 1개 획지만으로는 아파트 건설이 사실상 어렵게 됨에 따라 토지소유자들이 다세대·연립주택 용도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집단민원이 제기되었고 위원회는 현장조사와 통해 관계기관의 입장을 조율하고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주민입안제안에 의해 지구단위계획변경 절차를 추진하는 것에 합의하고, 토지소유자들도 감보된 토지면적을 양보하면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추진하도록 조정하여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됨

1 당사자

- 신청인 : ○○○외 7명
- 피신청인 : 인천광역시장(피신청인 1),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피신청인 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피신청인3)

2 민원내용

- 인천 당하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22블록(35,142.5㎡)은 3개 획지(1번 획지 15,012.5㎡, 2번 획지 10,050.0㎡, 3번 획지는 10,080.0㎡)로 구획되고, 제1종지구단위계획 상 블록 전체의 공동개발을 권장하고 있으나, 1, 2번 획지만 주택건설사업승인이 이루어짐에 따라, 신청인들의 환지 예정지인 3번 획지만으로는 공동주택의 건설이 어려워니, 3번 획지를 당초 결정되어 있던 다세대 및 연립주택용지로 환원해 달라.

3 피신청인 등 의견

가. 인천광역시(피신청인 1)

- 신청인들이 허용용도에 적합한 건축행위를 하기 위하여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나, 사업비 및 기타여건 등의 원인으로 나대지로 방치되어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 등을 고려할 때 허용용도를 변경하여 개발을 촉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당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단계에 있고, 일부 민원으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 시 대다수 주민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사업완료는 불가피한 사항이므로, 사업완료 이후 민원해소차원에서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하는 것이 가능하며, 서구청에서 주민입안제안에 의한 행정절차를 이행함이 타당하다.

나.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피신청인 2)

- 당초 토지소유자의 제안에 의해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다세대/연립 아파트)되었으며, 공동주택사업시행자와의 원활한 협의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아파트사업이 시행되지 않음을 원인으로 하는 환원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그동안 인천시의 행정행위가 신청인들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사업지구 내 다른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피해 및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등 관련규정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요구사항은 수용 불가하다.

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피신청인 3)

- 지구단위계획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인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곤란하며 환지처분 전에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이 민원사항을 해결하고 서구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민입안제안에 의해 지구단위계획변경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장의 의견 제출 시 검토하겠다.

④ 주요 쟁점사항

- 신청인들은 지난 2년간 신청인 토지에 대해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자 노력하였으나 22블럭내 3번 획지는 면적이 협소(10,080㎡)하고 획지의 모양이 부정형이 되어 아파트 건설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아 다세대·연립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청

- 종합건설본부 당초 다세대·연립주택 용도에서 2009년도에 아파트 용도로 변경된 사항이므로 환원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상호 의견 대립

5 갈등 분석

가. 민원발생배경 및 주요사실관계

- 인천시 토지구획정리사업 당하지구 22BL 3개 획지가 2009년 당초 다세대, 연립주택 용도에서 아파트 용도로 변경되었으나 1,2번 획지만 아파트사업이 추진됨
 - 3번 획지 토지소유자 8명은 아파트 건축이 어렵게 되어 당초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된 대로 연립 및 다세대를 건축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환원 요구
- ※ '98. 6. 12 당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정, '01. 5. 환지계획 인가, 2006. 3. 1.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되었고, 이 민원 토지의 허용 용도가 2001. 5. 2. 환지계획 인가 당시 다세대, 연립주택에서 2009. 11. 2. 인천도시관리계획(당하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아래와 같이 변경

구분	허용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기정	다세대, 연립주택 및 부대시설	60%이하	200%이하	4층 이하
변경	APT 및 부대시설	30%이하	200%이하	15층 이하

- 피신청인(인천시 종합건설본부)은 주민제안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환지계획 변경된 사항으로 용도지역 환원 불가 의견
 - 우리 위원회에 현재 3번 획지만으로는 아파트 건설이 불가하여 재산권 보호를 주장하는 고충민원(2BA-1111-1333014) 제기

나. 조정 목표

- 환지처분이후 서구청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이관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와 서구청의 협력 방안 마련
 - 아파트건축이 사실상 곤란한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보호

⑥ 갈등해결과정

- '11. 11. 16 : ○○○외 7인 위원회에 민원 신청
- '12. 1. 31. : 출석조사, 신청인들 요구사항 해결방안 협의
 - ※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과, 신청인
- '12. 3. 29. : 위원회 중재(안) 협의 (1차)
 - ※ 인천시 개발계획과, 인천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 '12. 4. 4. : 위원회 중재(안) 협의 (2차)
 - ※ 인천시 개발계획과, 인천시 종합건설본부, 인천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 '12. 4. 19. : 위원회 중재(안) 협의 (3차)
 - ※ 인천시 개발계획과, 인천시 종합건설본부, 인천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⑦ 조정 (합의) 결과

가. 조정 · 합의 최종결과

- 주민 입안제안에 의해 지구단위계획변경 절차를 추진하는 것에 합의하고, 토지 소유자들도 감보된 토지면적을 양보하면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추진

나. 위원회 조정 · 합의문

- 가. 신청인들은 환지 처분 이후의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위해 제안 지역(3번 획지)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을 구비하여 현행 감보율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층수, 건폐율, 건축용도 : 아파트 → 다세대, 연립)안을 마련한 후 피신청인 3(인천시 서구청장)에게 입안제안 한다.
- 나. 피신청인 2(인천시 종합건설본부장)는 신청인들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 입안제안에 필요한 관련자료 제공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 다. 피신청인 3(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신청인들이 제안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요구에 대해 피신청인 1(인천광역시시장)의 의견을 참조하여 서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피신청인 1(인천광역시시장)에게 결정 신청한다.

라. 피신청인 1(인천광역시)은 상기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주민 입안제안 사항을 적극 검토함이 바람직하다는 공적견해를 환지확정처분 전에 피신청인3(인천시 서구청장)에게 피력하고, 환지 확정처분(준공)이후 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권이 피신청인 3(인천시 서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피신청인 3(인천시 서구청장)이 신청인들의 입안제안을 받아 결정신청하는 경우 인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한다.

㉘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가. 신청인-피신청인 수용 및 이행여부

- 입안제안에 필요한 관련자료(CD) 제공 완료
- 주민 제안 시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 심의 상정 등 적극적인 행정절차 이행

나. 시사점

- 위원회의 조정으로 사실상 아파트 개발이 어렵게 된 부지를 다세대·연립으로 건축하여 개발을 촉진하고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한 데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함



권익위, 인천 당하지구 아파트 미개발부지 용도변경 중재

[[2012-04-30 16:00] 송고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3,055평 부지에 다세대·연립주택 건축 가능

인천광역시 서구 소재 당하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22블럭 내에 있는 10,080㎡(약 3,055평)의 토지가 인천시와 서구청, 토지소유주간 갈등으로 오랫동안 묶여있다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의 중재로 다시 개발될 수 있게 되면서 구획정리사업도 원만히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당하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22블럭은 전체 35,142.5㎡(1만 649평) 넓이로, 1998년 구획정리사업 대상으로 처음 지정된 이후 2010년 아파트 건설사업이 추진됐지만 3개로 나뉜 획지중 2곳(1번 획지 15,012.5㎡, 2번 획지 10,050.0㎡)만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고, 이번에 민원이 발생한 3번 획지(10,080.0㎡)는 건설사와 토지주간 감정가 이견으로 개발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왔다.

3획지의 토지주 8명은 모양이 부정형이고 면적이 협소해 아파트 건설이 사실상 어려운 만큼 다세대와 연립주택을 짓도록 용도를 변경해 달라고 인천시에 요구했다가 여의치 않자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수차례 실무조정 협의와 현장조사를 통해 관계기관과 민원인을 설득한 끝에 30일 오후 3시 인천광역시 서구청에서 박재영 부위원장 주재로 토지소유자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인천시 서구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합의를 마련하는데 성공했다.

인천광역시 등 관계기관들은 해당 토지가 당초 다세대·연립주택 용도였다가 아파트 용도로 변경된 만큼 다시 용도를 변경해줄 수 없고,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은 5년 이내에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개발이 추진되지 않고 나대지로 오랫동안 방치되었는 것 보다는 용도를 변경해 개발을 촉진시키는 것이 낫다는 권익위의 설득에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 민원인과 인천광역시 등 관계기관은 해당토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것에 합의하고, ▲ 토지소유자들도 아파트 용지로 변경되어 확보된 토지면적에 대해서는 양보하기로 최종 합의됐다.

조정을 직접 주재한 박재영 부위원장은 "토지소유자들과 아파트 건설업자가 협의해 아파트를 지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번 중재로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이 더 이상 침해되지 않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는 새로운 물꼬를 마련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2012년 05월 01일
11면 (경제)

인천 당하지구 연립주택 건축 가능

권익위 용도변경 중재

인천시와 서구, 토지 소유주의 갈등으로 개발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서구 당하지구 22블록 내 1만 80㎡의 토지가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개발 길이 트였다.

권익위는 30일 인천 서구청에서 박재영 부위원장 주재로 토지수유자와 인천시, 인천 종합건설본부, 서구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개발부지 용도변경 합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당하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22 블록은 전체 3만 5142.5㎡로 1998년 구획정리사업 대상으로 처음 지정됐다. 이후 2010년 3개 구역으로 나눠 아파트 건설사업이 추진됐지만, 2곳만 추진되고 1곳은 건설사와 토지주 간의 이견으로 방치됐다.

방치된 땅 주인 8명은 획지 모양이 부정형이고, 면적이 협소해 아파트 건설이 사실상 어려운 만큼 인천시에 용도변경을 요구했지만, 시와 관계기관은 해당 토지가 다세

대·연립주택 용도에서 아파트 용도로 변경된 만큼 다시 용도변경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땅주인들은 결국 지난해 11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인천시 등은 권익위의 설득에 따라 해당 토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에 합의하고, 토지 소유자들도 아파트 용지로 변경돼 줄어든 토지면적에 대해서는 양보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11.3*11.8)cm

인천 당하지구 아파트 미개발부지 용도변경 중재

권익위, 10,080㎡ 부지에 다세대·연립주택 건축 가능

인천시 서구 소재 당하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22블럭 내에 있는 10,080㎡(약 3,055평)의 토지가 인천시와 서구청, 토지 소유주간 갈등으로 오랫동안 묶여있다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다시 개발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구획정리사업도 원만히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당하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22블럭은 전체 35,142.5㎡(1만 649평) 넓이로, 1998년 구획 정리사업 대상으로 처음 지정된 이후 2010년 아파트 건설사업이 추진, 3개로 나뉜지 획지중 2곳(1번 획지 15,012.5㎡, 2번 획지 10,050.0㎡)만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고, 이번에 민원이 발생한 3번 획지(10,080.0㎡)는 건설사와 토지주 간 감정이 이견으로 개발되지 못한 채 방치돼 왔다.

3획지의 토지주 8명은 모양이 부정형

이고 면적이 협소해 아파트 건설이 사실상 어려운 만큼 다세대와 연립주택을 짓도록 용도를 변경해 달라고 인천시에 요구했다가 여의치 않자 지난 해 11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수차례 실무조정 협의와 현장조사를 통해 관계기관과 민원인을 설득한 끝에 30일 오후 3시 인천광역시 서구청에서 박재영 부위원장 주재로 토지소유자와 인천시, 인천시 종합건설본부, 인천시 서구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합의를 마련하는데 성공했다.

인천시 등 관계기관들은 해당 토지가 당초 다세대·연립주택 용도였다가 아파트 용도로 변경된 만큼 다시 용도를 변경해줄 수 없다.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은 5년 이내에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개발이 추진되지 않고 나대지로 오랫동안 방치되었는 것 보다는 용도를 변경해 개발을 촉진시키는 것이 낫다는 권익위의 설득에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민원인과 인천광역시 등 관계기관은 해당토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것에 합의하고, △토지소유자들도 아파트 용지로 변경돼 감보된 토지면적에 대해서는 양보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조정을 직접 주재한 박재영 부위원장은 "토지소유자들과 아파트 건설업자가 협의해 아파트를 지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번 중재로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이 더 이상 침해되지 않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는 새로운 물꼬를 마련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인천/신근철 기자

(18.0*11.4)cm

서울일보

2012년 05월 01일
16면 (경제)

인천 당하지구 미개발부지 개발 물꼬

권익위, 지구단위계획 변경 다세대·연립주택 건축 중재

인천시 서구 소재 당하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22블럭 내에 있는 10,080㎡(약 3,055평)의 토지가 인천시와 서구청, 토지소유주간 갈등으로 오랫동안 묶여있다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의 중재로 다시 개발될 수 있게 되면서 구획정리사업도 원만히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당하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22블럭은 전체 35,142.5㎡(1만 649평) 넓이로, 1998년 구획 정리사업 대상으로 처음 지정된 이후 2010년 아파트 건설사업이 추진됐지만 3개로 나뉜 3획지 2곳(1번 획지 15,012.5㎡, 2번 획지 10,050.0㎡)만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고, 이번에 민원이 발생한 3번 획지(10,080.0㎡)는 건설사와 토지주간 감정이 이견으로 개발되지 못한채 방치되어왔다.

3획지의 토지주 8명은 모양이 부정형이고 면적이 협소해 아파트 건설이 사실상 어려운 만큼 다세대와 연립주택을 짓도록 용도를 변경해 달라고 인천시에 요구했다가 여의치 않자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수차례 실무조정 협의와 현장조사를 통해 관계기관

과 민원인을 설득한 끝에 30일 오후 3시 서구청에서 박재영 부위원장 주재로 토지소유자와 인천시, 인천시 종합건설본부, 서구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합의안을 마련하는데 성공했다.

인천시 등 관계기관들은 해당 토지가 당초 다세대·연립주택 용도였다가 아파트 용도로 변경된 만큼 다시 용도를 변경해줄 수 없고,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은 5년 이내에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개발이 추진되지 않고 나대지로 오랫동안 방치되는 것보다 용도를 변경해 개발을 촉진시키는 것이 낫다는 권익위의 설득에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민원인과 인천광역시 등 관계기관은 해당토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것에 합의하고, ▲토지소유자들도 아파트 용지로 변경되어 감보된 토지면적에 대해서는 양보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조정을 직접 주재한 박재영 부위원장은 “이번 중재로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이 더 이상 침해되지 않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는 새로운 물꼬를 마련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관철 기자 jgc@seoulilbo.net

(10.1*15.6)cm

민원들은 국민권익위원회 박재영 부위원장

[2012-04-30 18:53 홍찬선 기자 (photo@newsis.com)]



【서울=뉴스시스】국민권익위원회 박재영 부위원장이 30일 오후 인천 서구 소재 당하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22블럭 내에 있는 민원현장에서 관계자들로부터 용도변경 요청 민원을 듣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인천당하지구 단위계획 변경 현장 조정회의

[2012-04-30 18:53 홍찬선 기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국민권익위원회 박재영 부위원장(가운데)이 30일 오후 인천 서구청 대상 황실에서 민원인과 인천시, 인천시 종합건설본부, 인천 서구청 관계자가 참석한 조정회의를 개최해 인천 당하지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합의를 성사시킨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고령 연리들 수박농가 피해 대책 마련

민원번호 : 2BA-1112-013243 (도시수자원민원과, 이명호)

〈민원개요〉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낙동강 4대강사업 합천창녕보 건설사업 등으로 신청인들이 경작하고 있는 경북 고령군 우곡면 연리 일원은 지하수위 상승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로 수박 등의 농작물 피해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원인규명을 위한 피해조사를 하여 달라는 집단민원에 대해 객관적인 공동조사를 선행하여 정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보상대책을 수립하도록 위원회 조정을 통해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사안을 관계기관의 양보와 타협으로 해결

① 당사자

- 신청인 : 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 ○○○길 ○○○외 144명
- 피신청인 : 한국수자원공사(피신청인 1), 한국농어촌공사(피신청인 2),
경북도지사(관계기관 1), 경상북도 고령군수(관계기관 2)

② 민원내용

- 4대강사업 한천창녕보 담수 이후 지하수위 상승으로 농경지 침수피해 발생을 주장하며 대책수립을 요구하는 집단민원 제기

③ 피신청인 등 의견

- 이 민원 지역은 예년의 3배 이상의 강우, 배수체계 불량, 투수성이 불량한 토질, 그리고 이 민원 사업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정확한 인과관계 규명을 위해서는 공동조사 등을 통한 원인 규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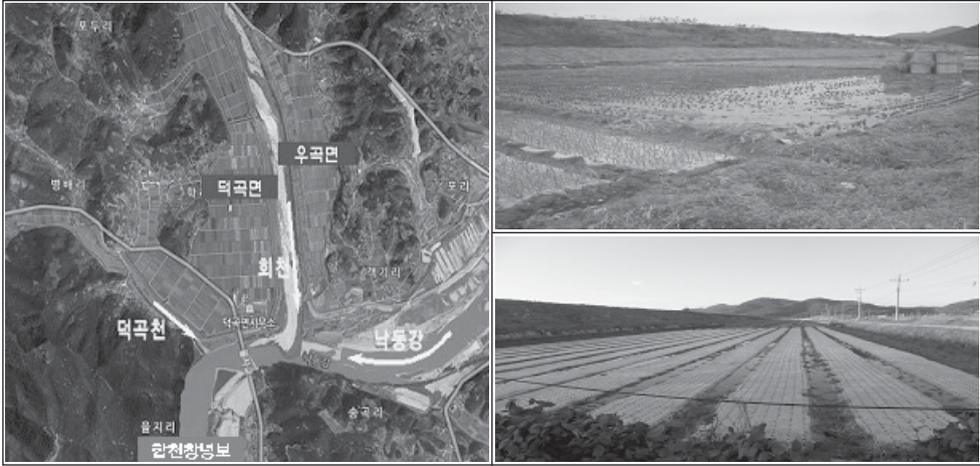
④ 주요 쟁점사항

- 신청인과 관계기관간 농경지 침수피해에 대한 다양한 해석으로 방치할 경우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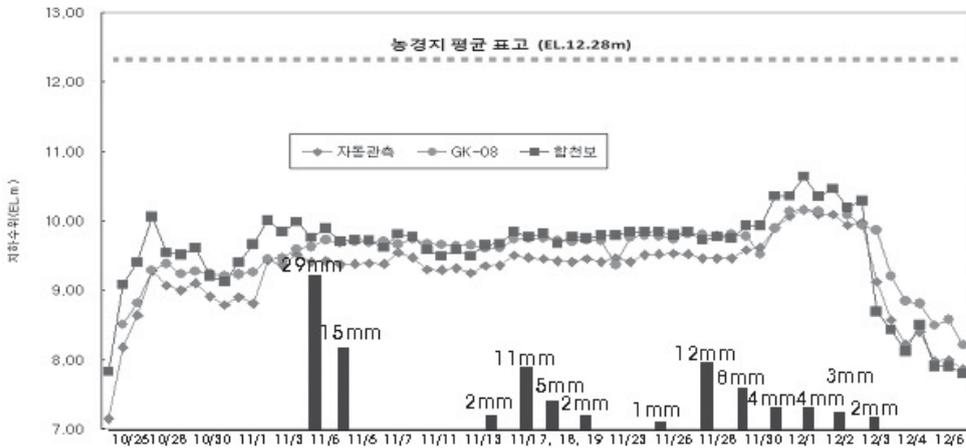
5 갈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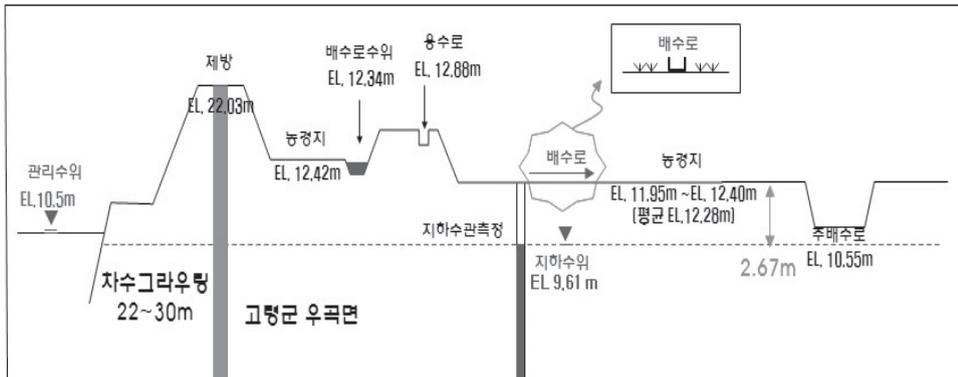
가. 민원발생배경 및 주요사실관계

- 2011. 10. 4대강사업 합천창녕보 담수 이후 지하수위 상승으로 농경지 침수피해 발생을 주장하며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책 수립을 요구



- 합천창녕보 담수로 인하여 하천수위 및 지하수위 연동을 확인하고자 2011.10.26. 부터 지역주민, 한국수자원공사, 칠곡군 합동으로 지하수위 관측 추진
- ※ 모니터링 결과 공사는 지하수위는 하천수위에 따라 연동되나 해당 농경지 표고보다는 2m (농경지 평균표고 약 12m, 하천수위 약 10m) 아래에서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





- 한국수자원공사는 최근 예년에 비해 3배 이상의 강우로 인해 일부 농경지에 대한 물고임 현상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음
 - ※ 고령지역은 2011. 10. 1 ~ 2011. 12. 8 까지 강우량은 175mm로 최근 10년간 평균 강우량(60.2mm)의 약 3배의 강우 발생

〈참고사항〉

- 2011. 7. 이 지역의 집중호우시 농경지 침수피해가 발생하여 신청인들이 ○○○○공사를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 ※ 신청인들 주장 : 배수장 펌프 미설치, (구)배수장 유출구 막힘현상으로 침수
 - ※ 한국수자원공사 주장 : 펌프미설치와 유출구 구조에 관계없이 천재지변에 의한 침수

- 4대강사업 합천창녕보 담수 이후 지하수위 상승으로 농경지 침수피해 발생을 주장하며 대책수립을 요구하는 집단민원 제기
 - ※ 2BA-1112-013243, 농경지 침수피해 보상대책

나. 조정 목표

- 침수피해 원인에 대한 관계기관별 다양한 해석으로 장기간 방치할 경우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농경지 침수피해에 대한 객관적인 공동조사를 선행하여 정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보상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공공갈등 해소를 통해 신청인들과 관계기관 모두가 Win-Win하는 대안적 중재방안 마련

⑥ 갈등해결과정

- '12. 1. 5 : 현장조사(1차) 및 위원회 중재(안) 협의 (1차) : ○○군
- '12. 2. 9 : 현장조사(2차) 및 위원회 중재(안) 협의 (2차) : ○○군
- '12. 2. 21. : 위원회 중재(안) 협의 (3차) : ○○○도
- '12. 2. 7. : 수박 작물재배 전문가 자문회의 : ○○○○○○과학원
- '12. 2. 23. : 위원회 중재(안) 협의 (4차) : 위원회 출석조사
- '12. 3. 29. : 위원회 중재(안) 협의 (5차) : ○○○○국도관리청
- '12. 5. 2. : 위원회 중재(안) 협의 (6차) : ○○○○

⑦ 조정 (합의) 결과

가. 조정·합의 최종결과

- 2012. 1. 5. 신청인과 관계기관 의견청취를 통해 농경지 침수피해를 원인규명을 위한 공동조사에는 공감을 하고 있었으나 공동조사 참여기관, 전문가 구성방법 등에 대하여 신청인들과 한국수자원공사간 의견 대립
- 2012. 1. 29. 공동조사를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 등에 대하여 원만하게 합의가 되었으나 공동조사의 용역기관 선정과 용역비 부담여부 등에 대한 이견
- 2012. 2. 7. 수박작물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침수피해 원인규명을 위하여 토양, 지하수 등의 영향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4계절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청취하였고 2012. 3. 23. 한국수자원공사는 민원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공사조사 용역비를 부담하겠다는 의견 제시
- 2012. 3. 29. 타지역의 유사한 조사사례를 발굴하여 한국수자원공사가 제시한 용역비로 공동조사를 추진하는 것에 관계기관이 합의하여 결국 우리 위원회가 제시한 중재안에 마련하여 2012. 5. 2. 조정서(안)를 최종적으로 확정

나. 위원회 조정·합의문

-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경상북도지사 칠곡군수는 침수피해 조사 등을

위한 각 기관 대표로 구성하는 공동조사 실무 협의회를 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성한다.

- 실무 협의회는 침수피해 조사용역을 실무 협의회 구성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착수하고 공동조사 범위 선정에 따른 분야별 전문가 구성 등 공동조사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 실무 협의회에서 발주한 공동조사 전문가 구성은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토목·지하수·토양·농업 등의 관련학회에 의뢰하고 선정은 해당 학회장의 결정에 따른다.
- 실무 협의회 대표는 위 '나'항 및 '다'항의 결정사항 및 용역결과에 대하여 신청인들에게 설명회 등의 형태로 별도 안내하고, 신청인들이 실무 협의회 회의록 등의 자료 요청시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한다.
- 실무협의회에서 발주한 용역 결과(자연적 요인 포함)에 의해 피해규모, 발생원인 별 책임비율을 산정하되 보상여부는 조사 후 관련법령, 판례 등에 따른다.(단, 자연적 요인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 신청인들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경상북도지사 칠곡군수가 시행하는 공동조사에 협조하고 조사결과에 따른다.

㉘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가. 신청인-피신청인 수용 및 이행여부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상호 합심하여 원인규명을 위한 조정안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

나. 시사점

- 관계기관간 농경지 침수피해에 대한 다양한 해석으로 방치할 경우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사안을 관계기간의 양보와 타협으로 원인규명을 위한 공동조사의 시금석을 마련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



[뉴스9] 고령 연리들 권익위 현장 조사

[2012-05-15 (20:50) 권기준 기자]



<앵커 멘트>

낙동강에 들어선 합천 창녕보 때문에 농경지가 침수돼 수박농사를 망치고 있다는 고령 연리들 농민들의 주장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장조사를 벌였습니다.

권익위는 앞으로 관계기관들이 공동으로 조사에 나서 정확한 원인 규명을 하도록 했습니다.
권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수자원공사,농어촌공사, 경북도청, 고령군청 관계자들이 고령 연리들에 모였습니다.

지난 해 12월 고령 연리들 일대 수박 재배지가 물에 잠겨 피해가 크다며 농민 145명이 요청한 '조사와 보상책 마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섭니다.

피해 상황을 파악한 권익위는 앞으로 농경지 피해 조사를 위해 관계기관들이 공동으로 실무협의회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토목,지하수,토양,농업 등으로 분류해 관련전문학회에 조사를 의뢰한다는 겁니다.

권익위는 공동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기관별, 발생원인별 책임비율을 산정해 농민들에게 보상내용을 전달할 방침입니다.

1)고령 연리들 2)〈국민 권익위원회〉

"관계기관 공동으로 피해조사 나서라"

3)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22:29:12~25 4)박영호 연리들 피해대책위 사무국장 22:22:35~49 5)촬영기자 이광호

〈인터뷰〉 김영란 국민권익위 위원장 원인 밝힐 때까지 전문가들이 잘 감정하겠죠 오늘은 원인규명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침수피해 원인에 대해 관계기관별로 각기 다른 주장을 하면서 문제해결이 장기화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인터뷰〉 박영호 연리들 농민 대표 공정하게 들 전체를 조사해 내년에는 이런 현상이 재발하지 않게 해주길 바랄 뿐.

민관 갈등으로까지 커지고 있던 사안이 국민권익위의 중재로 해결의 첫 단추를 조심스레 꿰 가운데 조사 결과가 언제,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BS NEWS 권기준입니다.

관련보도자료

〈KBS 뉴스광장〉

○일시 : 2012. 5. 2. (수)

○내용 : 경북 고령 농민 "낙동강 보 건설로 농사 피해

〈앵커 멘트〉

낙동강에 보가 건설된 이후 상류 지역인 경북 고령의 수박 주산지에서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자, 농민들이 보 건설로 인한 피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명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수박 잎이 시들어 힘없이 축 늘어졌습니다.

일부는 누렇게 말라 잎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햇빛이 강할 때 이 같은 현상은 더욱 심합니다.

이렇다 보니 출하를 앞둔 수박이 제대로 영글지 못하고 또 일부는 변형도 생기고 있습니다.

〈인터뷰〉박영호(농민대책위 사무국장) : "물이 있어서 뿌리가 활착이 안된 상황에서 수박이 착화되면 열매 자체가 양분을 못 빨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옵니다." 농민들은 이 일대 비닐하우스 8백여 동 가운데 절반 이상에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 수십억 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고령군도 최근 실태 파악에 나섰지만 원인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인터뷰〉최종식(고령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담당) : "시들음증의 발생빈도는 연리들이 타지역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그 원인은 구체적으로 알수가 없고."

농민들은 인근 낙동강에 합천창녕보가 들어선 이후 담수로 인한 지하수 상승으로 밭이 물에 잠기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는 낙동강 보 건설과 농작물 재배와는 관련이 없다고 반박합니다.

〈녹취〉류정아(수자원공사 합천창녕보사업소 차장) : "현상을 원인이다 아니다 말할때는 비교하는 대상이 있어야되지 않습니까. 뭔가 조사가 좀 더 진행되고..."

결국 국민권익위원회 주도로 관계기관이 모두 모여 대책을 논의하기로 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명환입니다.

관련보도자료

서울신문

2012년 05월 16일
15면 (정치)

합천창녕보 주변 수박 피해 권익위 "기관 공동조사" 중재

4대강 사업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수박 농가의 호소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재에 나섰다.

권익위는 경북 고령군의 수박 주산지인 우곡면 연리 수박농가들의 피해 주장에 대해 관계 기관과 중재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이 지역에서 수박농사를 짓는 농민 145명은 비닐하우스 800여동의 절반 이상에서 수박이 영글지 못하고 변형이

생기자 4대강 사업으로 인근 낙동강에 들어선 합천창녕보에 따른 침수 때문이라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국 수자원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은 예년에 비해 비가 3배 이상 내린 데다 배수체계 불량 등이 원인일 수 있어 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권익위는 "중재합의안에 따라 두 기관과 경상북도, 고령군 등이 30일 내로 공동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조사용역을 의뢰하기로 했다."면서 "조사를 거쳐 원인 책임비율을 산정, 농민들에 대한 보상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11.3*6.9)cm

新亞日報 중부매일

김영란, 농작물 피해논란 현장서 중재

[2012-05-15 15:37 송고 이승우 기자 (lesli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15일 수박 농사 피해 원인을 둘러싸고 지역 기관과 농민 사이에 분쟁이 벌어진 한 농촌 지역을 방문, 직접적인 중재를 통해 해결의 물꼬를 텄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북 고령군의 수박 주산지인 우곡면을 방문, 수박 변형 피해와 관련해 분쟁 중인 지역 농민과 한국수자원공사·한국농어촌공사·경북도청·고령군청 등 관련 기관 관계자들을 소집해 현장 조정 회의를 열었다.

수박 농사를 짓는 우곡면 농민 145명은 비닐하우스 800 여동 중 절반 이상에서 수박이 영글지 못하고 변형이 생긴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인근 낙동강에 들어선 합천창녕보로 인한 침수 때문이라며 피해 조사 및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민원을 지난해 12월 권익위에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수공과 농어촌공사 등은 강수량이 예년보다 3배 이상 많았고 배수 체계 불량, 투수성이 불량한 토질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어서 정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맞서 왔다.

권익위는 회의에서 관계기관이 30일 내에 공동 실무협의체를 구성한 뒤 90일 이내에 관련 전문학회에서 공동 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 규모와 발생 원인의 관계 기관별 책임 비율을 산정해 농민 보상대책을 수립하는 합의를 제시했고, 농민과 관계 기관들은 이를 받아들였다.

김 위원장은 "실무협의체를 통해 정확한 인과 관계가 규명될 수 있게된 만큼 모두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해결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익위, 고령 농경지 침수피해 보상 집단민원 해결

[2012-05-15 18:46 김재욱 기자 (jukim@newsis.com)]



【고령=뉴스is】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의 현장조정으로 경북 고령군 연리들 농경지 침수피해 민원이 해결됐다.

15일 고령군 등에 따르면 농경지 수위 상승으로 수박 등의 품질이 저하된다고 주장하는 농민 145명은 지난해 12월 권익위에 '농경지 침수피해 조사 및 보상' 고충민원을 넣었다.

이에 이날 국민권익위원회가 우곡면사무소를 찾아 조각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으로 공동조사를 통한 보상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농민들은 농경지의 물고임 현상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건설한 합천창녕보 담수로 인한 지하수위 상승에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수자원공사는 예년의 3배 이상의 강우와 배수장 및 배수로 등의 배수체계 불량, 투수성이 불량한 농경지의 토질 등이 원인으로 합천창녕보 건설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여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날 조정에서 따라 농민들이 주장하는 농경지 피해를 조사하기 위해 각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공동조사는 토목, 지하수, 토양, 농업 등의 관련 전문학회에 의뢰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기관별 발생원인별 책임비율을 산정, 농민들에게 보상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침수피해 원인에 대한 관계기관별 다양한 해석으로 장기간 방치될 경우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사안을 관계기관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동조사를 선행, 정확한 인과관계 규명을 통해 농민 보상대책이 마련될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권익위, 고령 수박농가 피해 공동조사

발생 원인별 책임비율 산정 보상대책 수립

경북 고령 연리들 농경지에 지하수위가 상승으로 농경지 침수피해로 수박 등의 품질이 저하된다고 주장하는 농민 145명이 지난해 12월 제출한 '농경지 침수피해 조사 및 보상' 고충민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의 현장 조정으로 공동조사를 통한 보상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권익위는 15일 오후 3시 경북 고령군 우곡면사무소에서 연리들 농민들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경상북도, 고령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김영란 위원장을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여 ▲ 농민들이 주장하는 농경지 피해를 조사하기 위하여 각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 공동조사는 토목, 지하수, 토양, 농업 등의 관련 전문학회에 의뢰하고 ▲ 공동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기관별 발생 원인

별 책임비율을 산정하여 농민들에게 보상대책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현장조정회의를 통하여 농경지 침수피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규명하여 오랫동안 끌어 왔던 민관 갈등 해소에 기여하고 공동조사 결과에 따라 농민들의 생계터전 복원을 위한 합리적인 보상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김영란 권익위원장은 "침수피해 원인에 대한 관계기관별 다양한 해석으로 장기간 방치될 경우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사안을 관계기관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동조사를 선행하여 정확한 인과관계 규명을 통해 농민들의 보상대책이 마련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령/전도일기자
jundi54@hanmail.net
(10.3*12.7)cm

대경일보

2012년 05월 16일
10면 (지역)

고령 연리들 농경지 침수피해 집단민원 해결

고령군 우곡면 연리들 농경지에 지하수위 상승으로 농경지 침수피해로 수박 등의 품질이 저하된다고 주장하는 농민 145명이 지난해 12월 제출한 '농경지 침수피해 조사 및 보상' 고충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의 현장조정정으로 공동조사를 통한 보상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농경지의 물고임 현상에 대해 농민들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와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권익위는 지난15일 오후3시우곡면사무소에서 연리들 농민들과 한국

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경북도, 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해 ▲ 농민들이 주장하는 농경지 피해를 조사하기 위해 각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 공동조사는 토목·지하수·토양·농업 등의 관련 전문학회에 의뢰하고 ▲ 공동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기관별 발생 원인별 책임비율을 산정해 농민들에게 보상대책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농경지 침수피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규명해 오랫동안 끌어 왔던 민·관갈등 해

소에 기여하고 공동조사 결과에 따라 농민들의 생계터전 복원을 위한 합리적인 보상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한 권익위 김영란 위원장은 "침수피해 원인에 대한 관계기관별 다양한 해석으로 장기간 방치될 경우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사안을 관계기관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동조사를 선행해 정확한 인과관계 규명을 통해 농민들의 보상대책이 마련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령=박석규기자
(15.6*9.4)cm

大邱日報

2012년 05월 16일
10면 (지역)

권익위, 고령 수박농가 피해 공동 조사

주민, 창녕보 침수 탓 민원 제기

원인·책임비율 산정 중재 나서

수박 주산지인 고령군 우곡면 연리에서 발생한 수박 변형피해 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중재에 나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지 관심을 모아지고 있다.

우곡면 연리에서 수박농사를 짓는 농민 145명은 비닐하우스 800여동 중 절반 이상에서 수박이 영글지 못하고 변형이 생기는 피해가 발생하자 인근 낙동강에 들어선 합천장녕보로 인한 침수 때문이라며 피해조사와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을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은 예년보다 비가 3배 이상 내렸고, 배수체계 불량, 물스밍성이 불량한 토질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어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15일 오후 3시30분 우곡면사무소에서 민원을 제기한 농민들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경상북도, 고령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었다.

이날 권익위는 각 관계기관이 30일 내로 공동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실무협의체 구성 후 90일 이내에 토목·지하수·토양·농업 등 관련 전문학회에 의뢰해 공동 조사영역을 시작할 것과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규모와 관계기관별 발생 원인의 책임비율을 산정해 농민들에게 보상대책을 수립하는 합의안을 마련했다.

조정회의를 주재한 김영란 위원장은 "권익위 중재로 마련된 신뢰성 있는 실무협의체를 통해 정확한 인과관계가 규명될 수 있게 된 만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수기자
kimys@idaegu.com
(11.6*11.4)cm

대구신문

2012년 05월 16일
04면 (종합)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가운데)이 15일 경북 고령군 우곡면사무실에서 농민 대표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경북도, 고령군 관계자가 참석한 현장조정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수박 농사 피해 원인을 공동조사해 각 기관별 책임 비율을 산정해 보상한다는 합의안을 채택했다. 강선일기자

권익위, 고령 수박피해 현장 중재

'피해원인 공동조사, 책임비율 산정' 합의안 채택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15일 수박 농사 피해 원인을 둘러싸고 지역 기관과 농민 사이에 분쟁이 벌어진 한 농촌 지역을 방문, 직접적인 중재를 통해 해결의 물꼬를 텄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북 고령군의 수박 주산지인 우곡면을 방문, 수박 변형 피해와 관련해 분쟁 중인 지역 농민과 한국수자원공사·한국농어촌공사·경북도청·고령군청 등 관련 기관 관계자들을 소집해 현장 조정 회

의를 열었다.

수박 농사를 짓는 우곡면 농민 145명은 비닐하우스 800여동 중 절반 이상에서 수박이 영글지 못하고 변형이 생긴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인근 낙동강에 들어선 합천장년보로 인한 침수 때문이라며 피해 조사 및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민원을 지난해 12월 권익위에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수공과 농어촌공사 등은 강수량이 예년보다 3배 이상 많았고

배수 체계 불량, 투수성이 불량한 토질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어서 정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맞서 왔다.

권익위는 회의에서 ▲관계기관이 30일 내에 공동 실무협의체를 구성한 뒤 90일 이내에 관련 전문학회에서 공동 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 규모와 발생 원인의 관계기관별 책임 비율을 산정해 농민 보상대책을 수립하는 합의안을 제시했고, 농민과 관계기관들은 이를 받아들였다.

김 위원장은 "실무협의체를 통해 정확한 인과 관계가 규명될 수 있게된 만큼 모두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해결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습스
(15.3*14.8)cm

미사보금자리지구 내 한옥건축물 존치 및 보전

민원번호 : 2CA-1202-177756 (도시수자원민원과, 김영옥)

<민원개요>

산업화, 도시화과정에서 급속하게 한옥이 멸실되어 약 7만 채(전체 주거의 0.5%, 2009년 현재)만 남아있어 국가정책적으로 한옥을 보급·확산하고 관광자원화하려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문화·예술·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한옥이 무차별적으로 철거되고 있는 현실이며, 한옥건축물의 건축비가 일반 건축물에 비해 2~3배 높아 이를 철거하는 경우 경제적 손실도 큼. 한채당(대표 김○○)은 조선 전통건축양식으로 도편수 서○○ 선생이 직접 건축한 한옥으로 한류문화를 전파하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였고, 신청인(한채당 대표)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존치를 요구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다른 영업자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철거의 위기에 놓였던 전통한옥건축물 '한채당'을 위원회 조정·중재로 보전하기로 함

1 당사자

- 신청인 : 경기도 하남시 ○○동 ○○당 대표 ○○○
- 피신청인 : 하남시장(피신청인 1), LH공사(피신청인 2)

2 민원내용

- 경기도 하남시 보금자리주택내 한옥건축물인 '한채당'이 편입
- 전통건축양식으로 건축한 한옥건축물인 한채당은 정통궁중요리를 포함한 한식을 통해 내외국인들에게 고유의 한식문화를 전파하고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철거의 위기에 있는 건물을 보존 또는 존치하여 한류문화발전에 기여하게 해달라고 요구
- 피신청인(한국토지주택공사)은 한채당은 문화·예술·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될 공원구역에 개인의 영업시

설이 존치되는 것은 다른 철거 영업자와의 형평성에 위배되어 존치는 불가 의견
- 우리 위원회에 한채당 존치를 요구하는 고충민원(2CA-1202-177756) 제기

③ 피신청인 등 의견

가. 경기도 하남시장

- 이 민원 건축물이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 및 토지이용계획상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 보존 및 부대시설(주차장 등)확보가 필요하며, ○○지구의 역사자료 박물관(사진 전시관), 한옥 프로그램 체험장, 공원 관리시설 등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건축물이 화재에 취약한 한옥이고 지구 외곽에 위치하여 관리에 어려움과 건축물의 특징(한옥) 상 연간 유지관리비용(건축물의 수선비, 상시운영인건비, 운영비 등)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공원시설물로의 관리·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사업시행자가 무상양여 시 공공시설물로의 활용방안(공원 관리시설, 역사자료 박물관, 한옥 프로그램 체험장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종합적인 연구검토 결과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 이 민원 건축물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9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사용승인일: '04.12.09), 이 민원 건축물의 위치는「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9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이 민원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상 공원 및 자족시설구역에 속하는 지역이고, 상당부분의 면적이 훼손지 복구지역내에 위치하여 토지이용계획상 받아들일 수 없으며, 공원구역은 지역주민이 건전한 여가생활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될 부지로 개인의 영업시설이 존치되는 것은 많은 철거 영업자와의 형평성 등 공익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존치는 불가함

④ 주요 쟁점사항

- 한옥 건축물 보전가치에 대한 판단기준 및 판단주체
 - 문화재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50년 이상이 되어야 가능하므로 그 미만의 건축물에 대한 보전가치 판단 기준과 근거 부재
- 공익사업에 편입된 다른 건축물과의 형평성 문제
 - 개인의 영업시설이 존치되는 것은 많은 철거 영업자와의 형평성 등 공익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5 갈등 분석

가. 민원발생배경 및 주요사실관계

- 국토해양부가 지정한 하남미사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경기도 하남시 ○○동 324-2, 324-5)에 소재한 한채당 포함되어 철거 예정
- 신청인은 한채당은 조선 전통건축양식으로 도편수 ○○○ 선생이 직접 건축한 한옥 건축물로서 정통궁중요리 등 한식을 통해 내외국인들에게 고유의 한식문화를 전파하고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전 및 존치를 하여 한류문화발전에 기여하게 해달라고 민원 제기
- 2012. 3. 27. 우리 위원회 김용미 비상임위원(건축전문가)이 직접 방문하여 한옥으로서의 보전가치가 있음을 확인하고 조정·중재 시도

나. 조정 목표

- 최근 우리 정통문화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국토경관의 품격을 높여 '전통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을 위한 국가차원의 추진전략 마련 시행 중
 - 전통한옥건축양식인 한옥을 보존하여 정부정책에 기여하고, 전통문화보전에 기여

다. 대안 제시

- 사업시행자가 한옥건축물이 보존될 수 있도록 지구계획을 변경하여 하남시에 기부채납(무상양여)하고, 하남시는 이를 공공시설물로 활용하는 방안(공원 관리시설, 역사자료 박물관, 한옥 프로그램 체험장 등)을 마련하도록 조정·중재

⑥ 갈등해결과정

가. 진행과정 개요

- '12. 02. 23 : 신청인 ○○○ 민원 신청
- '12. 03. 27. : 신청인들 요구사항 해결방안 협의(1차, 현지조사)
- '12. 04. 03. : 위원회 중재(안) 협의 (2차, 현지조사)
- '12. 05. 03. : 위원회 중재(안) 협의 (3차, 출석조사)
- '12. 05. 18. : 조정·중재(비상임위원 주재)

나. 제1차 현지조사

- 피신청인은 한옥건물 보전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나 존치하여 영업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역민원이 예상되어 불가하다고 주장하였으며 한옥 건물 보전을 위한 하남시와의 협의를 추후에 추진하기로 함

다. 제2차 현지조사

- 피신청인(하남시)은 한국건물이 보전이 되면 공원시설로 편입하여 활용할 수 있으나 한옥 건물 유지관리 등에 있어 예산 및 관리상의 문제점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라. 제3차 출석조사

- 한채당 건축물 보전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조정안 협의

⑦ 조정 (합의) 결과

가. 조정·합의 최종결과

- 우리 위원회에서는 3차례의 현지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하여 기관별 역할분담 방안을 마련하여 조율한 결과, 우리 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서의 내용대로 한옥건축물을 보전하기로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우리 위원회가 현지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조정서를 작성하고 조정·합의함

나. 위원회 조정 · 합의문

- (1) 피신청인 1(한국토지주택공사)은 이 민원 건축물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한옥전문가 등의 객관적인 의견을 받아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지구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변경신청하고, 승인결과에 따라 이 민원 건축물을 피신청인 2(하남시장)에게 기부채납(무상양여)한다.
- (2) 피신청인 2(하남시장)는 피신청인 1(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기부채납(무상양여) 받은 이 민원 건축물을 공공시설물로 활용하는 방안(공원 관리시설, 역사자료 박물관, 한옥 프로그램 체험장 등)을 마련하여 관리한다.
- (3)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피신청인 1(한국토지주택공사)의 건축물 등 지장물의 평가보상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㉘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가. 신청인-피신청인 수용 및 이행여부

- 한옥전문가 의견조회 후 보존가치 인정될 경우 지구계획변경안 마련하여 국토부 승인요청, 국토부 승인시 건축물 하남시 기부채납 예정

나. 시사점

- 보존가치가 있는 한옥건축물의 무분별한 철거 방지
 - 한옥을 보존하는 것은 경제적인 논리보다 후손에게 물려준 문화적 가치이고 유산이므로 각종 공익사업을 추진하면서 계획단계에서부터 그 장소가 가지는 역사성과 문화, 건축의 보존가치 등에 대한 관점 견지 필요성 공감



권익위, '보존가치있는 건축물 공공시설로 활용' 중재

[2012.05.18 11:03:25 최종수정 2012.05.18 11:03:25 조현정 기자 (cho0408@news1.kr)]

(서울=뉴스1) 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도 하남 미사보금자리 주택지구에 편입돼 철거위기에 놓였던 전통한옥건축물이 권익위의 중재로 철거위기를 면했다고 18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2월 해당 건축물에서 궁중요리 한식당을 운영하는 김모씨가 보금자리주택 건설로 건물이 철거될 상황에 놓이자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는 하남시청에서 하남시와 한국토지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 회의를 개최해 향후 하남시가 식당인 한옥건물을 보조해 공공시설물로 활용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합의 사항은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한옥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건축물을 하남시에 기부채납하고 ▲ 하남시는 이를 공원관리시설, 역사자료박물관 등 공공시설물로 활용토록 하는 것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바탕으로 도시를 개발할 때는 계획단계에서부터 보존 가치 여부가 충분히 고려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인종합일보

2012년 05월 18일
07면 (사회)

하남시 미사보금자리 지구

한옥건축물 보존방안 마련

하남미사보금자리 주택지구에 편입되어 철거위기에 놓였던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소재 전통한옥건축물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의 중재로 철거위기를 면했다.

해당 건축물에서 궁중요리 한식당인 '한채당(韓菜堂)'을 운영하는 민원인 김씨는 보금자리주택건설로 건물이 철거될 상황에 놓이자, 해당 한옥건물이 관광 명소로 알려져 있고 문화적 가치도 있으므로 보존해달라며 국민권익위에 지난 2월 민원을 제기했다. 당초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다른 영업자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했으나, 민원인 김씨는 식당 영업을 못하게 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전통건축양식으로 지어진 지 7년 밖에 지나지 않은 한옥건축물까지 철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향후 하남시가 공공시설물로 활용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정현석 기자

/jonghapnews.com
(4.8*12.8)cm

전통 한옥 '한채당' 철거위기 넘겼다

[2012/05/18 [12:01] 김영수 기자]



국민권익위, "보존가치 있는 건축물, 공공시설로 활용" 중재

하남미사보금자리 주택지구에 편입돼 철거 위기에 놓였던 한채당(韓菜堂)이 일단 철거 위기를 넘겼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18일 오전 11시 하남시청에서 김영기 한채당 대표, LH공사 하남직할사업단장, 하남시 개발사업단장 등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회의를 열고 한채당 존치를 결정했다.

조정회의는 김영기 한채당 대표가 보금자리주택건설로 건물이 철거될 상황에 놓이자, 한채당의 문화재적 가치를 들어 보존해줄 것을 국민권익위에 지난 2월 민원을 제기해 열리게 됐다.

당초 사업시행자인 LH공사는 다른 영업자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존치를 거절했으나, 전통건축양식으로 지어진지 7년 밖에 지나지 않은 한옥을 철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김 대표와 하남시의 의견을 수용했다.

이같은 양측의 의견 속에 국민권익위는 18일 오전 11시 하남시청에서 하남시, 한국토지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용미 위원의 주재로 조정회의를 열어 한채당을 보

전해 향후 하남시가 공공시설물로 활용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주요 합의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한옥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건축물을 하남시에 기부채납(무상양여)하고 하남시는 이를 공원관리시설, 역사자료박물관 등 공공시설물로 활용하도록 했다.

이날 조정이 끝난 후 김 대표는 "우리의 전통문화인 한옥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남시와 LH공사가 적극 협조해준 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용미 국민권익위 위원은 "한옥의 가치를 제대로 살리자면, 한옥과 어울리는 콘텐츠가 담겨야 할 것"이라며 "하남시가 한옥의 가치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하남시는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한옥인 한채당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정안은 당사자가 서명하면, 민법상 화해와 같은 법적 효력을 지닌다.

전주 만성도시개발지구 도로변 보행로 개설

민원번호 : 2AA-1204-089212 (도시수자원민원과, 김성도)

〈민원개요〉

전주 만성도시개발사업 구역의 경계구역 소재 도로인 대로 1-16호선 인근에 완충녹지를 결정함으로써 신청인 소유 토지인 농지 등의 진·출입이 곤란해지는 등 도시계획상 맹지가 우려되니 도와 달라는 집단민원에 대해 완충녹지 결정을 철회하거나 조정하도록 하여 개발 사업과 인근 주민의 상생하는 계기 마련

① 당사자

- 신청인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동 ○○○ 외 23명
- 피신청인 : 전북도시개발공사(피신청인 1), 한국토지주택공사(피신청인 2),
전주시장(피신청인 3)

② 민원내용

- 전주만성도시개발사업 구역내 도로인 대로 1-16호선 계획이 유지될 경우 도로변 토지는 맹지화되어 사용 곤란함

③ 피신청인 등 의견

- 이 민원 사업의 체계적인 개발과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이 민원 도로의 교통흐름을 개선하고자 완충녹지를 지정하였으나, 이 민원 도로 연결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상 맹지화를 방지하고, 토지 이용 합리화를 위해 이 민원 도로 및 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④ 주요 쟁점사항

- 맹지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기 설정된 완충녹지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5 갈등 분석

가. 민원발생배경 및 주요사실관계

- 전주만성도시개발사업은 전주시 북부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
- 도로(대로 1-16호선)를 개설하며 주변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도로 우측에 12M 완충녹지를 설정
- 연접 대지 및 농지 접근을 위해 진출입로 8개를 계획 중
- 완충녹지로 인해 진출입로에 연접되지 않은 토지는 도로이용 곤란

나. 조정 목표

- 최완충녹지 폭을 조정하고 별도 이면도로를 개설하여 농사용 차량 교행이 가능하도록 계획(변경) 입안하고, 전주시장은 관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상정하는 상호 협력 방안 마련

6 갈등해결과정

- '12. 4. 12. : 고충민원 신청
- '12. 5. 31. : 위원회 중재(안) 협의 (1차)
 - ※ 완충녹지를 경관녹지로 변경하여 녹지 폭을 축소하고 이면도로 개설
- '12. 6. 22. : 위원회 중재(안) 협의 (2차)
 - ※ 이면도로 폭4m, 차량정차대, 녹지변에 2m 녹도 또는 보행자도로 설치

7 조정 (합의) 결과

가. 조정 · 합의 최종결과

- 완충녹지내에 녹도 또는 보행자도로 설치하여 도로변 토지의 이용효율도모 계획 수립하는 것에 대하여 이해 당사자 수용

나. 위원회 조정·합의문

가. 피신청인 1(전북개발공사)과 피신청인 2(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민원 녹지에 폭 4m 이면도로, 차량 주차대, 폭 2m 녹도 또는 보행자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이 민원 도로 이용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2. 12.까지 이 민원 도로 변의 완충녹지를 연결녹지로 변경하는 계획을 입안한다.

나. 피신청인 3(전주시장)은 피신청인 1과 2의 입안을 2013. 상반기 중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 처리한다.

다. 신청인은 이 민원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㉘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가. 신청인-피신청인 수용 및 이행여부

- 완충녹지에 대한 계획을 변경하는 조정안 수용
- 피신청인 1,2는 관련계획안 수립완료하여 피신청인 2 소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중

나. 시사점

- 개발사업지구 내 도로변 완충녹지는 개발지와 인근 토지를 단절하는 성격을 지님
- 개발과 인근 주민의 상생차원에서 완충녹지계획수립 시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권익위원장과 전주만성지구 주민들

[2012-06-28 11:36 유영수 기자 (yu0014@newsis.com)]



【전주=뉴스시스】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과 전주시, 전북개발공사, LH전북본부는 28일 전주시청에서 전주 만성도시개발지구 경계 완충녹지 계획 변경 조정회의를 열고 농로 진출입 위해 녹지 폭, 보행로 설치 중재안을 통과시켰다.사진은 김 위원장과 만성지구 민원 주민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전주 만성지구 조정회의

[2012-06-28 11:36 유영수 기자 (yu0014@newsis.com)]



【전주=뉴스시스】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과 전주시, 전북개발공사, LH전북본부는 28일 전주시청에서 전주 만성도시개발지구 경계 완충녹지 계획 변경 조정회의를 열고 농로 진출입 위해 녹지 폭, 보행로 설치 중재안을 통과시켰다. 김 위원장이 조정안 합의서에 서명하고 있다.

전주부시장과 권익위원장

[2012-06-28 11:38 유영수 기자 (yu0014@newsis.com)]



【전주=뉴스시스】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과 전주시, 전북개발공사, LH전북본부는 28일 전주시청에서 전주 만성도시개발지구 경계 완충녹지 계획 변경 조정회의를 열고 농로 진출입 위해 녹지 폭, 보행로 설치 중재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문명수 전주부시장이 전주만성지구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만성지구 경계 완충녹지 계획변경

[2012년 06월 28일 임홍진 기자]

민원이 제기됐던 전주 만성도시개발지구 경계의 완충녹지 계획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변경됐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오늘(28) 민원인과 전주시,전북개발공사, LH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을 실시해 12미터로 계획된 만성지구 경계 완충녹지를 8미터로 변경하고 나머지 4미터에는 보행로와 차량정차대 등을 개설하는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동안 만성지구 주민들은 기존 설계대로 완충녹지가 조성되면 주변 토지와 연결되는 도로가 없어지고 농업용 차량 등이 큰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며 사고 위험을 호소해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맨 오른쪽)과 전주시, 전북개발공사, LH전북본부는 28일 전주시청에서 전주 만성도시개발지구 경계 완충녹지 계획 변경 조정회의를 열고 있다. 안봉주기자 bjahn@

전주만성지구 경계 완충녹지 계획 변경

권익위 “농로 진출입 위해 녹지 폭 축소·보행로 설치” 중재안 권고

전주시 만성도시개발사업지구 경계의 완충녹지 계획이 변경된다.

국민권익위는 28일 오전 전주시청에서 만성도시개발사업지구 주변의 전주 제2산업단지와 전주완주혁신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변에 설정된 길이 1.6km, 폭 12m의 완충녹지에 대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직접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민원인과 관계기관인 전북개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주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중재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전북개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현재 폭 12m로 계획된 녹지 가운데 8m를 녹지로 변경하고, 나머지 4m에 대해

서는 보행로와 차량정차대 등을 개설하기로 중지를 모았다. 이와 함께 전주시는 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해 개발계획을 변경토록 했다.

이보다 앞서 전주만성도시개발사업지구 인근의 주민 24명은 ‘현재 설계된 도시계획대로 시공면 주변 토지가 맹지화되고 농업용 대형차량 등이 주요 간선도로 역할을 하는 6차선 도로로 빈번하게 진출입, 교통안전에 위험 요소가 따른다’며 지난 4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었다.

조정회의를 주재한 김영란 위원장은 “대규모 공익사업을 시행하면서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정진우기자 epicure@
(12.6*17.6)cm

관련보도자료

공감언론 NEWSis.() 국내 최대
민영 뉴스통신사
2001-2011

전주서 도로완충녹지 민원 중재한 김영란 위원장

[2012-06-28 16:49 (photo@newsis.com)]



【전주=뉴스시스】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가운데)이 28일 오전 전주시청에서 만성 도시개발사업지구 주변 전주 제2산업단지~전주완주혁신도시간 1.6km 길이 도로변의 완충녹지 폭을 조정해 보행로를 만들도록 민원을 중재한 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관련보도자료

공감언론 NEWSis.() 국내 최대
민영 뉴스통신사
2001-2011

의사봉 두드리는 김영란 위원장

[2012-06-28 16:49 (photo@newsis.com)]



【전주=뉴스시스】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이 28일 오전 전주시청에서 만성도시개발

사업지구 주변 전주 제2산업단지~전주완주혁신도시간 1.6km 길이 도로변의 완충녹지 폭을 조정해 보행로를 만들도록 민원을 중재한 후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관련보도자료



국민권익위, 전주만성지구 완충녹지 계획 변경 조정

[2012.06.28 14:32:05 최종수정 2012.06.28 14:32:05 박원기 기자 (wgpark@news1.kr)]

(전주=뉴스1) 전북 전주 제2산업단과 전주·완주혁신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변 녹지에 보행로가 개설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에 따르면 만성도시개발사업지구 인근 주민 20여명은 지난 4월 국민권익위에 "현재 설계된 도시계획 대로 시공될 경우 주변 토지가 맹지화 되고 농업영 대형차량 등으로 교통안전에 위험요소가 된다"며 중재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계획돼 있는 길이 1.6km, 폭 12m의 도로변 완충녹지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이날 오전 전주시청에서 전북개발공사와 NH, 전주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재 12m로 계획된 녹지를 8m로 변경하고 나머지 4m는 보행로와 차량정차대를 개설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김영란 위원장은 "대규모 공익사업을 시행하며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게 돼 뜻이 깊다"고 말했다.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보도 및 가로등 설치

민원번호 : 2CA-1205-246913 (도시수자원민원과, 김영욱)

<민원개요>

의왕포일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지구 내 종교용지인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포일단지 내 ○○○번지(2,176.9㎡)에 보행자도로와 가로등이 없어 지역주민의 통행에 위험 및 우범화가 우려되니 보행자 전용도로 및 가로등 개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민원 토지상의 보행자도로(보도폭 최소 2.0m 확보) 및 가로등(기존 가로등 간격을 준수)을 설치하여 의왕시장에게 기부채납(무상귀속)하고, 의왕시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신청 시 이 민원 토지상에 보도 및 가로등 설치에 필요한 포일2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조정하여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

① 당사자

- 신청인 : ○○○○
- 피신청인 : 경기도 의왕시장(피신청인 1), 한국토지주택공사(피신청인2)

② 민원내용

- 신청인은 의왕포일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 지구내 종교용지인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포일단지 내 ○○○번지(2,176.9㎡, 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를 불하받아 교회건축물 신축공사를 준비 중에 있는데, 피신청인(LH)은 종교부지를 매도하면서 도로에 인도와 가로등도 없이 계획하여 매도한 바 지역주민의 안전한 통행 및 우범화 방지를 위해 보행자 전용도로 및 가로등을 개설해 달라.

③ 피신청인 등 의견

가. 한국토지주택공사(피신청인 1)

- 신청인은 현 대지 상태를 확인하고 계약한 사항으로 의왕포일2지구단위계획 상 이 민원 토지에 결정된 건축한계선(2m)에 의해 후퇴한 공지는 보행자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토록 명시하고 있으나 보행자도로 개설을 위해서는 이 민원 사업이 준공되었으므로 의왕시장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야 가능
 - 가로등은 교회에서 착공 후 공사에 소정의 위치에 설치를 요청할 경우 길어깨 내 여유폭(1m)내에 설치하여 안전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

나. 의왕시장(피신청인 2)

- 대3-8호선과 접한 종교용지에 양측 녹지와 양지천의 동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보행자도로(폭 최소 2.0m) 및 기존 가로등 간격을 준수하여 가로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포일2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상 기반시설의 변경이 수반되어야 함

4 주요 쟁점사항

- 보행자 도로 및 가로등 설치에 요구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의왕포일2 지구 단위계획상 이 민원 토지에 결정된 건축한계선(2m)에 의해 후퇴한 공지는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하도록 명시하여 이 민원 사업이 준공되었으므로 의왕 시장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상호 의견 대립

5 갈등 분석

가. 민원발생배경 및 주요사실관계

- 보행자도로 및 가로등 설치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필요
 - 의왕포일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지구내 종교용지인 경기도 의왕시 포 일동 포일단지 내 ○○○번지(2,176.9㎡)에 보행자도로와 가로등이 없어 통행에 위험 및 우범화 우려
- ⇒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보행자 전용도로 및 가로등 개설 요구

※ 2012. 5. 30. 보행자도로, 가로등 설치를 요구하는 고충민원(2CA-1205-246913) 제기

나. 조정 목표

- 의왕포일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지구 종교부지 인근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보행안전과 우범화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 보행자도로 설치, 가로등 설치

6 갈등해결과정

- '12. 5. 30 : 신청인 ○○○(○○교회 대표) 위원회에 민원 신청
- '12. 7. 13. : 현지조사, 신청인들 요구사항 해결방안 협의
- '12. 8. 14. : 위원회 중재(안) 협의

7 조정 (합의) 결과

가. 조정 · 합의 최종결과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보행자도로와 가로등을 설치하여 의왕시에 기부채납하고 의왕시는 이를 위한 지구단위계획변경절차를 추진

나. 위원회 조정 · 합의문

가. 피신청인 1(한국토지주택공사)은 이 민원 토지상의 보행자도로(보도폭 최소 2.0m 확보) 및 가로등(기존 가로등 간격을 준수)을 설치하여 피신청인 2(의왕시장)에게 기부채납(무상귀속)한다.

나. 피신청인 2(의왕시장)는 피신청인 1(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시 이 민원 토지상에 보도 및 가로등 설치에 필요한 포일2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검토하여 추진한다.

⑧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가. 신청인-피신청인 수용 및 이행여부

- 지구단위계획 변경인가
- 의왕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지적공부 정리 완료

나. 시사점

- 관계기관의 이해와 협력을 통해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위험을 사전에 방지

관련보도자료

수도일보

의왕포일2지구 '주민 통행불편 해소'

국민권익委, '보행자도로·가로등 설치' 중재

경기 의왕포일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지구 내 종교용지에 보행자 통행로와 가로등이 없어 불편을 겪던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의 중재로 통행불편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국민임대주택 조성사업지구 내 종교용지(의왕시 포일동 678번지)

를 분양받은 민원인은 해당 토지안을 지나는 도로에 보행자도로와 가로등이 없어 현 상태에서 교회를 신축할 경우 주민 불편이 예상된다며 수차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행불편 해소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5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민원이 대지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계약했고, 다른 산책로를 이용하면 된다는 입장이었다.

민원을 접수받은 국민권익위는 수차례 현지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안전사고 방지 및 우범지대화 방지를 위해 5일 오후 3시 경기 의왕시 포일동 소재 한국토지주택공사 의왕포일사업단에서 의왕시와 한국토지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창 상임위원 주재로 조정회의를 열어 보행자도로와 가로등을 설치토록 중재했다.

세부 중재안은 한국토지주택공

사는 보행자도로와 가로등을 설치, 의왕시에 기부채납하고, 의왕시는 이를 위한 지구단위계획변경절차를 추진토록 했다.

이번 조정회의를 주재한 국민권익위 정기창 상임위원은 "관계기관의 이해와 협력을 통해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게 돼 기쁘고, 국민권익위도 앞으로 남은 지구단위계획이 변경절차들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의왕/이춘기 기자
kcg@sudoilbo.com
(20.8*7.4)cm

2012년 09월 06일
14면 (사회)

관련보도자료

경인일보

의왕 포일지구 보행도로 개설

의왕시 포일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주민들이 요구한 보행자도로 개설과 가로등 설치 문제가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LH의왕포일사업단에서 의왕시·LH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LH는 보행자도로와 가로등을 설치해 의왕시에 기부채납하고 의왕

2012년 09월 06일
19면 (지역)

시는 이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추진토록 중재했다.

권익위는 수차례 현장을 방문해 실태를 점검한 뒤 이같이 중재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사업지구 종교용지 인근에 보행자도로와 가로등이 없어 교회가 들어설경우 불편이 예상된다며 지난 5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의왕/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10.0*4.9)cm

“종교용지 가로등 설치하라”

권익위, LH상대 민원 의왕 포일2 주민 손 들어줘

의왕 포일 2지구 국민임대주택 단지 조성사업지구 내 종교용지에 보행자 통행로와 가로등이 없어 불편을 겪던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통행 불편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5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에 따르면 포일동 678 국민임대주택 조성사업지구 내 종교용지를 분양 받은 주민들은 그동안 해당 토지 앞을 지나는 도로에 보행자도로와 가로등이 설치돼 있지 않아 교회를 신축할 경우 주민 불편이 예상된다는 사업시행자인 LH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같은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주민들은 지난 5월 국민권

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는 5일 LH의왕포일사업단과 의왕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개최, “LH는 보행자도로와 가로등을 설치해 의왕시에 기부채납하고, 의왕시는 이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추진하라”고 중재했다.

이에 따라 의왕 포일 국민임대주택지구 주민들이 요구한 보행자 도로와 가로등이 설치돼 주민불편이 해소되게 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수차례 현장을 방문해 실태를 점검한 뒤 중재했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홍기자 ihlim@kyeonggi.com
(10.2*10.6)cm



권익위, 의왕 포일지구 보행자도로 민원 해결

[2012-09-05 15:27 이복한 기자 (bhlee@yna.co.kr)]

(광명=연합뉴스) 경기도 의왕시 포일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주민들이 요구한 보행자도로 개설과 가로등 설치 문제가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LH의왕포일사업단에서 의왕시, LH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LH는 보행자도로와 가로등을 설치해 의왕시에 기부채납하고 의왕시는 이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추진토록 중재했다.

권익위는 수차례 현장을 방문해 실태를 점검한 뒤 이같이 중재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사업지구 종교용지 인근에 보행자도로와 가로등이 없어 교회가 들어설 경우 불편이 예상된다며 지난 5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주암댐 이설도로 노폭 확장 및 선형 직선화

민원번호 : 2CA-1207-173451 (도시수자원민원과, 장경수)

〈민원개요〉

전남 순천시에 위치한 주암댐의 보조여수로 건설 및 이설도로 확장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바, 이설도로 진입부분은 도로 확장공사 구간에서 제외되어 이설도로 확장 효과가 반감되고 교통사고위험이 잔존하고 있어, 이설도로 진입부분을 확장하기로 이설도로 확장공사 시행사인 한국수자원공사와 도로관리청인 전남 순천시장의 합의를 유도하여 도로통행 안전성 제고

① 당사자

- 신 청 인 : 전남 순천시 ○○○ 외 108명
- 피신청인 : 한국수자원공사, 전라남도 순천시장

② 민원내용

- 전남 순천시 주암댐의 보조여수로 건설 및 이설도로 확장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바, 이설도로 진입부분은 도로 확장공사 구간에서 제외되어 사고위험이 있으므로 이설도로 진입부분도 공사구간에 포함시켜 확장하여 달라.

③ 피신청인 등 의견

가. 한국수자원공사

- 민원 도로구간은 시군도로서 도로관리청인 순천시장이 시행할 사안임

나. 전라남도 순천시장

- 이 민원 도로는 주암댐 건설에 따라 개설된 이설도로이므로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계획 중인 이설도로 확장 구역에 편입시켜 추진하는 것이 타당

4 주요 쟁점사항

- 확장공사 시행 주체
 - 이 민원 도로는 주암댐 건설당시 이설도로로 개설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관리권이 이관된 도로로서 도로개설 원인자는 한국수자원공사이지만 법적 관리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확장공사 시행주체를 특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5 갈등 분석

가. 민원발생배경 및 주요사실관계

- 이 민원 도로는 주암댐 건설당시 이용하던 도로가 수몰됨에 따라 이설도로로 개설되었으나 폭이 좁고 굴곡과 진입부 경사가 심할 뿐만 아니라 호수변을 따라 안전시설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로 개설되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음
- 주암공사는 보조여수로 건설공사를 시행하며, 공사구간에 이 민원 도로도 포함되자 도로 폭 확장 및 굴곡을 완화하는 이설도로 확장사업을 병행할 계획이나, 도로 진입 부분은 사업구간에서 제외

나. 조정 목표

- 확장공사 시행주체 및 사업비 부담 · 행정지원 주체 결정

6 갈등해결과정

- 2012. 7. 18. : 위원회에 고충민원 신청(3건 병합)
- 2012. 7. 25. : 피신청인별 의견청취, 대안마련 논의
- 2012. 8. 23. : 위원회 조정 · 중재(안) 협의 (1차)
- 2012. 9. 26. : 위원회 조정 · 중재(안) 협의 (2차)
- 2012. 10. 25. : 현지조정회의 개최(조정성립)

7 조정 (합의) 결과

가. 조정·합의 최종결과

- 신청인들은 2012. 7. 18. 등 3차례 우리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였고, 7. 25. 한국수자원공사, 순천시와 함께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고, 이후 민원해소 방안에 대하여 수차례 협의하는 과정을 반복하였음
- 8. 23. 제1차 조정·중재 협의를 통해 도로확장 기본방향에 대한 합의를 하였고, 9. 26. 제2차 조정·중재 협의를 통해 확장공사에 따른 피신청인간 역할 분담, 신청인 및 도로이용자의 협조요청 사항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고, 10. 25. 우리 위원회가 현지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조정서를 작성하고 조정 합의함

나. 위원회 조정·합의문

- 주암공사는 이설도로 확장공사 완료 시까지 이 민원 이설도로 인입부분 70m를 폭 8m로 확장 및 선형개선 공사를 시행한다.
- 순천시장은 주암댐공사가 이 민원 확장 및 선형개선 도로 공사 시 현재 도로 내 지장물(한전주 2본, 통신관로·맨홀 등)을 각 시설물 관리청 부담으로 이설하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고, 도로점용 등 인허가가 필요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한다.
- 신청인들은 이 민원 도로 인입부 확장 및 선형개선 공사기간 동안 일시적인 통행 불편을 감수하고, 이 도로 통행인들이 이와 관련한 통행불편을 문제삼지 않도록 설득하는 등 이 민원 도로 확장 및 선형개선 공사에 적극 협조한다.

⑧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가. 신청인-피신청인 수용 및 이행여부

- 신청인, 피신청인 모두 우리 위원회의 조정사항을 수용할 예정임

나. 시사점

- 고충민원 처리 주관기관을 결정하지 못하여 해소에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뻔한 민원을 위원회가 적극적인 조정·중재하여 처리 주관기관을 정하고 합리적 대안을 끌어냄으로써 고충민원 조기 해소

청북지구 단독주택 피로티 설치로 주차난 해소

민원번호 : 2AA-1207-133612 (도시수자원민원과, 이진석)

<민원개요>

평택청북택지지역의 단독주택용지는 층수가 2층 이하로 제한, 피로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심각한 주차난이 예상되므로, 피로티를 층수에서 제외하는 것을 지구단위계획에 명시해 달라는 집단민원에 대해 기반시설 여유용량 등을 산출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도록 조정,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춘 택지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① 당사자

- 신 청 인 : ○○○씨 등 토지주 12명
- 피신청인 : LH공사(피신청인 1), 평택시장(피신청인 2)

② 민원내용

- 청북지구(1단계, 2단계)의 단독주택용지는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80% 이하, 2층 이하, 2~3가구 이하로 제한되어 있고, 피로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 1층을 피로티로 할 경우 건축가능 층수가 1개 층에 불과하고, 그렇다고 피로티를 설치하지 않자니 심각한 주차난이 예상되는 바, 피로티를 층수에 제외하는 것을 지구단위계획에서 명확히 명시하고 있는 화성 동탄2지구, 대전 도안지구, 천안 청수지구 등을 참조하여 규제하여 달라.

③ 피신청인 등 의견

가. LH공사

- 1단계사업지구는 이미 사용 승인된 지구이므로, 평택시장이 변경을 승인 할 경우, 2단계사업지구 단독주택용지도 1단계에서 완화된 만큼 규제가 완화되도록 경기도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신청을 하여 변경절차를 추진하겠다.

나. 평택시장

- LH공사와 사전협의를 거쳐 평택지구 기반시설 여유용량 여부 및 적정가구 수, 적용범위(1단계, 2단계) 등을 면밀히 검토 하여 민원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 지구단위계획 변경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

④ 주요 쟁점사항

- 역민원 해소 대책
 - 현재의 시행지침에 의거 기 건축허가(39건)를 받아 준공(21건)되거나 착공 중(예정)인 토지소유자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
 - ※ 신청인 대표가 21명의 찬성서명 및 다수인에 대해 유선 상으로 동의 확인

⑤ 갈등 분석

가. 민원발생배경 및 주요사실관계

- 평택지구 단독주택용지는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80% 이하, 2층 이하, 2~3가구 이하로 제한되어 있고, 피로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1층을 피로티로 할 경우 실제 건축가능 층수가 1개 층에 불과하다.
- 평택지구는 2006년 9월 1단계 단독택지분양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669개 필지 중 414개가 분양되었는데, 피로티에 대한 별도 언급 없이 층수가 2층으로 제한되고 있어, 주차장 부족 등으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 문제로 갈등을 빚어 현재까지 극히 일부만 건축허가(39건)를 받아 21채만 지어졌다.
- 그렇다고 피로티를 설치하지 않자니 심각한 주차난이 예상되는 바, 피로티를 층수에 제외하는 것을 지구단위계획에서 명확히 명시하고 있는 화성 동탄2지구, 대전 도안지구, 천안 청수지구 등을 참조하여 규제하여 달라고 민원이 발생

나. 조정 목표

- 기반시설 여유용량 등을 산출한 후, 관련법규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로티 설치 등 건축제한을 완화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키로 하는 중재안을 성사시켜, 향후 심각한 주차난으로 인한 불법주차 등의 부작용 최소화

⑥ 갈등해결과정

- 2012. 7. 13 : 고충민원 접수
- 2012. 7. 16 : 고충민원 자료제출 요구(국민권익위원회)
- 2012. 7. 24 : 고충민원 자료제출(피신청인)
- 2012. 8. 30 : 제1차 관계기관 업무회의(실지조사 실시)
- 2012. 9. 19 : 제2차 관계기관 업무회의(실지조사 실시)
- 2012. 11. 22 : 현지조정회의 개최(조정성립)

⑦ 조정 (합의) 결과

가. 조정 · 합의 최종결과

- 신청인과 피신청인간 이견발생으로 현장방문조사 2회 및 수차의 유선통화 협의를 통해 조정방안 마련
 - 1차 현장조사('12. 8. 30.)
 - 신청인 대표 등 10여명, 평택시 · LH공사 부서장급 등 10여명 참석
 - 2차 현장조사('12. 9. 19.) 시 조정안에 대한 원칙적 합의
 - 평택시 담당과장, LH공사 담당부장 등 참석
-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상호 양보하여 원만한 해결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평택시 지역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평택지구 단독주택용지는 피로티를 층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별도 언급 없이 2층으로 제한하고 있어, 주차난을 우려 건축이 활발하지 못하였음

나. 위원회 조정 · 합의문

- LH공사는 평택청북지구 기반시설 여유용량 등을 산출하여 평택시장에게 통보한다.

LH공사는 평택시장이 청북지구 1단계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건축제한을 완화할 경우, 이를 참조하여 2단계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을 경기도에 제출·추진한다.

- 평택시장은 LH공사가 평택청북지구 기반시설 여유용량 등을 산출하여 지구단위 계획변경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면, 관련법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민원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단계사업지구 단독주택용지의 피로티 설치 등 건축제한을 완화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적극 검토하여 시행한다.
- 신청인은 건축 시, 관련규정 및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㉘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가. 신청인-피신청인 수용 및 이행여부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상호 합심하여 조정안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
- 피신청인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기반시설 여유용량 등을 산출하여 변경절차에 필요한 서류 준비 중에 있으며, 허가기관과 관련법규 등을 검토 중임

나. 시사점

- 평택지구 단독주택용지는 피로티를 층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별도 언급 없이 2층으로 제한하고 있어, 토지주들이 주차난을 우려 건축이 활발하지 못하였으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조정회의가 성공리에 마무리됨에 따라,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춘 택지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평택 청북지구 주차난 해소

권익위, 현장조사·실무 조정 통해 중재 맡아

애매한 층수제한에 따른 주차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주차난이 예상됐던 평택 청북지구 단독주택필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와 평택시, LH공사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평택청북지구는 지난 2006년부터 단독택지분양을 시작해 현재 669개 필지 중 414개가 분양됐다.

하지만, 애매한 층수제한으로 묶여 주차공간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던 건축주들이 주택 및 건물증축을 계획변경을 요구하며, 그동안 시와 갈등을 빚어오다 지난 7월 권익위에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는 여러 차례의 현

장 조사와 함께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청북지구 2단계 현장 사무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정기창 상임위원, 택지소유자들과 배수용 평택시 부시장, 박영식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직할사업단장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거쳐 중재안을 이끌어 냈다.

이날 조정회의에서는 평택시와 LH공사는 기반시설 여유용량 등을 산출하고 관련법규 등을 검토해 건축물 층수제한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로티 설치 등 건축제한을 완화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하고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변경(2단계)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기창 상임위원은 “평택청북지구 단독주택용지는 애매한 규정으로 토지주들이 주차난을 우려 건축이 활발하지 못했는데, 오늘 조정회의를 계기로 택지개발 사업이 정상 추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평택 청북지구는 기존 2층 제한 건축에서 1층 주차공간(피로티)을 제외하고 2층으로 변경함으로써, 1층에 주차공간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현재 평택청북지구에는 건축제한 등으로 분양된 414개 필지 중 21개 필지에만 건물이 지어진 상태다.

평택/이성훈기자

lrg0404@sudokwon.com

평택 청북신도시 주차난 ‘필로티 주차장’으로 해소

단독 층수제한 조정... 1층 주차공간 제외한 2층으로

LH의 평택 청북신도시 사업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1층에 별도의 주차공간이 마련돼 주차난이 완화될 전망이다.

2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청북지구 2단계 현장 사무소에서 택지소유자들과 배수용 평택시 부시장, 박영식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시직할사업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중재안을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용지에 구체적인 언급 없이 2층으로 제한된 층수제한이 1층 주차공간을 제외한 2

층으로 변경돼 1층에 주차공간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정기창 권익위 상임위원은 “평택 청북지구 단독주택용지는 애매한 규정으로 토지주들이 주차난을 우려해 건축이 활발하지 못했다”며 “이번 조정회의를 계기로 택지개발 사업이 정상추진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6년부터 단독택지(669개 필지)를 분양한 평택 청북신도시는 층수 제한으로 지난 10월 말까지 21개 건물만 들어선 상태다.

평택=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

경기신문

2012년 11월 23일
05면 (경기)

평택시, 청북지구 주차공간 별도 마련

평택시 청북지구내 단독주택용지 1층에 주차공간이 별도로 마련돼 주차난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청북지구 2단계 현장사무소에서 택지소유자들과 배수용 평택시 부시장, 박영식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시직할사업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어 중재안을 이끌어냈다.

중재안은 단독주택용지에 구체적인 언급없이 '2층'으로 제한된 층수 제한을 '1층 주차공간을 제외하고 2층'으로 변경, 1층에 주차공간을 별

도로 마련하도록 했다.

권익위 정기장 상임위원은 "평택 청북지구 단독주택용지는 애매한 규정으로 토지주들이 주차난을 우려해 건축이 활발하지 못했는데, 이번 조정회의를 계기로 택지개발 사업이 정상 추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6년부터 단독택지(669개 필지)를 분양한 평택청북 지구는 애매한 층수제한으로 지난 10월 말 현재까지 21개 필지만 건물이 들어서 있다.

/평택=오원석기자 ows@

평택청북지구 피로티 설치 요구 현장조정회의

[2012-11-22 16:26 (photo@newsis.com)]



【평택=뉴스is】정기창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가운데)이 22일 오후 경기 평택시 한국 토지주택공사 평택청북지구 현장사무소에서 청북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의 층수제한을 변경해 주차난 민원을 해결한 뒤 박영식 LH평택직할사업단장(왼쪽), 배수용 경기도 평택부시장(왼쪽 두번째), 민원인 등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도로 선형 변경을 통해 폐쇄위기 공장 존속

민원번호 : 2BA-1209-245794 (도시수자원민원과, 김성도)

<민원개요>

경기 김포시 하성면 봉성리 ○○-○ 소재 ○○식품(이하 '이 민원 영업장'이라 한다)을 지나는 하성대로 3-5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이하 '이 민원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로 인해 이 민원 영업장을 이전하는 비용이 358억에 이르고 이전하는 상당기간 동안 공장 가동이 전면 중단되어 식품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한편, 인접한 다수 주민의 건축물, 공장 등이 편입되어 다수 민원이 예상되므로 이 민원 도시계획도로의 선형을 변경 요구 집단민원에 대해 지역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이 민원 고속도로 노선을 설계하되, 이 민원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당시의 검토노선과 같이 이 민원 영업장이 추가 편입되지 않도록 하여 이 민원 고속도로 기본설계 하여 국민의 재산권 피해가 최소화하는 계기 마련

① 당사자

- 신청인 : ○○식품 대표 ○○○
- 피신청인 : 경기도 김포시장(피신청인1), 한국도로공사(피신청인2)

② 민원내용

- 이 민원 도시계획시설로 인해 이 민원 영업장을 이전하는 비용이 358억에 이룸
- 이전하는 상당기간 동안 공장 가동이 전면 중단되어 식품 사업에 지장을 초래
- 인접한 다수 주민의 건축물, 공장 등이 편입되어 다수 민원이 예상

③ 피신청인 등 의견

가. 경기도 김포시장

- 이 민원 도시계획시설은 피신청인2가 시행하는 김포~하성간 고속도로(이하 '이 민원 고속도로'라 한다)와 연계된 도시계획시설이므로 이 민원 고속도로 기본설계 등이 진행될 때 선형변경 등의 타당성이 검토

나. 한국도로공사

- 이 민원 고속도로 설계시 이 민원 영업장을 포함하여 주변 지장물 편입을 최소화 하는 노선 설계가 필요

④ 주요 쟁점사항

- 이 민원 도시계획시설 도로 개설과 이 민원 고속도로의 연계성
- 이 민원 영업장이 편입되는 시설규모 및 인근 현황상 노선변경 가능성

⑤ 갈등 분석

가. 민원발생배경 및 주요사실관계

- 2011. 12. 29. 이 민원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 이 민원 도시계획시설 시설에 이 민원 영업장 주요시설 및 다수 주민의 건축물 등이 편입
- 신청인은 타지에 공장 신축 추진 중인바, 신축 공장의 규모를 확정해야하는 상황

나. 조정 목표

- 이 민원 도시계획시설은 이 민원 고속도로 개설시 의제되는 시설이므로 ○○공사의 고속도로설계 시 민원 영업장 포함한 다른 영업장 및 주거시설도 제척되도록 조치

⑥ 갈등해결과정

- '12. 9. 27. : 민원 신청
- '12. 10. : 피신청인 의견 조회
- '12. 11. 1. : 위원회 중재(안) 협의

⑦ 조정 (합의) 결과

가. 조정 · 합의 최종결과

- 고속도로 설계시 민원 취지를 반영하여 민원 영업장 포함 인근 물건이 최소 편입 되도록 도로설계 추진

나. 위원회 조정 · 합의문

가. 피신청인2는 지장물 편입(보상비용)과 지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이 민원 고속도로 노선을 설계하되, 이 민원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당시의 검토노선(붙임 타당성 도면 참조)과 같이 이 민원 영업장이 추가 편입되지 않도록 하여 이 민원 고속도로 기본설계를 2013. 12.까지 완료한다.

나. 피신청인1은 향후 결정되어 고시되는 이 민원 고속도로 실시설계 노선에 따라 이 민원 도시계획시설 노선을 변경 결정한다.

다. 신청인은 이 민원 고속도로 개설 사업에 적극 협력한다

⑧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가. 신청인-피신청인 수용 및 이행여부

- 이해 당사자 모두 조정 내용 수용
- 현재 도로 기본설계 진행 중

나. 시사점

- 도로의 노선변경은 재차 타인의 재산권 수용이라는 상대성이 있음
- 계획단계에서 일반 국민의 재산권 피해가 최소화하는 검토가 필요함

제 6 장

교통 · 도로민원 조정사례



- ◇북항대교~동명오거리 지하매설물 이설 분쟁 매듭
- ◇경부고속도로 인근 구소석마을 소음피해 해결
- ◇철도 무단횡단 위험 해소를 위한 우회도로 설치
- ◇남해고속도로변 진주 화원마을 진출입로 개선
- ◇호남고속철도 정읍역사 및 지하차도 공사 재개
- ◇광주광역시 북구 용호마을 앞 교차로 개선
- ◇김제시 황산동 호남고속철도 통로암거 신설
- ◇진주 죽봉마을 교통사고 위험 구간 선형개선

북항대교~동명오거리 지하매설물 이설 분쟁 매듭

민원번호 : 2AA-1110-098175 (교통도로민원과, 오부태)

<민원개요>

북항대교 민간투자사업과 관련 부산광역시가 시행하는 북항대교 ~ 동명오거리간 고가·지하차도 건설공사 2구간(지하차도)에 매설된 신청인의 고압송전관로 1,500m에 대해 도로점용허가의 허가조건에 의거 이설을 요구하나, 이설비용이 약 65억 원 ~ 80억 원으로 막대한 기업자금이 소요되며, 통상 30여년 사용한 시설물을 9년 밖에 사용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신청인 비용부담으로만 이설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니 중재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고압송전관로 이설을 위한 자재나 전기공사 비용은 ○○○○○이 맡고, 토목공사는 부산시가 담당하는 방식으로 6월말까지 이설공사를 완료도록 중재하여 기업애로 해소

① 당사자

- 신청인 : ○○○○○(주)
- 피신청인 : 부산광역시장, 부산 남구청장

② 민원내용

- 신청인은 2002. 7. 1. 부산 남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고압송전관로를 매설하였고, 당초 도로점용허가 허가조건에는 "이설 비용에 대한 사용자 부담" 조항이 없었으나, 2008. 10. 10. 도로점용허가 갱신 시 신설되었고,
- 154kv 고압송전관로 이설에 막대한 기업자금이 투입으로 기업경영에 애로사항이 있고, 통상 30여년을 사용하는 시설물을 9년 밖에 사용하지 못한 현 시점에서의 이설을 부당하니 이설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토록 하여 달라.

③ 피신청인 등 의견

가. 부산광역시장

- 해안순환도로 구축일환으로 추진중인 북항대교 ~ 동명오거리간 고가·지하차도 건설공사 구간 내 지하매설물인 고압송전관로 이설은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 이설이 필요한 사항이고, 고압송전관로 이설비용은 도로점용허가 허가조건에 의거 신청인이 부담할 사항이다.

나. 부산 남구청장

- 당초 도로점용허가 허가조건에는 "이설 비용에 대한 사용자 부담" 조항이 없었더라도 2008. 10. 10. 갱신 허가 시 신청인에게 이설비용 부담에 대하여 알려주었으므로 이설비용 부담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주요 쟁점사항

- 도로점용허가 부관(허가조건)에 대한 적법여부
- 고압송전관로 이설 사유발생 배경 등

⑤ 갈등 분석

가. 민원발생배경 및 주요사실관계

- 신청인은 2002. 7. 1. 최초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2008. 10. 10. 도로점용허가를 갱신하였다.
 - 당초 허가기간 : 2002. 7. 1. ~ 2008. 12. 31. / 갱신 : 2008. 10. 10 ~ 2017. 12. 31.
 - 점용면적 : 맨홀 7개(57.4m), 지중전선관(2,481m)
- 부산광역시는 2006. 1. 11. 북항대교 민간투자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북항대교와 연결되는 북항대교 ~ 동명오거리간 고가·지하차도 2,240m를 민간투자사업 준공일까지 준공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다.
- 이에 따라 2011. 7. 21. 공사구간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고압송전관(1,500m)로 이설을 신청인에게 요구하고, 이설 협의와 법률자문 등을 실시하였다.

- 고압송전관로 특성상 이설을 강제할 수 없고 전력공급이 중단될 경우 약 55억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며, 민간투자협약에 의거 2014. 4.까지 고가·지하차도를 준공하지 못할 경우 연간 180억 원(통행량의 70%)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여 했다.

나. 조정 목표

- 이러한 사실관계 및 각 기관의 입장을 분석한 결과, 「도로법」제77조에 의한 도로점용허가의 법적인계를 고려하여 당사자가 Win-Win할 수 있는 방안 모색

⑥ 갈등해결과정

- '11. 10. 17. : 고충민원 접수
- '11. 10. 24. : 고충민원 자료제출 요청(국민권익위원회)
- '11. 11. 4. : 고충민원 자료제출(피신청인)
- '11. 11. 30. : 제1차 관계기관 업무협의(실지조사 실시)
- '11. 12. 14. : 도로점용허가 부관(허가조건)에 대한 법률자문 의뢰(법무보좌관)
- '12. 1. 19. : 현장조정회의 개최(조정성립)

⑦ 조정 (합의) 결과

가. 조정·합의 최종결과

-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로점용허가 부관(허가조건)의 부여 적법여부에 대한 법률검토 결과와 고압송전관로 미이설 시 발생될 수 있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들이 서로 Win-Win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사비를 분담하는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당사자들이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음
 - 고압송전관로가 미이설될 경우 북항대교 ~ 동명오거리간 고가·지하차도 건설 공사가 장기화될 소지가 있고, 부산광역시의 경우 민간투자사업 협약서에 의거 연간 약 180억 원을 지급의무 발생

나. 위원회 조정·합의문

- 부산광역시가 시행하는 북항대교 ~ 동명오거리간 고가·지하차도 건설공사로 이설되는 소압송전관로의 이설비용을 아래와 같이 부담하기로 합의한다.
 - 피신청인(부산광역시)1은 지하매설물 이설공사 중 토목공사를 시행한다.
 - 신청인(유니온스틸(주))은 고압송전선 등 자재비와 전기공사를 부담·시행한다.
 - 피신청인(부산 남구청장)2는 도로점용허가를 변경하여 허가한다.

㉘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가. 신청인-피신청인 수용 및 이행여부

- 약 65억 원 ~ 80억 원이 소요되는 고압송전관로 이설로 갈등이 심화되어 6개월간 공사가 중단된 상황에서 우리 위원회의 중재로 지방자치단체는 원활히 민간투자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 신청인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이설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당사자 모두가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음.

나. 시사점

- Win-Win 해결의 모범제시
 - 광역단체가 지역교통 해소를 위하여 위치한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향토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우리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조정·중재하여 송사를 거치지 않고 민원이 원만히 해결됨으로서 이해당사자 모두가 Win-Win하는 결과 도출



국민권익위, 부산 고압송전관로 이설 갈등 중재

[2012-01-19 18:17]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고압송전관로 이설을 둘러싼 부산시와 유니온스틸 간의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는 19일 오후 부산시청 회의실에서 신영기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부산시와 유니온스틸 간 고압송전관로 이설공사 비용을 양측이 부담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고압송전관로 이설을 위한 자재나 전기공사 비용은 유니온스틸이 맡고, 토목공사는 부산시가 담당하는 방식으로 6월말까지 이설공사를 완료하기로 했다.

문제가 된 고압송전관로는 유니온스틸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해왔으나 북항대교와 연계된 내부순환도로 공사와 겹치면서 이설비용 부담 문제로 마찰을 빚어왔다.

북항대교에서 동명오거리를 연결하는 내부순환도로 공사는 지난해 4월 공사에 들어갔으나 고압송전관로 이설 갈등이 빚어지면서 공사가 차질을 빚어왔다.

따라서 이번 합의로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면서 당초 계획했던 2014년 4월까지 준공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북항대교와 동명오거리를 연결하는 내부순환도로가 완공되면 부산 신항에서 광안대교를 오가는 항만물동량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지고 상습정체를 빚던 신선대부두~동명오거리 교통난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 신영기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으로 부산시의 교통난과 부산 신항의 항만물동량 처리부담을 해결하게 돼 지역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항대교-동명오거리 지하매설물 이설 분쟁 매듭

[2012-01-19 오후 2:17:45 김상현 기자]

북항대교에서 동명오거리간 차도 공사구간에 매설된 고압송전관로 이설 문제와 관련한 부산시와 유니온 스틸과의 분쟁이 해결됐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오늘 부산시청에서 부산시와 유니온스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회의를 열고

문제가 된 고압송전관로 이설문제와 관련해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오늘 합의로 고압송전관로 이설과 관련해 자재나 전기공사는 유니온 스틸이 맡고 토목 공사는 부산시가 맡게 됐습니다.

그동안 문제가 된 공사구간은 북항대교에서 동명오거리간의 고가.지하차도 2구간으로 지난해 4월 공사가 시작됐지만 유니온스틸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해온 고압송전관로를 옮기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면서 분쟁이 발생해 공사가 중단돼 왔습니다.(끝)

국제신문

2012년 01월 20일 (금)
07면 사회

부산시-유니온스틸 고압송전관로 이설 방안 합의 북항대교~동명오거리 도로 공사 재개

신수건 기자 giant@kookje.co.kr

고압송전관로 이설을 둘러싼 부산시와 유니온스틸 간의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조정됐다.

국민권익위는 19일 오후 부산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현장조정회의에서 부산시와 유니온스틸 간 고압송전관로 이설공사 비용을 양측이 분담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합의의 요지는 유니온스틸이 고

압송전관로 이설을 위한 자재나 전기공사 비용을 부담하고 부산시가 토목공사를 맡는 방식이다. 이설공사는 6월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문제가 된 고압송전관로는 유니온스틸이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사 용해왔으나 북항대교와 연계된 내부순환도로 공사와 겹치면서 이설 비용 부담 문제로 마찰을 빚어왔다. 북항대교에서 동명오거리를 연결하는 내부순환도로 공사는 지난해 4월 공사에 들어갔으나 고압송전관로

이설 갈등이 빚어지면서 공사가 차질을 빚어왔다. 이번 합의로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당초 계획했던 2014년 4월까지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북항대교와 동명오거리를 연결하는 내부순환도로가 완공되면 부산신항에서 광안대교를 오가는 항만물동량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지고 상습정체를 빚던 신선대부두-동명오거리 교통난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15.4 X 9.1 cm

권익위, 부산 지하매설물 이설 분쟁 해결 / 권익위 소식

국민권익 2012.01.19 18:03 수정 | 식재 | 공개* | 역인글 보내기*

<http://blog.daum.net/loveacrc/5360> **트위**

유니온스틸-부산광역시가 공사 분담기로 19일 현장합의

부산광역시 소재 '북항대교 ~ 동명오거리' 간 차도 공사 구간에 매설된 고압송전관로를 옮기는 문제로 빚어진 민간업체와 부산광역시간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의 중재로 해결되면서 공사가 원만히 재개되게 됐다.



▲ 부산서 기업민원 해결한 권익위 신영기 상임위원

국민권익위는 19일(목) 오후 1시 부산광역시청 7층 회의실에서 신영기 상임위원 주재로 부산의 대표적인 향토기업인 유니온스틸(주) 대표와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등이 모인 가운데 조정회의를 열어 문제가 된 고압송전관로 이설 공사를 양측이 나누어 분담하며, 오는 6월 30일까지 이고압송전관로 이설을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자재나 전기공사는 유니온 스틸이 맡고, 토목공사는 부산광역시가 맡게 된다.

이번에 문제가 된 공사 구간은 북항대교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내부순환도로로 건설중인 북항대교 ~ 동명오거리간의 고가·지하차도 2구간으로, 지난해 4월 공사가 시작됐으나 유니온스틸(주)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사용हे은 고압송전관로를 옮기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면서 분쟁이 발생해 공사가 중단된 곳이다.



▲ 북항대교 조감도 <출처 | 연합뉴스>

해당 공사가 완공되면 부산 신항에서 광안대교를 오가는 항만물동량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고질적으로 정체되던 신선대부두에서 동명오거리간 교통난도 완화되어 360만 부산시민의 출·퇴근도 한결 편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민권익위의 중재로 당초 계획된 2014년 4월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 신영기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으로 부산시의 교통난과 부산 신항의 항만물동량 처리부담이 완화되어 지역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부산일보

2012년 01월 20일 (금)
06면 사회

북항대교~동명오거리 지하송전관로 분쟁 해결

부산시와 향토기업인 유니온스틸 간에 벌어졌던 북항대교 인근 지하 고압송전관로 이전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됐다.

19일 오후 부산시는 시청 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재로 조정회의를 열어 유니온스틸과 오는 6월 30일까지 고압송전관로 이설을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문제가 된 고압송전관로는 북항대교와 동명오거리 간 사이 구간으로 유니온스틸이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사용해왔으나 북항대교와 연계된 내부순환도로 공사와 겹치면서 이설비용 부담 문제로 부산시와 마찰을 빚어왔다. 합의안에 따르면 고압송전관로 이설 공사 가운데 자재와 전기 공사는 유니온스틸이, 토목 공사는 부산시가 부담하게 된다. 권상국 기자

5.5 X 10.0 cm

경부고속도로 인근 구소석마을 소음피해 해결

민원번호 : 2BA-1110-161920 (교통도로민원과, 박해숙)

〈민원개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경부고속도로 '구소석마을' 구간(서울방향)의 공명음과 파열음으로 인하여 구소석마을 주민들의 거주와 생활이 어려우니, 한국도로공사가 소음 등을 측정하여 기준에 맞는 방음벽을 보완·설치하여 환경피해 대책을 마련

① 당사자

- 신 청 인 : 경남 양산시 상북면 ○○○ 외 219명
- 피신청인 : 한국도로공사

② 민원내용

-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경부고속도로 '구소석마을' 구간(서울방향)의 공명음과 파열음으로 인하여 구소석마을 주민들의 거주와 생활이 어려우니, 기존의 방음벽을 보완하여 설치해 달라.

③ 피신청인 등 의견

가. 한국도로공사

- 우리 공사는 민원발생 시기, 소음도 등을 고려하여 방음벽 설치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다.
- 사업의 우선 순위에 따라 지속적으로 방음벽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다수의 소음 초과 지역이 예산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④ 주요 쟁점사항

- 예산확보 문제
 - 방음벽 설치 우선 순위에 따라 배정되므로 구소석마을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없어 예산확보에 문제점

5 갈등 분석

가. 민원발생배경 및 주요사실관계

- 현지의 사정과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 하면서 고속도로를 정상적으로 관리할 수는 합리적인 방안 모색
- 마을주민과 한국도로공사는 서로 대립 중이었음.

나. 조정 목표

- 구소석마을 구간 방음벽 보강 타당성 및 예산확보 방안
- 한국도로공사는 방음벽을 보강하는 것으로 합의 도출

6 갈등해결과정

- '11. 10. 25. : 구소석마을 구간의 소음피해 대책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실지조사, 자료 조사 및 관계자 의견 청취
- '11. 12. 22. : 조정안 마련 및 이견 조율
- '12. 1. 4. : 피신청인의 예산 확보 및 설치 방안 협의
- '12. 1. 4. : 피신청인의 예산 확보 및 설치 방안 협의
- '12. 1. 15. : 당사자 조정안 수용

7 조정 (합의) 결과

가. 조정 · 합의 최종결과

- 우리 위원회에서는 2차례의 현지조사를 행하여, 한국도로공사는 방음벽을 보완

설치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였고,

- 여러 차례 문제해결 방안을 협의하고, 두 차례의 업무회의 등을 거쳐 피신청기관들의 의견을 계속적으로 조율한 결과, 우리 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서의 내용대로 방음벽을 보완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우리 위원회가 현지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조정서를 작성하고 조정 합의함.

나. 위원회 조정·합의문

- 한국도로공사는 부산방향에서 서울방향(상행선)의 20.5km지점의 외측 방음벽(기준의 H=2m, L=236m)을 흡음형 방음벽(H=5m, L=234m)으로 보강하여 설치하되 상단에 소음 감소기(H=0.5m)를 설치하기로 한다.
- 한국도로공사는 보강 설치되는 방음벽 디자인에 대하여 신청인들과 협의하여 선정·설치하기로 한다.
- 한국도로공사는 소음저감 시설을 2012. ○. ○.까지 사업비를 확보하여 2013. ○. ○.까지 설치 완료하기로 한다.
- 신청인들은 소음저감(방음벽 시설) 공사가 완료되면 더 이상 소음피해에 대한 이익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공사가 완료 될 때까지 협조한다.

㉘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가. 신청인-피신청인 수용 및 이행여부

- 관계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권익위 중재안대로 합의가 되어 마을주민들의 거주불편을 덜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이해당사자 모두 고무된 상황

나. 시사점

- win-win 해결의 모범 제시
신청인을 비롯하여 219명이 제기한 본 민원을 위원회가 적극적인 조정·중재하여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끌어냄으로써 이해당사자 모두 win-win 하는 결과 도출
- 소음 등의 환경피해에 대한 주민 안전 대책을 마련한 사례

고속도로로 인하여 주민들이 받는 환경피해를 입는 상황에서 주민의 생활 향상을 피하는 대안 마련

- 집단 민원에 대한 조정자로서의 우리 위원회 위상 제고

신청인(주민들), 한국도로공사 간의 갈등 사안에 대하여 적극 개입하여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기관 간 갈등의 조정자로서의 우리위원회 역할 및 위상 제고

추가 방음벽 설치 합의

[기사입력 2012-01-27 15:27]



【양산=뉴스시스】27일 오후 경상북도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구소석마을의 경부고속도로 구간에 내년 9월까지 추가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중재한 신영기(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photo@newsis.com

소음 피해현장 둘러보는 신영기 상임위원

[기사입력 2012-01-27 16:16]



(서울=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 신영기(오른쪽)상임위원이 27일 오후 경상북도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구소석마을의 경부고속도로 부근 소음피해 해결요구 현장을 방문해 중재회의에 앞서 관계자로부터 민원 현황을 듣고 있다. 2012.1.27 << 국민권익위원회 >>

권익위, 양산 소석마을 도로 소음민원 해결
한국도로공사, 방음벽 높이고 길이 연장

(양산=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경남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구 소석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경부고속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소음피해 민원을 중재로 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권익위는 마을 주변에 방음벽을 추가로 설치하는 중재안을 제시했고, 한국도로공사와 주민들이 이를 받아들였다.

한국도로공사는 이 마을 주변에 설치된 길이 236m의 방음벽을 140m 더 연장하고, 높이도 종전 2m에서 5m로 높이기로 했다.

추가 방음벽은 연말까지 예산을 확보해 내년 9월까지 설치키로 했다.

도로공사는 2005년 12월 경부고속도로 부산~언양간 확장공사 이후 주민 220여명이 거주하는 이 마을주변에 방음벽을 설치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소음피해가 계속된다며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왔다.

국민권익위 신영기 상임위원은 "주민과 한국도로공사간의 양보와 협조로 중재안에 합의 해 주민들의 애로가 해소돼 거주 환경이 한결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보도자료

busan.com

양산 경부고속도 소음 7년 만에 해결

국민권익위 중재, 방음벽 높아
[20120130]

고속도로변 소음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7년 만에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남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구소석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경부고속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소음피해 민원이 중재로 해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소음민원이 제기된 대상은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2005년 12월 실시한 경부고속도로 부산~연양간 확장 공사. 도로공사는 당시 주민 220여 명이 거주하는 구소석 마을을 따라 길이 236m, 높이 2m의 방음벽을 설치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방음벽이 낮고 효과가 적어 소음 피해가 계속된다며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다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에도 이를 요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7일 구소석마을 회관에서 마을주민 대표와 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재회의를 가졌다.

권익위는 마을 주변 방음벽을 140m 더 연장하고, 높이도 5m로 높이는 중재안을 제시했고, 양측은 이를 수용했다. 추가 방음벽은 연말까지 예산을 확보해 내년 9월까지 설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5년부터 마을 주민이 제기했던 소음 민원은 7년 만에 완전 해결됐다. 정근영 이장은 "그동안 고속도로 소음 때문에 주민 생활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며 "방음벽이 추가로 설치되면 소음 피해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철도 무단횡단 위험 해소를 위한 우회도로 설치

민원번호 : 2AA-1201-021898 (교통도로민원과, 배중배)

<민원개요>

신청인들은 경북 영주시 조암동 마을 인근의 경북선 어등 영주 간 김천기점 114km 지점의 철도건널목을 횡단하는 농로는 경북 영주시 조암동 1191-3 일원의 농지(전: 9,011㎡, 답: 23,174㎡)를 진출입로였으나 피신청인이 2011. 12.경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무단횡단개소 폐쇄조치로 2.5km가 넘는 거리를 우회하고 있어 불편을 겪고 있어, 이 민원 농로의 진출입이 가능하게 이 민원 철도건널목에 설치된 통행차단 시설물을 철거하여 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주민들의 안전대책을 마련

① 당사자

- 신청인 : ○○○ 외 12명
- 피신청인 : 한국철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경상북도 영주시장

② 민원내용

- 신청인들은 경북 영주시 조암동 마을 인근의 경북선 어등 영주 간 김천기점 114km 지점의 철도건널목을 횡단하는 농로는 경북 영주시 조암동 1191-3 일원의 농지(전: 9,011㎡, 답: 23,174㎡)를 진출입로였으나 피신청인이 2011. 12.경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무단횡단개소 폐쇄조치로 2.5km가 넘는 거리를 우회하고 있으니
- 이 민원 농로의 진출입이 가능하게 이 민원 철도건널목에 설치된 통행차단 시설물을 철거하여 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달라.

③ 피신청인 등 의견

가. 한국철도공사(피신청인 1)

- 폐쇄된 농로의 통행은 열차 운행 사고에 매우 위험하여 폐쇄하였다.

나. 한국철도시설공단(피신청인 2)

-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전액 부담하여 도로를 추가설치하여야 한다.

다. 경상북도 영주시장

- 제1우회도로를 개설하였기에 추가 도로 설치 불가하다.

④ 주요 쟁점사항

- 안전성 문제
 - 현재 철도건널목은 무단으로 설치되어 열차의 안전운행과 주민들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철도건널목을 폐쇄함.
- 도로개설의 주체
 - 철도건널목 폐쇄에 따른 우회도로 개설 비용 부담

⑤ 갈등 분석

가. 민원발생배경 및 주요사실관계

- 한국철도공단은 경북선 어등 영주 간 철도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김천기점 114km 지점의 무단횡단 개소(농로)를 2011. 12. 폐쇄 조치함.
 - 1963년경 철도 개설 이전부터 통행해 왔던 농로가 법률에 위반되는 무단횡단개소라는 이유로 폐쇄하였으며,
 - 구 철도청과 경북 영주시장은 2003. 3. 지하차도를 개설하기로 협약을 하였으나 경북 영주시장이 예산부족으로 협약을 불이행함.
 - 이후 한국철도공단은 수차례 무단횡단개소를 폐쇄조치하려 하였으나 신청인들의 반발로 미루다가 경북 영주시장이 휴천동 법성사 진입도로를 개설하자 무단횡단개소를 폐쇄조치함으로써 신청인들은 60여년을 넘게 사용하던 농로 폐쇄에 따른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건널목이나 지하차도를 신설해 달라는 고충민원 제기

나. 조정 목표

- 한국철도공사 : 폐쇄된 농로의 통행 및 열차 운행에 안전을 확보하는 조치
- 한국철도시설공단 : 한국철도공사, 경북 영주시장의 행정업무를 신속히 협조
- 경북 영주시장: 제2우회도로를 개설(공사비 전액 부담)

6 갈등해결과정

- '12. 1. 4. ~ 3. 16. :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실지조사와 관계자 의견 청취
- '12. 3. 28. : 신청인들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위원·피신청인1, 2, 3을 출석조사하여 의견청취
- '12. 3. 28.: 위원회에서 당사자 간 이견을 조율하여 조정안을 마련
- '12. 4. 2.: 당사자 조정안 수용

7 조정 (합의) 결과

가. 조정·합의 최종결과

- 우리 위원회에서는 2 3차례의 현지조사를 행하여, 한국철도공사는 폐쇄된 농로의 통행 및 열차 운행에 안전을 확보하는 조치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한국철도공사, 경북 영주시장의 행정업무를 신속히 협조하며, 경북 영주시장은 제2우회도로를 개설(공사비 전액 부담)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였고,
- 수십 차례 문제해결 방안을 협의하고, 두 차례의 업무회의 등을 거쳐 피신청기관들의 의견을 계속적으로 조율한 결과, 우리 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서의 내용대로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대책을 마련하기로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우리 위원회가 현지조정 회의를 개최하여 조정서를 작성하고 조정 합의함

나. 위원회 조정·합의문

- 한국철도공사는 경북 영주시장이 제2우회도로 설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가 완료되어 개통 시까지 이 민원 농로의 안전한 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경북 영주시장이 제2우회도로 설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공사 일정에 차질 없도록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행정적인 업무를 협조한다.
- 경북 영주시장은 한국철도공사가 관리하는 경북선 어등 영주 간 김천 기점 114km지점 철도 무단횡단 개소(농로)의 폐쇄에 따른 제2우회도로 설치공사를 2012. 12. 31. 까지 완료하고, 공사비 전액을 부담한다.
- 신청인들은 이 민원 농로와 관련하여 더 이상의 이익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㉘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가. 신청인-피신청인 수용 및 이행여부

- 주민들이 오랫동안 불편을 겪어오던 문제이니만큼 국민권익위에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우회도로가 원만히 개통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임.

나. 시사점

- 무단 철도건널목에 대한 주민안전 대책을 마련한 사례
주민안전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철도건널목에 열차가 통행하는 등 주민 안전에 위협적인 요소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주민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대안 마련
- 집단 민원에 대한 조정자로서의 우리 위원회 위상 제고
신청인(마을주민), 지자체, 공사, 공단 간의 갈등 사안에 대하여 적극 개입하여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기관 간 갈등의 조정자로서의 우리위원회 역할 및 위상 제고

통행불편 중재한 국민권익위

[2012-04-17 18:37 (photo@yna.co.kr)]



(영주=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 신영기 상임위원(가운데)이 17일 오후 영주시청 회의실에서 철도건널목이 없어 발생한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올 12월까지 우회도로를 개통해 해소토록 중재한 후 민원인 등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12.4.17 <<국민권익위>>

경북선 어등 영주간 철로, 무단횡단 위험 해소된다

[2012.04.17 16:11:56 최종수정 2012.04.17 16:14:45 나연준 기자, 이하늘 인턴기자 (yjra@news1.kr)]

(서울=뉴스1)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철도건널목이 없어 먼거리를 우회하거나 철로를 무단으로 횡단해 농지를 오가야했던 농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경상북도 영주시 조암2동 앞 철도에 올해 12월까지 제2우회도로를 설치해 개통하도록 중재했다고 전했다.

이 지역 농민들은 농지로 드나들기 위해 철로를 건너가야 하지만 인근 건널목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2.5km 가량을 우회해야 해 그동안 불편함을 호소해왔다. 단절된 농로는 경북선 철도 개설 이전부터 공용되던 농로로 대부분 주민들은 무단으로 설치된 건널목으로 통행해왔다.

그러나 지난 2011년 12월 한국철도공사가 이를 안전상 이유로 폐쇄해 불편함을 겪어왔다.

이에 대해 농민들은 지난 1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지역은 이미 2003년 영주시와 구 철도청이 주민들에 대해 인근 농지로 통행할 수 있는 우회도로와 통로박스 설치에 합의하기도 했지만 예산부족 등 문제로 10여년째 지연돼 왔다.

권익위 관계자는 "주민들이 오랫동안 불편을 겪어오던 문제인 만큼 권익위에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우회도로가 원만히 개통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도일보

영주 조암동 소재 우회도로 국가권익위 현장조정 해소

철도건널목이 없어 먼 거리를 우회하거나 철로를 무단으로 횡단해 농지를 오갔던 영주시 조암동 소재 농민들의 통행불편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의 현장조정을 통해 해소됐다.

영주시 조암동 소재 주민들은 농지로 드나들기 위해서는 철로를 횡단해야 하지만 인근 건널목은 2.5km 이상을 우회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1963년 경 철도 개설 이전부터 있었던 무단 설치 건널목을 통해 주로 통행해 왔다. 하지만 작년 12월 한국철도공사에서 안전상의 이유로 이마저 폐쇄하자

2012년 04월 18일
07면 (지역)

지역 주민들은 극심한 불편을 호소하며 지난 1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지역은 이미 2003년에 영주시와 구 철도청이 주민들이 인근 농지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우회도로 설치와 통로 박스 설치 등에 한차례 합의한 바 있으나 예산부족 등 관계기관과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아 10여년째 지연되고 있던 곳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영주시청 2층 제1회의실에서 신영기 상임위원 주재로 신청인 대표와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영주시가 전액 부담해 올해 12월까지 제2우회도로를 설치·개통하고,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공사에 적극 협력하도록 이끌어 냈다. 장영우 기자

남해고속도로변 진주 화원마을 진출입로 개선

민원번호 : 2BA-1201-135001 (교통도로민원과, 손치훈)

〈민원개요〉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한 남해고속도로 진주 마산간 확장공사로 인하여 고속도로 하부를 횡단하는 통로암거와 국도 3호선과의 단차가 발생하여 신청인들의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화원마을과 진주 마산간 국도 3호선을 연결하는 진출입로가 단절되어 1.5km이상 우회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종전대로 진출입로 재개설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화원마을 주민, 한국도로공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경상남도 진주시장, 진주경찰서장의 협조를 이끌어내 마을 진출입로 재개설 방안 마련

① 당사자

- 신청인 : ○○○ 외 88명
- 피신청인 : 1. 한국도로공사 2.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경상남도 주시시장
4. 진주경찰서장

② 민원내용

-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한 남해고속도로 진주 마산간 확장공사로 인하여 고속도로 하부를 횡단하는 통로암거와 국도 3호선(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한다)과의 단차가 발생하여 진주 화원마을(이하 '이 민원 마을'이라 한다)과 진주 마산간 국도 3호선을 연결하는 진출입로(이하 '이 민원 진출입로'라 한다)가 단절되어 1.5km이상 우회하여야 하는 불편 발생
- 신청인들은 종전대로 화원마을과 국도 3호선을 연결하여 진주 및 사천방면으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

③ 피신청인 등 의견

가. 한국도로공사

- 남해고속도로 하부를 횡단하는 통로암거의 확장 후 이 민원 마을에서 이 민원 도로간 진출입로 개설시 정촌산업단지 진출입로 설치계획과 연계된 도로공사 시행허가가 선행되지 않아 이 민원 진출입로 공사 시행은 곤란하다.

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이 민원 진출입로는 관련 규칙에 부합하지 않고, 가·감속차선의 진·출입 차량이 서로 엇갈림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

다. 진주경찰서장

- 이 민원 진출입로의 신호체계를 현행 3지교차로형식에서 4지교차로형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④ 주요 쟁점사항

- 신호체계 변경
 - 이 민원 진출입로의 신호체계를 현행 3지교차로형식에서 4지교차로형식으로 변경
- 변속차로 길이 부족 및 교통사고 위험
 - 이 민원 진출입로가 관련 규칙에 부합하지 않고 가·감속차선의 진·출입 차량이 서로 엇갈림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 비관리청 공사 시행 허가
 - 이 민원 마을에서 이 민원 도로간 진출입로 개설시 정촌산업단지 진출입로 설치계획과 연계된 도로공사 시행허가가 선행되지 않아 이 민원 진출입로 공사를 시행하기 곤란

⑤ 갈등 분석

가. 민원발생배경 및 주요사실관계

-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한 남해고속도로 확장공사로 인하여 고속도로 하부를 횡단하는 통로암거와 국도 3호선과의 단차가 발생하여 진주 화원마을과 진주 마산간 국도 3호선을 연결하는 진출입로가 단절
- 화원마을과 국도 3호선 간 진출입로의 재개설은 가·감속차선의 진출입 차량의 엇갈림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있음
- 도로교통공단의 기술검토 결과
 - 마을 진출입로 개설보다는 진입로 교차로만 형성하는 것이 효과적
 - 진주↔사천간 및 진주↔정촌간 좌회전 및 우회전 교통량 증가를 고려할 때 운전자 혼란 예방과 효율적인 신호 및 교차로 운영을 위해 마을 진입로 개설보다 직진차로 연장, 가·감속차로 및 교통안전시설 확보 등이 전제된 마을 앞 진입로 교차로만 형성
 - 마을 진출입로 개설 시 의견
 - 교통안전성 측면에서 직진차로의 연장 후 진입로 확보, 마을 통로암거 앞 반사경, 안전지대 및 시선유도봉 등 시설 설치

나. 대안제시

- 신청인들의 진주 화원마을과 국도 3호선을 연결하는 진주·사천방면 진출입로가 단절되어 1.5km이상 우회하여야 하는 불편해소를 위하여 가·감속차로 위치 이동, 진주방면 진입을 위한 신호체계 변경 등으로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

⑥ 갈등해결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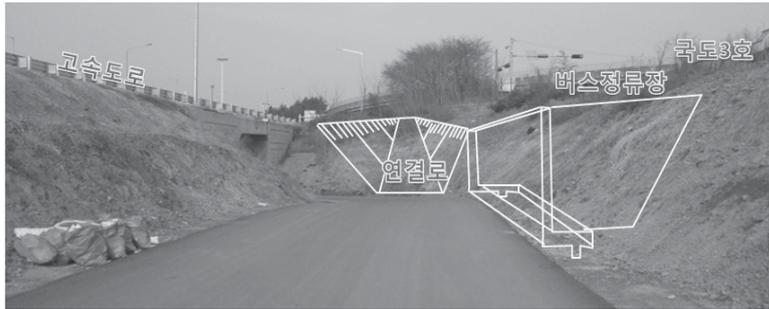
- '12. 1. 19. : 진출입로 재개설 요구 고충민원 재접수('11. 8. 3. 고충민원 최초 접수)
- '12. 2. 1. : 민원 요약보고 및 고충민원 추가 자료제출 요구
- '12. 2. 8. : 고충민원 실지조사 및 피신청인 회의 실시(조정안 : 가·감속차선 위치 이동, 신호체계 변경(3지→4지교차로) 등)
- '12. 2. 17. : 조정(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실시(한국도로공사)
- '12. 3. 8. : 조정(안)에 대한 피신청인들의 수용 의사 표명

- '12. 3. 19. : 기술검토(도로교통공단)
 - 마을 앞 진입로 교차로만 형성하는 것이 효과적이거나, 부득이 마을 진출입로 개설 시에는 직진차로의 연장 후 진입로 확보, 마을 통로암거 앞 반사경, 안전지대 및 시선유도봉 등 시설 설치 의견
- '12. 3. 19. 4. 5. : 조정(안) 보완(조정안에 대한 교통전문기관의 의견 반영과 신청인들 의견 청취 결과, 마을 진입 좌회전 차로 삭제 방안에 대해 신청인들 불수용)
- '12. 4. 25. : 조정회의 개최(조정성립)

7 조정 (합의) 결과

가. 조정 · 합의 최종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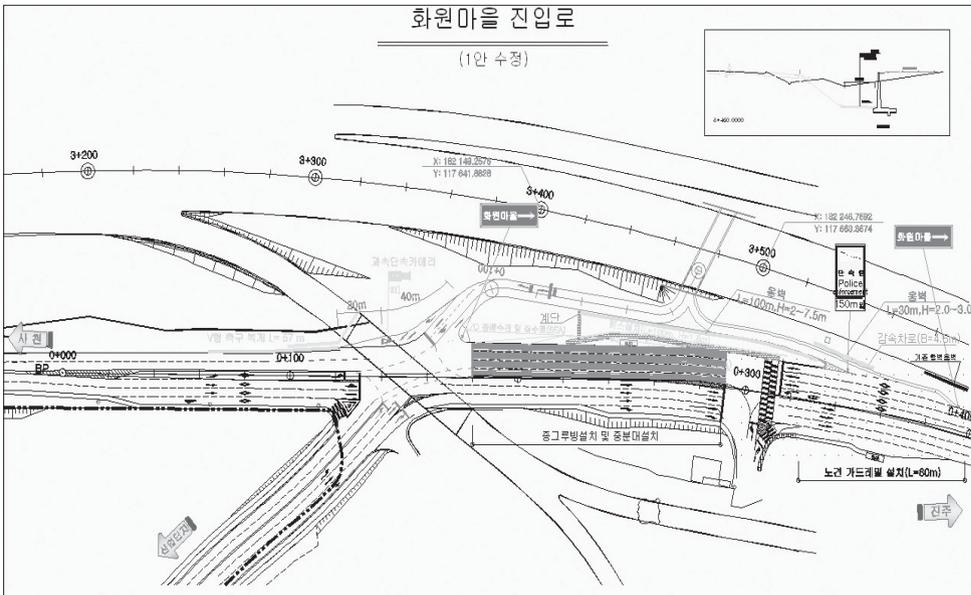
- 진주경찰서장
 - 마을 진출입로의 진주방면 진입 신호체계 변경(3지교차로→4지교차로)을 협조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한국도로공사의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을 허가
- 한국도로공사
 - 마을 진출입로 공사를 2012. 12.까지 시행하고, 필요한 가·감속차로 위치이동, 마을통행로 설치, 신호등·표지판, 옹벽, 포장(간이버스정류장 등), 부대시설물 설치, 가로수 이식에 따른 장비대, 다기능 무인단속카메라 2개소 설치 등 진주시 시행 외의 공사 시행과 비용 부담(일부 분담)
- 경남 진주시장
 - 국도 3호선 진주방향 1차로 추가 확장, 포장(간이버스정류장 등), 부대시설물, 다기능 무인단속카메라 2개소 설치, 가로수 이식, 국도구간 지장물(가스관로, 통신선, 수도관 등) 이설, 진주방향 도로 개량, 도로 종방향 그루빙 시행과 마을 진·출입 통행로 유지관리



- 사천방향 가속차로 : 마을진입도로와 동일선형 설치
 - 사천방향 V형 측구 복개로 가속차로 57m 추가 확보하고, 국도 3호선 진주 사천간 정지신호 시 가속차로로 진입하는 신호체계로 제어
 - 국도 3호선 차로폭원 3.5m
- 마을진입 감속차로 : 폭원 확폭 설치(3.5m→4.5m)
- 마을통행로 : 현재 개설도로 종단경사 유지(4.3%)
- 국도 3호선 4차로 : 감속차로 시점까지 연장(L=210m)
- 버스정류장 : 진주방향 80m 이설(간이버스정류장)
- 가속차로 : 연장 60m, 폭원 4.5m, 연결로 종단 2.8%
 - 변속차로 : 연장 40m(테이퍼 20m, 변속차로 20m)
- 감속차로 : 연장 120m, 폭원 4.5m, 종단 -13%
 - 변속차로 : 연장 50m
- 마을통행로 : 연장 130m, 폭원 6.5m, 종단 4.25%
- 버스정류장 : 가·감속차로 20m, 정차로 연장 15m·폭원 3m, 승강장 폭원 1.5m

나. 위원회 조정 · 합의문

- 가. 진주경찰서장은 별지와 같은 내용으로 이 민원 진출입로의 진주방면 진입을 위한 신호체계 변경(3지교차로→4지교차로)에 협조한다.
- 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한국도로공사와 진주시에 대하여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을 별지와 같은 내용으로 각각 허가한다.
- 다. 한국도로공사는 이 민원 진출입로 공사를 2012. 12.까지 시행하기로 한다. 단, 신호등 · 표지판은 최우선적으로 설치한다. 이에 필요한 가 · 감속차로 위치이동, 옹벽 및 마을통행로 설치, 포장(간이버스정류장 등), 부대시설물 설치, 국도 3호선 사천방향 가로수 이식에 따른 장비대, 다기능 무인단속카메라 2개소 설치, 신호등 · 표지판 설치에 대한 시행과 비용을 부담(일부는 분담)한다.
- 라. 진주시장은 별지와 같은 내용으로 이 민원 도로 진주방향 1차로 추가 확장, 포장(간이버스정류장 등), 부대시설물, 다기능 무인단속카메라 2개소 설치, 가로수 이식, 사천방향 도로 개량, 옹벽 설치, 도로 종방향 그루빙, 이 민원 도로구간 지장물(가스관로, 통신선, 수도관 등) 이설 시행과 마을 진 · 출입 통행로 유지관리를 한다.
- 마. 신청인은 이 민원 공사와 관련하여 더 이상의 이익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⑧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가. 신청인-피신청인 수용 및 이행여부

- 신청인들은 회원마을과 진주 사천간 국도 3호선을 연결하는 진출입로를 종전대로 재개설하게 되어 1.5km이상 우회하여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었으므로 매우 만족하고 있음
- 한국도로공사
 - 가속차선위치이동, 버스정류장이전, 옹벽 및 마을 통행로 설치, 신호등 표지판 비용부담 및 시행, 향후 가속차선위치이동하여 공사 완료(03. 3. 예정)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비관리청사업시행인가
- 진주시장
 - 진주방향 4차로 확장, 국도구간 지장물 이설, 진주방향 개량, 옹벽 및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종방향 그루핑시행, 진출입로 유지관리
- 진주경찰서장
 - 교통신호체계 개선

나. 시사점

- 주민들의 1년 이상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위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
 - 주민들이 1년 이상 1.5km를 우회하였던 불편이 사라지게 되었으며, 교통편의와 안전을 고려한 대안을 마련
- 행정기관의 신뢰회복
 - 회원마을 32가구 100여 명 주민들의 진주나 사천방면 국도로의 진출입 편의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행정기관의 신뢰회복
- 다수 관계기관 간 민원에 대한 조정자로서의 우리 위원회 위상 제고
 - 한국도로공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경상남도 진주시장, 진주경찰서장 간의 갈등 사안에 대해 적극 개입하여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기관 간 갈등의 조정자로서의 우리 위원회 위상 제고

진주 정촌면 화원마을 주민 100여명 통행불편 해소

[2012-04-25 15:00] 송고

권익위, 국도3호선-화원마을간 진출입로 재개설 중재

남해고속도로 진주 마산구간이 확장되면서 진·출입로가 막히는 바람에 진주나 사천방면으로 나가려면 1.5km나 우회해야 했던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원마을 주민 100여명의 교통불편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의 현장조정으로 연내 해결되게 됐다.

2011년 12월 한국도로공사가 남해고속도로를 확장하면서 도로 밑에 있던 마을 주민들의 통로박스를 같이 넓혔는데, 이 때문에 통로박스와 국도 3호선간에 큰 경사가 생기면서 마을에서 국도로 향한 진출입로가 단절되어 1.5km를 우회해야 하는 불편이 생겼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경찰서 등 관계기관들은 마을과 국도간 진출입로를 새로 만드는 것은 비용문제와 교통사고 위험문제 등을 들어 주민들의 민원 제기에 난색을 표했다.

이에 중재에 나선 국민권익위는 25일(수) 오후 2시 박재영 부위원장이 직접 진주 정촌면사무소에서 한국도로공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시, 진주경찰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1년넘게 계속된 마을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했다.

권익위 중재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와 진주시는 공사비용을 부담해 오는 12월까지 진출입로 연결공사를 마쳐야 하며, 공사와 별도로 출입로에 필요한 신호등과 표지판을 설치하고, 간이 버스정류장 이전 등 제반사항도 같이 이루어진다.

진주경찰서는 진입로 개설 공사를 위해 신호체계를 변경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도로공사 시행을 허가할 예정이다.

조정을 직접 주재한 박재영 부위원장은 "네 곳이나 되는 관계기관들이 한마음으로 나서 준 덕분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권익위는 연내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오후 진주시 정촌면사무소에서 열린 화원마을~국도 3호선 간 진출입로 재개설과 관련한 현장 조정회의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들이 중재회의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진주 정촌면 화원마을 주민불편 해소

권익위, 진출입로 재개설 중재...12월까지 공사 완료

남해고속도로 진주-마산구간이 확장되면서 진출입로가 막히는 바람에 진주나 사천방면으로 나가기 위해 1.5~2.4km나 우회해야 했던 진주시 정촌면 화원마을을 주민 100여명의 국민권익위의 재개설 중재로 교통불편이 해소되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오후 2시 진주시 정촌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박재영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의 중재하에 신청인인 주민대표 4명과 한국도로공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시, 진주경찰서 관계자 등 피신청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진출입로 연결을 위해 가·감속차로 위치 이동, 신호등·표지판 설치,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등의 조정사항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와 진주시는 공사비용을 분담해 오는 12월까지 진출입로 연결공사를 마쳐야 하며, 공사와 별도로 출입로에 필요

한 신호등과 표지판을 설치하고, 간이 버스정류장 이전 등 제반사항도 같이 실시하기로 했다.

진주경찰서는 진입로 개선풀 공사를 위해 신호체계(3지교차로→4지교차로)를 변경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도로공사 시행을 허가할 예정이다. 이날 주민대표들이 교통사고 등을 우려, 연말까지도 돼 있는 공기를 단축시켜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피신청인들은 신호등·표지판을 최우선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정촌면 화원마을 주민들은 2011년 12월 한국도로공사가 남해고속도로를 확장하면서 도로 밑에 있던 마을 주민들의 통로박스를 같이 넓혔는데, 이 때문에 통로박스와 국도 3호선간에 큰 경사가 생기면서 마을에서 국도로 향한 진출입로가 단절돼 1.5~2.4km를 우회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에 주민들은 종전대로 화원마을과 국도 3호선을 연결해 진주 및 사천방면으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국민권익위 등에 민원을 제기해왔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경찰서 등 관계기관들은 마을과 국도 간 진출입로를 새로 만드는 것은 비용문제와 교통사고 위험문제 등을 들어 주민들의 민원 해결에 난색을 표해 국민권익위가 중재에 나섰다.

박재영 사무처장은 "네 곳이나 되는 관계기관들이 한마음으로 나서준 덕분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권익위는 연내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주민대표 전석영씨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먼 길을 마다않고 와서 고충을 해결해준 국민권익위에 감사드린다. 하루빨리 공사를 진행 연말 이전이라도 해결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순철기자
(19.5·19.8)cm



남해고속도로 확장공사로 진입로가 변경되는 진주시 정촌면 화원마을 한 주민이 고속도로 확장공사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진주 정촌 화원마을 주민 통행불편 해소

권익위, 국도3호선-화원마을 진출입로 재개설 중재

남해고속도로 진주~마산구간이 확장되면서 진·출입로가 막히는 바람에 진주나 사천방면으로 나가려면 1.5km나 우회해야 했던 진주시 정촌면 화원마을 주민 100여명의 교통불편이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조정으로 연내 해결이 가능하게 됐다.

지난해 12월 한국도로공사가 남해고속도로를 확장하면서 도로 밑에 있던 마을 주민들의 통로박스를 같이 넓혔는데, 이 때문에 통로박스와 국도 3호선간에 큰 경사가 생기면서 마을에서 국도로 향한 진출입로가 단절되어 1.5km를 우회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와 부산지방국도관리청, 진주경찰서 등 관계기관들은 마을과 국도간 진출입로를 새로 만드는 것은 비용문제와 교통

사고 위험문제 등을 들어 주민들의 민원 제기에 난색을 표했다.

이에 중재에 나선 국민권익위는 25일 오후 2시 박재영 사무처장이 진주 정촌면사무소에서 한국도로공사, 부산지방국도관리청, 진주시, 진주경찰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1년 넘게 계속된 마을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했다.

권익위 중재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와 진주시는 공사비용을 분담해 오는 12월까지 진출입로 연결 공사를 마쳐야 하며, 공사와 별도로 출입로에 필요한 신호등과 표지판을 설치하고, 간이 버스정류장 이전 등 제반사항도 같이 이루어진다.

진주경찰서는 진입로 개설 공사를 위해 신호체계를 변경하고, 부

산지방국토관리청은 도로공사 시행을 허가할 예정이다.

조정을 직접 주재한 박재영 사무처장은 “네 곳이나 되는 관계기관들이 한마음으로 나서준 덕분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권익위는 연내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우기자

(15.4*20.9)cm

진주 정촌면 화원마을 통행불편 해소 국도3호선 진출입로 재개설 중재



정촌면 화원마을 주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가 직접 나서 중재를 하고 있다

남해고속도로 진주-마산구간 확장으로 통행에 불편을 겪던 진주시 정촌면 화원마을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국민권익위(위원장 김영탄)의 중재로 연내 해결될 전망이다.

정촌면 화원마을 100여 명의 주민들은 남해고속도로 진주~마산구간이 확장되면서 진·출입로가 막히는 바람에 진주나 사천방면으로 나가려면 1.5km나 우회해야 하는 등 1년여동안 통행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는 지난해 12월 한국도로공사가 남해고속도로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통로박스과 국도 3호선 간에 큰 경사가 생기면서 마을에서 국도로 향한 진출입로가 단절되어 1.5km를 우회해야 하는 불

편을 겪어왔다. 이에 주민들이 한국도로공사와 국토관리청 등에 통행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해결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한국도로공사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경찰서 등 관계기관들은 마을과 국도간 진출입로를 새로 만드는 것은 비용문제와 교통사고 위험문제 등을 들어 주민들의 민원제기에 난색을 표했다.

이에 중재에 나선 국민권익위는 25일 오후 2시 박재영 사무처장이 직접 진주 정촌면사무소에서 한국도로공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시, 진주경찰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1년넘게 계속된 마을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했다.

권익위 중재에 따라 한국도로

공사와 진주시는 공사비용을 분담해 오는 12월까지 진출입로 연결공사를 마쳐야 하며, 공사와 별도로 출입로에 필요한 신호등과 표지판을 설치하고, 간이 버스정류장 이전 등 제반사항도 같이 이루어진다. 또 진주경찰서는 진입로 개설 공사를 위해 신호체계를 변경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도로공사 시행을 허가할 예정이다.

조정을 직접 주재한 박재영 사무처장은 “네 곳이나 되는 관계기관들이 한마음으로 나서준 덕분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연내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최현식 기자

(15.6*23.3)cm

주민불편 해소.. 국민권익위 중재 성과 (2시)

[2012-04-26 취재부 기자]

주민불편 해소.. 국민권익위 중재 성과 (2시)

2012-04-26 취재부 기자

남해고속도로 확장으로 진·출입로가 막혀
먼 길을 우회해야 했던 진주시 정촌면
회원마을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국민권익위의 현장조정으로 해결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진주시 정촌면사무소에서 한국도로공사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시,
진주경찰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한국도로공사와 진주시가 공사비용을 분담해 오는 12월까지
진주시 정촌면 회원마을 진출입로 연결공사를 완공하도록 주문했습니다.

남해고속도로와 인접한 진주시 정촌면 회원마을
주민들은 고속도로 확장공사로 1.5킬로미터나
돌아 가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지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등은 진출입로 개설에
비용이 많이 들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1년여 동안 방치해 왔습니다.

호남고속철도 정읍역사 및 지하차도 공사 재개

민원번호 : 2BA-1203-130033 (교통도로민원과, 양용석)

〈민원개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추진 중에 예산 절감 등을 이유로 15%정도 진행된 정읍역 지하차도 공사를 중단('11. 12.)하고 정읍역 선상역사 설계를 백지화하는 등 정읍역사 공사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착수하자 정읍시 관내 12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범시민대책위원회 73,189명 및 고창군·부안군·순창군 25개 시민단체가 당초 계획대로 정읍역사 공사를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집단 민원을 제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가 국무총리실 및 국토해양부와 긴밀하게 협의하는 한편 총 5회의 현장조사와 7차례의 실무협의 등을 거쳐 정읍역사는 선상(선로 위)에 신축하되 선상역사 준공 전까지 기존 역사를 활용하고 이용수요에 맞게 규모를 축소·조정하며, 지하차도는 당초 계획대로 높이 4.5m 이상의 왕복 4차선 규모로 신설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당사자들의 합의를 중재·조정하여 자칫 호남고속철도 준공 지연, 지역 갈등 비화 등으로 번질 집단민원을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적기 준공 및 지역 균형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

① 당사자

- 신청인 : 정읍역사 신축·지하차도 개설 사수 범시민대책위원회 73,189명
※ 동일민원 신청 : 고창군·부안군·순창군 총 25개 시민단체
- 피신청인 : 한국철도시설공단, 전라북도 정읍시장
- 관계기관 : 국토해양부장관

② 민원내용

- 피신청인1(한국철도시설공단)은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오송~광주송정 간)(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 시행자로서 2009. 10.경 현 정읍역사 하부를 관통하여 정읍시 구시가지 중앙로와 현 정읍역사 서편을 연결하는 지하차도(이하 '이 민원 지하차도'라 한다) 및 호남고속철도 정읍역 선상역사(이하 '이 민원 선상역사'라 한다)

를 신설키로 정읍시와 협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절감 및 사업기간 단축을 이유로 2011. 7.경 착공한 이 민원 지하차도 공사를 중지하고 이 민원 지하차도 개설 및 이 민원 선상역사 신축 백지화를 검토하고 있는바, 이는 피신청인1(한국철도시설공단)이 정읍시민들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려는 것으로서 정부의 신뢰도 추락과 민심 이반이 우려되므로 당초 약속한대로 이 민원 지하차도 및 이 민원 선상역사를 신설해 달라.

③ 피신청인 등 의견

가. 피신청인1(한국철도시설공단)

- 현 정읍역사 서편 도심이 미형성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민원 지하차도 및 이 민원 선상역사를 신설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예산 절감 및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우선 현 정읍역사를 증축하여 사용하고, 이 민원 지하차도 및 이 민원 선상역사는 현 정읍역사 서편 도심개발의 구체적인 시행과 병행하여 단계적으로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피신청인2(전라북도 정읍시장)

- 피신청인1(한국철도시설공단)은 정읍시민들과 이 민원 지하차도 및 이 민원 선상역사 신설을 추진키로 '09. 10.경 기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이 민원 지하차도 공사와 연계하여 용지보상비 13억원 등 약 7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해 온 피신청인2(정읍시장)와 어떠한 사전 협의 없이 피신청인1(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일방적으로 이 민원 지하차도 공사를 중단한 것은 부당하므로 향후 이 민원 사업의 적기 준공을 위해서라도 피신청인1(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이 민원 지하차도 및 이 민원 선상역사를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관계기관(국토해양부장관)

- 이 민원 사업은 정부가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성장 거점도시 개발을 기본 취지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호남고속철도 정읍역은 단순 철도역이 아닌 지역성장 거점

이므로, 국토의 균형발전 및 새만금 개발 사업 등 국책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1(한국철도시설공단), 피신청인2(정읍시장)가 협의한(지하차도, 선상역사)대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적기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주요 쟁점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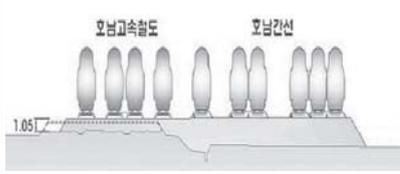
- 이 민원 사업을 계기로 낙후된 지역사회의 발전을 기대하는 정읍시의 입장과 지자체의 무리한 요구로 사업비 증가(예산낭비)를 우려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입장이 대립
- 이 민원 사업 승인권자인 국토해양부장관의 원안('09. 8. 공단·정읍시 협의내용) 추진 지시를 사업 대행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불이행(사실상 거부)
 - ※ '정읍역사 및 지하차도 원안 추진' 공문 통보('12. 3. 22. 고속철도과-382호)

5 갈등 분석

가. 민원발생배경 및 주요사실관계

- '06. 8. : 호남고속철도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국토해양부)
 - 정읍시 도심 통과 구간(2km) 노반을 교량(H=17m)으로 설계
- '09. 4. : 노반을 토공(H=1m)으로 변경 결정
 - ※ 사업비 약 1,700억원 절감(1,870억원 → 178억원)
- '09.4~8. : 노반 교량화, 정읍역 선상역사 및 지하차도 요구(정읍시→공단)
 - 공단 이사장과 정읍시장 면담('09. 8.), 시의회위원장단 공단 방문 협의('09. 8.)
- '09. 10. : 지하차도 개설 추진 및 사업비 분담 등 협약서 체결 예정 알림
 - (공단→정읍시)
- '10. 1. : 지하차도 설계도면 송부 및 협의준수 요청(공단→정읍시)

〈 이 민원 사업 계획 변경 과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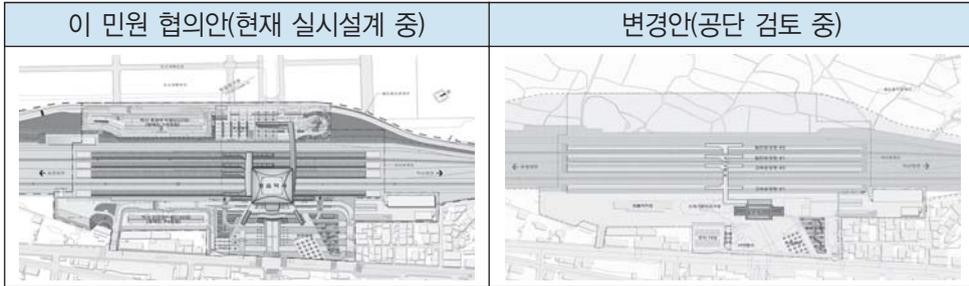
구분	기본계획('06. 8.)	실시설계('09. 4. ~)
노반 (L=2km)		
	- 교량(높이 17m)	- 토공(높이 1m)
역사		
	- 지상역사 증축	- 선상역사 신축(검토안, 실시설계 중)

- '11.7.~12. : 지하차도 공사 착공('11. 7.), 공사 중단('11. 12.)
- ※ 설계변경 없이 공사 착공(공정률 10~15%, 기성고 약 10억원)
- ※ 정읍시 매몰비용 120억원 주장(지하차도 토지보상 13억원, 중앙로 지중화사업 28억원 등)

〈 기 집행된 비용 및 예상되는 추가 비용 〉

구분	기 집행 비용	예상되는 추가 비용
정읍시 (주장)	총 70억원 · 정읍역 지하차도 용지매입 : 13억원 · 중앙로 지중화사업 : 28억원 · 농소로 지하차도 용지매입 : 27억원 · 역세권개발 및 도시계획 수립 : 2억원	총 66억원 · 정읍역 지하차도 공사비 : 32억원 ('12년 16억, '13년 16억) · 롯데마트 앞 도로포장 : 9억원 · 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 : 25억원 ('12년 5억, '13년 20억)
KCC건설 (주장)	총 10억원 · 집수정 및 지하차도 구조물 공사 (공정률 12~15%)	총 5억원(구조물 철거비용) 추정 ※ 이 민원 지하차도 공사를 취소할 경우
공단 (확인)	총 10억원 · 정읍역사 설계비 : 9억 8천만원 · 조달청 단가심의 수수료 : 2천만원	· 설계비 등 추가 비용 예상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변경 검토 중인 정읍역사 설계(안) 〉



• 12. 3. : 이 민원 사업 원안 추진 결정 통보(국토해양부→공단)

※ KTX역은 단순 철도역이 아닌 지역성장 거점으로서 새만금개발, 권역연계 환승 체계, 인근 토지 이용계획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당초 협의된(선상역사, 지하차도)대로 추진할 것

〈 이 민원 사업에 대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입장 변화〉

구분	기본계획, 설계 ('06. 8.~'08. 11.)	공단+정읍시 협의안 ('09. 8.~'11. 12.)	공단 변경안 ('12. 5.현재)
노반(정거장)	교량(H=17m), 1,870억원	성토(H=1m), 178억원	좌동
정읍역사	지상역사 신축, 521억원	선상역사 신축, 671억원	기존역사 증축, 328억원
지하차도	해당 없음	4차로 신설, 83억원 (L=402m, H=4.7m) * 정읍시 46억원 논외	신설 안함 *단 KTX 1단계 준공 후 서측도심 개발 시 자동차 전용으로 2차로 신설 (68억원, L=402m, H=3m)
계(사업비)	총 2,391억원(A)	총 932억원(B)	총 328억원(C)
사업비절감	〈사업비 구성〉 국비(50%)+공단(50%)	A-B = 1,459억원	A-C = 1,885억원 B-C = 426억원

나. 조정 목표

- 공공갈등을 조기에 해소하여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적기 준공 및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
- 쟁점사안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사회·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사회통합에 기여

⑥ 갈등해결과정

- '12. 3. 19. : 최초 민원 접수(129개 시민단체 73,189명 민원 제출)
 - ※ 동일민원 접수 3건 : 고창군 3개 단체(4. 19.), 부안군 10개 단체(4. 19.), 순창군 12개 단체(4. 26.)
- '12. 3.~4. : 자료수집 및 의견수렴(3. 25.~4. 10.), 출석조사(4.19.), 국토해양부 방문 협의(4. 26.)
- '12. 5. : 실무협의 및 기관장 등 면담(5. 2.~5. 14.)
- '12. 5. 8. : 국무총리실 보고 (공공갈등 과제 협업 관련)
- '12. 5. 17. : 부기관장급 사전협의회 개최
 - ※ 정읍역사는 적정 규모의 선상역사로, 지하차도는 왕복4차로로 건설기로 합의 도출
- '12. 5. 21. : 공단의 지하차도 규모(높이)에 대한 이의제기로 합의 무산
- '12. 6. 4. : 공단 이사장 면담
 - ※ 이 민원 본안 원칙적 수용 의사 표명 및 공단과 정읍시 간 이견이 있는 12가지 사안 중재 요구
- '12. 6. 5. : 정읍시장 면담 및 신청인 대표(10명)에게 진행경과 등 설명
 - ※ 신청인의 강력한 원안 추진 요구에 대해 위원회 조정(안)을 설명하여 이해·설득
- '12. 6. 8. : 위원회 조정(안)에 대한 실무협의
 - ※ 공단과 정읍시 간 12가지 쟁점사항 중 10가지 사항 합의 도출
- '12. 6. 11. : 공단 이사장 및 정읍시장 면담
 - ※ 미합의된 2가지 쟁점에 대해 위원회 조정(안) 수용 의사 표명
- '12. 6. 12. : 위원회 조정(안)에 대한 수용의사 확인(공단, 정읍시)
 - ※ 조정서에는 이 민원 본안 내용만 수록·서명하고 그 외 사항은 양 기관 간 별도 합의

⑦ 조정 (합의) 결과

가. 조정·합의 최종결과

-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정읍시 실무자 등과 수십 차례 논의하고, 국무총리실 및 국토해양부와 긴밀하게 협의하는 한편 총 5회의 현장조사와 7차례의 공식 실무협의 등을 거쳐 피신청인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계속적으로 조율한 결과, 우리 위원회가 정읍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하면서도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피신청인 등이 우리 위원회가 제시한 방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임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중재하에 현장조정회의 개최기로 합의함
- 정읍역사는 선상(선로 위)에 신축하되 선상역사 완료 시까지 기존 역사활용 및 이용수요에 맞게 역무시설 및 부대시설 규모를 조정하여 예산 절감
- 지하차도는 당초 계획대로 높이 4.5m 이상의 왕복 4차선 규모로 신설하되 지하차도 준공시기에 맞춰 지하차도가 간선도로에 연결될 수 있도록 정읍시에서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하여 역세권 개발과 연계
-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이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정주고가교 철거, 토석채취장 개발 및 개별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 제반 행정절차 이행

나. 위원회 조정·합의문

신청인과 피신청인1(한국철도시설공단), 피신청인2(정읍시장) 및 관계기관(국토해양부장관)은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이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글로벌 녹색국토' 기조에 따라 KTX 정차역 중심의 도시권 육성을 위해 차질 없이 시행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며,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적기 준공을 위하여 갈등 해소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쟁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가. 정읍역사

- 1) 피신청인1(한국철도시설공단)은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1단계 준공에 맞추어 철도설계기준에 맞는 규모의 선상역사를 건설하고 현 정읍역사를 철거한다. 다만 선상역사 건설이 완료될 때까지 현 정읍역사를 활용한다.
- 2) 피신청인1(한국철도시설공단)은 과잉시설 방지를 위해 이용 수요 및 설계기준에 맞춰 현 정읍역사 서편 도심개발과 연계하여 광장 및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단계별로 건설한다.

나. 지하차도

- 1) 피신청인1(한국철도시설공단)은 현 정읍역사 하부를 관통하여 정읍시 구시가지 중앙로와 현 정읍역사 서편을 연결하는 길이 402m, 높이 4.5m 이상의 왕복 4차선 규모로 지하차도를 건설한다.
- 2) 피신청인2(정읍시장)는 위 지하차도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 중 피신청인1(한국철도시설공단)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정읍시 구간 소요 비용 중 16억 원은 2012년에 지급하고, 나머지 비용은 2013년 상반기에 지급하며, 2013. 12. 31.까지 정산을 완료한다.
- 3) 피신청인2(정읍시장)는 위 지하차도와 현 정읍역사 서편에 위치한 간선도로(벚꽃로)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를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1단계 준공 시까지 건설한다.

다. 실시계획 변경

관계기관(국토해양부장관)은 피신청인1(한국철도시설공단)과 피신청인2(정읍시장)가 협의하여 실시계획 변경을 요청할 경우 신속히 승인절차를 이행한다.

라. 행정 협조

피신청인2(정읍시장)는 피신청인1(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 중인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이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정주고가교 철거, 토취장 개발 및 개별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 제반 행정절차 이행에 적극 협조한다.

마. 신청인은 이 민원 지하차도 및 이 민원 선상역사 신설에 대하여 더 이상의 이익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⑧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가. 신청인-피신청인 수용 및 이행여부

- 위원회 전방위적인 조정·합의 노력의 결과 당사자 간의 이해와 양보를 이끌어내어 신청인과 피신청인 등 관계기관 모두가 만족하고 수용
- '11년 12월 이후 6개월 간 중단된 이 민원 지하차도 및 이 민원 선상역사 건설 공사가 재개되어 지역 균형발전 및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적기 준공에 기여

나. 시사점

- 주도면밀한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정확한 원인 파악

이 민원 사업의 최초 시작 단계에서부터 관련 서류 등을 꼼꼼히 조사하여 신청인을 비롯한 피신청인, 관계기관 등이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을 종합하여 민원 발생 배경 및 원인을 정확히 파악

- 문제의 심각성 예견 및 적극적 대응방향 설정

이 민원 사업 표류 시에는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전체 완공 지연 및 사회·경제적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총선·대선 등 정치적 일정과 맞물려 기간이 경과 할수록 갈등이 증폭되어 공공갈등으로 비화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중재하여 합의 유도기로 결정

- 위원회의 전방위적인 조정·합의 노력

위원회 조사관 및 담당 과장은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정읍시 실무자 등과 수십 차례 논의하여 쟁점사항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타협점을 모색하는 한편 국무총리실 및 국토해양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국장 등 간부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피신청인 및 관계기관의 간부들에게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토록 촉구하였으며, 총 5회의 현장조사와 7차례의 공식 실무협의 등을 거쳐 조정·합의를 이끌어냄

- 공공갈등을 조기에 해소하여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적기 준공에 기여

위원회 전방위적인 조정·합의 노력의 결과 당사자 간의 이해와 양보를 이끌어내어 자칫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전체의 준공 지연, 지역 갈등 비화 등으로 변질 우려가 있던 사회적 갈등이 원만히 해결됨으로써 신청인과 피신청인 등 관계기관 모두가 만족하였고, 사회·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정부 정책의 신뢰가 회복되었으며, 더불어 위원회의 위상 제고에도 기여



[뉴스9] KTX 정읍역, 공사 재개

[2012-06-28 (19:20) 김종환 기자]



<앵커멘트>

중단됐던 호남고속철도 정읍역 신축과 지하차도 건설 공사가 재개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재에 나서면서 사업 백지화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김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옛 시가지와 새로 개발될 역세권을 잇는 KTX 정읍역 지하차도 공사가 재개됐습니다. 철도시설공단이 예산 절감을 이유로 역 건물과 지하차도 신축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하면서 공사가 중단된 지 여섯달 만입니다. 공사 재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가능했습니다. 권익위원회는 철길 위에 새 역사를 짓고 지하차도는 원래 계획대로 왕복 4차로로 건설하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인터뷰>김영란/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예산 절감과 정읍시민들의 희망 사항이 맞아들어가는 그런 지점을 찾느라고 애를 쓴 겁니다.>

새 역사는 이용 수요에 적합한 규모로 지어 예산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인터뷰〉김광재/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고속열차 이용객도 많이 늘어나고 역세권 개발 사업도 성공적으로 수행돼서 정읍시가 과거의 찬란했던 호남지역 중심지로서 거듭날 수 있기를...〉

KTX 정읍역 신축과 역세권 개발 사업이 백지화 위기에서 벗어남에 따라, 전북 서남부 지역의 균형발전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2천 14년에 호남고속철도가 부분 완공되면, 서울에서 정읍까지 한 시간 20분이면 올 수 있습니다.

KTX 정읍역을 새만금과 변산반도, 내장산 등과 연계해 지역의 성장 거점으로 만드는 일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KBS뉴스 김종환입니다.

KTX정읍역사 신축

[2012년 06월 28일 이흥래 기자]



◀ANC▶

그동안 백지화 논란을 빚었던 KTX 정읍 선상역사 신축과 지하차도 개설이 다시 추진 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임흥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약수+ 기념촬영"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KTX 정읍 선상역사가 신축되고 지하차도와 주차장 신설이 추진됩니다.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주재로 KTX 호남선 건설현장 사무실에서 열린 현장조정회의에서는 선상역사를 새로 짓고, 역사가 완공될 때까지 현 역사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정읍역사 아래를 관통해 정읍 구시가지 중앙로와 정읍역 서편을 연결하는 길이 402m, 높이 4.5m 이상의 왕복 4차선 지하차도와 광장,주차장도 단계별로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선으로 선상역사와 지하차도가 건설되면서 정읍시는 비교적 만족

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 I N T ▶ 김 생 기 정읍시장

이번 조정은 지난해 7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하차도 공사를 중지하고 선상역사 신축을 백지화한 데 따라 정읍 시민대책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 성사됐습니다.

◀ I N T ▶ 김 영 란 위원장

철도시설공단 측은 뒤늦게나마 조정결과 수용과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지만, 앞으로 잘 지켜질지, 감시는 정읍시민의 몫이 될 전망입니다.

◀ E N D ▶

관련보도자료

MBN MK 뉴스

정부 정책 '이랬다저랬다'...신뢰도 추락

[2012-06-28 19:02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



【앵커멘트】

이미 착공된 KTX 역사 신축 공사가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중단됐다가 국민권익위원회 중재 끝에 6개월 만에 재개됐습니다.

이래서야 국민이 정부기관을 신뢰하겠습니까?

강세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은 지 30년이 다된 전북 정읍역.

철도시설공단은 오는 2015년 호남고속철도 개통에 맞춰 정읍역을 새로 짓기로 하고 지난 2009년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새 역사가 사업성이 없다고 뒤늦게 판단해 지난해 12월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 스탠딩 : 강세훈 / 기자

- "공사가 중단되자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이어졌고, 결국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재에 나서면서 공사가 중단된 지 6개월 만에 재개됐습니다."

공사 중단이 자칫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해 사회, 경제적 피해가 심각해질 거라는 판단에서입니다.

다만, 역사 규모는 이용수요에 맞게 축소될 전망입니다.

▶ 인터뷰 : 김영란 / 국민권익위원장

- "철도시설공단에서 예산 절감에 대한 애로사항을 하소연해서 저희가 중간 절충안을 마련하느라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찌 됐든 정읍시는 이번 결정을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생기 / 전북 정읍시장

- "서남권의 거점으로 신성장 동력으로 이 지역을 개발해서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부기관의 오락가락 행보에 수억 원의 예산이 낭비됐고, 정부 정책의 신뢰는 추락하게 됐습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관련보도자료



예산 절감과 사업기간 단축을 이유로 축소·중단될 위기를 맞았던 호남고속철도 KTX 정읍역사가 당초 계획대로 건축이 됩니다. 이로써 6개월여 간 이어진 논란도 끝나게 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정읍 KTX 선로공사 현장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KTX정읍 선상역사를 이용수요를 고려해 적정규모로 선로 위에 건설하라고 중재했습니다.

또 역과 연결되는 지하차도를 높이 4.5m 이상의 왕복 4차선으로 개설하도록 합의안을 유도했습니다.

이와함께 정읍시에 토취장 개발 등 인·허가를 적극 협조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철도시설공단은 지난 1월 예산절감과 예상 이용객 저조 등을 이유로 '현 역사를 활용하고 지하차도를 단계적으로 개설하는' 방향으로 선화하면서 정읍시·주민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원안추진을 촉구하는 시민 7만3천여명의 서명에 권익위는 현장조사와 실무협의를 거쳐 이날 김영란 위원장과 국토해양부 관계자, 정읍시장,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주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조정했습니다.

관련보도자료

서울신문

2012년 06월 29일
12면 (정치)

호남고속철 정읍역사 공사 재개

“수요·예산 고려 선로 위 신축”
권익위 중재로 집단민원 해결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업 백지화 선언으로 중단됐던 호남고속철도 정읍역사 공사가 6개월여 만에 재개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안이 수용된 결과다. 권익위는 정읍역사 및 지하차도 신설 공사 재개를 요구하며 전북 정읍시민 7만 3000여명이 제기한 집단민원이 권익위 중재로 28일 해결됐다고 밝혔다.

민원은 공단이 지난해 7월 정읍역사가 지나치게 크게 설계됐고, 주변 개발사업 타당성이 떨어진다며 지하차도 공사 시작 5개월 만에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면서 불거졌다. 공

단은 예산절감과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기존 역사를 증축해 사용하고, 역사 서쪽의 도심 개발 정도에 따라 새 역사와 지하차도를 단계적으로 건설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정읍시는 이미 용지보상비 13억원 등 7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며 반발했고,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출했다.

권익위는 중재안을 마련, 여러 차례 관련 기관을 설득한 끝에 이날 정읍 호남고속철도 현장사무소에서 김영란 위원장과 김광재 공단 이사장, 김생기 정읍시장, 김한영 국토해양

부 교통정책실장이 모여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중재안은 ▲원안대로 선로 위에 역사를 신축하되 과잉 시설이 되지 않도록 이용수요에 적합한 규모로 예산을 절감하고 ▲지하차도는 정읍시와 공단의 합의사안인 만큼 원래 계획대로 높이 4.5m 이상의 왕복 4차로 규모로 건설하는 등 당초 계획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자칫 호남고속철도 준공 지연, 지역 갈등 비화 등으로 번질 집단민원이 권익위의 ‘솔로몬의 선택’으로 타결된 것이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14.6*8.6)cm



지난 28일 호남고속철도 4-3공구 현장사무소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조정회의에서 김생기 정읍시장, 국민권익의 김영란 위원장, 국토해양부 김한영 교통정책실장 등 관계자들이 협의를 이끌어내 KTX 정읍선상역사 신축 및 지하차도 개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

KTX 정읍역사-지하차도 정상 추진

시, 국민권익위 조정 통해 공사 재개 가능... "미래 발전 초석 되길 기대"

정읍시민의 숙원이자 지역발전의 핵심동력인 호남고속철도(KTX) 정읍선상역사 신축 및 지하차도 개설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

시는 KTX 정읍역사 및 지하차도 신설 중단 민원과 관련, 지난 28일 호남고속철도 4-3공구 현장사무소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을 통해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조정회의에는 국민권익위 김영란 위원장, 국토해양부 김한영 교통정책실장, 김생기 시장, 한국철도시설공단 김광재 이사장, 고충민원 신청인 대표 이한욱 법대위 공동위원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정읍시와 철도시설공단은 이날 국민권익위 중재로 정읍역사는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1단계 준공에 맞추어 철도설계기준에 맞는 규모의 선상역사로 건설하고 현재의 정읍역사는 철거한다는 데 합의하고, 정읍역 지하차도는 왕복 4차선 통과높이 4.5m로 개설된다.

이로써 올해 초부터 6개월여 동안 지역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던 정읍시와 한

국철도시설공단 간의 쟁점사항에 대한 공방과 논란을 종식하고 정상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사업시행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공사가 늦어진 만큼 공사기간 단축에 대한 특별대책을 수립해 2014년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단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기 위해 검토 과정에서 발생한 정읍시민과의 갈등이 해소돼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KTX 정읍역이 서남권의 교통중심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생기 시장은 "호남고속철도 정읍선상역사 및 지하차도 정상 추진 결정은 정읍시민들의 결집된 의지와 지역정체권의 적극적인 협조에 따른 결실"이라며 "앞으로 정읍시 미래 발전의 초석이 될 정읍역사 신축 및 지하차도 개설을 위해 모든 행정적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호남고속철도 정읍선상역사 및 지하차도 개설사업은 정읍시의 새로운 지역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동·서 지역

간 개발 불균형해소와 구도심 활성화 및 역세권 개발을 위해 추진해온 사업이다.

시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 초까지 120억원을 투입해 공사를 추진해왔으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올해 초 예산절감과 사업기간 단축에 따른 재검토로 백지화를 검토한 바 있다.

이에 정읍시는 백지화검토 반대 상명서 발표와 시민단체의 대책위 구성과 활동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 항의 방문, 국토해양부장관 면담, 국민권익위원회 방문 등을 통해 강력하게 '백지화 검토' 철회를 요구해왔다.

129개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7만 3,000여 명의 백지화검토반대 서명을 받았고, 결의대회와 릴레이 항의방문 등을 통해 정읍시민의 의지를 집결시켰으며, 정읍시시의회를 비롯한 지역정치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힘을 보탰다.

특히 김생기 시장은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을 면담하고 원안추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함으로써 "당초 합의된 대로 추진하라"는 지시를 이끌어 냈다.

/특기수 기자 pgs3600@sibnews.com
(17.5*23.9)cm

KTX 정읍역사·지하차도 개설 원안추진 효과와 기대

서남권 교통중심·역세권 개발 '가속도'

환승센터·터미널 신축
고창·장성 접근성 향상
구도심 상권 활력 예상

정읍시민의 숙원사업이자 지역발전의 핵심동력인 호남고속철도(KTX) 정읍 선상역사 신축 및 동·서 지하차도 개설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 읍초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예산 절감과 사업기간 단축 등을 이유로 KTX 정읍 선상역사 신축 및 동·서 지하차도 개설 백지와 계획을 밝힌 후 6개월만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극적인 합의점을 도출해 정읍 선상역사 신축과 지하차도 개설 추진이 결정됐다.

오는 2014년말까지 KTX 정읍 선상역사 신축 및 동·서 지하차도가 개설될 경우 KTX 정읍역사는 고창과 부안, 전남 장성 등 전남·북 6개 시·군 주민이 이용하는 교통중심지로 발돋움할 뿐만 아니라 정읍시가 추진하



국민권익위원회가 28일 정읍역 지하차도·선상역사 신설 원안조정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정읍시와 도시철도공단이 권익위의 조정안에 합의했다. 정읍=김경섭기자 kskim@

고 있는 역세권 개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이 KTX 정읍 선상역사 신축 및 동·서 지하차도 개설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결정된 것은 이와 관련한 고충 민원을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이 한몫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정읍역사 서남권 교통중심지

오는 2104년까지 선상역사가 들어서고 동·서지하도가 개설될 경우 KTX 정읍역은 서남권 교통중심지로

부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읍시는 선상역사가 들어서고 동·서지하도가 개설되면 KTX를 이용하는 접근성이 편리해져 고창과 부안·순창, 전남 장성 등 인근주민들의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새만금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도 KTX를 이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총 5천208억원을 투입해 새만금~정읍~순창간 도로망을 확충하고 생골다리~상평동간 남북로, 서부산업도로, 시기영화아파트, 중정

로간 도로 개설 등을 펼치고 있다.

○... 역세권 개발 탄력

정읍시는 KTX 정읍 선상역사 및 지하차도 개설을 계기로 서남권 중심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역세권 개발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정읍역 지하차도 개설사업도 시가지 철도환단에 따른 동·서 지역간 균형발전과 구도심 활성화, 역세권 개발 사업 등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정읍시는 KTX 정읍선상역 및 지하차도 개설을 계기로 서남권 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KTX정읍역과 연계한 환승센터역 및 공용터미널을 신축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 연지상가에 추상복합 재건축사업을 추진해 전통시장을 주거공간과 문화공간, 소공원 등을 갖춘 새로운 형태로 개발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꾀할 방침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연지상가가 KTX 정읍 정차역과 터미널을 연계하는 정읍의 새로운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하고 유동인구와 정주민구 증가에 기여해 원도심 중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읍=김경섭기자 kskim@ (20.4·16.6)cm

KTX 정읍역사 신축·지하차도 원안대로

권익위 조정회의 확정

백지화 논란 잠재우고

사업추진 탄력 받을듯

그동안 백지화 논란을 빚었던 호남고속철도(KTX)정읍역사 신축과 지하차도 개설 사업이 확정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KTX정읍역사 신축 및 지하차도 개설과 관련한 민원조정에서 나선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오후 4시 민원현장을 방문한 후 정읍(주)KCC건설 현장사무실에서 조정회의를 열고 ▲정

읍 신상역사 신축 ▲지하차도 개설 등을 골자로 하는 중재안을 확정·발표 했다. **관련기사 7면**

이날 조정회에는 권익위 김영란 위원장과 김성기 정읍시장, 한국철도시설공단 김광재 이사장, 국토해양부 김한영 교통정책실장, 고충민원 신청대표인 이한욱 방대위공동위원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정서에 서명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은 “이번 조정회의 합의로 6개월 이상 중단된 공사가 재개됨으로써 호남고속철도가 당초 예정된 2014년에 제때 완공될 수 있게 됐다”며 “수반명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회적 갈등

이 원만히 해결됨으로써 사회·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정부 정책의 신뢰가 회복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조정서에서 정읍역사는 이용수요를 감안해 적정 규모의 신상(신로 위)역사 형태로 신축하고 공사가 중단됐던 총 12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동·서지하차도는 당초 계획대로 높이 4.5m이상의 왕복 4차로 규모로 오는 2104년말까지 건설된다.

또 주차장은 역사 전·후면 부지를 확보한 후 이 가운데 전면 주차장은 1단계 사업으로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 가운데 신상역사는 당초 52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9만7천852㎡부지에 4천14㎡의 규모로 신축키로 설계되었으나 권익위 조정과정에서 규모를 일부 축소하고 위치도 현 관광안내소 뒤편 방향으로 변경돼 사업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에 공사가 중단됐던 동·서 지하차도 개설사업은 빠른 시일내에 재개되며 규모가 축소되는 신상역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정읍시가 협의를 거쳐 건축설계를 마친 후 신축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현 역사는 신 역사가 완공될 때까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 거다.

정읍=김경섭기자 kskim@
(20.3+10.3)cm

KTX 정읍역사·지하차도 원안대로 추진

철도설계기준 맞게 신축 등 국민권익위 '조정안' 제시 시·철도시설공단 '합의'

정읍시민의 숙원이자 지역발전의 핵심동력인 호남고속철도(KTX) 정읍신상역사 신축 및 지하차도 개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시는 KTX 정읍역사 및 지하차도 신설 중단 민원과 관련, 지난 28일 호남고속철도 4·9공구 현장사무소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조정회를 통해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조정회의에는 국민권익위 김영란 위원장, 국토해양부 김한영 교통정책실장, 김성

기시장, 한국철도시설공단 김광재 이사장, 고충민원 신청인 대표 이한욱 방대위 공동위원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정읍시와 철도시설공단은 이날 국민권익위 중재로 정읍역사는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1단계 준공에 맞추어 철도설계기준에 맞는 규모의 신상역사로 건설하고 현재의 정읍역사는 철거한다는 데 합의했다.

또 정읍역 지하차도는 왕복 4차선 통과능력이 4.5m로 당초 계획대로 건설된다.

이로써 올해 초부터 6개월동안 지역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던 정읍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쟁점사항에 대한 공방과 논란을 종식하고 정상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사업시행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공사가 늦어진 만큼 공사기간 단축에 대한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2014년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단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검토과정에서 발생한 정읍시민과의 갈등이 해소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KTX 정읍역이 사남선의 교통중심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기 시장은 “호남고속철도 정읍신상역사 및 지하차도 정상 추진 결정은 정읍시민들의 결집된 의지와 지역정서권의 적극적인 협조에 따른 결실”이라며 “앞으로 정읍시 미래 발전의 초석이 될 정읍역사신축 및 지하차도 개설을 위해 모든 행정적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호남고속철도 정읍신상역사 및 지하차도 개설사업은 정읍시의 새로운 지역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동·서 지역간 개발 불균형해소와 구도심활성화 및 역사권 개발을 위해 추

진해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 초까지 120여원을 투입해 공사를 추진해왔으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올해 초 예산결산을 이유로 사업기간 단축에 따른 검토 과정에서 정읍시와 마찰을 빚어왔다.

이에 정읍시는 백지화검토 반대 설명서 발표와 시민단체의 대책외 구성과 활동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 협의 방문, 국토해양부관련 면담, 국민권익위원회의 방문 등을 통해 강력하게 ‘백지화 검토’ 협화를 요구해왔다.

특히 120개 시민단체를 비롯한 지역정서권과 정읍시의회 등이 중심이 되어 1천300여명의 백지화검토반대 서명 및 결의대회와 릴레이 집회방문 등을 통해 정읍시민의 의지를 집결시켜온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정읍=정성우기자·jm@
(24.3+11.2)cm

KTX 정읍역사 원안대로 신축

국민권익위 조정안에 정읍시·철도시설공단 합의

KTX 정읍역사 및 지하차도 신설 중단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안 대한 정읍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서명 교부식이 28일 오후 4시 호남고속철도 4-3공구 시공사인 KCC건설 현장 사무소에서 열렸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현장 조정회의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 국토해양부 김한영 교통정책실장, 김생기 정읍시장, 한국철도시설공단 김광재 이사장, 고충민원 신청인 대표 이한욱 법대위 공동위원장 등 5명이

조정서에 서명했다.

정읍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정읍역사는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1단계 준공에 맞춰 철도설계기준에 맞는 규모의 선상역사로 건설하고 현재의 정읍역사는 철거하기로 합의했다.

또 정읍역 지하차도, 삼평 지하차도(공설운동장 옆), 연지 지하차도는 통과높이 4.5m 왕복 4차선으로 개선되며 농흥 지하차도는 통과높이 4.5m 왕복 2차선으로 개선된다.

이에 따라 지난 6개월여 동안 정읍시민들의 거센 반발과 함께 진행됐던 정읍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간의 공방과 논란이 종식되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김광재 이사장은 “공단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검토과정에서 발생했던 갈등이 해소되어 다행이다며 합의대로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14년까지 1단계 공사를 완료하여 KTX 정읍역이 서남권 교통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임정훈기자 hoonyou@
(17.0*8.7)cm

KTX 정읍역사 공사 재개

6개월 논란 종식...지하차도는 원안대로

권익위 조정·중재

호남고속철도(KTX) 정읍역사가 당초 계획대로 건립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28일 정읍에서 현장조사와 실무협의를 거쳐 국토해양부 관계자, 정읍시장,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현장 조정회의를 열었다.

조정결과 정읍역사는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1단계 준공에 맞춰 철도설계 기준에 맞는 규모의 선상역사로 건설하고, 현재의 정읍역사는 철거한다는 데 합의했다.

또 역과 연결되는 지하차도는 왕복

4차선 통과높이 4.5m로 개설하도록 합의안을 이끌었다. 아울러 정읍시에 토취장 개발 등 인·허가를 적극 협조하도록 권고했다.

이날 권익위 중재에 따라 올해 초부터 6개월여 간 이어진 논란을 종식하고 정상추진할 수 있게 됐다.

철도시설공단은 지난 2009년 KTX 정읍역사와 지하차도를 신축하기로 확정했다가 지난 1월 예산절감과 예상 이용객 저조, 사업기간 단축 등을 이유로 ‘현 역사를 활용하고 지하차도를 단계적으로 개설하는’ 방향으로 선회, 정읍시·주민과 마찰을 빚었다.

정읍시 129개 단체로 구성된 범시민 대책위원회 등은 지난 3월 ‘서해안

7개 시·군의 교통 중심지로 2014년 KTX 개통 후 집중될 관광객 편의와 광역교통체계 확립을 위해 새 역사와 지하차도 개설이 필요하다’며 정읍시민 7만3188명의 서명을 받아 권익위에 민원을 제출했다.

사업시행자인 한국 철도시설공단은 “공사가 늦어진 만큼 공사기간 단축에 대한 특별대책을 수립해 오는 2014년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생기 시장은 “앞으로 정읍시 미래 발전의 초석이 될 정읍역사 신축 및 지하차도 개설을 위해 모든 행정적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15.6*11.7)cm

KTX 정읍역사 지하차도 공사 재개

국민권익위 중재 타결 ... 전주만성지구 민원도 개발계획 변경 합의

호남고속철도(KTX) 정읍역사 및 지하차도 신설 중단을 둘러싼 집단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타결되면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해 7월에 착공한 정읍역 지하차도 공사를 5개월 만에 중단하고, 예산 절감과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우선 현 정읍 역사를 증축해 사용하기로 했다.

현 정읍역사 서편 도심이 개발되는 정도에 따라 선상역사와 지하차도를 단계적으로 건설하겠다고 정읍역 지하차도 및 선상역사 신설 사업 전면 재검토에 착수했다.

정읍시는 지하차도 공사와 연계해 용지보상비 13억원 등 약 70억원의 예산을 이미 투자했고, 공단이 주민들에게 약속한 선상역사 등에 대해 일방적으로 약

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고 공사 재개를 촉구해왔다.

또 지난 3월 129개 정읍지역 단체로 구성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시민 7만3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오송~광주송정 간 호남고속철 정읍역사 및 지하차도 신설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호남고속철 전체 사업완공 지연과 자칫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조짐을 보이자 국무총리실 및 국토해양부와 긴밀하게 협의하는 한편 총 5회의 현장조사와 7차례의 실무협의 등을 거쳐 다수 이해관계자의 중재를 통해 조정안을 마련했다.

권익위 김영란 위원장은 28일 전북 정읍 소재 호남고속철도 제4-3공구 현장사무소 상황실에서 민원을 제기한 지역민들과

김광재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김생기 정읍시장, 김한영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합의를 이끌어냈다.

김영란 위원장은 "6개월 이상 중단된 공사가 재개됨으로써 호남고속철도가 당초 예정된 2014년에 제때 완공될 수 있게 됐다"며 "사회적 갈등이 원만히 해결됨으로써 사회·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정부 정책의 신뢰가 회복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전주시 만성도 시개발사업지구 주변 전주 제2산업단지와 전주완주혁신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변에 설정된 길이 1.6km, 폭 12m의 완충녹지 민원도 조정을 통해 개발계획을 변경하도록 합의를 이끌어냈다.

윤동길기자

(14.7*14.2)cm



KTX정읍역사 · 지하차도 원안대로 지어진다

[2012-06-28 14:46 최종수정 2012-06-28 17:23 최영수 기자 (kan@yna.co.kr)]

및 선상역사 신설 현 장소 : 2012. 6. 28.(목) 16:00, 호남고속철도



권익위 조정회의서 중재안 합의

(정읍=연합뉴스) 예산 절감과 사업기간 단축을 이유로 축소·중단될 위기를 맞았던 호남고속철도(KTX)정읍역사가 애초 계획대로 건축이 된다. 이로써 6개월여 간 이어진 논란도 끝나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28일 오후 전북 정읍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KTX정읍선상역사를 이용수요를 고려해 적정규모로 선로 위에 건설하라고 중재했다. 또 역과 연결되는 지하차도를 높이 4.5m 이상의 왕복 4차선으로 개설하도록 합의안을 이끌었다.

아울러 정읍시에 토취장 개발 등 인·허가를 적극 협조하도록 권고했다.

철도시설공단은 2009년 KTX정읍역사와 지하차도를 신축하기로 확정했다가 지난 1월 예산절감과 예상 이용객 저조 등을 이유로 '현 역사를 활용하고 지하차도를 단계적으로 개설하는' 방향으로 선회, 정읍시·주민과 마찰을 빚었다.

시와 주민대표는 "서해안 7개 시·군의 교통 중심지로 2014년 KTX 개통 후 집중될 관광객 편의와 광역교통체계 확립을 위해 새 역사와 지하차도 개설이 필요하다"며 원안추

진을 촉구하는 시민 7만3천여명의 서명부를 권익위에 제출했다.

이에 권익위는 현장조사와 실무협의를 거쳐 이날 김영란 위원장, 국토해양부 관계자, 정읍시장,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주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이 조정했다.

김 위원장은 "6개월여 중단된 공사가 재개돼 호남고속철도가 예정대로 2014년 완공되고 특히 수만 명이 얽힌 사회적 갈등이 원만히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광주광역시 북구 옹호마을 앞 교차로 개선

민원번호 : 2BA-1205-194853 (교통도로민원과, 배중배)

〈민원개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시행하는 일반국도 29호선 문흥-보촌 도로확장공사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광주 북구 장등동 옹호마을 앞 옹호교차로가 1m 이상 높아져 호남 고속도로 하단에 설치된 통로암거(넓이 15.6m, 높이 5.55m 6.05m)를 통해 진출입하는 마을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고립감과 조망권 피해 및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및 관계기관 등의 협조를 이끌어내 주민들의 안전대책을 마련

① 당사자

- 신 청 인 : 광주광역시 북구 장등동 ○○○ 외 199명
- 피신청인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 관계기관 : 광주광역시 광주 북구청장, 광주지방경찰청장

② 민원내용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시행하는 일반국도 29호선 문흥-보촌 도로확장공사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광주 북구 망월동 옹호마을(이하 '이 민원 마을'이라 한다) 앞 옹호교차로가 1m 이상 높아져 호남고속도로 하단에 설치된 통로암거(넓이 15.6m, 높이 5.55m 6.05m)를 통해 진출입하는 이 민원 마을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고립감과 조망권 피해 및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현 상태의 도로 높이를 유지하여 확·포장해 달라.

③ 피신청인 등 의견

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 이 민원 마을 구간은 실시설계 시 주민설명회를 거쳐 설계를 완료하였고, 현재 확정된 설계 따라 일부 공정(RC옹벽, 보강옹벽)이 완료 또는 시공 중에 있어 종단선형을 개선하지 않고, 단순히 도로만 확장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며,
- 이 민원을 수용할 경우 향후 종단선형을 조정해야 할 다른 지점(STA.3+340, 약 1.1m) 또한 동일 민원이 예상되어 사업추진에 지장이 우려된다.
- 이에 용호교차로에서 마을로 진입하는 도로의 경사를 완화하여 마을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함이 타당하다.

4 주요 쟁점사항

- 안전성 문제
 - 용호교차로의 높이를 1.46m이상 설계하므로써 차량 운전의 시야를 방해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고, 주민들의 고립감을 주는 문제로 공사 중단
- 비용부담 문제
 - 용호교차로의 높이를 낮추고, 마을안길은 기울기를 고려하여 덮석우기 공사를 하고, 양쪽에 L형 측구 신설함으로써 추가 비용 부담

5 갈등 분석

가. 민원발생배경 및 주요사실관계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국도 29호선 문흥-보촌 도로확장공사의 용호교차로 구간을 실시설계 당시 종단선형이 불량하여 설계심의를 거쳐 종단선형을 조정(L=200m, H=0 1.46m)하여 설계 완료.
- 2003. 6. 20, 2004. 12. 27.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04. 8. 31. 장등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실시 후 2010. 8. 26. 공사에 착수하였으며,
- 이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광주광역시 북구 망월동 1188-1 일원의 용호교차로 구간(STA 2+760)을 현재 확정된 설계 따라 옹벽 설치 등 일부 공정이 완료 또는 시공함으로써 신청인들은 현재 설계대로 시공할 경우 호남고속도로 하단의 통로암거

를 통해 진출입하고 있는 이 민원 마을 주민들이 고립감 및 조망권의 피해가 있고, 통행에 불편하니 현재 상태의 도로 높이를 유지하여 시공해 달라는 고충민원 제기

나. 대안 제시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용호교차로의 높이를 1.46m 0.40m로 낮추고, 구 용호교에서 용호교차로 까지 마을안길은 기울기를 고려하여 덮썩우기 공사를 하고, 양쪽에 L형 측구 신설
- 광주 북구청장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의 마을안길 관련 행정업무를 신속히 협조
- 광주지방경찰청장: 피신청인의 교통행정업무를 신속히 협조하고 마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추가 설치 협조

6 갈등해결과정

- '12. 6. 1. ~ 6. 27. :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실지조사와 관계자 의견 청취
- '12. 6. 28. : 고충민원 출석조사
- '12. 6. 28. ~ 7. 13. : 조정안 마련 및 이견 조율
- '12. 7. 12. : 위원회에서 당사자 간 이견을 조율하여 조정안을 마련
- '12. 7. 24. : 당사자 조정안 수용

7 조정 (합의) 결과

가. 조정 · 합의 최종결과

- 우리 위원회에서는 3~4차례의 현지조사를 행하여,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용호교차로의 높이를 1.46m→0.40m로 낮추고, 구 용호교에서 용호교차로 까지 마을안길은 기울기를 고려하여 덮썩우기 공사를 하고, 양쪽에 L형 측구 신설하고, 북구청장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의 마을안길 관련 행정업무를 신속히 협조하며, 광주지방경찰청장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의 교통행정업무를 신속히 협조하고 마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추가 설치 협조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였고,

- 수십 차례 문제해결 방안을 협의하고, 두 차례의 업무회의 등을 거쳐 피신청기관 등의 의견을 계속적으로 조율한 결과, 우리 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서의 내용대로 주민을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기로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우리 위원회가 현지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조정서를 작성하고 조정 합의함.

나. 위원회 조정·합의문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본선 계획고를 원활한 배수처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현재 설계된 도로의 총 높이를 1.46m에서 0.40m로 낮추어 시공하고 종배수관은 본선 양방향으로 설치하여 이 민원 마을의 피해를 최소화 한다.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용호교차로에서 신 용호교 종점(U형 배수로)까지는 종단 경사의 기울기는 약 2.8%로 시공하고, 신 용호교 종점(U형 배수로)에서부터 구 용호교 앞 경계석 끝지점까지는 덧씌우기를 실시한다.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광주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신 용호교차로의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시점의 관련규정에 맞게 설치하고, 광주지방경찰청장이 신호·과속 단속카메라를 신설할 경우 작업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 광주 북구청장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신 용호교 종점(U형 배수로)에서부터 구 용호교 앞 경계석 끝지점까지 덧씌우기 공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작업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 광주지방경찰청장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용호교차로의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이 민원 마을 주민들의 안전한 교통의 통행을 위하여 신호·과속 단속카메라 등 추가적인 교통안전시설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⑧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가. 신청인-피신청인 수용 및 이행여부

- 주민들이 조망권과 차량 통행의 불편이 예상되는 문제이니만큼, 국민권익위에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국도가 원만히 확장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임.

나. 시사점

- win-win 해결의 모범 제시

신청인을 비롯하여 199명이 제기한 본 민원을 위원회가 적극적인 조정·중재하여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끌어냄으로써 이해당사자 모두 win-win 하는 결과 도출

- 교통사고의 위험 및 고립감에 대한 주민안전 대책을 마련한 사례

주민 안전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도로공사 안전 및 고립감 등 주민 안전에 위협적인 요소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주민 안전 및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 마련

- 집단 민원에 대한 조정자로서의 우리 위원회 위상 제고

신청인들, 익산국토관리청, 광주 복구청, 광주지방경찰청 간의 갈등 사안에 대하여 적극 개입하여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기관 간 갈등의 조정자로서의 우리위원회 역할 및 위상 제고



권익위, 광주 옹호마을 도로공사 민원 해결

[2012-08-17 15:44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

(담양=연합뉴스) 도로공사로 조망권 침해 등 불편을 겪은 광주 북구 옹호마을 주민들의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는 17일 오후 전남 담양군 고서면 도로공사 현장사무소에서 주민 대표와 익산지방 국토관리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했다.

이날 회의는 내년 8월 완공 예정인 국도 29호선 광주 북구 문흥동~전남 담양군 보춘 구간 확장공사로 옹호마을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자리였다.

주민 200여명은 1997년 호남고속도로가 개설되자 폭 15.6m, 높이 5.55m의 통로암거(고속도로나 국도 밑에 사람이나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콘크리트로 만든 시설물)로 마을을 드나들었다.

그러나 2010년 8월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 29호선 확장공사로 통로암거에서 연결되는 교차로의 높이가 2m가량 높아질 것으로 보이자 주민은 조망·일조권 침해를 우려했다.

주민의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이날 회의에서 조망권 확보를 위해 현재 설계된 도로의 높이를 1.46m에서 0.4m로 낮추고 마을 안길을 정비하는 등 중재안을 제시, 합의를 끌어냈다.

호남일보

2012년 08월 20일
11면 (사회)

권익위, 광주 용호마을 집단민원 해결

도로 개설로 인해 조망권 등을 침해받았으며 광주의 한 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조정으로 해결됐다.

민원이 발생한 곳은 광주 북구 용호마을로, 200여 주민들이 15년간 사용해온 통로암거(통로박스) 주변 교차로가 국도 확장공사로 인해 2m 가량 높아지면서 민원이 제기됐다.

주민들은 2013년 8월 완공 예정인 국도 29호선 광주 북구 문흥동~전남 담양군 보춘 구간 확장공사로 조망권이 침해되고, 통행 불편이 뒤따르게 됐다는 입장이다.

1997년 호남고속도로가 개설되면서 설치된 폭 15.6m, 높이 5.55m 짜리 통로암거를 통해 마을로 진입·출입하고 있는데 2010

년 8월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 29호선 확장공사 때문에 암거로 연결되는 교차로 높이가 2m 가량 높아지게 됐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또 이로 인해 조망권과 일조권이 동시에 침해받고, 급한 경사로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도 높으며 익산국토관리청 등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익산국토관리청은 “2004년 9월 주민설명회를 거쳐 설계한 대로 시공하고 있는 만큼 변경은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 5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고, 두차례의 실지조사에 이은 지난 17일 현장조정 회의를 통해 민원의 상당 부분이 해소됐다.

/공수열기자

(10.2*10.5)cm

권익위, 광주 용호마을 집단민원 해결

[2012-08-17 13:59 송창현 기자 (goodchang@newsis.com)]

【담양=뉴스시스】도로 개설로 인해 조망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광주의 한 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조정으로 해결됐다.

민원이 발생한 곳은 광주 북구 용호마을로, 200여 주민들이 15년간 사용해온 통로암거(통로박스) 주변 교차로가 국도 확장공사로 인해 2m 가량 높아지면서 민원이 야기됐다.

주민들은 2013년 8월 완공 예정인 국도 29호선 광주 북구 문흥동 전남 담양군 보춘 구간 확장공사로 조망권이 침해되고, 통행 불편이 뒤따르게 됐다는 입장이다. 1997년 호남고속도로가 개설되면서 설치된 폭 15.6m, 높이 5.55m 짜리 통로암거를 통해 마을로 진·출입하고 있는데 2010년 8월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 29호선 확장공사 때문에 암거로 연결되는 교차로 높이가 2m 가량 높아지게 됐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또 이로 인해 조망권과 일조권이 동시에 침해받고, 급한 경사로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도 높다며 익산국토관리청 등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익산국토관리청은 "2004년 9월 주민설명회를 거쳐 설계한 대로 시공하고 있는 만큼 변경은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 5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고, 두차례의 실지조사에 이은 17일 현장조정 회의를 통해 민원의 상당 부분이 해소됐다.

이날 조정회의는 담양군 고서면 현장사무소에서 신영기 상임위원 주재로 주민 대표와 익산국토관리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 자리에서 국민권익위는 ▲주민 조망권 확보 등을 위해 익산국토관리청이 현재 설계된 도로의 높이를 1.46m에서 0.4m로 하향 조정하고 ▲마을 안길을 덧씌우기 등을 통해 정비하며 ▲광주 북구청과 광주경찰청은 국도 확장공사에 적극 협력하도록 중재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조정회의를 주재한 신영기 상임위원은 "주민들이 조망권과 차량통행의 불편이 예상되는 문제인 만큼 국민권익위에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국도가 원만히 확장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 용호마을 교차로 공사 설계 변경

[2012.08.20 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 "주민 조망권·통행불편 개선 위해 도로높이 하향조정" 중재

○2013년 8월 완공예정인 국도 29호선 광주 북구 문흥동-전남 담양군 보춘 구간 확장 공사로 인한 광주 북구 용호마을 주민들의 조망권 침해와 통행 불편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김영란)의 현장조정을 통해 해소될 전망이다.

○광주광역시 북구 용호마을 주민 200여명은 지난 97년 호남고속도로가 개설되면서 통로암거(폭 15.6m, 높이 5.55m)를 통해 마을로 진·출입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8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 29호선 확장공사로 인해 주민들이 용호마을의 진·출입을 위해 사용하는 통로암거에서 연결되는 교차로의 높이가 2m가량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자, 주민들은 조망권·일조권이 침해되고 급한 경사로 인해 교차로 진입 시 교통사고 위험이 예상된다며 공사를 시행하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등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당초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2004. 9. 주민설명회를 거쳐 설계한 대로 시공하고 있는 단계이므로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자 주민들은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17일 14시 전남 담양군 고서면 현장사무소 에서 신영기 상임위원 주재로 주민 대표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중재했다.

세부 중재안은 ▲ 주민 조망권 확보 등을 위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현재 설계된 도로의 높이를 1.46m에서 0.4m로 하향 조정하고 ▲ 마을 안길을 덧씌우기 등을 통해 정비하며 ▲ 광주 북구청과 광주지방경찰청은 국도확장공사에 적극 협력하도록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번 조정회의를 주재한 신영기 상임위원은 "주민들이 조망권과 차량 통행의 불편이 예상되는 문제이니만큼, 국민권익위에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국도가 원만히 확장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제시 황산동 호남고속철도 통로암거 신설

민원번호 : 2BA-1208-230330 (교통도로민원과, 배중배)

〈민원개요〉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전북 김제시 황산동 강정마을은 약 100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이 민원 마을 동쪽에 황산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 황산에는 농지, 등산로, 사찰 등이 있고, 진출입에 불편함이 없었으나 호남고속철도공사로 인하여 이 민원 마을과 황산의 통행로가 단절되고, 신설되는 부체도로로 우회하여 통행하기 불편하니,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의 협조를 이끌어내 주민들의 편리성 확보

① 당사자

- 신 청 인 : 전북 김제시 황산동 ○○○ 외 90명
- 피신청인 : 한국철도시설공단

② 민원내용

-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전북 김제시 황산동 강정마을(이하 '이 민원 마을'이라 한다)은 약 100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이 민원 마을 동쪽에 황산이 자리하고 있으며, 황산에는 농지, 등산로, 사찰 등이 있고 진출입에 불편함이 없었으나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하는 호남고속철도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이 민원 마을과 황산의 통행로가 단절되고 신설되는 부체도로로 우회하여 통행하기 불편하니 이 민원 마을과 황산을 바로 통행할 수 있는 통로암거를 신설 요구

③ 피신청인 등 의견

가. 한국철도시설공단

- 민원발생구간은 좌측으로 구릉지와 우측으로는 이 민원 마을을 포함한 일부 자연부

락이 형성되어 있고, 실시설계 시 이 민원 마을 노선을 토공(성토고: H=1.5 2.0m)으로 계획하였으며, 오기(현) 107km 500지점에 통로암거 1개소를 설계에 반영하고, 부체도로를 통해 우회하도록 계획하였으며,

- 이 민원 공사로 인해 농경지 진·출입 및 통행을 위한 부체도로는 개선되었으나, 이 부체도로를 통해 우회함으로써 이동거리가 증가하여 노약자의 통행불편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이미 오기(현) 107km 680지점에 반영된 통로암거가 있음으로 통로암거 신설은 불가하다.

④ 주요 쟁점사항

- 통행불편 문제
 - 주민 대부분이 60세이상의 노령으로 우회하여 통행하는 불편이 있음
- 예산확보 문제
 - 이미 공사 진행률이 진전되어 있어 추가 확보의 어려움

⑤ 갈등 분석

가. 민원발생배경 및 주요사실관계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하는 호남고속철도공사로 인하여 이 민원 마을과 황산의 통행로가 단절되니, 마을과 황산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암거 신설을 요구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미 통로암거 2개소를 신설하기로 하였다는 이유로 통로암거 신설은 불가를 회신함.
 - 강정마을 주민 대부분이 노약자로 피신청인이 개설한 부체도로를 통하여 우회하는 것은 불편함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단절됨이 없으므로 통로암거 추가 신설은 곤란
- 강정마을 주민들이 기존에 3곳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농지 및 황산을 진출입하였으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통로암거를 2개소만 신설하기로함에 따라 강정마을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어 이 민원 공사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 이 민원 마을과 농지 및 황산의 진출입로 일부 단절에 따른 주민불편 등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나. 조정 목표

- 이러한 사실관계 및 각 기관의 입장을 분석한 결과, 공사기간 및 예산을 고려하여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통로암거를 신설하여 시공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

⑥ 갈등해결과정

- '12. 8. 27. : 고충민원 접수
- '12. 8. 28. : 고충민원 자료 제출 요청
- '12. 9. 7. : 고충민원 자료 제출
- '12. 9. 13. : 고충민원 업무 협의
- '12. 10. 5. : 현장조사 및 관계자 의견 청취
- '12. 10. 15. : 조정안 마련 및 의견 조율
- '12. 10. 24. : 조정서(안) 협의(위원회 → 피신청인, 신청인)

⑦ 조정 (합의) 결과

가. 조정 · 합의 최종결과

- 우리 위원회에서는 2 3차례의 현지조사를 행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 민원 공사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통로암거를 신설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였고,
- 수십 차례 문제해결 방안을 협의하고, 두 차례의 업무회의 등을 거쳐 피신청기관의 의견을 계속적으로 조율한 결과, 우리 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서의 내용대로 통로암거를 신설하기로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우리 위원회가 현지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조정서를 작성하고 조정 합의함.

나. 위원회 조정 · 합의문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 민원 공사 구간에 포함된 오기(현) 107km300(우측) 지점 토공구간에 이 민원 공사 완료 전까지 통로암거(3.0 3.0)를 신설한다.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 민원 공사 구간에 포함된 오기(현) 107km300(좌 · 우측)

지점 토공구간에 통로암거(3.0×3.0) 신설 시 농로와 연결되는 부분을 정비하여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한다.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성토구간의 부체도로를 개설함에 있어 황산방향의 V형측구와 마을방향의 J형측구를 설치하여 우수 피해 등이 없도록 조치한다. 다만, 측구의 크기는 현장측량 및 현장조건을 반영 후 설계를 통하여 결정한다.
- 신청인들은 이 민원 공사가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 신청인들은 위 조정·합의 내용에 관하여 더 이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㉘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가. 신청인-피신청인 수용 및 이행여부

- 통로암거 신설이 불가한 사안에 대한 주민들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의 갈등이 심화 되는 상황에서 우리 위원회의 중재로 노약자가 많은 주민들의 편리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이해당사자 모두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음

나. 시사점

- win-win 해결의 모범 제시
신청인을 비롯하여 90명이 제기한 본 민원을 위원회가 적극적인 조정·중재하여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끌어냄으로써 이해당사자 모두 win-win 하는 결과 도출
- 집단 민원에 대한 조정자로서의 우리 위원회 위상 제고
신청인들, 한국철도시설공단 간의 갈등 사안에 대하여 적극 개입하여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기관 간 갈등의 조정자로서의 우리위원회 역할 및 위상 제고

전주매일

2012년 11월 09일
02면 (종합)

김제 강정마을 등 출입로 통로 설치 통행불편 해소

권익위, 철도공사로 주민들 피해 철도공단에 중재

김제시 황산동 강정마을과 오정동 우산마을 주민 150여명이 호남고속철도공사로 인해 겪던 통행불편이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를 통해 통로암거가 설치돼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두 군데 진출입로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통로암거 신설·확장하도록 중재가 성립됐다고 8일 밝혔다.

두 마을 주민들은 주변 농로를 통해 마을에서 농경지 등을 드나드는데 불편이 없었으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하는 호남고속철도 제3-4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로 인해 농로가 단절, 먼 거리를 돌아다니고 농기계 통행에도 불편을 겪었다.

이에 주민들은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청하는 민원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실무조정 협의와 현장조사를 통해 관계기관의 입장을 조율해 8일 신영기 상임위

원 주재로 전북 김제시 용지면 소재 현장 사무실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었다.

강정마을에 대해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호남고속철도 제3-4공구 구간에 높이 3m, 폭 3m의 통로암거 신설 ▲신설되는 통로암거에 연결되는 농로를 정비 ▲우천 시 마을로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성토구간의 부체도로에 배수로를 설치하기로 했다.

우산마을에 대해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공사 완료 시까지 같은 구간에 있는 높이 2m, 폭 2m의 수로암거를 높이 5m, 폭 5m의 통로암거로 확장 ▲확장하는 통로암거와 기존 농로의 연결부를 정비 ▲부체도로를 개설하면서 인접한 우산저수지 이용에도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김제, 마을 진출입 불편 권익위 중재로 해결

[2012-11-08 16:05 최영수 기자 (kan@yna.co.kr)]

KTX 공사로 농로 끊겨...주민이 민원 제기

(김제=연합뉴스) 전북 김제의 두 마을주민이 호남고속철도(KTX)공사로 겪는 통행불편이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해소되게 됐다.

권익위는 8일 김제시 신평동 강정마을과 우산마을의 주민 150여명이 'KTX 공사로 농로가 끊겨 통행과 농기계 운행이 불편하다'고 제기한 민원을 철도시설공단호남본부와 조정회의를 열어 해결했다고 밝혔다.

철도시설공단은 강정마을에 높이 3m·폭 3m의 통로를 만들고 농로를 정비하는 한편 빗물이 마을로 못 들어오도록 배수로를 신설하기로 했다.

우산마을에는 높이 2m·폭 2m의 기존 통로를 각각 3m 넓혀 농로와 연결하는 한편 샛길을 만들어 인근 저수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철도시설공단은 2009년부터 올해 말까지 신평동 일대에서 KTX 제3-4공구 노반신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권익위, 김제 강정마을·우산마을 진출입 불편 해소

[2012-11-08 15:26 유영수 기자 (yu0014@newsis.com)]

【김제=뉴스시스】김제시 황산동 강정마을과 오정동 우산마을 주민 150여명이 호남고속철도공사로 인해 겪던 통행불편이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를 통해 통로암거가 설치돼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두 군데 진출입로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통로암거 신설·확장하도록 중재가 성립됐다고 8일 밝혔다.

두 마을 주민들은 주변 농로를 통해 마을에서 농경지 등을 드나드는데 불편이 없었으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하는 호남고속철도 제3—4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로 인해 농로가 단절, 먼 거리를 돌아다니고 농기계 통행에도 불편을 겪었다.

이에 주민들은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청하는 민원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실무조정 협의와 현장조사를 통해 관계기관의 입장을 조율해 8일 신영기 상임위원 주재로 전북 김제시 용지면 소재 현장사무실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었다.

강정마을에 대해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호남고속철도 제3—4공구 구간에 높이 3m, 폭 3m의 통로암거 신설 ▲신설되는 통로암거에 연결되는 농로를 정비 ▲우천 시 마을로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성토구간의 부체도로에 배수로를 설치키로 했다.

우산마을에 대해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공사 완료 시까지 같은 구간에 있는 높이 2m, 폭 2m의 수로암거를 높이 5m, 폭 5m의 통로암거로 확장 ▲확장하는 통로암거와 기존 농로의 연결부를 정비 ▲부체도로를 개설하면서 인접한 우산저수지 이용에도 피해가 없도록 조치키로 했다.

진주 죽봉마을 교통사고 위험 구간 선형개선

민원번호 : 2AA-1209-106941 (교통도로민원과, 양용석)

〈민원개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하는 삼랑진 진주 복선전철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통로암거 구간에서 침수피해 및 교통사고가 빈발하자, 경남 진주시 정촌면 등 4개 읍·면 주민 493명이 이 민원 통로암거 구간을 평면교차로로 변경해 달라는 집단 민원을 제기한 사항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내년 6월까지 통로암거대신 도로와 철도가 평면으로 교차도록 도로 선형 개선 공사를 시행·완료키로 하고 진주시는 공사에 필요한 토지를 시 예산으로 매입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당사자들의 합의를 중재·조정

① 당사자

- 신 청 인 : 경남 진주시 정촌면 등 4개 읍·면 주민 493명
- 피신청인 : 한국철도시설공단, 경상남도 진주시장

② 민원내용

- 피신청인1(한국철도시설공단)이 삼랑진~진주 복선전철 건설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신진주역~사천 공군부대 구간의 철도 아래에 통로암거(이하 '이 민원 통로암거'라 한다)를 신설하면서 직선 도로였던 리도 204호선(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한다)을 'S'자 선형으로 변경하여 이 민원 통로암거 구간에서 침수피해 및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니, 이 민원 통로암거 구간을 평면교차로로 변경해 달라.

③ 피신청인 등 의견

가. 피신청인1(한국철도시설공단)

- 이 민원 통로암거 설계에 대하여 피신청인2(진주시장)에게 사업실시 계획을 협의한

결과, 피신청인2(진주시장)가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승인하였기 때문에 당초 설계대로 이 민원 통로암거를 설치하였고, 철도를 운행하는 열차의 안전사고 위험 및 도로교통 방해를 최소화하고자 입체교차로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신청인2(진주시장)가 추후 신진주역사 역세권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이 민원 통로암거에 맞게 이 민원 도로의 선형을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피신청인2(경상남도 진주시장)

- 이 민원 통로암거를 설계·시공하면서 피신청인1(한국철도시설공단)이 주변 지형 및 여건을 고려치 않고 이 민원 통로암거를 설치한 후 이 민원 통로암거에 맞추어 이 민원 도로를 'S'자 선형으로 변경함으로써 침수피해 및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바, 원인을 제공한 피신청인1(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이 민원 통로암거 구간의 설계를 변경하여 평면교차로를 개설하는 것이 타당하다.

④ 주요 쟁점사항

- 평면교차로는 설치하는 곤란하니 이 민원 통로암거에 맞춰 이 민원 도로의 선형을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입장과 지형 여건 및 향후 도시계획 등을 고려하여 평면교차로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진주시의 입장 대립 및 비용 부담에 대한 이견

⑤ 갈등 분석

가. 민원발생배경 및 주요사실관계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이 민원 사업 추진 중 이 민원 통로암거를 설치하면서, 직선이던 이 민원 도로를 'S'자 선형으로 변경 시공
- 이후 교통사고가 빈발하자 지역 주민들이 이 민원 통로암거 구간을 평면교차로로 변경 요구

※ 진주시 정촌면 등 4개 읍·면에 거주하는 493명이 민원 제출(12. 9. 13.)

〈 이 민원 통로암거 위치도 〉



나. 조정 목표

-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여 이 민원 통로암거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및 이 민원 사업의 적기 준공

⑥ 갈등해결과정

- '12. 9. 13. : 고충민원 접수(신청인→위원회)
- '12. 9. 20. : 고충민원 설명자료 요구(위원회→공단, 진주시)
- '12. 9. 27. : 고충민원 설명자료 제출(공단→위원회)
- '12. 10. 2. : 고충민원 설명자료 제출(공단→위원회)
- '12. 10. 9. : 현장조사 실시
 - ※ 조사관, 마을 주민(50여명), 한국철도시설공단(4명), 진주시(3명), 시의원(3명) 합동 현장 확인 및 의견 청취 등
- '12. 10. 23. : 출석조사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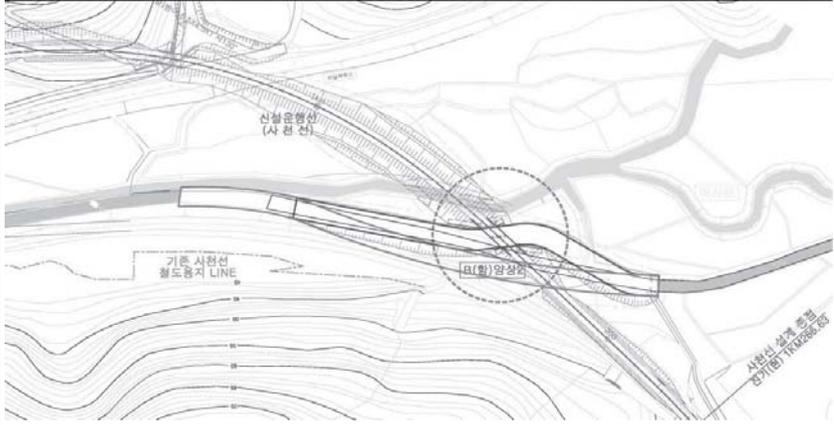
〈주요 내용〉

- ▶ 참석 : 교통도로민원과장(주재), 진주시 건설과장, 공단 부장
- ▶ 결과 : 평면교차로를 설치기로 합의
 - 공단이 평면교차로를 설치하고 도로선형 개선공사 시행(6억원)
 - 진주시가 관리하는 청원건널목을 설치(2억원)
 - ※ 폐철도부지 1,500평(약 3억원)에 대한 용지비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 양 기관 내부검토 후 결정기로 함

- '12. 11. 2. : 위원회 조정(안)에 대한 수용의사 확인(공단, 진주시)
⇒ 진주시가 폐철도부지를 일정기간 임차 후 매입하는 방안 수용

7 조정 (합의) 결과

가. 조정 · 합의 최종결과

구분	내 용
형 식	▶평면교차 방식으로 도로선형 개선
현 황	▶이 민원 통로암거 매몰 후 사천선 평면교차(도로 선형개선) ▶건널목 설치 ▶기존도로 및 기존철도 노선 이용(건널목 전후 일부 종단 변경)
도 면	
시행시 협의사항	▶청원건널목 설치 여부 → 진주시 역세권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추후 도로 확장을 감안하여 청원건널목으로 설치 ▶시공 및 공사비용 협의 → 교차로 및 건널목 설치, 연결도로 선형 개선 공사는 공단에서 일괄 시행 → 교차로 설치 및 연결도로 선형 개선 공사비용은 공단에서 부담 → 건널목 설치비용 및 용지비용은 진주시에서 부담
개략 사업비	▶청원건널목 설치비 : 2억(진주시) ▶폐철도부지 매입비 : 3억(진주시) ▶교차로 등 공사비 : 6억(공단) ▶ 계 11억

나. 위원회 조정·합의문

신청인과 피신청인1(한국철도시설공단), 피신청인2(진주시장)는 이 민원 통로암거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및 이 민원 사업의 적기 준공을 위하여 갈등 해소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가. 피신청인1(한국철도시설공단)과 피신청인2(진주시장)는 서로 협의하여 2013. 6. 30.까지 이 민원 통로암거 구간의 사천선 철도와 이 민원 도로가 평면으로 교차토록 이 민원 도로의 선형을 개선하고 건널목을 설치한다.

나. 평면교차로 설치(이 민원 도로 선형 개선 공사)

- 1) 피신청인1(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 민원 도로 선형 개선 공사를 시행하고 이에 따른 공사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 2) 피신청인1(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 민원 도로 선형 개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실시설계 후 피신청인2(진주시장)와 신청인 대표가 모여 상호 협의하여 시행하되, 이 민원 도로를 최대한 활용하여 공사를 시행한다.
- 3) 피신청인2(진주시장)는 이 민원 도로 선형 개선 공사에 편입되는 폐철도부지의 토지 매입비용을 전액 부담하되, 편입되는 토지 비용은 감정평가 결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다. 건널목 설치

- 1) 건널목은 피신청인2(진주시장)가 유지·관리하는 건널목으로 하되, 향후 이 민원 도로의 4차선 확장에 대비하여 4차선 규모로 한다.
- 2) 건널목은 피신청인1(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이 민원 도로 선형 개선 공사와 병행하여 일괄 시공하고, 건널목 설치비용은 피신청인2(진주시장)가 전액 부담하되 설치 완료 후 사후정산하며, 진주시 구간의 폐선된 경전선 철도건널목의 자재를 최대한 활용하여 건널목 설치비용을 절감한다.

라. 행정 협조

피신청인1(한국철도시설공단)과 피신청인2(진주시장)는 평면교차로(이 민원 도로 선형 개선) 및 건널목 설치 공사가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개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 제반 행정절차 이행에 서로 적극 협조한다.

마.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이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피신청인들에게 적극 협조하고 위 조정·합의 내용에 대하여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⑧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가. 신청인-피신청인 수용 및 이행여부

- 우리 위원회·적극적인 조정·합의 노력 결과 당사자 간의 이해와 양보를 이끌어내어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가 만족하고 수용
- 이후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진주시는 조정사항 이행에 필요한 MOU 체결 및 이 민원 통로암거 구간에 대한 설계 변경 등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음

나. 시사점

-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관계기관이 상호 양보와 타협으로 상생한 사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진주시가 상호 책임을 미루지 않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타협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 및 이 민원 사업의 적기 준공에 기여
- 우리 위원회의 위상 제고 및 사회통합에 기여
중재·조정 기능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갈등을 초래한 민원이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갈등해소와 사회통합에 기여

MBC 경남

국민권익위 현장 조정, 최종 마무리 (오후1시 20분)

[2012-11-21 진주MBC보도국]

불합리한 도로구조를 개선해 달라는 진주시 정촌면 주민들의 민원이 권익위의 고충민원 현장 조정으로 일단락 됐습니다.

오늘 진주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의 고충민원 현장조정회의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사고위험이 높은 정촌면 죽봉마을앞 터널박스과 굴곡도로를 오는 2013년 6월까지 건널목식 평면교차로로 변경하고, 진주시는 건널목 설치비용과 유지, 관리를 맡기로 하고 지역주민 대표와 함께 조정서에 각각 서명했습니다.

(진주시청 3층 문화강좌실)

경남매일

“교통사고 잦은 지역 진주시가 개선하라”

권익위 “시, 부지매입·한국철도공단, 시공” 권고

심하게 구불구불해 교통사고가 잦은 진주시 가좌동에 위치한 농어촌도로(리도 204호선)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직선으로 바뀌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직선이던 이 도로는 올해 12월 준공 예정인 삼랑진-진주 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과정에서 한국

철도시설공단이 도로와 철도의 교차지점에 통로암거를 만들면서 심하게 구부러진 'S'자 모양이 됐다. 이후 이곳에서는 6개월 동안 차량 3대가 패차되는 등 대형 교통사고가 잇달았다.

이 지역 주민 500여 명은 도로 선형 개선 등의 대책을 요구하며

지난 9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실무조정 협의와 현장조사를 통해 관계기관의 입장을 조율해 21일 오후 1시 진주시청에서 민원을 제기한 지역민들과 이태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장, 정유권 진주시 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신영기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해 도로 선형 개선 등을 중재해 합의를

2012년 11월 22일
04면 (사회)

이끌어냈다.

중재안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내년 6월까지 통로암거대신 도로와 철도가 평면으로 교차도록 도로 선형 개선공사를 시행·완료키로 했고 △진주시는 공사에 필요한 토지를 시 예산으로 매입하기로 했다.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한 신영기 상임위원은 “오늘 조정으로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는 한편 삼랑진-진주 복선전철 건설사업이 제때 완공될 수 있게 됐다. 지역사회에 감동을 초래한 민원이 원만히 해결됨으로써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이게 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대근 기자>

잘못 시공된 사천선 통과박스 '선형개량사업'

[2012년11월22일 10시04분 (아시아뉴스통신 = 김영수 기자)]

경남 진주시는 신진주역 옆 개양철도건널목에서 죽봉마을 입구 구간 굴곡위험구간 약 1km를 전면 개량한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5일 전면 개통예정인 경전선 삼랑진 ~ 진주간 복선전철 건설사업으로 인해 사천선(양상 제2B함) 통과박스(2련, 5.4×5.1)를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주변도로 선형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하면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학생들 및 주민통행불편으로 인한 민원이 다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선형개량 공사를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도로선형개량 및 철도건널목 설치공사 비용을 부담하고 진주시에서는 도로편입부지 보상과 건널목의 유지·관리를 하게 된다. 또한 향후 이 도로의 4차선 확장에 대비해 4차선 규모로 2013년 6월 30일까지 공사를 완료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선형개량공사를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 적인 협조와 조정·합의 내용에 대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조건으로 조정회의를 마무리했다.

진주시, 사천선 위험구간 선형 개량

주민 통행 불편 민원 발생에 공사 시행

진주시는 신진주역 옆 개양철도 건널목에서 죽봉마을 입구 구간 골곡위험구간 약 1km를 전면 개량한다고 밝혔다.

내달 5일 전면 개통예정인 경전선 삼랑진~진주간 복선전철 건설사업으로 인해 사천선(양상 제2B합) 통과박스(2면, 5.4×5.1)를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주변도로 선형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하면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학생들 및 주민통행불편으로 인한 민원이 다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선형개량 공사를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조

정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도로선형개량 및 철도건널목 설치공사 비용을 부담하고 진주시에서는 도로편입부지 보상과 건널목의 유지·관리를 하게 되며 향후 이 도로의 4차선 확장에 대비해 4차선 규모로 내년 6월 30일까지 공사를 완료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선형개량공사를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정·합의 내용에 대해 더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조정회의를 마무리했다.

진주/김종윤 기자
jykim@shinailbo.co.kr



진주 죽봉마을 입구 S자 철로 통과 박스 선형 개량 공사 결정

[2012-11-22 14:05 김동수 기자 (kds11@)]



(경남 진주=뉴스1) 경남 진주시는 신진주 역 옆 개양철도건널목~죽봉마을 입구 굴곡 구간(1km)을 전면 개량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전선 복선전철화 공사로 옮겨진 진삼선 철로의 차량 통로박스가 S자로 설치돼 교통 사고가 잇따르자 주민들이 해결책 마련을 호소해 왔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진삼선 철도를 이설할 때 주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천선 통과박스(너비 54.4m, 높이 5.1m)를 설치,민원을 야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도로선형개량 및 철도건널목 설치공사 비용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부담하고 진주시는 도로편입부지 보상과 건널목의 유지·관리를 하게된다.공사는 내년 6월까지 완료기로 했다.

진주시, 잘못 시공된 사천선 통과박스 선형개량사업 시행

[2012년 11월 22일 (목) 14:31:43 정종원 기자 (won@newsway.kr)]



[진주=뉴스웨이] 진주시는 신진주역 옆 개양철도건널목에서 죽봉마을 입구 구간 굴곡 위험구간 약 1km를 전면 개량한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5일 전면 개통예정인 경전선 삼랑진~진주간 복선전철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사천선 통과박스를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주변도로 선형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하면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학생들 및 주민통행불편으로 인한 민원이 다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선형개량 공사를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향후 이 도로의 4차선 확장에 대비하여 4차선 규모로 2013년 6월 30일 까지 공사를 완료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도로선형개량 및 철도건

널목 설치공사 비용을 부담하고, 진주시에서는 도로편입부지 보상과 건널목의 유지·관리를 하게 된다. 시는 선형개량공사가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정·합의 내용에 대하여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조건으로 조정 회의를 마무리했다.

관련보도자료

news **뉴스웨이브**
WAVE

권익위, 교통사고 빈발하는 진주시 소재 굴곡심한 도로 개선키로

[2012/11/23 [10:16] 심은영 기자]

"시가 부지매입,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평면교차로 공사하라" 중재

심하게 구불구불해 교통사고가 잦은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에 위치한 농어촌도로(리도 204호선)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직선으로 바뀌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직선이던 이 도로는 올해 12월 준공 예정인 삼랑진~진주 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과정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도로와 철도의 교차지점에 통로암거를 만들면서 심하게 구부러진 'S'자 모양이 됐다. 이후 이곳에서는 6개월 동안 차량 3대가 폐차되는 등 대형 교통사고가 잇달았다.

이 지역 주민 5백여명은 도로 선형 개선 등의 대책을 요구하며 지난 9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실무조정 협의와 현장조사를 통해 관계기관의 입장을 조율해 21일 오후 1시 진주시청에서 민원을 제기한 지역민들과 이태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장, 정유권 진주시 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신영기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해 도로 선형 개선 등을 중재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중재안에 따르면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내년 6월까지 통로암거대신 도로와 철도가 평면으로 교차토록 도로 선형 개선공사를 시행·완료키로 했고, ▲ 진주시는 공사에 필요한 토지를 시 예산으로 매입하기로 하였다.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한 신영기 상임위원은 "오늘 조정으로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는 한편 삼랑진~진주 복선전철 건설사업이 제때 완공될 수 있게 되었다. 지역사회에 갈등을 초래한 민원이 원만히 해결됨으로써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이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부산일보

2012년 11월 23일
10면 (지역)

■ □ 브리핑

진주 죽봉마을 입구 도로 개선

철도 공사 이후 교통사고가 잦은 경남 진주시 정촌면 죽봉마을 입구 위험구간 도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전면 개량된다.

23일 권익위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도로선형개량과 철도건널목 설치공사 비용을 부담하고, 시는 도로편입부지 보상과 건널목의 유지관리를 맡아 내년 6월말까지 이 도로의 선형 개선공사를 하기로 했다.

이 도로는 경전선 철도의 복선전철화 사업으로 기존 사천선 철로와 마을 도로가 만나는 지점에 통과 박스가 설치됐지만, 마을 도로가 'S자'형으로 변해 교통사고가 잇따랐다.

이선규 기자 sunq17@

전국매일

2012년 11월 27일
11면 (지역)

잘못 시공 사천선 통과박스 선형개량사업 시행

진주시, 4차선 규모 내년 6월까지

경남 진주시는 신진주역 옆 개양철도 건널목에서 죽병마을 입구 구간 굴곡위험구간 약 1km를 전면 개량한다고 밝혔다.

내달 5일 전면 개통예정인 경전선 삼랑진~진주간 복선전철 건설사업으로 인해 사천선(양상 제2B함) 통과박스(2면, 5.4×5.1)를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주변도로 선형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하면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학생들 및 주민통행불편으로 인한 민원이 다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선형개량 공사를 전면 시행키로 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도로선형 개량 및 철도건널목 설치공사 비용을 부담하고 진주시에서는 도로편입부지 보상과 건널목의 유지·관리를 하게 되며 향후 이 도로의 4차선 확장에 대비해 4차선 규모로 내년 6월30일까지 공사를 완료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선형개량공사를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정·합의 내용에 대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조건으로 조정회의를 마무리했다.

진주/ 박종봉기자
<bjb@jeonmae.co.kr>

2012 고충민원 조정사례집

2013년 3월 인쇄

2013년 3월 발행

발행 : **국민권익위원회**

편집 : **고충처리국 민원조사기획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국민권익위원회 신관

TEL. 02)360-2784 FAX. 02)360-3535

제작 :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인쇄사업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623-35

TEL. 031)906-1162 FAX. 031)906-1163

